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Ⅲ): 정책제안

손기웅, 강재홍, 고성광, 김동성, 김영봉, 남정호, 문성묵
박성남, 배병호, 신정균, 원동욱, 이경림, 이규창, 이상호
이성우, 임순남, 정지웅, 정희성, 차두현, 최수영, 최용환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Ⅲ): 정책제안

손기웅, 강재홍, 고성광, 김동성, 김영봉, 남정호, 문성묵
박성남, 배병호, 신정균, 원동욱, 이경림, 이규창, 이상호
이성우, 임순남, 정지웅, 정희성, 차두현, 최수영, 최용환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Ⅲ): 정책제안

인 쇄 2010년 12월

발 행 2010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통일정책연구센터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팩시밀리) 901-2541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늘품플러스 (070-7090-1177)

인 쇄 처 두일디자인 (02-2285-0936)

ISBN 978-89-8479-558-7 93340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10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734-6818 · 사무실: 394-0337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Ⅲ): 정책제안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서론	1
II. 군사분야 협력방안	19
1. 우발적 충돌방지	24
2. 유해 공동발굴	40
3. 세계군인체육대회 남북공동대표단 구성 및 접경지역 개최 ..	54
4. 동북아 위기관리 관련 기구 및 국제군비통제 회의 유치	70
III. 공유하천분야 협력방안	87
1. 임진강유역	92
2. 북한강유역	110
3. 한강 하구	126

IV. 환경분야 협력방안	139
1. 환경관련 국제연수교육기관 설립과 남북한 스마트그리드 협력	146
2. 호랑이 이동통로 개설	167
3. 동부 비무장지대-설악-금강연계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180
4. 2014년 제12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총회 남북공동 유치단 구성 및 비무장지대 개최	194
V. 문화분야 협력방안	215
1. 옹기문화 교류	220
2.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233
3. 영화제작 스튜디오 건설	249

목 차

VI. 해양분야 협력방안	269
1. 서해 접경해역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남-북-국제사회 삼자협력체제(Tri-lateral Cooperative Mechanism) 구축	275
2. 서해지역 개발을 위한 국제적 토대: 『Oriental Golden Coast』 건설	293
3. 환동해권 발전방안	307
4. 동·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324
VII. 북·중·러 접경지역 다자간 협력방안	341
1. 북·중·러 접경지역 인프라 개발	348
2. 남북정상회담과 교통물류분야의 의제	363
3. 백두산 화산폭발 대비 공동연구	381

VIII. 법·제도적 준비방안	401
1. 남북한 접경지역 관리협약체 구성	406
2. 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	424
3. 유엔환경기구 유치를 위한 법·제도 정비	440
IX. 결론	463
참고문헌	471
최근 발간자료 안내	475

표 목차

[표 II-1] 우발적 충돌방지 방안 로드맵	37
[표 II-2] 유해 공동발굴 방안 로드맵	50
[표 II-3] 세계군인체육대회 남북공동대표단 구성 및 접경지역 개최방안 로드맵	67
[표 II-4] 동북아 위기관리 관련 기구 및 국제군비통제 회의 유치방안 로드맵	85
[표 III-1] 임진강유역 협력방안 로드맵	107
[표 III-2] 북한강유역 협력방안 로드맵	123
[표 III-3] 한강 하구 협력방안 단계별 추진계획	135
[표 III-4] 한강 하구 협력방안 로드맵	136
[표 IV-1] 환경관련 국제연수교육기관 설립과 남북한 스마트그리드 협력방안 로드맵	162
[표 IV-2] 호랑이 이동통로 개설방안 로드맵	177
[표 IV-3]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유산의 지정절차	186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Ⅲ)

[표 IV-4] 동부 비무장지대-설악-금강연계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방안 로드맵	190
[표 IV-5]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총회 남북공동 유치단 구성 및 비무장지대 개최방안 로드맵	212
[표 V-1] 옹기문화축제 및 국제행사 착안사항	227
[표 V-2] 옹기문화 교류방안 로드맵	230
[표 V-3]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방안 로드맵	246
[표 V-4] 영화제작 스튜디오 건설방안 로드맵	265
[표 VI-1] 삼자협력 구축전략을 토대로 한 현안별 국제기구와의 체계적 협의방안	284
[표 VI-2] 서해 접경지역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삼자협력체제 구축방안 로드맵	290
[표 VI-3] Oriental Golden Coast 건설방안 로드맵	305
[표 VI-4] 환동해권 발전방안 로드맵	321
[표 VI-5] 동·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방안 로드맵	338

표 목차

[표 VII-1] 북·중·러 접경지역 인프라 개발방안 로드맵	361
[표 VII-2] 남북정상회담과 교통물류분야의 의제 관련 로드맵 ..	378
[표 VII-3] 백두산 화산폭발 대비 공동연구 방안 로드맵	398
[표 VIII-1] UNEP와 북한이 합의한 우선협력사업	418
[표 VIII-2] 접경지역관리협의회 추진구도	420
[표 VIII-3] 남북한 접경지역 관리협의체 구성방안 로드맵	421
[표 VIII-4] 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로드맵	436
[표 VIII-5] 유엔환경기구 유치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로드맵	460
[표 IX-1] 접경지역 평화지대 조성을 위한 제안된 사업의 우선순위	470

[그림 Ⅲ-1] 한강 하구 습지 보호구역	129
[그림 Ⅲ-2] 한강 하구 뱃길 구상	130
[그림 Ⅳ-1] 발견된 호랑이발자국	168
[그림 Ⅳ-2] 강원도 평화의 댐 인근에서 발견된 호랑이발자국	169
[그림 Ⅳ-3] 일제 강점기 호랑이 말살정책 추진 사례	170
[그림 Ⅳ-4] 설악산-금강산-철원 연계 개념도	183
[그림 Ⅳ-5] 한국의 환경성과지수와 생태복지지수	194
[그림 Ⅳ-6]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	195
[그림 Ⅳ-7] 2010 생물다양성의 해	197
[그림 Ⅳ-8] 동식물 주요서식지	198
[그림 Ⅳ-9]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199
[그림 Ⅳ-10] 생물다양성협약 공로상을 수여받는 이명박 대통령	200

그림 목차

[그림 IV-11] 대한민국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과 2010 CBD총회에서 한국의 역할	200
[그림 IV-12] 2010 DMZ 생태띠잇기 출범식	203
[그림 IV-13] 2010 DMZ 생태띠잇기 행사	204
[그림 IV-14] 2010 DMZ 생태띠잇기 행사	204
[그림 IV-15] DMZ의 패러다임 전환	214
[그림 V-1] 우리 민초들이 지켜온 각종 옹기들의 모습	221
[그림 V-2] 이벤트로 기획된 세계 최대 크기 옹기 제작행사	228
[그림 V-3]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234
[그림 V-4]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234
[그림 V-5] 중국의 영화감독 장예모 감독의 수상 연출의 예	238
[그림 V-6] 중국의 영화감독 장예모 감독의 수상 연출의 예	238
[그림 V-7] 독일 접경지역 Art Basel 이벤트	242

[그림 V-8] 독일 접경지역 Art Basel 이벤트	242
[그림 V-9] 스페인 구겐하임 미술관 (건축물 디자인 착안)	243
[그림 V-10] 스페인 구겐하임 미술관 (건축물 디자인 착안)	243
[그림 VI-1] 서해 접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278
[그림 VI-2] 동아시아 황금해안지대	306
[그림 VI-3] 환동해권 항로도	312
[그림 VII-1] 공동협의체 구성도	358
[그림 VII-2] 사업추진방안	373
[그림 VIII-1] 2008년 말라리아 위험지역	407

I. 서론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남북관계는 여전히 단절되어 있다. 북한은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체제유지와 권력세습에 두면서 남북관계를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 그 대표적 사례였으며, 이로 인해 한반도는 전쟁위기의 상황에까지 직면하게 되었다.

두 차례에 걸친 군사적 도발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3남인 김정은에게 권력을 순조롭게 이양시키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 제의, 금강산 관광 재개 협의 등 대남정책노선에서 전술적 유화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한이 대남 유화정책을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속단할 수 없다.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의 발전사례를 토대로 제한적이기는 하나 개혁·개방으로 정책의 기본방향을 수정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을 모색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평화공존’의 단계로 이끌어 갈 의지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잣대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평화공존은 자유민주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로 남북한이 서로 이념은 다르지만, 경제, 사회, 문화와 같은 ‘저위정치’(Low Politics) 분야에서는 물론이고, 국가 간 협력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정치, 군사·안보와 같은 이른바 ‘상위정치’(High Politics) 분야에서도 협력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제도화되는 상황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현 단계의 국가적 과제는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지금의 상황을 평화공존의 단계로 진입시키는 일일 것이다.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통해 공표된 합의서들을 포함하여 남북간 교류협력과 긴장완화를 약속했던 그 수많은 합의서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요원한 남북간 평화공존을 실현시키는 일이야 말로 지난 세기를 걸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쳐 고착화된 남북관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차대한 국가적 과업이라 할 것이다.

비무장지대를 포함하는 남북한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다시 말해 비무장지대를 아우르고 있는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남북한이 협력사업에 합의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남북한이, 특히 북한이 남북관계를 평화공존의 단계로 진전시키고자하는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비무장지대야말로 남북한 쌍방이 정치, 군사,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국가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히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은 남북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접점이자 통로이고, 모든 국가적 이해관계가 집약적으로 표출되는 남북한 접경지역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남북협력사업에 동의한다면, 그것은 바로 북한이 우리와 정치, 군사, 경제, 환경, 문화 등 제 측면에서 협력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은 평화공존을 향한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국가전략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접경지역에서 남북 쌍방이 교류협력에 합의할 수 없다면 평화공존을 핵심으로 하는 ‘한반도내 신 평화구조의 건설’이라는 국가전략의 성공은 요원하다. 반면 남북한이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합의한다면,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은 남북관계의 전반적 발전과 더불어 한반도 통일을 준비한다는 의미도 지닌다. 한반도의 허리에 위치한 접경지역에서 남북한이 협력을 모색한다면 전반적인 남북 교류협력과 남북관계 발전의 기폭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접경지역에서 남북한의 중앙과 지방정부, 주민, 사회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교류협력은 바로 통합과 통일을 준비하는 실천

적인 체험의 무대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과 함께 추진되었다. 지난해 제1차년도 연구에서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기존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기존제안들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의 중요성과 의미에도 불구하고 실천성이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번 제2차년도에서는 무엇보다 방안의 실천가능성에 초점을 두었다. 비무장지대를 포함하는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국가적 과업은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장기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다. 살아있는 생물처럼 진화하고 변하는 국내적, 국제적, 그리고 남북관계라는 한반도의 특수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기, 중기, 장기적 전략이 입안되고 세부적 정책방안이 제안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은 남북통일을 향한 과정에서도, 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장기적인 국가적 과제이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국가전략적 차원의 중차대한 문제의식을 전제 하면서 현재 우리가 이러한 과정의 초입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진행해 나갔다. 남북관계를 평화공존의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매개체는 과연 무엇인가? 현 상황에서 실천 가능한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방안은 무엇인가? 장기적,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국가 전략으로서의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이끌어내기 위한 단기적 과제는 무엇인가? 등에 초점을 두고 정치, 군사, 경제,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측면의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2009년 1차년도 사업에서는 남북 상생공영, 민족동질성 제고, 군사적 신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커다란 구상을 제시한 반면, 2차년도인 2010년에는 1차년도 연구 성과를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의미있는 접경지역 이용 방법에 대해 연구한 결과들을 도출하였다. 1차년도 연구 대상이 주로 남북이 접촉하고 있는 접경지역 및 동서해 접경 연안지역이 대상이었다면, 2차년도에는 연구의 대상과 지역의 제한을 넓혀 새로운 차원의 접근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정하여 진행하였다.

첫째, 올해 구상한 각종 세부사업은 우리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니만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북한을 설득하고 회유할만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며 북한의 정치, 군사, 경제, 환경, 문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연구의 방향이 설정되었다.

또한 한반도의 문제는 국제적 성격이 강하여 국제사회를 설득하여 지지를 도출할 수 있는 논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남북 접경지역의 활용은 이미 미국과 중국 그리고 국제기구인 유엔 등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향후 러시아, 일본 등의 여타 주변국가와 국제기구, 단체 및 개인까지도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제안된 사업들의 민감성을 신중히 고려하여 국내적 지지 역시 도출해 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좌우갈등이 심한 현재의 국내 정치 상황에서 모든 이를 만족시킬 만한 대안의 마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주제 선정 시 반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연구를 수행했다. 이런 의미에서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남북한 평화공존을 공고히 하고 지속시키기 위해 국내적으로 지지 기반을 확충하면서 북한의 호응과, 나가서 국제사회의 이해에 부합하여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였다.

둘째, ‘접경지역’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작업을 선행하되 그 범위를 한반도 주변지역과 해협까지 확대하여 각종 구상의 실천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이다. 본 사업의 목적은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이다. 따라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무장지대(DMZ) 및 남북접경지역의 제한적인 의미에서의 접경지역 이외에도 한반도 접경지역, 해양접경지역 등 한반도 및 주변 해양지역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미에서 접경지역을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 남북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남북협력만이 아니라 주변국가와 유엔 등 국제기구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한반도 북방접경지역 및 주변해협에서 여러 나라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갈등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남북평화무드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접경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주변국가와 국제기구가 동참하는 실효성 있고 경제성 있는 사업의 구상은 상당히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만약 제안된 사업에 상징성과 경제성 등이 결여되었을 경우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접경지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사업 주체의 참가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과제 수행에는 사업구상을 비무장지대 등 지역 위주로 구분하는 ‘지역중심적’ 접근에 더하여 군사, 환경, 문화 등 제 분야의 주제를 포괄하는 ‘주제중심적’ 접근을 선택하여 실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방안을 군사, 환경 등 분야별로 선별·정립하였다.

셋째, 시간적 범위를 두는 일이다. 본 과제에서 제시한 사업의 완결 시기는 남북한 접경지역의 핵심이 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포한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로 선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택하였다. 특히 올해 사업에서 주제를 선정하면서 우선적으로 고려한 부분은 과연 이들 구상이 이번 정부 임기인 2013년 말까지 실행이 가능한지 여부였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남북협력사업 또는 한반도 주변 접경지역을 목표로 한 사업의 구상과 추진은 정부의 성향과 의도, 의지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다시 말해 관련사업의 구상과 추진이 해당 정부의 임기 중 완료가 되는 것이 사업의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더군다나 과거에 정권의 수평교체 시 신정부의 정책기조가 급작스럽게 전환되어 추진되던 사업이 축소·왜곡되거나 심지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었다. 이 경우 신규 추진사업은 물론이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과 같이 이미 정착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들조차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금번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완성도와 함께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중요한 고려조건으로 삼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주어진 시간 내에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었다. 따라서 사업의 추진과 관리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함에 있어 본 과제에서 제안된 사업들은 공통적으로 시작시점을 2010년 하반기, 사업완료는 이번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2013년의 하반기로 정했다.

각 구상마다 제시한 로드맵에는 올해와 2011년 상반기 동안의 기간을 “남북관계 현상 지속” 시기로 정하여 사업 착수를 위한 탐색 시기로 전제했고, 2011년 하반기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는 “남북관계 대화 개시” 시기로 사업 본격추진 단계로 판단하여 정했다. 이후 2013년까지의 3개 반기는 “남북관계 활성화” 시기로 남북관계 발전을 기반으로 사업의 완결이 기대되는 시기로 판단하여 구분했다.

이런 고려를 바탕으로 아래 7개 분야의 접경지역에서의 남북협력방안을 2010년 주요 과제로 연구하였다.

- ① 군사분야 협력방안
- ② 공유하천분야 협력방안
- ③ 환경분야 협력방안
- ④ 문화분야 협력방안
- ⑤ 해양분야 협력방안
- ⑥ 북·중·러 접경지역 다자간 협력방안
- ⑦ 법·제도적 준비방안

위와 같은 연주주제들을 선정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들 분야가 남북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들이라는 점에서 관련 사업이 추진될 경우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분야들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사업은 다른 주제보다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추진에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러나 금번 과제 추진목표인 단기간 내 실현가능한 사업의 구상이라는 원칙에 충실하게 고안된 분야이다.

첫째, 군사분야 협력방안 분야는 ①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제도화, ② 접경지역을 통한 남북 유해 공동발굴 추진, ③ 세계군인체육대회 남북공동대표단 구성 및 접경지역 개최, ④ 비무장지대 내 동북아 위기관리 관련 기구 및 다자·국제 준비통제 회의 유치 등 총 4개의 주제로 구성했다.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교류활성화와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남북한간 군사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하다.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이후 양측의 관계는 급속히 확대 발전되었으나, 두 차례의 연평해전과 천안함 사건 등 군사적 충돌이 야기되면서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남북관계는 일순간에 냉각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남과 북 모두 상대방에 대한 깊은 불신과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군사적 위협을 해소해 나가는 조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군사적으로 남북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위협을 완화하는 상징성과 기대효과가 높은 시안을 발굴했다. 이들 4개 주제 중 “①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제도화” 및 “② 접경지역을 통한 남북 유해 공동발굴 추진” 두 분야는 남북간 합의도출이 용이하고 서로간의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시키면서도 경제적, 인도적 측면에서 큰 무리 없이 추진 가능한 분야라고 판단했다. “③ 세계군인체육대회 남북공동대표단 구성 및 접경지역 개최”와 “④ 비무장지대 내 동북아 위기관리 관련 기구 및 다자·국제 군비통제 회의 유치” 문제는 좀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분야이다. 전자의 경우 한국이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만약 남북이 남북공동대표단을 구성하고 접경지역의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면 남북 군인간의 스포츠 교류를 통해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완화시키는 실효성과 상징성이 높은 구상이라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비무장지대를 심리적·물리적으로 ‘비무장화’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및 동북아 국가들의 위기관리 및 군비통제와 관련한 공동 노력의 장으로 비무장지대를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 및 여타 국가들간의 긴밀한 협조와 함께 비무장지대에 관련 시설 확충 방안들을 모색하면서 관련 예산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유하천분야 협력방안은 임진강유역, 북한강유역 및 한강 하구 지역의 평화적 활용을 주제로 하고 있다.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남북한 접경지역에는 10여 개의 하천이 흐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임

진강과 북한강 수계에 속하는 하천들로 남북한이 북한강 및 임진강 수계에서의 재난방지 및 공동협력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북측의 성의없는 태도로 인하여 아직까지 실질적인 진전은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한강 하구 지역은 남북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중립지역으로서 평화적 용도의 향해가 법적으로 가능하나 한강 하구 중립지역은 사실상 비무장지대와 같은 취급을 받아왔다. 역사적으로 한강은 서해로부터 수도 서울에 이르는 주요 뱃길이었으나, 하구 지역의 항행이 불가능해지면서 한강과 임진강은 바다와 단절되었으며, 이곳에 위치한 수많은 포구들은 기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접경지역의 남북 공동수계는 남북협력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재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임진강 유역에는 수해방지, 산림녹화 등을 통해 공동 재해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태공원 및 공동농장 조성, 역사문화재 발굴 등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강 유역은 산림녹화 및 수자원 공동이용 방안, 그리고 주변 관광 및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등을 통한 광범위한 활용 역시 추진이 가능한 대안이 될 것이다. 한강 하구 지역에서는 뱃길을 개방하여 동 지역의 평화적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한강 및 임진강 하류지역 포구들을 되살리고, 뱃길 확보를 위해 준설되는 토사를 판매할 경우 사업 추진의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게 되고, 북한에게 사업 동참의 대가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한다면 한강 하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환경분야 협력방안의 주제로는 ① 환경관련 국제연수교육기관 설립과 남북한 스마트그리드 협력, ② 호랑이 이동통로 개설, ③ 동부 비무장지대-설악-금강연계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④ 2014년 제12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총회 남북공동 유치단 구성 및 비무장지대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개최 등 총 4개의 창의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현실적 의미에서 비무장지대는 군사적 대치를 목적으로 설정된 대안이라는 한계 때문에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하여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면서도 남북한이 동시에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 관계와 국제관계적 고려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정책적 고려는 남북한에 공동의 이익을 제공하고 북한이 수용 가능하면서 환경문제 역시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한 대안이 위에 언급한 4가지 과제들이다. 우선 환경보전에 대한 남북한의 공동노력에 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추가하여 남북한의 대학과 연구소를 포함하는 학계, 민간단체, 종교계가 참여하고 국제기구와 연계하면서 장기적으로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의 비무장지대 이전 유치와 같은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비무장지대에 환경관련 국제연수교육기관의 설립과 이를 기초한 스마트그리드 협력은 낮은 수준의 기능적 협력을 발전시켜 군사안보문제를 일부라도 해소하려는 데에 정책적 의의가 있다. 동부 비무장지대와 설악산 및 금강산지역을 연계하는 생태·역사·평화공원의 구상은 남북한의 비무장지대를 대표하는 광범위한 지역을 연계하는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에 평화, 역사, 생태, 문화를 포괄하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확장하여 긴장완화와 교류활성화를 통해 남북한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협력의제를 도출한다는 의미도 있다.

넷째, 문화분야 협력방안은 ① 옹기문화 교류를 통한 남북한 접경지역 교류 활성화 방안, ②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추진, ③ 비무장지대 내 영화제작 스튜디오 건설과 남북한 문화교류협력 등 신속한 사업 전개가 가능하면서도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주안점을 두었다. 남북한간 문화·예술 교류 사업은 양측의 정서적 동질성을

확인하면서도 관련 사업추진에 따른 정치적·군사적 갈등요소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해당 분야에서의 남북협력 가능성을 높여주는 부분이다.

작금의 대결 상황을 감안할 때 남북이 정치적 부담을 덜 느끼는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남북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며 향후 보다 깊은 남북협력 관계 조성의 초석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해당 분야의 사업들은 양측이 추진 의사를 가지고 있을 경우 즉시 실현이 가능한 분야이며 수익 창출을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한 상호협력을 촉진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① 옹기문화 교류를 통한 남북한 접경지역 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는 무엇보다 남북한이 큰 부담없이 시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남북공동의 전통문화 계승 분위기 조성을 통해 양측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②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추진”은 비록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나 이 사업이 가지는 상징성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비무장지대 지역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상징할 수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과 여러 예술적인 조형물 건설, 그리고 공연장·전시장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을 경우 이는 단지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각광받는 관광명소로서 발전할 수 있어 큰 효과가 기대된다. “③ 비무장지대 내에 영화제작 스튜디오 건설과 남북한 문화교류협력”은 이미 한국의 영화산업이 세련된 수준에 올라있고, 특히도 영화는 인기 산업분야이기 때문에 남북의 기술력이 뛰어난 애니메이션 또는 정치적 부담이 적은 역사물 등의 작품을 제작한다면 상업적인 성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므로 남북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간 구체적인 협의가 있을 경우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분야이다.

다섯째, 해양분야 협력방안에서의 연구는 ① 서해 접경해역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남-북-국제사회 삼자협력체제(Tri-lateral Cooperative Mechanism) 구축, ② 서해지역 개발을 위한 국제적 토대: 『Oriental Golden Coast』 건설, ③ 환동해권 발전방안, ④ 동·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치 운영 구상 등의 주제를 포함하여 사업의 경제성과 환경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확대 부분에 무게를 두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상에서의 남북협력은 한국과 북한 당사국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주변 국가들도 참여가 가능한 분야로서 우선 “① 서해 접경해역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남-북-국제사회 삼자협력체제 구축 구상”과 “② Oriental Golden Coast 건설”은 무엇보다도 남북접경 서해에서의 남북협력을 통한 지역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개발과 활용이 그 목표가 된다. 동 사업은 남북 당국간만의 협의차원을 넘어서 중국, 일본 등과의 협력과 연계하여 동아시아 황금해안지대를 구축함으로써 중국과 일본의 환황해권 개발과 한국의 서해안 개발사업을 전략적으로 접목하고 북한의 참여 및 서해에서의 남북협력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이다. “③ 접경지역 환동해권 발전 구상”은 황금해안지대 건설 구상과 논리적 맥을 같이 하면서 동해 접경지역에서의 남북 및 국제협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동해 접경지역에서의 남북연계 교통망의 복원 및 해상수송로 연결, 남북과 중국·러시아·일본을 잇는 환동해권 항구·공항 건설 등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④ 남북 동·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치 운영” 구상은 황금해안지대 구상과 연계되는 개념으로 남북한이 동·서해 양측 NLL을 기점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자는 구상이다. 이 제안은 우선 남북한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소극적이거나 남북군사협력을 이끌어 내어 남북한 어민들

에게 이익을 확대시킨다는 구상이다.

여섯째, 북·중·러 접경지역 다자간 협력방안은 ① 북·중·러 접경지역 인프라 개발, ② 남북정상회담과 교통물류분야의 의제 채택, ③ 백두산 화산폭발 대비 공동연구 등의 주제로 구성된 바, 이들 주제는 단순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만이 아니라 접경지역 국가들과의 평화적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 한반도 접경지역은 남북한 접경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동북지역, 러시아 연해주지역과 맞닿은 한반도 북단을 포괄하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남한과의 접경지역에 국한한 남북한 교류와 협력,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접경지역에서는 남한을 배제한 북중, 북러 교류와 협력이라는 각기 분절된 전략 추진으로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전개되어 왔던 협력사업은 한반도 북단의 북·중·러 접경지역에서 진행되어 온 협력사업과 유기적인 연계에 애로를 겪었다. 특히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동북공정’을 추진해 온 중국은 동북지역의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북한 및 러시아와의 접경지역 인프라 협력개발을 중심으로 북한 및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 그리고 동북아 경제권 형성의 주도권 확보 등을 본격적으로 꾀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는 중국의 동진전략에 대한 경계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국내경제의 침체라는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고육지책으로서 중국과의 접경지역 인프라 협력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한반도 접경지역의 협력구도를 국제적 다자간 공조의 틀 속에서 새롭게 확보해 냄으로써 남북한 접경지역의 교류와 협력사업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공존을 추진할 경우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③ 백두산의 화산폭발 가능성에 대비한 공동연구”의 경우는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경제적인 목적보다는 지역 위기관리 및 협력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큰 분야이다. 백두산의 화산이 폭발할 경우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에도 엄청난 재앙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재난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련국가간 공조와 연구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잠재 위기에 대응한 남북관계 개선 노력은 남북한간 동질성 회복의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하고, 나아가 한반도 및 주변국가의 상호 이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일곱째, 법·제도적 준비방안 연구에서는 ① 남북한 접경지역 관리협의체 구성, ② 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 ③ 유엔 환경기구 유치를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의 주제를 연구하였는데 이들 분야는 향후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에서의 교류협력 확대 및 공동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법과 제도적 보완 그리고 각종 기구와 조직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의 성공을 준비하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다. 본 연구분야의 추진 목적은 접경지역이 평화적으로 이용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인 정비방안들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 중 “① 남북한 접경지역 관리협의체 구성” 구상은 접경지역에서의 협력에 대한 북한의 관심을 제고하고 장차 통합과 통일의 상대방으로서 정치적·제도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남북 공동의 정책 협의·관리·집행 기구의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이런 협력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은 통일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② 접경지역에서의 남북 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도 추진되어야하는 바 이를 통해 남북한 간의 군사 충돌을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 공유하천을 통한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관계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비무장지대 내에 유엔환경기구의 유치는 남북한의 이해가 정치·군

사·경제·환경·문화 등의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비무장지대에서 남북한이 평화적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서로가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평화공존을 확고히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만약 비무장지대 내 유엔환경기구를 유치하고 유지한다면 남북 신뢰구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며 이런 조치의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를 제안하는 배경이 될 것이다.

본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매력적이고 실천 가능한 구상들이 제시되고 연구되었다. 올해 연구를 종결하면서 구상된 주제들 중 상징성과 경제성이 보장되고 제시된 일정 내에 추진과 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두 가지 실천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였다. 첫 번째 사업은 “남북 공유하천 이용” 제안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경제성 보장과 함께 생태보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구상이라고 판단하여 선정했다. 두 번째 사업은 “비무장지대 유엔환경기구 유치”로 정치성과 상징성 측면에 가시적인 효과들이 기대되고, 만약 추진된다면 남북간 군사적 대립을 완화시키면서도 생태의 보고인 비무장지대 지역의 환경을 보호한다는 실리적인 부분의 성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년 연구의 성과는 향후 정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나아가 정책대안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남북간 비무장지대를 포함하는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의가 필수적으로 진행될 것인 바,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 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발전 및 현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통일 준비에도 기여할 것이다.

Ⅱ. 군사분야 협력방안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교류활성화와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발전이 선행되고 군사적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북간에는 6.25 전쟁이후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이 있어왔고, 높은 불신의 벽과 군사분계선을 마주보고 막대한 군사력의 대치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2000년 이후 남북간에는 두 차례의 정상회담이 이어졌고 철도·도로 연결에 따라 금강산 육로관광이 개시되고 개성공단이 가동되는 등 교류협력이 급속히 확대 발전되었다. 그렇지만, 두 차례의 연평해전과 천안함 사건에서 보듯이 군사적 충돌이 야기될 경우 남북관계는 일순간에 냉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러한 원인은 남과 북 공히 상대방에 대해 깊이 불신하고 한반도에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신뢰의 장을 만들며 군사적 위협을 해소해 나가는 조치가 필요하다. 군사 분야에서 제시한 네 가지 과제들은 남과 북의 현실을 반영하고 군사적 신뢰구축과 위협 감소를 위한 시급성, 용이성, 상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제1과제는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제도화” 방안이다.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 등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① 접경지역 군부대간 hot-line 설치 등 긴급의사소통수단을 강구하고, ② 남북관리구역(Joint Administration Area: 이하 JAA)의 신뢰조성 구역화 등 신뢰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③ 산불공동방재, 임진강 공동수방 등 접경지역 공동방재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현재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관리구역에는 이미 남북 군(軍) 상황실간 직통전화가 설치·운영 중이며 남북간 통행지원뿐 아니라 군사적 충돌 및 확산 방지에도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사소통 수단을 확대 운영하고, 남북관리구역을 신뢰구축을 위한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합의도 용이할 뿐 아니라 기대되는 효과 또한 매우 클 것이다.

제2과제는 “접경지역을 통한 남북 유해 공동발굴 추진” 방안이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0년이 지났지만 당시 희생된 군인들의 유해 중 13만여 기는 아직도 한반도 산야에 묻혀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를 위해 싸우다 희생한 장병들의 유해를 끝까지 발굴하여 가족의 품에 돌려주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본분과 도리에 관한 문제이다. 2007년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쌍방은 유해 공동발굴에 합의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한 바 있다. 특히 북한측은 유해 공동발굴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만큼 남북대화 재개가 이루어질 경우, 우선 추진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인도주의적 측면이나 6.25 잔재 청산 등 상징성 또한 매우 높은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제3과제는 “세계군인체육대회 남북공동대표단 구성 및 접경지역 개최 추진”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중간 핑퐁외교를 비롯하여 체육교류가 국가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촉매가 된 사례가 많이 있다. 군인들 간의 올림픽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세계군인체육대회에는 남과 북이 공히 참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는 2015년 대회의 한국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남북이 공동대표단을 구성하고 접경지역의 개최를 추진한다면 국제사회의 호응을 확보하고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과 북의 현 불신상황을 감안할 때 남북 군인간의 스포츠 교류는 적대감을 완화시키고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데 실효성과 상징성이 높은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제4과제는 “비무장지대 내 동북아 위기관리 관련 기구 및 다자·국제 군비통제 회의 유치” 방안이다. 즉, 비무장지대를 심리적·물리적으로 진

정 ‘비무장화’ 하는 것으로부터 남북한 및 동북아 국가들의 위기관리·군비통제 관련 공동 노력의 상징적 장으로 비무장지대를 활용해 나가자는 것이다. 시행방안으로서 ① 비무장지대 내 일정 지역에 ‘남북 해사(海事) 협력센터’(가칭)를 설치·운영하고, ② 초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동북아 위기관리센터’(가칭)로 발전시키며, ③ 비무장지대에서 유엔군축회의나 동북아협력대화(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이하 NEACD) 회의 등 국제·지역 군축·군비통제 회의를 유치하여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불신과 대결의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위기관리와 군비통제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이상의 네 가지 과제는 향후 3년 이내에 우선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고 상징성과 기대효과가 매우 높은 사안들이다. 무엇보다 남북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위협을 완화하며 위기를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신인도를 제고할 뿐 아니라 북한의 개혁개방과 나아가 핵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1. 우발적 충돌방지

가. 제안배경

(1) 남북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 상존

- 현재의 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황 감안 시, 지상에서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이하 MDL)과 서해해상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NLL, 이하 NLL)을 사이에 두고 언제나 사소한 일로 인해서도 충돌이 야기될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 2002년 6월 제2차 연평해전의 경우와 같이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간 교류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도 군사적 충돌이 발생된 전례가 있음.
- 남북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크고 작은 충돌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2004년 남북 합정간 의사소통 장치를 마련한 이후에 5년여 간은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음.
- 특히 금년 북한에 의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피폭 이후, 남북관계는 극도로 경색되어 있고 북한의 호전적 발언이 거듭되고 있으며,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인 바, 그 어느 때 보다 충돌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임.

(2)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필요성

-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긴장국면으로 지속되고 있는 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남과 북에 공히 바람직하지 않음.
- 당분간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장차 교류협력을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음.

(3) 남북간에는 이미 충돌방지 관련 합의 존재

- 1992년에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및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와 2004년 합의한 6.4 합의서¹ 등 남북간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합의들이 있어 제도화를 추진하기에는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남북간 철도·도로연결 추진과정에서 설치된 군 상황실간의 직통전화와 서해 우발충돌방지를 위한 통신연락소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경우 충돌방지 제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4)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상태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성

- 현 남북관계는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 근거하여 유

¹ 『6.4합의서』는 2004년 6월 4일 설악산에서 개최되었던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타결된 합의서의 약칭임. 합의서의 공식명칭은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2004.6.4)임.

지되고 있는 이른바 정전상태임. 즉, 법률적으로는 아직도 전쟁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²에서 합의한 바대로 현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켜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도 군사적 충돌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

나. 주요내용

(1) 긴급 의사소통 수단 확보

(가) 접경지역 군부대간 hot-line 설치 등 의사소통수단 강구

- 우선, 6.4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남북 쌍방 합정간 국제상선공통망을 이용한 교신을 성실히 이행함.
- 현재 남북관리구역 군 상황실 간에 설치되어 있는 서해통신연락소와 쌍방 함대사령부 사이로(남측의 2함대, 북측의 서해함대) 각기 긴급연락통신선을 연장함.
-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MDL)과 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마주보고 있는 쌍방 부대들 간에 hot-line을 설치·운영함.
 - 남측의 2함대-북측의 서해함대, 남측 1함대-북측 동해함대간
 - 군사분계선을 연하여 마주하고 있는 군단, 사단급 부대간

² 「남북기본합의서」 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 정전협정을 준수한다.”

(나) 쌍방 군 지휘부간의 hot-line으로 확대 설치

- 쌍방간 우발적 충돌 및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 최고수뇌부 간 즉, 의사결정권자간의 hot-line을 설치·운영함.
- 남북기본합의서 13조에서도 군 고위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가 합의되어있는 만큼, 동 합의서 이행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감.³
 - 남측 합참의장-북측 총참모장간 직통전화: 전화 팩스 등 3회선
 - 국방부장관-인민무력부장 간 직통전화: 전화 팩스 등 3회선
 - 상기 전화는 야간이나 휴일의 경우 공관까지 접속 연결하여 24시간 통화 가능상태 유지함.
 - 이외 남북쌍방 군 지휘통제실간의 직통전화도 병행 설치·운영함.

(2)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가) 남북관리구역(JAA)의 신뢰조성구역화

- 남북간 철도·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을 남북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가치 “신뢰조성구역 (Confidence Building Zone: 이하 CBZ)”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을 강구함.
- 신뢰조성구역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해 나감.
 - 남북관리구역의 통행 자유화: 현재, 이미 계획된 인원 차량 장비

3. 『남북기본합의서』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 에 의해 사전 허가를 받고 통행토록 되어 있는 체제를 발전시켜 언제든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상시 통행체제로 발전시킴.
- 남북관리구역 내 군사분계선 부근에 상시 접촉 공간 마련: 2002년 7월에 합의한 바, 철도도로 연결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MDL 부근에 접촉 장소를 마련, 대화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⁴
 - 남북경비초소 간 직통전화 설치: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군사분계선에서 각각 250m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남북경비초소 간에 현재는 연락수단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는 바, 연락수단을 강구함.
 - 통행 시 군 차량의 호송제도 폐지: 현재는 각기 통행인원과 차량을 군 차량이 각기 호송하여 군사분계선 상에서 상대측에 인계하고 있는 데 쌍방 간 신뢰가 구축되는 데 따라 이를 점차 폐지함으로써 신속한 통행을 보장함.
 - 남북관리구역 운영단간 상호방문 정례화: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에 각기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군 운영단 간에 상호 방문을 정례적으로 실시함.

(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충돌방지 방안을 마련

-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MDL 월경은 자칫 쌍방간 총격전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이는 정전협정 당시 설치된 군사분계선 표시

4.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2002.9.17) 4조②항: “현장 군사실무책임자 사이의 접촉은 남북관리구역들에서 지뢰를 제거하고 철도, 도로 노반공사를 끝내는 시기에 그 구역의 군사분계선 상에 지어놓은 임시건물에서 한다.”

판이 식별이 곤란한 데에도 기인하는 바, 보수를 추진함.

- 비무장지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색정찰 및 매복 등의 쌍방간 군사 활동은 항시 충돌야기 가능성이 있는 바, 신뢰구축 진전에 따라 점차 사전 통보 및 활동규모, 횡수 제한 등의 조치를 추진해 나감.
- 비무장지대 내 사실상 중무장되어 있는 남북 쌍방의 GP(Guard Post)를 단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비무장지대를 정전협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비무장화시켜 나감.

(3) 접경지역 공동방재 등의 방안 추진

(가) 산불 공동방재

- 비무장지대의 경우 북측은 사계청소를 위해 화공작전을 일방적으로 전개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이 불이 확산되어 큰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우려됨.
- 비무장지대 산불발생 시 헬기 투입과정에서 유엔사와 북한군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효과적 진화를 실시한 전례도 있음.
- 쌍방 군사당국자간 산불을 방지하고, 산불 발생 시 공동방재를 위한 군사적 보장방안을 협의해 나감.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나) 임진강 공동수방을 위한 군사보장 수립

- 임진강 홍수범람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남북 당국 간에는 공동 수해방지를 위한 합의가 있었고, 이를 위한 실질적 조치도 있었음.
- 공동수방 과정에서 공동조사 등을 위한 현지정찰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군사당국자간 군사적 보장조치가 필요함. 2005년 장성급군사회담에서 이미 쌍방간 협조하기로 합의하였으며,⁵ 2007년 2차 국방장관회담에서도 합의사항을 재확인하였음.
- 남북 쌍방간 이미 합의한 바대로 임진강 공동수방을 위한 구체적인 군사적 보장방안 강구가 필요함.

(다) 남북간 공동어로 실현

- 2005년 남북수산물실무회담에서 쌍방은 공동어로 추진에 합의하고 구역설정 및 개시 시기는 군사당국자간 회담에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음.⁶
- 이에 따라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통해 공동어로문제를 협의하였으나, 북측의 NLL 무실화 기도로 성사되지 못하고 있음.

5.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공동보도문」(2007.5.11) 2조②항: “쌍방은 임진강 수해방지, 한강하구 골재채취와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6. 「남북수산물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서」(2005.7.27) 1조①항: “공동어로는 수역과 공동어로 시작 시기는 남북군사당국회담에서 합의되는데 따라 확정하기로 한다.”

- 공동어로는 북측의 NLL 인정준수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함.

다. 추진방안

(1) 국내적 차원

(가) 추진 실무대책팀(Task Force: 이하 TF) 가동 및 종합 대책 수립

- 국방부를 중심으로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등 안보부처 요원들로 구성된 실무 TF를 가동하여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함.
- 남북 군사회담 개최 시 협의할 관련 합의서 초안도 작성함.

(나) 공감대 확산

- 우발충돌 방지는 남북관계의 관리 및 발전을 위해 긴요한 과제라는 사실에 대한 공감대 확산 노력이 필요함.

(다) 남북간 합의서 타결 시, 국회 보고 및 관련법 제정(필요시)

- 우발충돌 방지관련 합의서 타결 시 이를 국회에 보고하고(필요시 비준), 관련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특별법을 제정함.

(2) 남북관계 차원

(가) 남북군사대화 복원

-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이후 여건이 호전되어 남북대화가 복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원될 경우, 군사회담채널을 재가동하여 최우선적으로 우발충돌 방지방안을 협의해 나감.

- 가급적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큰 틀에 합의한 후, 장성급군사회담 또는 실무회담을 통해 세부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북측 태도여하에 따라 실무회담부터 추진하는 방안도 가능함.

(나) 관련 합의서 체결

- 이미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나 국방장관회담 등 군사회담 합의서에 기초하여 우발충돌방지 방안 이행실태를 평가함.
- 기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의지를 재확인하고 추가합의사항들을 포함하여 합의서를 체결함.

(3) 국제적 차원

(가) 6자회담을 통한 지원 확보

- 6자회담은 기본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담 채널이지만, 9.19 공동성명에 따르면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문제관련사항을 논의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므로 6자회담에서 남북 군사당국자간 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상태 구축을 위한 충돌 방지문제를 적극 협의토록 권고할 수 있음.

(나) 군정위 채널을 통한 촉구

- 정전협정은 1953년 체결이후 전쟁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로서 역할을 해 왔으나, 1992년 이후 북한 측의 정전협정체제 무실화 조치로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임.
- 1998년 개시된 유엔사-북한군간 장성급회담은 1999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친 연평해전의 확산방지에 기여해 왔는 바, 동 회담의 활성화를 통해 정전협정의 성실한 이행과 군사적 충돌방지 방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음.
-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표지판 보수나 산불방지를 위한 공동방재 등 사안들은 기본적으로 정전협정 관련 사안이므로 군정위 채널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룬 후 세부 사항은 남북간 논의토록 위임할 수 있을 것임.

라. 로드맵

(1) 2010년

(가) 추진 TF 구성 및 관련대책 수립

- 남북간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 우선 내부적으로 관련 TF를 구성하여 관련대책을 수립함.
- 동 TF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등 안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보부처가 포함되며, 필요시 유엔사 등과 협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함.

(나) 남북 당국간 대화복원 여건 조성

-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사건이 매듭지어지면 우선, 남북 당국간 협의채널이 가동되어야 함. 동 접촉을 통해 향후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해 나감.
- 동 접촉을 통해 최고위급회담을 내년 중 성사시킨다는 큰 틀에 합의하거나, 기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분야별 회담 재개에 합의해 나가는 것이 좋음.

(다) 6자회담 재개여건 조성

-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피폭이 매듭지어질 경우,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개최여건도 조성되는 것인 바, 동 회담의 조기개최를 통해 9.19 공동성명 이행을 진전시킴.
- 핵문제 협의 진전과정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별도의 포럼 개최 문제도 염두에 두고 협의를 진행해 나감.

(2) 2011년

(가) 남북간 고위급회담 또는 분야별 회담 개최

-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동 회담을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충돌방지를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함.

-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을 경우, 제3차 남북국방장관회담(또는 8차 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여 기 합의사항 이행에 합의하고, 구체적 이행문제 협의를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개최에 합의하는 방향으로 유도함.
- 이후,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본격 가동하여 기본합의서의 불가침분야 합의와 6.4합의서에 명시된 충돌방지조치 우선 이행에 합의함.

(나) 6자회담틀 내 별도의 포럼을 통해 한반도 평화관련 협의

- 동 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이루어질 경우, 한반도 평화문제 협의를 위한 포럼을 적극 가동하여 군사적 충돌방지문제를 협의해 나감.
- 다만, 충돌방지문제는 남북 당사자간 해결되어야 하므로 이 회담 채널에서는 남북간 적극 협의토록 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함.

(다) 군정위를 내에서 유엔사-북한군간 장성급회담채널 가동

- 유엔사-북한군간 장성급회담을 개최하여 정전협정의 성실한 이행 원칙에 합의하고, 남북간 군사적 충돌방지문제를 쌍방 당국자간 채널을 통해 적극 협의토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3) 2012~2013년

(가) 남북 군사당국자간 회담 정례적 개최 및 합의이행 확대

- 군사공동위원회 회담 산하에 군사적 충돌방지 제도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접경지역 군사당국자간 hot-line 설치 및 접경지대에서의 충돌방지 제도화 방안을 적극 협의함.
- 동 회담에서 합의된 군사적 충돌방지 제도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고 이를 확대해 나감.

(나) 6자회담 및 정전협정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촉진역할 수행

- 6자회담 별도의 평화포럼과 정전협정 채널을 통해 남북간 충돌방지 제도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속 권고함. 특히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유도해 나감.

[표 II-1] 우발적 충돌방지 방안 로드맵

		2010	2011	2011	2012	2012	2013	2013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남북관계 현상 지속		남북관계 대화 개시		남북관계 활성화		
국내 차원	추진 TF 구성	○						
	관련대책 수립		○					
	합의서 초안 준비			○	○			
	추진사업 선정		○	○				
	공감대 확산		○	○	○	○	○	
	합의서 국회보고							○
	특별법 제정, 공포(필요시)							○
남북 차원	군사회담 개시				○			
	합의서 체결					○		
	추진사업 확정						○	
	군사회담 정례화 및 관련사업 확대							○
국제 차원	유엔사 및 미국의 이해와 협조 유도		○	○	○	○	○	○
	6자회담 채널을 통한 측면 지원		○	○	○			
	군사정전위원회 채널을 통한 지원		○	○	○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마. 기대효과

(1) 남북간 군사적 위협과 긴장의 현저한 감소

- 비무장지대 및 서해 접경지역은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이며, 남과 북은 언제, 어디서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현실임.
- 따라서 남북간에 우발적 충돌방지가 제도화되어 쌍방간 군사적 신뢰가 구축될 경우, 군사적 위협과 긴장이 현저히 완화될 뿐 아니라 남북간 충돌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2)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촉진

- 남북간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과정이라 해도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원점으로 되돌아 갈 우려가 있는 것이 현 남북관계의 현실임.
- 우발적 충돌을 방지한다면 남북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뿐 아니라 그 규모와 지역이 현저히 확대될 수 있을 것임.
- 특히 남북관리구역을 신뢰조성지역(CBZ)으로 발전시킨다면 개성공단 뿐 아니라 금강산지역의 사업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됨.

(3) 현 정전상태의 공고한 평화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여건 조성

-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이후 57년 동안 동 협정은 한반도에 전쟁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해왔음.
- 그러나 법적으로 남과 북은 아직도 전쟁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바, 이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켜야 함. 우발적 충돌방지 제도화를 통해 남북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고한 평화상태 구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임.

(4)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 마련

- 우리 대북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평화로운 통일의 달성인 바,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충돌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임.
- 따라서 남북간 우발충돌 방지의 제도화는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상태의 구축뿐 아니라 나아가 평화로운 통일을 위한 발판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2. 유해 공동발굴

가. 제안배경

(1) 국가의 본분과 도리

-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0년이 지났지만 당시 희생된 군인들의 유해 중 13만여 기는 아직도 한반도 산야에 묻혀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⁷
- 국가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 장병들의 유해를 끝까지 발굴하여 가족의 품에 돌려주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본분과 도리에 관한 문제로서, 우리 군인들에게도 국가를 믿고 기꺼이 희생하는 정신을 제고시키도록 해야 할 것임.

(2) 6.25 전쟁의 청산과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과제

- 6.25 참전 국군 유해발굴은 국가의 본분인 동시에 6.25전쟁의 유산을 청산하는 의미인 바, 적극 해결되어야 할 사안임.
- 특히, 이는 향후 한반도에서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조치되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임.

⁷- 2000년부터 남측지역에서 유해발굴사업이 개시된 이래 2009년 말까지 총 3,380구를 발굴하였으나 이는 총 유해의 3%에 불과한 실정임. 정부는 2007년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을 창설하고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유해발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3) 미북간 한국전 미군 유해발굴 추진 전례

- 미국과 북한은 쌍방 합의에 따라 북한 전역에 묻혀있는 미군 유해를 1996년 개시하여 2005년 중단 시까지 꾸준히 발굴해 왔음.⁸
- 동 사례는 향후 남북간 유해 공동발굴이 시행될 경우, 추진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좋은 전례가 될 수 있음.

(4) 남북간 기(既) 합의사항

- 유해 공동발굴 문제는 2007년 11월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우리측이 필요성을 제기하고 북측이 공감하여 합의에 이르렀음.⁹
- 즉, 쌍방은 6.25 전쟁의 유해발굴이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에 기여한다는 데 공감하고 공동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데 합의한 것임.

(5) 북한 측의 적극적인 태도

-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유해 공동발굴에 합의한 이후, 북측은 동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음.
- 2007년 12월 판문점 우리측 지역에서 개최된 제7차 남북장성급

⁸ 함경남도 장진호 인근과 평안북도 운산지역에서 미군유해 225구를 발굴 송환하였으며, 미국은 북측에 2,200만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⁹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2007.11) 4조③항: “쌍방은 전쟁시기의 유해발굴문제가 군사적 신뢰조성 및 전쟁종식과 관련된 문제라는데 이해를 같이하고 추진대책을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군사회담 당시 북측 대표단은 유해 공동발굴 관련 남북합의를 상기시키면서 “남측이 원하면 언제라도 응할 수 있는 제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이러한 북측 태도를 감안할 때, 향후 남북관계 진전 시 동 사안은 쌍방 군사당국간 우선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며 명분은 물론 실리도 높은 사안으로 판단됨.

나. 주요내용

(1) 남북 유해 공동발굴 관련 실무협의체 구성 및 실행계획 합의

-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의 합의대로 유해 공동발굴을 위해서는 우선, 동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야 함.
- 실무협의체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남북군사실무회담 채널을 활용하거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산하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가급적 군사공동위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함.
- 군사공동위원회 산하에 실무협의체가 구성되면 이를 개최하여 향후 유해발굴 추진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협의해야 함.
- 실행계획에는 공동조사, 정보자료 수집, 시범발굴, 발굴단 구성, 시행시기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사항은 합의서 형

대로 타결해야 할 것임.

(2) 접경지역 시범발굴지역 선정 및 유해 매장관련 정보자료 교환

- 유해발굴은 현재의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꾸준히 시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즉, 우선 접경지역을 시범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임.
 - 1953년 6월, 정전협상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접경지역 특히 중·동부전선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었음. 이러한 지역 중에서 시범발굴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즉, 금성·김화 전투를 비롯하여 대표적인 발굴지역을 선정하고 관련 정보자료를 수집·교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3) 유해 매장지 조사단 구성 및 공동조사

- 접경지역 가운데 시범발굴지역이 선정되면 조사단을 구성하고 발굴지역에 대한 공동조사를 시행해야 함.
- 조사단의 구성은 우리측이 주도하며 북측은 해당지역의 안내 및 인력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해발굴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통신과 안전문제임. 특히 비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무장지대는 지뢰지대가 산재해 있고 군사적으로 침예한 대치상태에 있는 만큼 사소한 일로 충돌이 야기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함.

(4) 접경지역 시범발굴 및 발굴대상지역 확대

- 접경지역의 시범발굴 대상지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범발굴을 실시함.
- 시범발굴이 실시된 이후 발굴지역을 북측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되 우리 국군이 가장 격전을 치렀던 지역을 우선대상으로 시작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5) 유해송환 및 후속조치

- 6.25전쟁의 유해송환은 정전협정 절차에 따라 판문점에서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¹⁰
- 송환된 국군유해는 국립현충원으로 이송하고, 유가족을 찾아 최고의 예우로 안장절차를 엄수해야 함.
-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의 유해를 남과 북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발굴하는 의미를 대내외에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음.

¹⁰- 특히 6.25전쟁시기의 유해발굴 및 송환 문제는 정전협정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이를 추진하는 과정 전후에 유엔사측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특히 미군유해 발굴과정에서의 전례와 관련 자료를 협조 받도록 해야 할 것임.

다. 추진방안

(1) 국내적 차원

(가) 범정부 추진 TF 구성

- 남북관계 호전 시까지는 내부적인 준비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는 만큼, 국방부를 중심으로 통일부, 국가보훈처 등 관련부처가 포함되는 범정부 추진 TF를 구성하여 가동함.

(나) 관련 종합대책 발전 및 예산 확보

- 국방부(정책실 및 유해발굴사업단)를 중심으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발전시킴.
- 이와 병행하여 미국의 유해발굴 관련 경험을 전수받고 하와이 유해감식소 등 관련기구들과 지속적인 협조관계를 유지·발전시킴.

(다) 합의서 초안 준비 및 추진사업 선정

- 남북간 협의가 추진되는 데 따라 합의서 초안을 준비하고 대상사업을 선정해 두어야 함.

(라) 국내 공감대 형성

- 동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유해발굴 및 송환 과정에서 비용이 소요되는 바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필요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마) 합의서 국회비준 및 관련법 제정

- 남북간 합의서가 타결될 경우, 동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이 필요한 바, 국회에 이를 보고하고 필요시 비준을 받으며, 관련법도 제정함.

(2) 남북관계 차원

(가) 남북 당국간 접촉 시 동 사안 우선추진 합의

- 앞으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피폭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고, 이어서 남북 당국간 접촉이 재개될 경우 남북간 이미 합의한 사항들 중, 우선 추진할 사항으로서 동 사안을 제시함.
- 북측이 우리측의 제의에 호응해 올 경우, 동 사안을 본격 협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자간 회담 개최를 합의해야 함.

(나) 남북국방장관회담 또는 장성급군사회담 개최 추진

- 동 사안이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사항이며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사안인 바,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합의사항이행을 원칙적으로 재확인한 후 실무차원에서 협의하는 방안이 있음.
- 만일, 북측이 국방장관회담 개최에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열어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군사공동위원회회를 개최하여 실천방안을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임.

(3) 국제적 차원

(가) 정전협정 채널을 통한 촉구

- 6.25전쟁 유해의 송환문제는 정전협정 관련 사안인 바, 정전협정 감독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나 유엔사-북한군간 장성급회담 창구를 통해 북측의 호응을 촉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¹¹
- 2005년 이후 중단되어 있는 미국과 북한간의 유해발굴 추진이 재개될 경우, 이 협의채널을 통해 중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나) 국제적십자사 및 국제인권단체 등을 통한 요구

- 유해송환 문제는 인도주의적인 사안인 바, 국제적십자사나 국제인권단체 등을 통해 동 사안에 대한 실상과 필요성을 적극 알림으로써 관련국들의 관심을 제고시킴.
- 관련 국제회의가 개최될 경우, 또는 각종 매체를 통해 북측의 호응을 지속·촉구해 나갈 필요가 있음.

(다) 6자회담 등 다자채널을 통한 측면 지원

- 6자회담이 개최되고 북한 핵문제 관련 협의가 진전이 있을 경우, 한반도 평화문제를 다루는 별도의 포럼을 통해서도 동 사안의 추진을 촉구하는 등 측면 지원할 수 있을 것임.

¹¹ 미북간 한국전 미군유해를 발굴하여 송환하는 과정에서도 정전협정 절차에 따라 판문점을 통해 추진한 전례가 있음.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라. 로드맵

(1) 2010년

(가) 범정부 추진 TF 구성 및 종합계획 수립

-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피폭으로 조성된 남북경색 국면을 감안하여 당국간 접촉 재개 이전까지는 내부적인 준비에 집중해 나감.

(나) 남북 당국간 접촉 재개 시 북측의사 타진

- 금년 중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피격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남북 당국간 접촉이 재개될 경우, 정부는 남북간 이미 합의한 사안 중, 우선 해결할 사안들을 사전에 선별함.
- 남북 당국간 접촉 시 우선 추진사안으로서 6.25전쟁 공동 유해발굴 관련 사안을 적극 제기함.

(2) 2011년

(가) 남북 군사당국간 회담 개최

- 남북군사실무회담 또는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여 향후 동사안 협의를 위한 회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함.
- 상기 회담에서 합의에 따라 제3차 남북국방장관회담 또는 제1차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동 사안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에 합의함.

(나) 유해발굴 실무협의회 구성 및 협의 개시

- 군사공동위원회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동 실무협의회는 구체계획 수립 시까지 최소한 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하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합의함.
- 동 실무협의회에서는 유해 공동발굴 관련 구체적 추진방안을 협의하여 합의서 형태로 타결함.

(다) 접경지역 시범발굴 실시

- 비무장지대 내 격전지를 시범발굴지역으로 선정하여 공동조사 및 시범발굴을 실시함.
- 발굴된 유해는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여 국립현충원에 안장하고 동 사안의 의미를 적극 홍보함.

(3) 2012년~2013년

(가) 유해발굴지역의 확대 합의

- 접경지역에 대한 시범발굴 이후, 북한 전 지역으로 발굴지역을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룸.

(나) 유해발굴의 지속 실시

- 유해발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감.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 현재 적군묘지에 매장되어 있는 국군 유해의 송환과 남측지역에 묻혀있는 북한군 유해의 발굴문제도 추진토록 함.

[표 II-2] 유해 공동발굴 방안 로드맵

		2010	2011	2011	2012	2012	2013	2013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남북관계 현상 지속		남북관계 대화 개시		남북관계 활성화		
국내 차원	범정부 TF 구성	○						
	종합대책 작성		○					
	합의서 초안 준비			○	○			
	추진사업 선정		○	○				
	공감대 확산		○	○	○	○	○	
	합의서 국회보고 (필요시 비준)							○
남북 차원	특별법 제정 (필요시)							○
	협상테이블 유도				○			
	합의서 체결					○		
	추진사업 확정						○	
	관련 북한법 정비 유도 (필요시)							○
국제 차원	유엔사 및 미국의 이해와 협조 유도	○	○	○	○	○	○	○
	국제적십자사 등 국제 인권기구 지원 유도		○	○	○			
	6자회담 참가국들의 측면 지원유도		○	○	○			

마. 기대효과

(1) 정부의 대국민 신뢰 확보 및 군의 사기 증진

-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함. 따라서 6.25전쟁 유해발굴은 국가의 본분과 도리에 관한 사항인 바, 동 사안이 추진된다면 정부의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 아울러 현재 군에 있는 장병들도 앞으로 국가가 자신을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를 위한 충성심이 높아질 것이며 이는 군의 사기 증진에도 기여할 것임.

(2) 남북간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완화에 기여

- 비무장지대는 막대한 군사력이 집중하여 대치하고 있는 지역이며 언제라도 충돌 가능성이 높은 위험지역임.
- 이러한 접경지역에서 6.25전쟁 유해 공동발굴이 시범적으로 진행된다면 동 지역에서 남북간 군사적 위협과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봄.

(3)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확대 시행 가능성 증대

-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의 합의대로 남북간 6.25전쟁 유해의 공동발굴이 시행된다면 이는 남북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이미 합의한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구축될 뿐 아니라 향후 군 인사교류, 군사정보교환 등 여타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뿐만 아니라 북한측이 유해 공동발굴과 송환에 적극 호응해 올 경우 국민들의 대북 적대감이 완화되고 남북관계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남북간 운영적, 구조적 군비통제의 본격 시행을 위한 여건 조성

-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이 감소되고 실질적인 평화상태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군비통제의 적극적 이행이 수반되어야 함.
- 군비통제는 군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시행될 수 있는 것인 바, 유해발굴을 통해 구축된 남북간 신뢰는 향후 운영적, 구조적 군비통제를 추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임.

(5) 남북 군사당국간 신뢰가 증진됨으로써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와 남북관계 발전에도 기여 가능

- 남북간 교류협력은 비무장지대의 군사분계선이나 북방한계선 등 군이 통제하는 구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바, 군사적 지원·보장이 반드시 있어야 함.

- 남북 군사당국간 신뢰가 구축될 경우, 당연히 남북간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임.
- 특히, 북한의 인도적 조치로 인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우리 국민들의 대북 신뢰도가 제고될 경우, 대북투자 확대 여건이 조성되고 인도적 지원도 확대될 수 있을 것임.

(6) 현 정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고 평화통일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기여 가능

- 발굴된 유해가 정전협정 절차에 따라 판문점에서 군사정전위원회 회를 통해 송환된다면, 지금까지 북한측에 의해 무실화 되었던 정전협정체제의 복원에 기여할 수 있음.
-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현 정전체제의 정상화가 필요함. 따라서 정전협정기구의 복원은 평화체제의 전환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기여 가능할 것임.
- 뿐만 아니라, 북한의 유해발굴 송환 협조 등 인도적 조치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유도하고, 이미지를 제고시킴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3. 세계군인체육대회¹² 남북공동대표단 구성 및 접경지역 개최

가. 제안배경

(1) 현 남북관계와 군사적 신뢰구축에 대한 북측 태도 감안

-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를 감안해 볼 때,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그동안 북한은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남북관계와 군사적 신뢰구축에 대한 북측 태도를 감안해 볼 때, 본격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에 앞서 여건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봄.

¹²- 세계군인체육대회(CISM, 국제군사스포츠위원회)는 불어로 Conseil International du Sport Militaire의 약자로 스포츠를 통하여 군 체육발전을 도모하고 회원국 상호간의 우의를 증진시킴으로써 세계 평화에 이바지 한다는 목적으로 1948년 2월 18일 프랑스 니스에서 창설되었음.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종합스포츠 조직 중 하나인 CISM은 “스포츠를 통한 우정(Friendship through Sport)”이라는 구호에 함축된 CISM 이념에 부합되게 해마다 종목별로 개최되는 CISM선수권대회(CISM World Military Championship), 4년마다 있는 종합대회인 세계군인체육대회(CISM Military World Games) 등의 행사를 통해 군인체육의 활성화, 각국 군인간의 연대감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음.

(2) 스포츠 교류를 통한 관계개선 역사적 사례 감안

- 역사적으로 볼 때, 적대국간 스포츠 교류는 양국간 대화와 접촉을 확대하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음. 특히 정치색이 배제되어 비교적 부담이 적은 분야라 할 수 있음.¹³
- 1970년대 미국과 중국간 소위 ping-pong 외교로 회자되는 스포츠 교류는 미중관계 개선의 출발점이 되었고, 1970년대 후반 양국은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음.
- 그동안 남북간에도 올림픽 공동입장, 공동응원단 구성, 경평축구 등 스포츠 분야 교류가 이어져 온 경험이 있음.
- 향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피폭 사건이 매듭되고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될 경우, 신뢰구축 조치로서 우선 추진 가능하고 북측의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사안으로 남북 군인간 스포츠 교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임.

(3) 북한의 호응 유도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 확보 가능

- 세계군인체육대회는 국제사회 평화 유지에 기여해 온 대회이고, 그동안 대한민국은 물론, 북한도 꾸준히 참여해 온 대회인 만큼, 동 대회와 관련된 우리측 제의에 대해 북한측이 호응해 올 가능

¹³- 지난 9월18일 개최된 대한민국-터키 간의 군인친선축구경기대회는 양국간 형제의 나라 의미를 되새긴 우정의 무대였음.

성이 있음.¹⁴

- 아울러 접경지역에서 세계군인체육대회를 남과 북이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할 경우, 이는 국제군사스포츠위원회(Conseil International du Sport Militaire: 이하 CISM)의 “국제평화에 이바지 한다”는 이념에 부합될 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호응과 지원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효과 감안

- 현재 국방부는 2015년도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를 추진 중에 있음.¹⁵ 접경지역에서 남북공동개최가 성사된다면 군사적 신뢰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안임.
- 따라서 북한측이 호응할 경우 2011년 대회에는 남과 북이 공동대표단을 구성하여 출전하고, 2015년 대회는 접경지역에서 남북이 공동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11년 제5회 세계군인체육대회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될 예정임.¹⁶

14. 우리나라는 1957년 9월 정식회원국이 되었으며, 북한은 1992년 북경대회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한 후에 1993년 4월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음. 특히 북한은 1995년 종합대회에 종합 5위에 입상(우리는 17위)하였고 매 대회에 참석하여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음.

15. 9월 24일 열린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세계군인체육대회가 국제행사로 정부승인을 받음에 따라 국방부는 10월초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 본부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함. 『국방일보』, 2010년 8월 27일, 1면.

16. 제1회 대회: 1995년 이탈리아 로마, 제2회 대회: 1999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나. 주요내용

(1) 남북 군인체육교류협력 실무협의체 구성

- 그동안 남북간에는 군인들 간의 체육교류 전례가 없었던 만큼, 동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체구성이 이루어져야 함.
- 동 협의체는 독립된 협의체로 구성하거나 또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산하 실무협의체로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2) 남북간 세계군인체육대회 공동대표단 구성 및 개최 유치

- 우선, 2011년 브라질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5회 대회에는 남과 북이 공동으로 대표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함.
- 종합대회 이전에라도 단일종목으로 개최되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시범적으로 공동대표단을 구성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해 볼 수 있음.
- 2015년 대회는 남과 북이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원칙하에 유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대회 유치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가급적 우리측이 부담토록 하는 것이 북측의 호응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제3회 대회: 2003년 이탈리아 카타니아, 제4회 대회: 인도 하이데라비드.

(3) 2011년 세계 군인체육대회 남북공동대표단 참가

- 남북간 공동대표단 구성에 합의 시 선수단의 구성 원칙, 사전 훈련 일정 및 훈련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합의할 필요가 있음.
- 공동대표단의 훈련은 이동의 용이성이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파주, 개성, 고성 등 접경지역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임.

(4)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접경지역 개최

- 2015년 대회 유치 시에는, 가급적 상징성 등을 감안하여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접경지역에서 개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남북 공동개최 시, 남과 북이 공동응원단을 구성하는 방안과 공동취재단의 구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5) 남북 군인간 스포츠 교류 확대 추진

- 세계군인체육대회 공동참가 및 공동개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를 바탕으로 향후 남북 군인간 정례적인 스포츠 교류로 확대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향후 남북국방장관회담이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개최 시, 회담 기간 중 참관일정에 스포츠 종목을 선정하여 쌍방 대표단이 함

계 경기를 관전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¹⁷

- 남북 군인간 스포츠 교류를 추진할 경우, 초기에는 탁구나 배구 등 직접 신체접촉이 적은 종목을 고려하여 채택하고,¹⁸ 향후 신뢰구축 진행과정을 보아가며 축구, 농구 등의 종목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임.

(6) 접경지역에 남북 군인스포츠센터 설립

- 남북간 스포츠교류가 확대 시행될 경우, 상호 왕래가 편리하며 신뢰구축에 기여 가능하도록 접경지역에 스포츠센터를 설립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동 센터는 가급적 남과 북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친선경기나 공동 훈련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임.

¹⁷- 2000년 9월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시 양측 대표단은 한라산 주요 관광지를 함께 참관한 전례가 있으며, 기타 남북장관급회담 시에도 회담 중간에 참관일정을 갖는 것이 관례임.

¹⁸- 그동안 남북 군인간 누적된 적대감을 감안할 때, 격투기나 신체적 접촉이 많은 종목의 경우 몸싸움으로 이어져 예기치 않게 불미스러운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추진방안

(1) 국내적 차원

(가) 남북군인체육교류추진 TF 구성

- 현재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감안하여 남북 당국간 접촉이 재개 되기 전까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국방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추진단을 구성함.

(나) 종합대책 수립 및 합의서 초안 준비

-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남북간 대화와 접촉이 개시되어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에 대비하여 합의서 초안을 준비함.

(다)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 신청

- 2015년 개최 예정인 제6회 세계군인체육대회의 한국 유치를 세계군인스포츠위원회 본부에 공식 신청함.

(라) 대내외적 공감대 확산

- 세계군인체육대회 접경지역 남북 공동개최 및 남북 군인간 스포츠 교류 추진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감.

(마) 남북합의서 국회 비준 및 관련법 제정, 공포

- 군인체육교류의 장기적 진행 및 확대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할 경우 합의서의 국회 비준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함.

(2) 남북관계 차원

(가) 세계군인체육대회 참가 시 북측 대표단과의 접촉을 통해 의사 타진

- 수시로 개최되는 CISM 종목별 경기, CISM 심포지엄, 총회 등을 통해 북측에 우리의 의지를 타진하고 국제기구에도 협조를 요청함.

(나) 남북 당국자간 회담 개최 시 군사회담 재개 합의

- 천안함 사건이 해결되면 남북 당국자간 회담을 통해 동 사안의 본격 협의를 위한 군사당국자간 회담 재개에 합의해야 함.

(다) 남북 군사당국자간 회담 개최, 실무협의체 구성 및 협의

- 남북 군사당국자간 회담이 개최될 경우, 세계군인체육대회 관련 세부 협의를 진행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합의서를 타결함.

(라) 세계군인체육대회 공동대표단 참가 및 공동개최 합의, 추진

- 상기 실무협의체에서 2011년 대회 공동개최에 합의 시 공동대표단을 파견하고, 2015년 대회의 공동개최를 추진함.

(마) 남북 군인간 스포츠교류 확대 개최 합의

-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를 계기로 남북 군인간 스포츠 교류를 적극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3) 국제적 차원

(가) 국제군사스포츠위원회(CISM)의 지원 확보

- 세계군인체육대회와 공동개최는 CISM의 이념과도 일치하는 바, 지원을 확보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임.

(나) CISM 회원국들의 중재역할 요청

- 문제는 북한측의 호응을 유도하는 것인데, 중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함.

(다) 6자회담 진전 시 동 회담채널을 통해 북측에 호응 촉구

-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이 해결되어 6자회담이 개최될 경우, 동 회담 채널을 통해서도 북한측의 호응을 촉구해 나갈 수 있을 것임.

라. 로드맵

(1) 2010년

(가) 범정부 차원의 남북군인체육교류추진단(가칭) 구성

- 동 추진기구에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통일부,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되 접경지역의 지자체장도 함께 할 필요가 있음.
 - 2009년 12월 국방부에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 추진단이 이미 발족되어 2015년 대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음.

- 국방부는 세계군인체육대회 공동대표단 파견, 공동유치를 비롯하여 향후 남북 군인체육교류 확대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함.
- 유관부처는 소요예산의 확보문제, 법·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임.

(나) 남북 당국간 접촉 재개

-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이 원만하게 타결되고, 남북 당국간 접촉이 재개된다면 동 접촉을 통해 군사당국자간 회담의 재개문제를 합의해야 함.

(다) 국제군사스포츠위원회(CISM)에 우리측 의지 전달 및 협조 요청

- 2015년 대회 유치 신청 시, 향후 북측이 호응해 올 경우 남과 북이 공동개최를 희망한다는 우리측 의지를 국제군사스포츠 위원회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함.

(2) 2011년

(가) 남북 군사당국자간 회담 개최

- 우선, 남북군사실무회담 또는 장성급군사회담을 열어 세계군인체육대회 관련 사안의 논의를 위한 국방장관회담 또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회담 개최에 합의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나) 남북간 실무협의체 구성

-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면 세계군인체육대회 공동대표단 파견 및 공동개최, 스포츠교류 확대 등의 원칙에 합의함.
- 동 사안의 논의를 위한 군사실무협의체는 가급적 군사공동위원회 산하에 두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함.¹⁹
- 동 실무협의체의 수석대표를 남측의 경우 국군체육부대장이, 북측의 경우도 4.25 체육부대 등 상응한 조직의 장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여의치 않게 될 경우 각기 대표단에 상기 관련조직 요원을 포함시켜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다) 남북간 세계군인체육대회 공동대표단 구성 및 공동개최 관련 합의

- 동 실무협의체는 관련된 세부적인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지속적, 정례적으로 개최되어야 함.
- 동 협의체에서는 2011년 세계군인체육대회 공동대표단 파견을 제의하되 만일 일정이 촉박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¹⁹- 이는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문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기본합의서나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정신에 부합되며 회담의 체계적 운영에도 유리하기 때문임.

단일종목 선수권대회에 시범으로 공동대표단 구성, 2015년 대회 공동유치 등의 내용을 합의서에 담아 타결토록 함.

(라) 2011년 제5회 대회 공동대표단 파견 (북측 호응시)

- 2011년 브라질에서 개최 예정인 제5회 대회에 파견할 공동대표단을 구성하고 공동훈련을 실시함.

(마) 2015년 제6회 대회 남북 공동개최 확정

- 2011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66차 CISM 총회에서 제6회 대회 남북 공동개최를 확정함.

(3) 2012년~2013년

(가) 단일종목 선수권대회에 공동대표단 구성 및 파견

- 현재 CISM 선수권대회는 총 26개 종목²⁰을 운영하고 있는 바, 이 종목 중에서 남북간에 의견접근이 용이한 종목을 선정하여 공동대표단의 구성 및 파견을 검토함.

(나) 접경지역에 남북 군인스포츠센터 건립·운영

- 세계군인체육대회 공동대표단의 구성이나 공동개최를 원활하게

²⁰- CISM선수권대회는 투기경기에 태권도, 유도, 복싱, 레슬링, 펜싱 등 5개 종목, 구기종목으로 축구, 배구, 농구, 핸드볼, 골프 등 5개 종목, 개인경기에 육상, 수영, 사이클, 철인3종, 근대5종, 승마, 요트(세일링), 크로스컨트리(야지횡단), 사격, 마라톤, 스키 등 11개 종목, 군사경기로는 육군 5종(사격 등) 해군 5종(장애물 등), 공군 5종(비행경기 등), 오리엔티어링(독도법), 패러슈팅(정밀착지 등) 5종목, 이상 총 26개 종목이 운영되고 있음.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진행하고 나아가 남북 군인간 스포츠 교류의 확대를 위해 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운영을 개시함.

- 동 센터는 접경지역에 설치하여 이동의 용이, 군사적 긴장완화나 신뢰구축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2015년 세계대회 남북 공동개최

- 접경지역에서 제6회 세계군인체육대회를 남과 북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이 대회 개최식에는 남과 북의 군 최고수뇌부가 참여함.
- 동 대회는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역사적인 대회인 바, 대내외에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음.

(라) 남북 군 스포츠 교류 확대 실시

- 남북국방장관회담 또는 군사공동위원회 개최 기간 중 참관일정을 대신하여 남북 군인간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일정을 추진함.
- 남북 군인축구대회를 비롯하여 스포츠 교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함.

[표 II-3] 세계군인체육대회 남북공동대표단 구성 및 접경지역 개최방안 로드맵

		2010	2011	2011	2012	2012	2013	2013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남북관계 현상 지속		남북관계 대화 개시		남북관계 활성화		
국내 차원	TF 구성	○						
	종합대책 수립		○					
	세계군인체육대회 한국 유치 신청	○						
	합의서 초안작성	○						
	공감대 확산		○	○	○	○	○	
	합의서 국회보고 또는 비준					○		
	특별법 제정 (필요시)					○		
남북 차원	관련협의체 구성 남북협의 진행			○	○			
	합의서 체결					○		
	대상사업 확정추진					○	○	○
	남북스포츠교류 확대 실시							○
국제 차원	유엔사 및 미국의 이해와 협조 유도		○	○	○			
	CISM에 협조요청		○	○	○	○	○	○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마. 기대 효과

(1)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

- 남북 군인간 스포츠 교류는 고조된 긴장을 완화시키고 위협을 감소하여 전쟁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아가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국제사회에 평화 이미지 과시를 통해 신인도 제고와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확대 시행 가능성 증대

- 남북 군인간 스포츠 교류를 통해 여타 신뢰구축 조치로의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임.
- 군사직통전화 설치, 군사활동 제한 등 군사분야에서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확대 시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남북 군인 및 국민간 적대감 완화에 기여

- 스포츠 교류를 통해 남과 북의 군인 간에는 물론, 양 국민들 간에도 그동안 누적된 적대감을 완화시킬 것임.
- 상대적으로 친밀감을 확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및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

- 남북 군인간 스포츠 교류가 확대되고 군사당국자간 신뢰가 구축될 경우 교류협력 활성화와 남북관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 현 남북간 대치상태를 감안할 때,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교류협력의 확대는 제한될 수 밖에 없는 바, 스포츠 교류는 교류협력의 활성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임.

(5)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대 및 동질성 확보에 기여

- 세계군인체육대회에 공동대표단을 파견하고 대회를 접경지역에서 공동으로 유치한다면 이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것임.
-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주변국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 남북 스포츠 교류는 주변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4. 동북아 위기관리 관련 기구 및 국제군비통제 회의 유치

가. 제안배경

(1) 남북한간 지속적인 군사적 대립과 긴장 상태를 감안할 때,
상호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의 진전이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에 필수적 요건

- 천안함 사태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정전 이후 60여 년이 가까워오고 있지만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이러한 군사적 긴장은 상호 단절과 불신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상호간 신뢰구축, 더 나아가 실질적 군비통제의 이행은 한반도 평화에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음.
- DMZ는 그 설치 배경 자체가 상호 의도에 대한 불신(不信)에서 비롯된 것으로, 흔히 거론되는 “DMZ를 포함한 접경지역의 평화적 활용”을 위해서는 일단 이 지역을 둘러싼 갈등의 상징성이 희석되어야 함.
- 따라서, DMZ의 평화적 이용은 DMZ를 심리적·물리적으로 진정 ‘비무장화’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및 동북아 국가들의 위기관리·군비통제 관련 공동 노력의 상징적 장으로 DMZ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것이 성공하면 남북 대치의 산물이던 DMZ가 새로운 시대의

남북·지역 협력을 위한 장(場)으로 탈바꿈한다는 상징성을 지니게 될 것임.

(2) 남북한 간의 군사적 합의가 실효성을 지니려면 상호간 수용 가능성이 높고 난이도가 낮은 부분부터 출발

- 남북한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논의가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의 조치들이 동상이몽의 의도에서 시작된 것에서 출발됨.
 - 특히, 북한의 기존 군축·군비통제 방안은 한 마디로 ‘자신들의 약점을 최소화하면서 강점은 극대화하는 군사력 균형의 실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북한은 군축·군비통제 제의를 평화공세의 수단으로 일관되게 활용해 왔으며, 1990년대 중·후반 이후에는 한국 사회 내의 남남갈등을 유도하고 국제적으로 호의적인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내포함.
 - 반면, 한국의 군비통제 제의는 정치적 측면보다는 군사적 긴장 완화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긴장완화 → 신뢰구축 → 군사력 운용·배치 제한 → 공격형 군사력 중심의 군비 제한·감축 → 전반적 군축]의 점진적·단계적 접근을 취해 왔으나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는 데에는 미흡함.
- 즉, 양측의 군비통제 제의가 모두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수용이 매우 어려운 것들로 이루어짐에 따라 사실상 상호 선전전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어려움.
 - 원래 군축 및 군비통제 협의는 참여하는 당사자 모두가 군비경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쟁이 정치·경제적으로 실질적 부담이 된다는 인식 하에 협의가 시작되었으나, 남북한의 경우 이와 같은 동기와는 별도로 상호 견제 심리에서 출발하였음.

- 북한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의 질적 군사적 우위를 견제하고, 주한미군 주둔 여건의 변화를 지향함.
- 한국의 균형 감축 역시 남북 군사력 균형의 변화를 우려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사실상 수용이 어려운 대안임.

○ 따라서, 양측이 수용 가능한 현 수준의 조치들은 실질적인 군사력 건설이나 운용, 그리고 배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심리적 경계를 해소하는 상징성을 지니는 것들로 선정됨이 타당함.

- 예를 들어, DMZ 내 남북 정보교환 및 협력과 관련된 기구를 설치하여 상호간 일정 정보의 공유와 공동축적을 지향하는 것은 양측 간 신뢰구축에 매우 중요한 진전을 의미하게 될 것임.
- 또한, 협력의 주제를 남북한 간의 이견이나 갈등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非)전통 안보분야 중 공해상 해적(海賊) 퇴치, 해난에 대한 수색·구조, 천재지변 구호, 범유형 전염병 관리 등으로 설정할 경우 수용 가능성은 더욱 높아짐.
- 특히, 공해상 해적 퇴치의 경우 2009년 중에도 아덴만에서 북한 선박이 수차례에 걸쳐 해적의 공격을 받았고, 우리 청해부대가 이를 구출한 사례도 있는 만큼, 적절히 활용할 경우 남북 신뢰구축 및 협력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주요 국제 군축·군비통제 회의를 DMZ에 유치하는 방안 역시 북한이 이를 굳이 거부할 명분이 적을 것으로 판단됨.
- DMZ 내 남북·지역 협력기구의 설치 및 국제 군축·군비통제 회

의의 유치는 북한의 입장에서도 군사분계선 일대의 전면적 군사적 배치 제한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수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함.

(3) 지역 군비통제의 입장에서 남북 군비통제에 접근

- 남북한과 주변 강대국들의 압도적인 국력격차, 1990년대 후반 이후 경쟁적으로 진행되어 온 주요 국가들의 질적 군비경쟁을 감안할 때, 남북한만의 군비통제는 중·장기적으로 한국만의 무장해제를 불러오는 모순이 됨.
- 또한, 그동안 잦은 합의 파기와 약속 위반을 저질러 온 북한의 행태를 감안할 때, 주요 주변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의 기구 창설은 합의의 지속성 보장에도 기여할 것임.
- 특히, DMZ 내에 지역·국제적인 위기관리 기구나 평화·군축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 한반도 안보상황의 개선과 남북간 평화적 협력에 대한 기반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주변국 호응을 유도하기에 용이할 것임
- 유엔 차원에서 실시되는 군축회의는 유엔 군축회의(United Nations Disarmament Conference: 이하 UN DC) 및 유엔 제네바 군축회의(UN Geneva DC) 등이 있으나, 이중 제네바 군축회의는 주 회의 무대가 제네바인 만큼, 개최지에 탄력성이 큰 유엔 군축회의를 겨냥하는 것이 보다 손쉬울 것으로 판단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 실제로, 원폭 피해지로 평화의 상징성이 강한 히로시마는 그동안 수차례 유엔 DC를 유치한 바 있으며, 우리의 경우에도 2009년 11월 외교통상부와 유엔 아·태평화군축센터(UN Regional Centre for Peace and Disarmament in Asia and the Pacific)가 군축회의를 공동개최한 바 있음.
- 유엔 DC 유치가 어려울 경우 지역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1.5 track 회의인 동북아협력대화(NEACD)나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협의회(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이하 CSCAP) 역시 유치를 추진할 가치가 충분함.

나. 주요내용

(1) DMZ 내 일정 지역에 남북해사(海事)협력센터(가칭) 설치

- 남북한 선박의 양측 영해 및 공해상 해상사고, 해적 피해 방지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기구를 DMZ 일정 지역에 창설함.
 - 『남북 해운합의서』에 입각한 남북 양측 민간 선박의 양측 수역 안전항행 보장 및 상대방 영해를 향해하는 선박의 정보를 공동관리함.
 - 남북 양측 영해 상에서의 비고의성 월선, 표류 등의 조치가 있을 경우 조속한 정보 공유 및 귀환·인도 협조함.
 - 남북 양측 선박 공히 주요 공해상 해로에서 안전항해가 가능토록 해상사고와 관련된 정보 축적·공유함(기상상황, 천재지변, 천연 장애물 등).
 - 한반도 인근 공해상을 항행하던 양측 선박의 사고 시 수색·구조 관련 정보 협조함(수색·구조 자체를 공동으로 행하는 것이

- 아니라 수색·구조와 관련된 정보만을 제공).
- 공해상의 해적 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

- 남북 동수의 소수 상주인원을 근무하게 하고 각종 정보접수·관리를 위한 통신망 및 장비를 설치하여 공동 운영함(필요시 한국 비용부담 주도).
- 남북 군·관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및 정보분석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협력기반을 확대함.
- 초기에는 정보공유로부터 시작, 차츰 해사관련 위기 정보 전파 → 공동대응조치 시행의 순서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지향함.
 - 1~2년의 시험운영 후 정보공유가 정착되면 차츰 상호 정보 전파 및 공동 수색·구조 훈련, 공해상 공동 해적대응의 조치들을 강구함.
- 특히, 중기적 차원에서 공해상 해적행위에 대해서는 남북한간 정식의 상호 긴급구호 협약(사실상 한국의 구호)을 체결하는 것을 추진함.

(2) 초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동북아 위기관리센터(가칭)로 발전

- 남북해사협력센터의 가동을 통해 남북한간 신뢰가 축적되고 동 센터 운영이 제도화되면 중기적 차원에서는 이를 남북한 위기관리센터 혹은 동북아 위기관리센터로 개편하는 것을 지향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 각종 비(非)전통안보위협(해적, 국제범죄, 자연재해, 대형인재, 환경파괴, 신종 전염병 등)과 관련된 남북한 및 주변국 간의 협력 증대를 목적으로 지향함.
 -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축적함.
 - 각종 비전통 위협에 대한 참가국들의 공통 표준운영절차 (Standard Operation Procedure: 이하 SOP)를 마련함.
 - 비전통 위협에 한정하여 필요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공동 수색·구조훈련의 형태로까지 발전시킴.

- 남북해사협력센터(가칭)의 기구를 최대한 활용하여 각국이 시설 및 장비를 공동투자하여 설립하는 것을 추진함.
 - 기존의 남북해사협력센터(가칭) 근무인원 이외에 필요시 남북한은 추가 인력을 파견함.
 - 주변국들은 동 센터에 일정한 기여재원을 제공하는 한편, 상주 인원을 파견하여 근무토록 함.
 - 참가국들 간에 주기적으로 정보판단회의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되, 지리적 접근성의 상이성을 고려하여 화상회의 형태의 운영도 고려함.

(3) DMZ에서 국제·지역 군축·군비통제 회의를 유치하여 남북 공동개최

- 비무장지대 내의 일정 지역에서 유엔 군축회의(UN DC) 개최 혹은 동북아협력대화(NEACD)/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회의(CSCAP) 등 1.5 track 국제회의 개최를 남북 공동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지향함.

- 국제·지역 군축·군비통제 및 안보협력 회의 유치를 위한 공동 조직위원회를 구성, 다양한 기구 및 회의체와 접촉함.
 - 향후 남북대화 재개를 전제로 고려하는 것이 가능함.
 - 남북한이 공동조직위 구성에 성공할 경우, UN DC의 유치가 지도 노력불 만한 것으로 판단됨.

- 서울과 평양 혹은 비무장지대 인근의 접경지역에서 UN DC 혹은 NEACD/CSCAP 회의를 개최한 후 개최식과 최종일 회의, 폐회식을 DMZ 내 일정 지역에서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함.
 - 서울과 평양 혹은 양측의 주요 지역을 공동개최지로 설정하여, 분임회의(session) 별로 남북한에 할당함.
 - 참가국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양측 수도뿐만 아니라 접경 지역의 주요 도시들에도 분임회의(session) 배분을 추진함.
 - 분임회의 이후 전체회의는 남북한간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 추진함.
 - 회의 기간 중 참가인원의 원활한 이동 보장을 위해 판문점 및 DMZ를 통한 회의 참가자들의 통과를 합의함(필요시 상호 항공 공역 협력).

- 동 회의 말미에 회의 참가자 전원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 선언서를 채택·낭독함.
 -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간 화해·협력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지함.
 - 남북한간 군축·군비통제 회의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를 재확인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 향후 남북 군축·군비통제 협의에 대한 지역·국제 차원의 지원·지지 방안을 언급함.
- 동 회의 개최를 위해 DMZ 내에 영구 건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설물을 설치하는 형식으로 진행함으로써 DMZ 훼손을 최소화함.

다. 추진방안

(1) 국내 및 남북관계 차원

(가) 국내 공론화 절차 필요

- 그동안의 대북정책이 국내적 비판에 직면할 경우, 그 가장 주된 이유는 국내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에 실패했거나 그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임.
 - 이는 결국 해당 의제나 정책의 추진력을 약화시킴.
 - 동시에 남남 갈등 유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DMZ 내에 남북해사협력센터(가칭) 및 지역·국제회의 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일단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을 거친 이후에 추진되는 것이 타당함.
 - 정부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명분 면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전문 연구기관 개최 토론회 형식으로 출발하여, 정부(통일부) 차원의 정책으로 발전시킨 이후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기회 마련이 타당함.

- 의견수렴 후 일부 안은 수정·보완 및 추진 방법·속도 조정함.
- 특히, 남북해사협력센터(가칭) 및 중기적 차원의 동북아 위기관리센터(안)은 대통령의 연설 시에도 대북 메시지로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 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향후 남북한간 대화 재개 시 협력 가능 의제로 우선 추진

- 국내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긍정적 반응이 유도될 경우 남북대화 재개 시 남북해사협력센터(가칭) 및 한반도 평화 관련 주요 지역·국제회의 공동유치조직위원회(가칭)의 창설을 북한측에 제의함.
 - 동북아 위기관리센터(가칭)은 중기적 차원의 정책목표이므로 초기 논의에서는 제외함.
 - 남북대화 재개 분위기가 조성되는 시점에서 통일부 차원의 일방 제의로도 고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기존의 남북 장관급 회담 혹은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회담에서 동 문제에 대한 의제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향함.
- NEACD 혹은 CSCAP의 경우, 이미 민간 차원의 한국 사무국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남북 대화 재개 시점에서 동 사무국이 통일부의 협조를 얻어 북한측에 제의하는 것 역시 고려 가능함.
 - 통일부와 사전 협의, 북한측 협의 대상자 물색함(군축평화연주소 등).
 - 직접 접촉이 어려울 경우 통일부가 대화 재개시 추진 의사를 전달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다) 남북대화 및 회담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남북대화의
지속적 의제로 설정, 시범사업 준비 및 조직위 구성·추진
본격화

- 남북한간 남북해사협력센터(가칭) 및 한반도 평화 관련 주요 지역·국제회의 공동유치조직위원회(가칭)의 창설이 합의되면 이를 남북 대화의 지속적 의제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 남북한간 동 합의의 실행 보장을 위한 실무회의체를 창설·합의하는 한편, 동 실무회의체를 관할할 구체적 회의체(장관급 회담, 총리회담 등)를 지정함.
 - 1.5 track 혹은 2 track 방식의 국제회의 유치가 합의될 경우, 남북한 민간 사무국이 공동유치 조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양측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형식을 취함.
 - 주기적 실무협의체 가동을 통해 가능한 한 조기에 초기단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향함.
 - 남북해사협력센터(가칭)는 최초 남북간 설치 합의 후 6개월 이내에 시범사업을, 한반도 평화 관련 주요 지역·국제회의 공동유치조직위원회(가칭) 역시 최초 합의 이후 6개월 이내에 구체적 유치 계획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 활동함.
- 한국 정부 내 주무부처를 설정하되, 단일 부처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총리실 산하에 추진단을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함.

(2) 국제적 차원

(가) 남북대화 재개 이전에도 기존 양자·다자 협의채널 통해 우리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고, 지지·지원 획득 지향

- DMZ 내의 남북해사협력센터(가칭) 및 국제회의 유치는 국제적 차원에서도 충분히 지지 및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변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용이할 것임.
- 다만, 천안함 외교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주변국들의 정책은 우리의 적극적인 외교적 기동이 없는 한 어느 일방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았음에 유의할 것임.
- 따라서, 일단은 한미 공조를 중심으로 동 방안의 실현을 위해 적극 협조하는 한편, 유엔군 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 이하 UNC)와의 원활한 협조에 유의할 것임.
 - 한미 정상회담, 한미 국방장관회담,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우리 정부의 구상을 설명함.
 - 또한, DMZ 내의 상주·임시 시설물 및 기구 건설은 단순히 우리의 결심을 넘어 정전체제의 관리기구인 UNC의 역할 및 임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에 유의할 것임.
 - 구체적 대북 의제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UNC에 대한 타당성 타진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를 바탕으로 중·러·일과도 각급 외교접촉 시 우리의 구상을 설명하고 지지를 획득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나) 선(先) 여건 조성, 후(後) 본격 추진의 순을 밝을 필요

- 주변국 모두가 참가해야 할 기구 및 협의체 구성의 경우에는 우리의 이니셔티브를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여건 조성을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특히, 동북아 위기관리센터(가칭)는 일단 참여국들의 범위가 크다는 점에서 국내적인 지지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 단기적 접근보다는 중기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남북한 관계 측면에서는 일단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이루어질 경우 동북아 평화구조 창출을 위한 실무위원회가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만큼, 이의 의제로 적극 추진함이 타당함.
- 국제적 차원에서는 주변국들의 동상이몽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일단 민감성이 덜한 초기단계의 정보공유부터 시작할 경우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판단됨.

라. 로드맵

(1) 2011년 상반기 중 DMZ 내 남북협력 기구 및 지역·국제회의 개최에 대한 국내 의견 수렴

- 통일부 차원의 대북 정책 발표, 혹은 대통령 성명 등을 통해 동 의제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보완 요소를 식별하는 한편, 이러한 구상을 주요 주변국들에 설명함.

- 국내 및 국제적 반응이 호의적으로 나타날 경우, 대북 제안 혹은 성명 등을 통해 본격적 추진을 제안함.

(2) 2011년 하반기 중 남북대화 재개 시 주요 의제로 추진, 합의 도출

-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2011년경에는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전망이 그리 나쁘지는 않은 상황임.
 - 북한의 최근 대남·대외 유화공세와 3대 계승체제 구축에 따른 업적 축적 및 국제적 지지 획득이 동인임.
 -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북한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라도 상징적 측면의 협력 시도는 있을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하반기, 혹은 2011년 상반기에 의미있는 남북대화가 추진된다는 것을 전제로 2011년 하반기에 본격 의제화를 추진하고, 남북 합의 도출을 지향함.
 - 2011년 남북 정상회담 개최시 공동성명·공동선언 합의 내용에 포함
- 남북해사협력센터(가칭)의 경우, 남북 합의와 동시에 실무협의체 구성 및 가동 정례화를 2011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함.
- 국제회의 유치의 경우에도 정부(UN DC) 혹은 민간(CSCAP, NEACD) 차원의 공동조직위원회 구성이 2011년 말까지 완료되도록 지향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3) 2012년에 들어 추진 본격화, 일정한 성과 도출

- 남북해사협력센터(가칭)의 경우 2012년 상반기에 비무장지대 내에 가설물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소수 상주인원을 파견하는 단계로부터 출발함.
- 2012년 말에는 정식 센터 출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함.
 - 관련 운영체제 및 시설물, 통신체제 및 소프트웨어 구비함.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기에는 정보공유 중심으로 운영함.
- 국제회의의 경우, 2012년 유치활동에 돌입하여 2012년 내 구체적 유치 여부, 유치 장소 및 일정 확정을 목표로 노력함.

(4) 2013년 이후에는 기존 성과의 지속 및 확장을 지향

- 2013년 이후 남북해사협력센터(가칭)의 성공을 바탕으로 동북아 위기관리센터(안) 확대 추진함.
 - 6자회담에서의 동북아 평화체제 실무위원회 의제로 상정, 의견 수렴함.
 - 2013년~2014년 실무위원회 의제를 중심으로 참가국간 의견 조율함.
 - 2014년 센터 설립에 대한 남북한 및 주변국 합의 도출함.
 - 2015년~2016년 센터 출범, 초기 민감성이 덜한 정보공유로부터 출발하여 점차 공유폭 확대함.
 - 중·장기적으로 공동 위기관리체제 발전시킴.

[표 II-4] 동북아 위기관리 관련 기구 및 국제군비통제 회의 유치방안 로드맵

		2010	2011	2011	2012	2012	2013	2013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남북관계 현상 유지		남북관계 대화 개시		남북관계 활성화		
국내 차원	남북관계 비전 재정립	○						
	정부 유관부처 조율(외교안보 실무조정회의)	○	○					
	국내 의견수렴	○	○					
	한국측 국제회의 유치 조직위 구성 준비		○					
	공감대 확산		○	○	○	○	○	○
	국회 보고·협조		○					
남북 차원	협상테이블 유도	○	○					
	대북제의 (국제 회의, 해사기구)			○				
	국제회의 공동 유치기구 창설 및 활동			○	○	○		
	해사협력센터 시범사업 추진				○			
	국제회의 유치					○ (1차)	○	○ (2차)
	해사협력센터 본격 가동					○	○	○
	동북아 위기관리 센터 안 추진							○
	관련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	○	○	○
국제 차원	유엔사 및 미국의 이해와 협조 유도		○	○	○	○	○	○
	대주변국 외교			○	○	○	○	○
	지역기구 설립 협조						○	○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마. 기대효과

- DMZ 내의 남북해사정보센터(가칭) 및 국제회의의 유치는 DMZ의 평화지대화라는 상징성을 극대화하여 남북한간 신뢰의 제고에 기여함.
- 한국의 평화이미지를 이용한 대외신인도 제고와 대북정책 지지 획득에도 적지 않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업의 성공이 가져오는 북한 인식변화는 실무 차원에서의 협력이 점차 고위급 신뢰의 증진으로 연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DMZ 내 기구 설립과 국제회의 유치의 동시 추진은 자칫 분산될 수 있는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에너지 및 자원을 결집함.
- 동시에, 양 정책이 상호 상승효과를 가져와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음.

Ⅲ. 공유하천분야 협력방안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남북한 접경지역은 세계에서 군사력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며, 반세기 이상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한반도 접경지역은 갈등과 대립, 분단과 단절의 상징지역이었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라 이 지역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이 실현되면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계기들이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남북 관계의 부침으로 이러한 변화의 계기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접경지역에서의 새로운 협력 구상들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면서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비무장지대가 생태·환경적 측면에서 주목을 받는 것은 역설적이지만 새로운 협력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비무장지대의 생태계는 잘 보존되었다기보다는 방치의 결과로 형성된 기형적이고 교란된 생태계라는 표현이 적합하다. 철조망을 통과할 수 없는 대형 동물들은 인공적으로 형성된 회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사계(射界)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별채·소각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철조망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작은 동물이나 조류, 그리고 수변 생태계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무장지대의 생태·환경적 가치가 주목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 접경지역에는 10여 개의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대부분 임진강과 북한강 수계에 속하는 하천들이다. 비무장지대 전체에 대한 체계적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그동안 실시된 조사들에서 임진강, 북한강 주변의 생태계가 주목을 받았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임진강과 북한강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단순히 양호한 수변생태계 때문만은 아니다. 두 강은 모두 북에서 남으로 흐르기 때문에 상류에서 발생하는 일이 하류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지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은 북한강 수계에 임남댐, 임진강 수계에 황강댐을 건설하였다. 두 댐은 모두 유역변경식 발전을 하기 때문에 하류지역의 수량 부족을 낳을 수 있고, 반대로 댐 붕괴 시 하류 지역에 홍수가 발생하게 된다. 댐이 붕괴되지 않더라도 예고없이 댐을 대량으로 방류하게 될 경우에도 하류지역에 피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남북한 간에 북한강 및 임진강 수계에서의 재난방지 및 공동협력과 관련된 논의들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북측의 성의 없는 태도 및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실질적인 진전은 부족한 상태이다.

이외에도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한강 하구지역은 비무장지대와는 다른 독특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한국전쟁 중 진행된 정전협정 당시 육상에는 비무장 지대를 설치한 반면, 한강 하구지역은 공동으로 관리하는 중립지역으로서 평화적 용도의 항해를 법적으로 용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하구 중립지역은 사실상 비무장지대와 같은 취급을 받아왔으며 항해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한강은 서해로부터 수도 서울에 이르는 주요 뱃길이었으며, 임진강 역시 수많은 포구들이 즐비한 지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 하구 지역의 항행이 불가능해지면서 한강과 임진강은 바다와 단절되었으며, 수많은 포구들은 기능을 상실하였다.

한강 하구 지역에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면서 습지 생태계는 활성화되었으나 하구에 퇴적된 토사로 인하여 하상이 높아지고 그 결과 홍수가 빈번한 지역으로 변화하였다. 하구에 퇴적된 토사는 이제 건축 자재로서의 가치를 새롭게 인정받고 있으나 여전히 그 활용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접경지역의 남북 공동수계는 수많은 갈등과 협력의 잠재력

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남북 공동수계에서의 협력을 통해 그간의 갈등 구조를 극복하고 접경지역을 상생의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과제를 제안한다.

우선 그간 수많은 수해가 발생했던 임진강유역에서는 수해방지, 산림녹화 등을 통해 공동 재해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 생태공원 및 공동농장 조성, 역사문화재 발굴 등의 추진 방안을 제안한다. 둘째, 북한강유역에서는 산림녹화 및 수자원 공동이용 방안, 그리고 수변 관광 및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등을 제안한다. 남북을 가로지르는 두 강 유역에서의 협력을 통해 공동방재는 물론이고 공동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공간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한강 하구 뱃길 개방을 제안한다. 한강 하구지역의 평화적 활용을 통해 한강 및 임진강 하류 지역 포구들이 되살아나고, 뱃길 확보를 위해 준설되는 토사의 건축자재 활용 등을 통해 북측 지역에도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다면 한강 하구에서 서해에 이르는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남북 접경지역에서는 이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특구가 조성되어 있고, 접경지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말라리아 공동방역 및 산림병충해 공동 방재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남북 공동수계를 활용한 남북 상생의 계기가 마련된다면 접경지역의 갈등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생태·환경에 대한 북측의 낮은 인식, 자신들이 상류에 위치하기 때문에 가지는 소극적 태도 등의 극복이 과제가 될 것이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1. 임진강유역

가. 제안배경

- 북한지역에서 발원하여 남한지역으로 흐르는 남북한 공유하천인 임진강은 그동안 황강댐 등 수개의 댐건설 및 예고 없는 방류 등 북한의 일방적인 하천 이용으로 인해 임진강 하류지역의 반복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남북한 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이 시급한 실정임.
 - 임진강유역의 상류는 전형적인 산지하천으로서 하상경사가 급하며, 반면 하류부는 사형을 이루며, 하천경사가 완만하고, 강우량도 커서 홍수 시 하류의 수해가 심각한 실정임.

- 특히 한반도 서부 비무장지대를 관통하여 서해로 흘러가는 남북한 공유하천인 임진강유역은 남측의 경우 도시지역이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매년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홍수와 화재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를 위한 남북한 정보의 교환 및 사전대책 수립이 필요함.
 - 임진강은 유출률이 높아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하류지역에 홍수 피해가 막대하여 지난 3년 동안(1996, 1998, 1999) 재산피해 8,778억 원과 인명피해 184명에 이르고, 2010년에도 예고 없는 방류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큼.

- 남북한 군사력이 집중배치되어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접경지역에서 교류와 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한 국토공간의 공동활용과 남북한 화해와 협력관계의 증진은 이 지역에서의 긴장의 완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오고 항구적인 평화정착의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됨.

- 한국전쟁 동안, 가장 치열한 격전지대이며 현재에도 남북한 군사력이 가장 집중되어 있고 정전협정의 상징인 판문점이 임진강유역인 파주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 남북한 접경지역 인근의 임진강유역의 경우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남북한 접경지역에 광활한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어 남북이 공동으로 경작함으로써 남북한 농업협력을 통한 경제적인 협력 활성화가 가능함.

- 임진강 하류는 광활한 농경지가 남북으로 펼쳐져 있으며, 특히 비무장지대 내에 남측의 대성동 마을과 북측의 기정동 마을이 농업을 주업으로 유일하게 취락지역이 형성되어 있어 남북이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

○ 임진강유역의 비무장지대와 인접지역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자원과 문화재 그리고 풍부한 관광자원 등에 대한 개발 및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

- 임진강유역의 대표적인 문화재로는 선사시대의 덕은리 주거지 및 지식묘군, 통일신라시대의 철조비로사나불좌상, 고려시대의 회암사지 선각왕사비, 조선시대의 송의전 등이 있음.

나. 주요내용

○ 수자원의 공동관리 및 이용을 위한 다목적댐의 건설로 계속되는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재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유하전을 이
용함으로써 공동 이익을 창출함.

- 남북한 임진강유역의 상습 홍수 및 침수지역에 대한 재해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에서 일어나는 화재
에 대한 공동대책 수립, 솔잎혹파리 등 산림자원에 피해를 끼
치는 병충해 방지를 위한 공동산림 방제사업을 추진함.

○ 임진강 하류 비무장지대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한 광활한 주변 농
지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
써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생산성을 제고함.

- 비무장지대의 기존 농경지에 시범 협동농장을 개발 (철원, 파
주 대성동 등)하고, 북측 접경지역에 대단위 농업생산기반 정
비사업을 실시함. (장단, 평강)

○ 임진강 주변의 다양하고 희귀한 생태자원을 보전하고 생태공원
을 조성하여 우수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자원을 육성함.

- 비무장지대의 생태계공동조사 및 생태공원조성을 통한 관광자
원화를 모색하고, 북한과 함께 임진강유역 남북협력 산림녹화
사업, 생태계 공동연구소 설치 및 종합관리 시스템을 마련함.

○ 교류협력센터를 조성하여 남북한 인적 물적 교류협력 활성화의
실질적 창구로 개발, 남북상품교역장, 통관시설, 이산가족 만남
의 광장 및 평화공단 등을 설치함.

- 경의선 철도와 국도 1호선이 통과하고 있는 파주지역은 임진강
하류의 광활한 평야지역으로 남북이 평화적인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교류협력지구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음.

-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일정지역에 민족화합과 민족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고 창달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설치,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민족 동질성을 확인함.
 - 비무장지대 내 공예도성, 고려유적 등 역사적 유적지 발굴 및 공동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기타 교통망 연계 및 물류산업의 협력을 추구함.

다. 추진방안

(1) 국내적 차원

- 정부의 임진강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 및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단계별, 체계적으로 추진함.
- 남측 임진강유역에 대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잠재력을 분석하고, 나아가 분야별 남북한 협력가능 사업을 구상함.
- 남측 임진강유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을 통해 미래의 남북한 공동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이용과 보전방안을 준비함.
- 특히 임진강이 통과하고 있는 비무장지대 하류지역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는 홍수와 화재재난에 대한 장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 남북한 공유하천의 평화적인 이용과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

(2) 남북관계 차원

- 비무장지대와 남북한 비무장지대 인접 접경지역에 대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체계적인 조사를 위하여 남북한 공동 조사단을 구성함.
- 비무장지대와 인접지역에 산재해 있는 주요자원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남북한 공동 조사를 실시함.
- 임진강유역에서의 수자원 공동 활용을 위하여 남북한 공유하천의 공동이용방안을 마련함.
- 임진강 중·상류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댐에 대한 다목적댐 전환으로 공동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홍수와 화재 재난에 대한 공동대처방안을 마련함.

(3) 국제적 차원

- 국제기구 및 전문가 공동조사단 구성을 통하여 비무장지대를 국제적인 관심지역으로 유도함.
-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지역으로 국제적인 관리를 통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방안을 마련함.

-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주요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영구적 평화를 창출함.
- 북측의 임진강유역에 설치되어 있는 황강댐을 비롯한 5개 댐의 정비와 다목적댐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국제기구와 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라. 로드맵

-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전략은 수혜성 협력으로부터 시작하여 호혜성 협력으로 협력구도를 발전시켜 나가고, 소규모 협력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대규모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정부, 국제기구 등 공공 차원의 협력으로부터 시작하여 민간차원의 협력사업으로 확대시킴.
- 공간적으로는 임진강유역의 상류 → 중류 → 하류 순서로 추진하되 비무장지대 북측지역인 중·상류의 경우는 수혜성 사업에서 출발하여 차츰 호혜성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감.
- 공동협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칭 ‘임진강유역 남북(또는 국제)공동협력기구를 구성하여 단계적 협력을 추진하고, 공동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임진강유역에 남북한 공동관리 구역을 설정함.
- 남북관계의 유동성을 감안할 때 임진강유역에서의 남북한 협력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을 위해 국제기구나 국내외 NGO를 전략적으로 활용함.

- 추진단계의 설정은 남북교류협력의 관계에 따라 남북관계현상지속기(2010년 하반기~2011년 상반기), 남북관계대화개시기(2011년 하반기~2012년 상반기), 남북관계활성화기(2012년 하반기 이후)로 구분함.
 - 남북관계현상지속기와 남북관계대화개시는 남북한의 교류협력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가는 기간임.
 - 남북관계활성화기는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정치·군사적으로도 안정된 상태임.

(1) 남북관계현상지속기 (2010년 하반기-2011년 상반기)

(가) 임진강유역의 수해방지사업

1) 지역특성 및 추진여건

- 임진강유역의 지형은 중·상류는 지형이 가파르고 경사가 급한 산악지형을 이루고, 하류지역은 지형이 평탄하고 해발고도가 낮아 취락지역과 농경지가 발달함.
- 한편 임진강유역의 산림상태를 보면 임진강 본류의 이천군 지역과 비무장지대 인접 평강군 지역의 산야가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상류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급속히 불어나는 홍수로 인해서 하류의 도시와 농경지가 침수됨.

2) 추진방안

- 북한지역을 중심으로 임진강유역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임진강 중·상류지역에 홍수 예·경보시설을 설치하여 사전에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홍수의 피해를 줄여나가도록 함.
- 나아가 남북한 임진강유역에 대한 주요하천에 하천제방 보강작업을 실시하여 위급 상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현재 북한지역에 건설되어 있는 소규모 댐의 공동활용방안 강구와 하천수해방지사업을 추진함.
- 동시에 임진강유역의 항구적인 재난을 방지하고 수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댐건설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추진함.

3) 단계별 추진

- 북한지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와 하천제방 보강작업을 실시하여 위급상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현재 북한지역에 건설되어 있는 소규모댐의 공동활용방안 강구와 하천수해방지사업추진, 나아가 신규댐건설 추진 및 기존댐 보강을 활용함.
- 1단계 추진사업은 지역적으로는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남북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협력이 이루어지며, 임진강 상류 북한지역의 제반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남측의 경우 임진강 하류 남한지역의 하천제방 보강작업을 추진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 2단계 추진사업은 비무장지대 북한지역을 중심으로 임진강 중·상류에 건설되어 있는 북한지역 기존댐의 세부적 실태조사와 공동활용을 위한 보강작업 및 하천정비를 실시함.
- 마지막으로 북한지역 임진강 중·상류에 대규모 다목적댐 건설 및 기존댐의 정비 확충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한의 전력을 지원함.

(나) 임진강유역의 산림녹화사업

1) 지역특성 및 추진여건

- 임진강 중·상류의 주변지역은 산악이 험준하고 산림이 조밀한 지역과 산림이 심각하게 훼손된 지역이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GIS를 통해 분석된 자료에 의하면 북한지역 임진강유역 5,108km² 중 임야는 조밀한 지역이 1,079km², 수목이 산재한 지역이 2,406km²(47%)으로 나타나 산재한 지역에 대한 식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임진강 중·상류 북측 강변지역과 기타 산림녹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그동안 벌목과 다락밭 개발 등으로 심각하게 수목이 훼손되고 산사태가 자주 일어났던 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특히 수목이 산재한 지역인 2,406km²가 주요 대상지역임.

2) 추진방안

- 임진강유역에 대해서 기존에 조사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최근 인공위성을 통해서 분석된 자료를 통해 확인된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녹화가 필요한 면적을 추정하고 황폐의 정도와 위치를 평가하여 단계적 식수계획을 수립함.
- 특히 비무장지대 북측 임진강 중·상류지역에 대한 현지 남북한 합동 조사를 통하여 시급한 지역부터 산림녹화를 추진함.

3) 단계별 추진

- 임진강유역의 산림녹화사업은 비무장지대 북측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상태를 파악하고 북측지역에서 시작하여 남측으로 확대하도록 함.
- 1단계 추진사업으로 임진강유역 전체에 대한 인공위성 분석을 통하여 산림 상태를 분석함.
- 2단계 추진사업으로 임진강 중·상류 북한 지역과 임진강 상류 북한지역 중 산림황폐가 심한 지역부터 산림녹화 작업을 추진함.
- 마지막 추진사업으로 임진강 중류 및 임진강이 통과하는 비무장 지대 및 남북한 접경지역에 대한 산림녹화를 추진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2) 남북관계대화개시기 (2011년 하반기-2012년 상반기)

(가) 생태공원 조성

1) 지역특성 및 추진여건

- 비무장지대를 북에서 남으로 통과하는 임진강유역의 수변지역은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강이 흐르는 강변은 병풍처럼 둘러쳐진 층암절벽이 장관을 이루고 있고, 특히 물이 맑고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다양한 희귀어종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계 연구에 매우 가치가 높은 지역임.
- 임진강이 북에서 남으로 통과하는 연천군 중면지역의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핵심생태공원지역으로 지정 관리토록 하고 동시에 주변의 남북접경지역의 수려한 자연생태계를 연계한 광역지역을 대상으로 확대토록 함.

2) 추진방안

- 임진강 유역을 자연환경 공동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이중 비무장지대 및 희귀생태자원이 풍부한 주변 접경지역을 포함한 생태공원을 조성함.
- 이를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병행하여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사업의 추진은 우선 비무장지대 내에 핵심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다음으로 임진강유역 내 생태계 우수지역과 주변 접경지역까지 확대함.

3) 단계별 추진

- 임진강유역을 자연환경 공동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중 비무장지대 및 희귀생태자원이 풍부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함.
- 1단계에는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인접지역에 대한 생태계의 남북한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임진강이 통과하고 있는 비무장지대에 우선적으로 생태공원 조성을 추진함.
- 2단계에는 남북한 임진강유역 내 생태계 우수지역을 중심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공동으로 관리함.
- 마지막으로 임진강과 연접한 남북한 접경지역을 생태계 우수지역으로 확대하여 생태공원화를 추진함.

(나) 비무장지대 대성동 마을 일대 공동농장 조성

1) 지역특성 및 추진여건

-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남쪽은 대성동 마을(파주시 조산리), 북쪽은 기정동 마을(판문군 기정리)이 입지하여 있는 이 지역은 임진강의 하류지역으로 평탄한 평야와 구릉지가 발달하여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음.
- 정전협정 이후 비무장지대로 설치되어 출입이 통제되어 있으나 양측 마을이 있는 비무장지대 주변의 일정지역은 농경지로 개간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사용되고 있음.

- 대성동 마을(자유의 마을)은 1953년 8월 정전협정으로 남방한계선 이북(비무장지대) 조산리 지역에 피난하여 귀향한 주민의 정착을 위해서 조성되었는데 당시 주민은 30세대 160명이었으나 분가 등을 통하여 인구가 증가하여 현재는 51세대 227명이 되었음.

2) 추진방안

- 남한의 대성동 마을과 북한의 기정동 마을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양측이 경작하고 있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하여 경지정리와 농로 및 수리시설 정비작업을 실시함.
- 나아가 주변의 경작 가능한 구릉지 및 과거 농경지에 대한 자연환경 실태를 조사하여 농경지 확장 가능성을 진단하고, 주요보전이 필요한 생태자원을 선별하여 보전대책을 수립하고 그 외 경작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남북한 합동농장을 추진하되, 남한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북한의 인력을 투입하여 벼농사 및 특수농업을 경영하는 방안을 강구함.

3) 단계별 추진

- 비무장지대 내에 유일하게 입지해 있는 남측의 대성동 마을(146만평)과 동일 수준으로 추정된 북측의 기정동 마을을 연계하여 남북한 평화농장을 조성하여 협동농장을 추진함.

- 1단계에는 비무장지대 내 남측의 대성동 마을과 북측의 기정동 마을 주변지역의 농경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협력을 추진함.
- 2단계에는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남북한 임진강유역의 기존 농경지로 협력을 확대 추진함.
- 마지막으로 임진강과 연접한 남북한 접경지역까지 시범농장을 확대하여 협력농장을 추진함.

(3) 남북관계활성화기(2012년 하반기 이후)

(가) 공예도성 발굴 복원

1) 지역특성 및 추진여건

- 공예도성의 형식은 내·외성이 모두 방형(方形)이며 토석혼축이고, 규모는 둘레가 총 19.7km로 이중 내성이 7km, 외성이 12.7km임.
- 군사분계선이 통과하고 있는 비무장지대 내 철원군 풍천원 들판에 자리 잡고 있는 공예도성은 내외 토성이 비무장지대 중앙에 자리 잡고 있어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와 협력을 통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함.
- 남북한 이질성을 극복하고 역사적으로 동일 민족임을 확인함으로써 상호 교류와 협력, 나아가 평화적인 통일로 나아가는 여건 조성이 가능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2) 추진방안

- 역사적 고증을 통하여 확인된 궁예도성에 대한 남북한 공동조사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무너진 토성복원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함.
- 우선 발굴을 위한 준비단계에서는 체계적 조사를 위한 제반준비, 자료조사, 발굴절차를 논의하고 다음단계에는 지뢰제거와 전문적 발굴조사 후 복원사업으로 추진함.

3) 단계별 추진

- 비무장지대 내에 자리를 잡고 있는 궁예도성은 일제시대의 농경지 개간과 교통망 설치, 그리고 남북한 전쟁의 상흔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 있어 이를 복원하는 데는 역사적인 고증과 함께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복구할 수 있음.
- 1단계에는 비무장지대 북측에 자리잡고 있는 궁예도성 중 내성이 입지해 있던 지역에 대한 역사적 고증 및 현지 정밀조사를 통하여 복원을 추진함.
- 2단계에는 비무장지대 남과 북 중앙에 입지해 있는 내성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외성에 대한 역사적 고증 및 정밀조사를 통하여 복원을 추진함.
- 마지막 단계에는 역사적 고증 및 정밀조사를 통한 자료를 중심으

로 남북한 당국 및 국제기구의 참여하에 공예도성 남북한 공동 복원 작업을 추진함.

[표 Ⅲ-1] 임진강유역 협력방안 로드맵

		2010	2011	2011	2012	2012	2013	2013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이후
		남북관계 현상 지속		남북관계 대화 개시		남북관계 활성화		
국내 차원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	○						
	공동조사단 구성		○					
	임진강유역 실태 조사			○	○			
	협력가능사업 선정		○	○				
	종합발전계획 수립			○				
	남북협력사업 추진 방안 마련			○				
	남북교류협력 특 별법 제정, 공포						○	
남북 차원	공동조사단 구성				○			
	공동조사 실시					○		
	협력사업 합의						○	
	관련 남북한법 정비 유도 및 지원							○
국제 차원	유엔사 및 미국의 이해와 협조 유도			○	○	○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마. 기대효과

- 임진강 유역에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은 우선 그동안 북한의 예고없는 방류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왔던 우리측 임진강하류지역에서의 피해와 위험이 제거됨에 따라 안정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해짐.
-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접경지역에서의 시범사업 추진은 우선 군사적 긴장의 완화로 평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여건 조성이 가능해짐.
- 임진강유역은 접경지역에서 가장 남북한 군사력이 집중됨에 따라 국토의 이용 및 보전에 있어서도 크게 제약을 받아왔으나 이 지역에서의 교류협력 여건의 마련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짐.
- 임진강하류저지대인 남측 접경지역은 남북한 교류협력의 추진으로 자연재난에 대한 남북한 상호정보교환으로 상습적인 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방안 마련이 가능해짐.
- 남북한 접경지역에 산재한 역사유적지의 발굴 복구로 남북한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에서 발굴되는 우리 민족의 선사시대부터의 다양한 역사자원은 국제적인 관심을 높이는 데에 유용함.

- 임진강유역의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남북한 접경지역에 산재해 있는 희귀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여 관광자원화하고, 이를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능해짐.
- 임진강유역은 생물의 다양성과 함께 멸종위기에 놓여있는 희귀 동·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함으로써 서부 저지대를 한국 고유의 동·식물 보호지역으로 육성하는 것이 가능해짐.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2. 북한강유역

가. 제안배경

- 남북한 접경지역에서의 국토공간 공동이용을 통한 화해와 협력 관계의 증진 및 군사적 긴장관계 완화
 - 한반도의 중·북부를 남북으로 관류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북한강 유역은 역사적으로 군사·교통의 중심 거점지역이며, 현재도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비무장지대가 남북한 북한강유역의 중·하류지역을 관통하고 있음.
- 북한강유역의 임남댐(금강산댐)과 평화의 댐에 대한 수자원 공동 이용 및 재해공동 대처로 남북교류협력의 강화 및 국토자원 이용의 효율성 제고
 - 대상지역은 유역면적이 16,830km²에 달하는 넓은 지역으로 풍부한 수자원의 공동이용을 통해 각종 용수의 확보와 전력 생산, 주요생태자원과 관광자원의 연계개발 등 자원공동이용을 통한 상호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임.
- 남북한 접경지역 인근의 북한강유역 주요생태계 공동조사 및 체계적 보전방안 마련으로 자연환경의 효율적인 보전 및 활용도모
 - 북한강유역의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은 산악이 험준하고 군사작전지역으로 출입이 통제됨에 따라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으며 이중 일부지역은 생태계 우수지역으로 보전과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임.

- 북한강은 어류의 다양성이 풍부하고 다수의 한국고유어종과 희귀어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에는 수달, 반달가슴곰, 산양과 사향노루 등의 희귀종이 서식하고 있음.
- 임남댐(금강산댐)과 평화의 댐을 둘러싼 수자원 분쟁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남북한 협력방안 마련
 - 임남댐으로 인해 북한강의 유하량이 연간 17억m³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한강연간유입량 180억m³의 9%로 팔당댐의 용수공급량으로는 12억m³에 해당하며(물수지 분석에 의한 용수량은 2011년에 6.2억 톤, 2020년에 7.7억 톤 부족예상) 이와 함께, 발전용수, 하천유지용수 감소, 유속변화에 따른 환경변화, 수질악화 등이 초래되는 것으로 분석됨.
- 북한강유역의 비무장지대와 인접지역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자원과 문화재 그리고 풍부한 관광자원 등에 대한 개발 및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 대두
 - 현재 북한강유역에서 발굴되고 있는 선사유적지에 비취볼 때 양구 이북지역의 비무장지대 및 북한지역의 유역에도 선사유적지가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나. 주요내용

- 북한강 수자원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임남댐과 평화의 댐 수자원 공동이용 방안 강구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 북한의 금강산발전소(안변청년발전소)의 조업용댐으로 건설한 임남댐은 북한강 수계를 가로막아 유역을 변경함으로써 북한 강유역에서의 용수 문제가 남북한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이 지역에서 남북한 분쟁요인을 제거하고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북한강 수자원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공동 이용방안을 마련하여 전력, 농업·공업·생활용수의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임.
- 북한강유역의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주변접경지역 중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선별하여 생태공원조성 및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보전 필요
- 북한강유역은 고산준령이 발달하여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대체로 잘 보전되어 있으나 임남댐의 건설로 수량이 줄어들어 따라 수변 생태계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특히 하천의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수변생태계가 파괴되고, 수중어족의 산란과 서식에도 변화를 주고 있음.
- 북한강 중·상류의 황폐한 산야 복구를 위한 산림녹화로 국토의 보전작업 착수
- 북한강 중·상류지역의 경우 계단식 농토의 개간과 화전, 그리고 땔감으로 쓰기 위한 남벌로 인해서 대부분의 산야가 황폐한 상태로 변화되었으며, 특히 집중호우 시 유출률이 높아 하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어, 남북이 공동으로 이 지역에 대한 산림녹화를 추진하여 재해의 방지와 국토의 녹화작업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임.

- 북한강 수변의 다양한 관광자원의 연계개발 및 주운을 통한 관광 협력 및 금강산 관광의 주운체계 확립
 - 수로가 복원될 경우 동·식물 생태공원을 수변에 조성함으로써 수변관광벨트화의 추진이 가능하며, 특히 금강산으로의 새로운 관광 루트가 열리면 남북한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남북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홍수 및 한해 공동대책 수립을 통한 자연재해의 사전 피해방지 및 공동대처
 - 북한강유역의 협력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극복사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임남댐의 예기치 않은 방류와 붕괴 등으로 하류지역에 커다란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남북한의 협력이 필요함.
 - 댐건설로 인한 용수의 부족은 자연생태계에 영향을 주어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어, 재해의 예방 및 공동대처 방안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임.

다. 추진방안

(1) 국내적 차원

- 정부차원의 북한강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 및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동조사단 구성을 통하여 단계별 체계적으로 추진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 비무장지대 남측의 북한강유역에 대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잠재력을 분석하고 나아가 분야별 남북한 협력가능 사업에 대해 구상함.
- 우선 남측 북한강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임남댐과 평화의 댐에 대한 남북한 공동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이용과 보전방안을 준비함.
- 특히 비무장지대 남측 평화의 댐까지의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워 수위가 낮아짐에 따른 생태계 파괴에 대한 장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함.
- 남북한 공유하천의 평화적인 이용과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

(2) 남북관계 차원

- 북한강유역의 비무장지대와 남북한 접경지역에 대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남북한 공동 조사단을 구성함.
- 북한강유역의 비무장지대와 인접지역에 산재해 있는 주요자원의 공동이용을 위해 남북한 공동 조사를 실시함.
- 북한강유역에서의 수자원 공동 활용으로 남북한 공유하천의 평화적인 이용을 통해 국토자원의 공동이용방안을 마련함.

- 북한강 중·상류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임남댐(금강산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여 수력발전을 일으켜 전력의 생산과 홍수의 조절, 그리고 각종 산업용수 및 식수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함.

(3) 국제적 차원

- 수자원과 자연생태계에 대한 국제기구 및 전문가 공동조사단 구성을 통하여 비무장지대를 국제적인 관심지역으로 유도함.
-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지역으로 국제적인 관리를 통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방안을 마련함.
- 북한강유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주요협력사업 추진으로 영구적 평화의 창출을 도모함.
- 북측의 북한강유역에 설치되어 있는 임남댐을 비롯한 중소댐의 정비와 다목적댐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국제기구와 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라. 로드맵

- 우선 임남댐 건설로 인해서 단절된 수로를 열고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한 수혜성 협력으로부터 시작하여 호혜성 협력으로 협력구도를 발전시켜 나감.
- 소규모 협력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대규모 협력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사업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며, 동시에 정부차원에서 시도하되 국제기구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국제적인 협력사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추진과정에서의 위험성에 대비함.

- 공간적으로는 북한강의 상류지역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중류 지역으로 확대하고 마지막으로 하류지역의 순서로 추진하되 임남댐 주변 및 비무장지대 북측지역의 경우는 초기에는 수혜성 사업에서 출발하여 차츰 호혜성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감.
- 남북한 공동협력을 보다 효율적이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가칭 북한강유역 남북(또는 국제)공동협력기구를 구성하여 단계적 협력을 추진하고, 공동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북한강 유역에 남북한 공동관리구역을 설정함.
- 남북관계의 유동성과 핵문제의 국제성을 감안할 때 북한강유역에서의 남북한 협력은 다양한 국제기구의 참여와 합작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내외 NGO를 전략적으로 활용함.
- 추진단계의 설정은 남북교류협력의 관계에 따라 남북관계현상지속기(2010년 하반기~2011년 상반기), 남북관계대화개시기(2011년 하반기~2012년 상반기), 남북관계활성화기(2012년 하반기 이후)로 구분함.
 - 남북관계현상지속기와 남북관계대화개시기는 남북한의 교류협력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가는 기간임.

- 남북관계활성화기는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정치군사적으로도 안정된 상태임.

(1) 남북관계현상지속기(2010년 하반기~2011년 상반기)

(가) 북한강유역의 산림녹화

1) 지역특성 및 추진여건

- 현재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과 북한강 중·상류의 주변 지역은 지형이 험준하고 산악이 발달해 있으나 대부분의 산림이 크게 훼손되어 있어 집중적인 호우가 쏟아질 경우 북한강 수계의 중·하류지역에 재난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음.
- 따라서 비무장지대 북측지역의 북한강 중·상류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자원 훼손지역에 대한 산림녹화를 남북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남북한 접경지역에 농장을 설치하여 묘목을 육성한 후 이를 북한지역에 제공하고 북측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식목하는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 가능함.

2) 추진방안

- 북한강유역 전반에 대한 산림상태 기초조사를 실시하되, 특히 비무장지대 북측지역인 북한강 중·상류지역에 대한 녹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나아가 비무장지대 및 남북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산림녹화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나감.
- 1단계 추진사업은 비무장지대 북측의 북한강 중·상류 유역에 대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한 산림상태의 정밀조사를 위한 위성영상의 분석 및 남북한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산림녹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확보하여 녹화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함.

- 2단계 추진사업은 북한강 중·상류지역 중 산림 훼손상태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묘목농장을 남북한 접경지역에 설치하여 북측의 노동력과 남측의 자본과 기술을 통한 협력사업을 추진함.
- 마지막 단계에선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남북한 접경지역으로 확대되 우선 북측지역부터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지역에 대한 산림녹화 사업을 추진함.

(2) 남북관계대화개시기(2011년 하반기~2012년 상반기)

(가) 임남댐과 평화의 댐 수자원 공동이용

1) 지역특성 및 추진여건

- 임남댐(금강산댐)건설로 인해 북한강상류의 물이 동해안의 안변 청년발전소로 유역 변경되어 발전됨에 따라 남한의 북한강 수계의 용수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약 16억 톤의 용수가 차단됨에 따라 화천댐 전력발전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음.
- 동시에 임남댐 건설로 인한 용수의 차단으로 북한강의 수위가 크게 낮아짐에 따라 임남댐과 평화의 댐까지의 수계 주변 생태계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

- 현재 유역변경식 발전을 위해 차단한 임남댐 용수를 남쪽으로 흘러보내고 그에 따른 보상책은 전력생산 감소분에 대한 보전방안으로 전력의 송전이나 화력발전소를 건설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북한강 수계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주요 생태계의 보전과 관광 자원화를 추진하고 나아가 주운을 이용한 금강산 관광 등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함.

2) 단계별 추진방안

- 남북한이 임남댐과 평화의 댐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다목적댐으로 전환하여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며, 주변지역을 교류협력 및 공동활용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함.
- 1단계 추진사업으로 임남댐 용수의 남측공급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전력을 공급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북한의 일정지역에 발전설비 건설 등 수자원공동이용방안을 마련함.
- 2단계 추진사업으로 임남댐과 평화의 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여 전력생산과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화력 및 풍력발전설비를 북한지역에 설치함.
- 마지막으로 북한강유역의 남북한 공동이용을 통한 접경지역에서의 교류협력사업과 교류협력지구 설치 등을 추진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나) 생태공원조성 및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1) 지역특성 및 추진여건

- 임남댐 건설로 북한강 수로가 차단되어 유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임남댐에서 평화의 댐에 이르는 약 16km의 하천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 주변의 고수부지에는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되는 등 자연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북한강유역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비무장지대와 주변접경지역은 생태자원이 매우 우수하고 생물다양성이 높아 유네스코에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의 지정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북측의 참여를 유도함.
- 화천의 북한강 주변 생태자원, 양구의 두타연 주변, 인제의 소양강 주변 등은 생태공원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는 특수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으며 주변지역은 산악이 험준하고 하천이 발달하여 생물자원의 다양성이 풍부함.

2) 추진방안

- 북한강수계에 서식하고 있는 생태자원을 조사 분석하여 주요생태계 서식지를 중심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주변접경지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함.
- 1단계 추진사업으로 북한강유역의 비무장지대와 남북한 접경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희귀생태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남북한 전문가 합동조사를 추진함.

- 2단계 추진사업으로 북한강유역에 서식하고 있는 희귀생태자원을 중심으로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수립하고 특성있는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남북한 공동자산으로 활용함.
- 마지막 단계에선 비무장지대와 남북한 접경지역의 생태계 우수지역을 연계하여 생태축을 조성하고 주변의 생태공원과 연계하여 광범위한 생태공원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함.

(3) 남북관계활성화기(2012년 하반기 이후)

(가) 수변관광벨트화 추진 및 금강산 관광연계

1) 지역특성 및 추진여건

- 임남댐에서 평화의 댐까지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협곡을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 및 유로탐방, 그리고 래프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우수하나, 임남댐의 건설로 인한 유량의 급격한 저하로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임남댐에서의 용수가 평화의 댐으로 공급되고 이에 따라 수로가 복원될 경우 동·식물 생태공원을 수변에 조성함으로써 수변관광벨트화의 추진이 가능하며, 특히 금강산으로의 새로운 관광 루트가 열리면 남북한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임.

- 임남댐이 건설되기 전에는 유량이 많아 조선시대 등에는 금강산에서 뗏목을 띄워 서울까지 이동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으므로 화천댐의 수위가 상승할 경우 임남댐 인근까지 주운을 이용하여 관광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북한강의 유량이 확보될 경우 페리(ferry)에 버스를 싣고 이동한다면 수로와 도로를 이용하여 금강산까지 이동이 가능함.

2) 추진방안

- 남방한계선까지의 수로를 복원하는 등 교류협력 여건을 조성하고, 임남댐부근 선착장까지의 수로를 복원하여 주운과 주변 육로를 통하여 금강산 관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평화의 댐에서 임남댐 그리고 금강산으로 이동하는 연계관광을 추진함.
- 1단계 추진사업으로 남방한계선까지의 수로를 복원하고 주변지역에 동·식물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남북교류협력 여건을 조성함.
- 2단계 추진사업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임남댐부근 선착장까지의 수로를 복원하여 주운과 주변 육로를 통한 관광사업 기반을 조성함.
- 마지막 단계에는 수로의 복원에 따라 페리(ferry)에 버스를 싣고 평화의 댐에서 임남댐까지 이동하고 그곳에서 버스로 금강산으로 이동하는 연계관광 방안을 추진함.

[표 III-2] 북한강유역 협력방안 로드맵

		2010	2011	2011	2012	2012	2013	2013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이후
		남북관계 현상 지속		남북관계 대화 개시		남북관계 활성화		
국내 차원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							
	공동조사단 구성		○					
	북한강유역 실태조사			○	○			
	협력가능사업 선정		○	○				
	종합발전계획 수립			○				
	남북협력사업 추진 방안 마련				○			
	남북교류협 특별법 제정, 공포						○	
남북 차원	공동조사단 구성				○			
	공동조사 실시					○		
	협력사업 합의						○	
	관련 북한법 정비 유도 및 지원							○
국제 차원	유엔사 및 미국의 이해와 협조 유도			○	○	○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마. 기대효과

- 북한강 수계에서의 남북한 공유하천분쟁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를 가져오고 이를 통한 국토자원의 공동활용과 교류협력의 활성화로 이 지역에서의 평화정착 여건이 조성됨.
- 북한강유역의 안정된 용수의 공급으로 화천댐을 비롯한 하루 댐에서 일정량의 전력생산을 할 수 있으며 산업용수와 농업용수 그리고 식수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해짐.
- 북한강 수계에서의 일정량의 유량 확보로 하천의 수위를 유지함으로써 어류와 주변 자연환경에 영향을 끼쳐 기존 생태계의 복원으로 이어짐에 따라 생태자원의 관광자원화 추진이 가능해짐.
- 북한강 수위의 상승으로 평화의 댐에서 임남댐까지의 주운을 통한 수변관광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금강산으로의 새로운 관광루트의 확보로 관광여건이 조성됨.
- 남북한 북한강유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으로 중동부 남북한 접경지역에서의 합리적인 국토 이용방안의 추진이 가능해져 지역경제의 활성화 여건이 조성됨.
-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남북한 접경지역에 산재해 있는 희귀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여 관광자원화하고, 이를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

- 특히 멸종위기에 놓여있는 희귀 동·식물의 체계적 보호와 육성으로 비무장지대와 남북한 접경지역을 한국 고유의 동·식물 종합 관광단지로 육성시킴.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3. 한강 하구

가. 제안배경

(1)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필요성

- 남북의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하여 한강하구 뱃길을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한강은 물론 임진강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명소로 존재하던 여러 포구들이 제 역할을 상실하고 있음.
- 한강 하구 뱃길 개방은 서울 르네상스 등 주요 지자체의 구상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한강 하구 모래채취 등)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임.

(2) 한강 하구의 비군사적 통행에 대한 법적 근거

- 비군사적 용도의 한강 하구 통행은 정전협정에 명기된 사항으로 북측의 대폭적인 양보가 필요한 사안이 아님.
- 정전협정 제1조 5항은 “한강 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쪽 강안이 다른 일방의 통제 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간선박의 항해에 이를 개방한다. 한강 하구의 항행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쌍방 민간선박이 항해함에 있어 자기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육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로 되어 있음.

(3) 한강 하구 평화적 활용을 통한 서해 지역의 군사적 긴장 완화 효과

- 관광 및 경제적 활용을 위해 한강 하구지역을 개방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의 상선과 유람선이 항행하게 된다면 한강 하구지역에서부터 NLL 지역에 이르는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에 대한 북측의 부담이 증가할 것임.

(4) 한강 하구 뱃길 통행의 선례 고려

- 한강 하구 통항은 전례가 없던 일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이용한 전례가 있음.
 - 자유로 건설용 골재채취선 진출입(1990.11~1991.11): 이 과정에서 민용선박 중립지역 출입 사실 및 관련 자료를 북측에 통보하였으며, 군사정전위원회 특별조사반 요원이 승선하였음.
 - 한강 하구에 표류하던 황소 구하기(1997.1.17): 군사정전위원회는 북측에 출입일시, 인원, 장비 등을 통지문으로 발송함.
 - 한강 하구에 유입된 염소 회수(1999.2.18): 정전협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진행함.
 - 좌초 준설선 예인(1999.8.28~29): 참모장교급 회의, 제10차 장성급회의, 비서장급 회의 등이 개최됨.
 - 거북선 이동(2005.11.7~11): 군정위 선박등록 및 등록증 북측에 통보, 수로조사 및 거북선 이용 일정관련 대북 통지문을 발송함.
- 1992년 자유로 건설시 부족한 토사를 마련하기 위해 당시 한강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하구 중립수역으로 바지선을 투입하여 신곡 수중보 하단의 토사를 준설하는 것을 북한에 제안하여 남북한 대화를 통해 준설선을 투입하여 토사를 확보한 사실이 있음.

(5) 기존 남북합의 결과 원용 가능

-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한강 하구 공동이용’에 대해 합의한 바 있음.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 시 한강 하구 뱃길 개방뿐만 아니라 한강 하구의 공동이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으로 확대하여 나갈 수 있을 것임.

나. 주요내용

(1) 한강 하구 이용에 대한 국내적 합의 선행

- 한강 하구지역은 생태·환경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특히 습지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곳임. 따라서 동 지역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국내적 논쟁이 촉발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대규모의 개발이나 준설이 아닌 물길 개방과 한강 하류지역 홍수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모로 준설 및 개발 규모를 제한하고, 환경단체들과 적극 협의하여야 함.

[그림 III-1] 한강 하구 습지 보호구역



주: 점선 안쪽이 습지보호지역 지정지역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 한강하구습지보존지역지정 2006.4.23

(2) 뱃길 운행을 위한 준설 및 시설 확보

○ 한강 하구지역의 일회성 운항이 아닌, 정기적 항로 개설이 목적 이라면 우선 하도 준설이 필요함. 반세기 동안의 선박 통항 통제 와 임진강상류에서의 토사 유입으로 인해 현재의 한강 하구지역 은 강바닥에 토사가 두텁게 쌓여 중대형 선박이 통항하기는 어 려우며 소형선박의 자유로운 운항을 위해서도 바닥에 쌓인 토사 에 대한 준설 작업이 필요한 실정임.

- 추정 골재 매장량은 10억 8천만m³(10조 8천억 원 상당)임.
- 골재 채취를 통해 국내 건설 수요를 충당하고, 경제적 이익금 활용이 가능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 한강 하구지역에 존재하는 수중보를 도크식 수중보로 개선했.
 - 기존 신곡수중보 도크를 설치함.
 - 신규 2개소(하성수중보, 유도수중보)를 설치함.

- 여객터미널·선착장 등 물류시설을 확보함.
 - 김포시(감암포 및 三浦), 고양시(행주나루), 파주시(고랑포), 서울(마포, 영등포) 등에 여객터미널 및 선착장을 설치함.

- 한강·임진강 남북관광 루트를 개발함.
 - 남북 고속 크루즈 관광선을 운행함.
 - 옛 포구를 활용한 추억의 역사탐방 뱃길을 운행함.
 - 황포돛단배 운행, 옛포구의 민속촌식 역사관광특구 조성, 비무장지대 자연생태탐방을 연계함.

[그림 III-2] 한강 하구 뱃길 구상



(3) 군사정전위원회 및 유엔사 협의

- 한강 하구 뱃길 개방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대상은 군사정전위원회라고 할 수 있음.
- 정전협정의 규정과 한강 하구의 관할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한강 하구는 “쌍방의 민용 선박의 항행에 개방”하고, 다만 그 “항행규칙을 규정하는” 차원에서만 관할권을 행사함(정전협정 제1조 제5항).
 - 그 항행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고, 남측의 경우 선박의 등록절차 등은 유엔사가 하도록 되어 있음.
 - 한강 하구의 항행규칙은 제8차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인 『한강 하구에서의 민용 선박 항행에 관한 규칙 및 관계사항 (1953.10.3)』 제6항(민간에서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여 온 한강 하구 수역 내에 성문화되지 않은 항행규칙과 습관은 정전협정에 저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쌍방 선박이 이를 존중한다)에 규정되어 있음.

(4) 남북협의

- 사실 북한은 한강 하구지역의 평화적 뱃길 이용과 관련하여 별다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 따라서 법적으로는 북측에 한강 하구 뱃길 개방을 통보하는 것으로 충분함.
- 하지만 남북분단 상황의 특수성 및 한강 하구 지역의 성격을 고려할 때 남북협의를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남북이 한강하구

지역의 뱃길 개방에 대해 합의한다면 군사정전위원회나 유엔사가 이를 제지할 명분이 없음. 반면 남북합의 없이는 군사정전위원회나 유엔사 심지어 우리 국방부를 설득하기도 어려울 것임.

다. 추진방안

(1) 국내적 차원

- 한강 하구 지역의 생태 환경적 가치와 관련하여 국내 환경단체들과의 협의가 필수적임.
 - 하지만 한강 하구 뱃길 개방의 상징성을 고려한다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에서 접근한다면 한강 하구의 뱃길 개방을 설득할 수 있을 것임.
- 경기도와 서울시 등 한강 하구 개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을 설득하여 동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면, 비용 절감은 물론 남북교류와 관련된 새로운 사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임.

(2) 남북관계 차원

- 한강 하구에서부터 NLL에 이르는 서해지역은 지난 10년 동안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지역임. 따라서 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낮추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한강 하구 지역에 관광 유람선이 이동하는 뱃길이 개설되기 위해서는 남북 해군 간의 긴밀한 협력과 이해가 필수적임.
- 북한의 한강 하구 지역의 개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보상이 주어져야 할 것임.
 - 한강 하구 뱃길 개방을 위해 일부 지역의 준설이 불가피함. 따라서 동 사업을 한강 하구 남북 지역의 준설과 연계시켜 북측 지역에서 채취되는 골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 것임.
 - 북측으로서는 남북 공동 관할 지역인 한강 하구 지역에서 단순히 골재 채취를 허용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임.
- 한강 하구 골재 채취는 단순히 항로 개설을 위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강 하구의 수위를 낮춤으로써 홍수를 방지하는 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것이므로, 북측으로서는 이익이 된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남북관계의 전면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동 항로를 통해 임진강 및 예성강을 통한 남북 관광 루트가 개설될 수 있을 것임.

(3) 국제적 차원

- 한강 하구 뱃길이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동 사업의 성과를 확대하고 한강 하구 지역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 특히 한강 하구는 중국과 연결되는 항로 개설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중국 자본과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크루즈 관광 등으로 확대하여 한중 항로 개설을 추진함.

라. 로드맵

(1) 국내적 합의 도출

- 국내 환경단체,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한강 하구 뱃길 개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 등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들은 동 사업에 대해 상당기간 관심을 보여 왔으며, 동 사업의 일차적인 수혜자가 될 것이므로 적극적인 재정 기여도 가능할 것임.
- 현재 상태로도 몇 번의 뱃길 이용이 있었으므로, 시범적인 운항을 통해 동 사업의 상징성을 홍보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성이 있음.

(2) 남북협의를 통한 기초 조사 실시

-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일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동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라고 할 수 있음.
- 단계별 추진계획

[표 III-3] 한강 하구 협력방안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계획 수립	자체 조사 계획 작성	공동 조사팀 구성	공동 조사
주변 지자체 연계 사업	한강 하구 이용 관련 협의체 구성(경기, 인천, 서울)		
남북합의와 조율	당국간 논의 체제 구축		

- 기초조사는 한강 하구 지역의 자원 실태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 즉, 한강 하구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부존자원 실태 조사임.
 - 역사, 문화, 관광, 환경 등 자원 실태 조사: 관광·생태 자원 실태 조사
 - 김포시 월곶면 유도: 천연기념물 저어새의 국내 최대서식지
 - 한강 하구 습지 생태조사
 - 역사, 문화 자원 조사
 - 골재 이외 새로운 부존 자원 조사 및 환경영향 조사
 - 어족 자원, 지하 자원 등 조사 및 수질 오염 조사 등
 - 지뢰, 수뢰 등 한강 하구 개발 저해요인 조사
-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 북측의 공동 참여
 - 문화재청, 환경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 공동추진
 - 경기도와 인천, 서울 등 관련 지자체 공동 추진
 - 북측 관련기관 참여
-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강 하구 공동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진 바 있으므로, 이를 적극 강조하여 복측을 설득할 필요성이 있음.

(3) 군사정전위원회, 유엔사 협의

- 동 지역은 유엔사 관할 지역이며 군사분계선 지역인 관계로 국방부 등의 입장이 중요함. 현재까지 국방부 등은 이 지역에 대한 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음. 따라서 유엔사와 국방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남북 합의가 선행될 필요성이 있음.

[표 III-4] 한강 하구 협력방안 로드맵

		2010	2011	2011	2012	2012	2013	2013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남북관계 현상 지속		남북관계 대화 개시		남북관계 활성화		
국내 차원	국내 합의 도출	○	○					
	계획 수립 및 지자체 협력		○	○	○			
	인프라 구축					○	○	
남북 차원	협상테이블 유도			○				
	기초조사 추진				○	○		
	준설 및 시범운행					○	○	
	한강하구 뱃길 개방							○
국제 차원	유엔사/군정위협조				○			
	국제적 프로그램 추진			○	○	○	○	○

마. 기대효과

(1) 한강 하구 및 서해지역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

- 한강 하구를 통해 운항하는 뱃길은 서해 지역으로 이어져 나갈 수밖에 없음. 따라서 동 지역에 평화적 뱃길을 개방하는 것은 그동안 분쟁과 갈등의 상징이었던 서해 수역이 평화의 바다로 변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2)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

- 2010년 5.24 조치로 인하여 잠정 중단되어 있으나, 우리는 북한산 모래를 수입하고 있었음.
- 한강 하구 지역 뱃길 개방을 위해 동 지역의 준설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할 때, 동 지역에서의 모래 채취를 통해 북측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남측은 건설업에 필요한 골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3) 남북교류의 성과를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

- 그동안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금강산 관광 정도를 제외하고는 일부 경험 참가 업체만이 적극적으로 남북교류에 참여하는 등 민간의 전유물이었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한강 하구 뱃길 개방은 그 배가 닿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이 동 사업의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임.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4) 향후 사업의 확장 가능성

- 한강 하구 뱃길 개방은 금강산 및 개성관광 이외에 접경지역에서 제3의 남북 관광 루트 개발 계기가 될 수 있음.
- 또한 남북 합의에 따라 예성강 등 북측 다른 지역으로 뱃길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의 확장과 해주 공단으로 확장 등 기존 남북 합의가 전면 이행된다면 단순한 관광 루트가 아니라 경제적 용도의 물류 항로로 발전될 수 있을 것임.

IV. 환경분야 협력방안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한반도 분단의 상징이라는 의미를 넘어 이제 세계적 냉전대결의 마지막 상징이자, 반세기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환경의 보고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진, 비무장지대를 포함하는 남북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남북한의 상생공영, 그리고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구상하는데 중요한 정책적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6.25 전쟁의 종전을 규정한 1953년 7월 휴전협정에 따라 설정된 6,400만 평의 비무장지대는, 물리적 규모의 중요성과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와 상생공영에 대한 민족사적, 국제관계적 중요성이 아주 크기에 남북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정책적, 학문적 고민을 요구하고 있다.

현실적 의미에서 비무장지대는 군사적 대치를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한계 때문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한이 동시에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와 국제관계적 고려가 우선 필요하다. 또한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사회 내에서도 개발과 보존의 논란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의 특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와 유관학문을 연결하는 학제적(inter-disciplinary)인 접근이 필요하다.

비무장지대를 포함하는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정책적 고려는 남북한에 공동의 이익을 제공하면서 북한이 수용할 수 있고 환경문제를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① 환경연수기관 설립과 남북한 스마트그리드 협력, ②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호랑이 이동통로 개설, ③ 동부 비무장지대와 설악산 및 금강산지역을 연계하는 생태·역사·평화공원의 구상, ④ 유엔생물다양성 총회의 남북한 공동 유치의 네 가지 정책제안을 마련하였다. 접

경지역을 환경 친화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에 남북한이 합의하고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협력의 제도화는 한반도 평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

토지와 수질 그리고 산림보호와 같은 국내정책 접근에 중점을 두는 환경문제에서부터 토종 생물인 호랑이 보호를 위한 양자협력, 그리고 기후변화와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국제적 공조가 핵심이 되는 경우까지 환경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이런 점에서 환경 분야는 남북한의 협력과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에 가장 적절한 특성을 가진 협력사업이다. 남북한의 평화적 협력을 시작하고 안정화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제도화, 국제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적(domestic level), 양자적(dyadic level), 그리고 국제적 수준(international level)을 고려하는 다면적 접근이 타당하다.

한국 호랑이(고려 범)의 생존을 확인하고 이를 지켜나가는 일은 한민족의 자긍심과 관련된 민족적 노력의 일환으로 남북한이 군사 및 정치적 불신의 장벽을 뛰어넘어 접경지역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는 초기협력의 좋은 정책대안이다. 동부 접경지역과 설악산 및 금강산지역을 연계하는 생태·역사·평화공원의 구상은, 남북한의 접경지역을 대표하는 광범위한 지역을 연계하는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에 평화, 역사, 생태, 문화를 포괄하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긴장완화와 교류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의제를 도출한다는 의미가 있다. 1982년 국내 최초로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이하 UNESCO)의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설정된 설악산 국립공원지역을 중심으로 북한의 6개 자연보호구의 하나인 금강산 지역과 철원일대의 비무장지대를 연계하여 UNESCO의 생물권 보전지역(Man and Biosphere: MAB, 이하 MAB) 및 세계문

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노력은 남북한 협력을 국제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크다. 접경생물권보전지역과 접경세계유산의 등재는 몇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부존자원을 이용한 지속가능한 발전, 남북한 상생과 협력의 추구, 그리고 자연자원의 세계화를 달성할 수 있다.

유엔생물다양성 총회는 현재 188개국의 회원국을 확보하고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유지, 유전자원 이용의 이익 공유, 자국 내 생물자원의 유전정보 소유, 유전공학 연구에 있어서 서식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유엔생물다양성 총회를 남북이 협력하여 비무장지대에 유치하는 사업은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한에게도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 협력을 위한 상징성 있는 노력이 될 것이다. 유엔생물다양성 총회의 남북한 공동개최는 생물학 분야의 협력이라는 기술적 의미와 경제적 이익의 창출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국가경쟁력의 강화, 국가이미지의 제고, 생태복지의 확장이라는 유무형의 이익을 창출한다. 환경보전에 대한 남북한의 공동노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협력에 힘입어 남북한의 대학과 연구소를 포함하는 학계, 민간단체, 종교계가 참여하고, 국제기구와 연계하는 일은 장기적으로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의 비무장지대 이전유치와 같은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비무장지대에 환경관련 국제연수교육기관의 설립과 이에 기초한 스마트그리드 협력은 낮은 수준의 기능적 협력을 발전시켜 군사안보문제의 일부를 해소하려는 데에 정책적 의의가 있다. 북한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자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우선 한국이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환경연수기관을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설립하여 남북협력사업을 구체화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을 일차 목표로 삼는다. 국제환경교육기관의 성공적 설립과 운영에 보조를 맞추어 북한의 에너지문제 및 핵개발 문제의 대안적 접근의 일환으로 동아시아 스마트그리드 협력을 제안하여 비무장지대를 스마트그리드 협력 사무국의 소재지로 활용한다. 북한의 산업개발, 경제성장, 핵투명성의 보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 동아시아 주변국가 공동으로 스마트그리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동아시아에 기능적 협력을 통한 신뢰구축, 협력의 강화, 그리고 공동체 구상에 장기적 포석으로 활용할 수 있다.

21세기 세계정치의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친환경 녹색성장이다. 남북관계도 이념적 선호와 별개로 친환경 성장전략의 틀에서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한 환경협력은 남북관계의 난항 속에서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개발과 협력 정책은 기존의 현실주의 이론에 기초한 협력의 문제 - 신뢰의 문제, 안보 딜레마, 협력의 상대적 이익의 문제 - 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환경분야의 협력으로 발생하는 국가 이익이 상대방을 위협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절대적 이익에 기초한 선의의 협력을 유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비무장지대에서 남북한이 주도하는 환경협력은 국제기구와 주변국의 동의와 협력에 기초하여 추진한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중심국가로 부상하려는 한국의 미래에 부합하고 북한에게도 새로운 기술을 전수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및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주변국가들을 포함하는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조는 통일한국을 대비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셋째, 환경협력은 역사, 문화, 관광, 기술, 경제, 평화 등을 포괄하는 다측면적 협력의 특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환경이라는 기능적 분야의 협력에서 출발하여 군사 안보와 에너지 안보에 이르는 신뢰구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1. 환경관련 국제연수교육기관 설립과 남북한 스마트그리드 협력

가. 제안배경

(1) 친환경 녹색성장이 미래 국제사회의 새로운 발전전략

- 수출주도형 또는 내수보급형 개발방식의 부작용에 주목한 국제사회는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새로운 대안으로 인식함.
-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산업개발과 환경보전을 연계한 산업간 협력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키는 전략으로 친환경 녹색성장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음.

(2) 북한 경제위기의 심각성으로 인한 대안 모색의 시급성

- 1990년대 이후 심각한 자연재해, 에너지위기, 식량난의 삼중고는 경제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녹색성장이 요구됨.
- 북한의 현재 경제난과 환경문제는 중화학 공업우선 정책과 폐쇄적인 자급자족형 경제체제에 기인하므로 친환경 신기술 도입을 통한 경제발전 전략이 요구됨.

(3) 한반도의 특수성을 극복하는 평화통일의 대안으로 녹색성장의 활용

-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한 공동번영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으로 녹색성장을 통한 남북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경제위기에 처한 북한도 친환경 발전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미래 전략으로 바람직하며 북한이 친환경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적절함.
- 남북한 환경협력을 통한 경제협력, 북핵문제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단계적 및 기능적 접근이 필요함.
- 환경기술 협력-경제협력-안보문제 해결이라는 기능주의적 접근으로 환경교육연수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경제협력과 에너지협력을 이루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안착시키는 지혜가 요구됨.

(4) 호혜적인 남북한 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국내외 여론의 지지 획득

- 남북한의 협력을 통해서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호혜적 상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환경분야 협력강화는 남한 내 여론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음.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 남북교류협력 사업에서 북한은 경제적 성과를 거두면서 북한체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분야의 협력에 적극 참여할 수 있음.

(5)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협력과 국제사회의 지원 획득

-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환경과 관련한 스마트그리드, 저탄소 청정에너지 등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선진 친환경기술을 교육하는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여와 남북한 평화를 동시에 달성함.
-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이를 통한 남북협력과 통일한국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북한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의 발굴이 필요함.
- 비무장지대는 전통적으로 한국전 휴전 이후 반세기 이상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청정자연으로 개발과 보존의 유인이 병존하는 바, 이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협력 사업의 발굴이 필요함.
- 비무장지대에 청정자연의 특성을 살리면서 남북이 공동의 경제적 협력을 추구하는 대안은 남북의 평화를 보장하는 상징성과 함께 실질적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음.
- 비무장지대는 여전히 국제법적으로는 휴전협정에 의거하여 유엔

군의 관할 하에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관국들이 동의할 수 있는 평화적 협력의 대안 개발이 필요함.

나. 주요내용

(1) 남북한 협력 시 환경의 중요성 표명과 환경관련 협의기구 구성

- 남북한 환경협력에 대한 기존의 양태를 보면 정부차원의 협력은 북한의 무응답 내지는 간접적 거절로 성사가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남북한 환경협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협력에서 환경 문제를 주된 아젠다로 설정하고 환경관련 협의기구의 구성을 제안함.

(2) 북한과 환경협력 시 민간단체와 국제기구의 협력을 유도

- 기존의 남북한 환경협력의 난제를 고려하여 학자, 환경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제3국에서 환경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함.
- 민간단체를 활용한 국제환경회의의 공동 개최 제의 및 환경전문가의 회의참여 등을 추진함.
-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이하 UNEP),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이하 UNDP), UNESCO,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이하 IUCN) 과 같은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남북한 환경협력의 출발점을 마련함.

- 기존청정 자연을 활용하는 기술과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기술을 북한에 전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확보함.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환경협력

-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북한을 비롯한 주변개발도상국 참여도 이에 준하여 구성하게 되면 다양한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음.
- 환경관련 연수기관의 설립은 남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북한은 협력자 형태로 참여하여 북한의 내부 환경문제를 극복하는 대안기관으로 활용함.
- 국내에서 이미 운영되는 환경교육기관은 분야별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동시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에 지방정부와 시민환경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함.

(4) 남북한 환경협력을 위한 비무장지역 내 환경클러스터 건설 추진

- 일차적 과제로 비무장지대의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환경관련 교육연수기관을 설립하고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인력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함.
- 비무장지대의 특정지역을 설정하여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을 건설하고 이를 남북한 상호협력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향후 북한의 친환경기술 수준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의 기여도를 넓히는 효과를 기대함.

(5) 북한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교육의 활성화

- 북한의 환경문제는 산림의 고갈, 수질 오염, 대기오염, 토지의 황폐화, 생물다양성의 다섯 가지 문제가 위기에 처해있는 바, 이에 대한 장기적 대책을 제시하는 차원에서도 북한은 실질적 이익을 거둘 수 있으므로 환경관련 연수기관의 설립은 이점이 있음.
- 북한의 환경관련 요원을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주변국의 참여자들로 구성되는 다국적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남한에 대한 경계와 북한주민 통제에 민감한 반응을 하는 북한에게 하나의 대안으로 평가됨.
-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① 기후변화대응, ② 스마트그리드를 포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함한 친환경 에너지, ③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환경공학, ④ 환경해양 및 환경 생물, ⑤ 친환경 소재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

(6) 북한을 포함하는 스마트그리드 협력의 제도화 추진

- 북한의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스마트그리드를 추진함.
- 온실가스를 절감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류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스마트그리드 기술의 협력거점으로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함.

(7) 남북환경협력을 다자화·국제화를 통해 추진하고 국제기구로 확대발전

- 환경협력을 시도함에 있어서 초기 남북양자협력을 위해 국제기구의 협력을 유도하고, 이를 확대발전시켜 지역 협력체로 발전시킴.
- 주변국과 에너지 협력을 통해 상호의존성을 확대하여 새로운 동아시아 다자협력 모델을 발전시킴.

다. 추진방안

(1) 국내적 차원

(가) 환경과 관련된 민간 및 공공부분의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이 참여

- 공공부분의 경우, 경기도 연천의 도립 환경센터, 울산시 북구 환경교육관, 천안환경교육센터 등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민간부분의 경우,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 남이섬환경학교, 충북환경교육센터, 맹산반딧불 자연학교 등이 있음.

(나) 국내여론에 긍정적 측면을 홍보

- 북한과의 환경협력은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북한의 핵개발과 같은 안보위기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홍보함.

(다) 국내 유관부서간 협의체를 구성

- 통일부, 외교통상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녹색성장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업무협조를 위해 정부기구를 구성함.

(2) 남북관계 차원

(가) 남북 환경협력기구를 구성

- 북한에 환경오염 예방 기술이전과 에너지 문제해결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사업과 같은 남북한의 환경 및 에너지 관련 협력의 강화를 위한 협력체 구성이 필요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나) 협력기구 내 전문분야별 위원회를 구성

- 북한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수질, 대기, 산림, 토양, 연안 해양의 주요 분야로 나누어 남북한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

(다) 남북한 경제협력과 병행하여 환경협력을 추진

- 북한이 자력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남한의 경제적,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남북경협과 병행추진함.
- 남북경협회의 시 환경협력 회담을 동시 개최함.

(라) 초기 남북한 환경협력은 낮은 단계의 협력부터 시작

- 남북한간 환경기준에 대한 상호협의를, 환경관련 정보와 자료 교환 및 공동조사, 환경전문가 학술교류와 같은 낮은 단계의 협력에서 출발하여 신뢰를 구축함.

(마) 초기협력의 강화에 따라 교육연수기관을 설립·운영

- 양자간 협력의 강화에 따라 환경연수기관을 설립하여 양자협력과 다자협력을 중복하여 남북한 환경협력의 국제화 및 제도화를 꾀함.

(바) 협력강화에 따라 스마트그리드 사업으로 협력 확대 및 강화를 시도

- 한 국가의 전기에너지 수급을 주변국과의 상호협조를 통해 조달

한다는 개념의 스마트그리드는 에너지 주권의 일부포기를 통한 국제레짐의 형성이라는 점에서 높은 단계의 협력임.

- 남한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이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는 시도는 새로운 차원의 남북협력 아이템임.

(3) 국제적 차원

(가) 직접적인 협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제기구와 제3국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활용

- 비무장지대 내 환경관련 교육연수기관의 설립도 초기에는 UNEP, UNDP, IUCN, 동북아 및 태평양 환경포럼(Northeast Asia and Pacific Environment Forum: 이하 NAPEF) 등의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남북한간 민간차원에서 추진된 직접 협력은 성사가 어려웠다는 점에서 제3국에서 초기 협력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국제기구, 비정부민간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공동분담의 원칙으로 추진

- 설립과정에서 재원과 기술을 지원할 때, 사업의 시행을 위해 공동참여 공동부담을 함으로 상호연계를 확대하고 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다) 교육연수기관 운영의 다국화로 북한의 적극적 협력을 유도

- 교육연수 프로그램의 작성과 운영도 남한 인력이 교육을 실시하고 북한 인력이 피교육자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와 피교육자를 다국적화하여 국제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추진함.
- 교육 훈련 이외에도 환경관련 학술회의, 환경관련 국제협력의 클러스터로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추진함.

(라) 스마트그리드 협력의 중심지로 주변국과의 유기적 협력을 추진

- 남북한 환경협력의 외연을 확대하여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을 참여시켜 동아시아 에너지 협력 레짐을 창설함.
- 북한이 전력에너지 자주권의 침해를 우려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전략을 구사함.

(마) 스마트그리드 협력을 통한 비무장지대 내 동아시아 협력 기구를 설립

- 협력의 제도화 성과로 비무장지대 내에 스마트그리드 관련 다자 기구를 설립하고 협력의 제도화를 완성함.

라. 로드맵

(1) 2010년

(가) 정부 내 TF를 구성, 사업제안의 구체화를 위한 기초연구

- 통일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외교통상부, 해당 접경지역 지자체, 환경관련 전문가 및 학자들로 구성된 TF을 구성함.
- 기초연구 과정에서 환경연수기관 설립과 스마트그리드 협력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 가능한 사업 항목의 세부 주제를 개발함.

(나) 남북당국자 간 접촉을 통한 협력사업 재개여부 타진

-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북한의 기대가 표출되고 있는 바, 장관급 또는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 환경협력의 새로운 사업의지를 확인함.
- 2010년 하반기 국내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제안할 수 있는 추진안을 작성하여 대화를 개시함.
- 핵심사업으로 환경협력 클러스터 건설과 동아시아 스마트그리드 협력사업을 제안함.

(다) 남북한 환경협력과 경제협력의 연계에 대한 여론 홍보

- 남북한 경제협력과 환경협력의 연계필요성을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지지를 확보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 국내의 환경관련 시민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참여를 유도함.

(라) 국제적인 지지와 사업 추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북 홍보

- 2010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 Initiatives: 이하 ICLEI) 세계환경회의를 통해 남북한 환경협력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유도함.
- 필요한 경우 연내로 정부 최고위층에서 담화, 기자회견 등의 형식을 통한 대북 사업제안의 형태로 대북의사를 공식타진함.

(2) 2011년

(가) 남북한 환경관련 고위 당국자간 실무 합의 도출

- 남북한 환경협력의 핵심사업으로 환경협력 클러스터 건설에 대한 원칙합의 및 세부항목(환경클러스터 건설 위치, 경비부담, 완공일정 및 교육실시 일정 등 주요사항에 합의) 논의함.
- 장기적인 녹색성장을 위해 스마트그리드 협력에 대한 협의체 구성을 고위급차원에서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함.
- 장기적으로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동아시아 다자협력에 기초한 스마트그리드 협력을 제안함.

(나) 환경클러스터 건설 업무를 위해 개성공단 경험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 남북한은 이미 개성공단의 건설에 따른 실무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양측이 사전의 경험을 활용함.
- 환경클러스터 건설에 따른 실무 협의의 정례화 및 제도화를 통해 건설일정을 확정추진함.

(다) 남북한 환경관련 실무당국자의 분야별 남북환경협력기구 구성 및 실무회담의 정례화 및 제도화

- 환경클러스터 설립 이후 업무추진을 위하여 수질, 대기, 산림 및 토양, 연안 해양 등 세부 분야의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함.
- 환경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집단을 중심으로 환경연수 교육프로그램을 논의하여 운영 등에 관해 합의함.
- 환경연수 프로그램의 운영과 세부 일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때까지 실무자 회담을 정례화함.

(라) 국제사회에 대한 남북한 환경협력과 동아시아 스마트그리드 협력의 정당성 홍보를 통해 남북한 스마트그리드 추진 위원회 구성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와 번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환경협력의 정당성을 홍보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 북한의 스마트그리드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통한 남북한 스마트 그리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무자 협의를 함.

(마) 남북환경협력의 다자화·국제화 시동

- 주변국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므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명분과 실리를 충족시키는 전략적 제후를 추진함.
-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을 활용하여 동아시아 스마트그리드협의체 구성을 준비함.

(3) 2012년 이후

(가) 국제적인 환경연수프로그램을 위해 교육참가자 모집 및 시범운영

- 유엔의 교육연수기관인 유엔 훈련조사연구소(United Nations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 이하 UNITAR) 등을 통해 국제적인 교육연수생을 모집하여 남북환경협력 연수프로그램을 가동함.
- 북한에서 교육연수생을 받아들여 북한에 환경관련 기술이전을 추진함. (이 연수기관과 프로그램은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것으로 추진함으로써 북한 당국자의 경계를 최소화)

(나) 남북한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스마트그리드 협력추진체 구성

- 두만강 개발 사업에 참여하였던 중국, 러시아, 북한, 한국, 몽골, 일본 등의 주변국가들로 구성되는 스마트그리드 다자협의체를 구성함.
- 기술적 지원과 다자협의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 미국의 참여를 유도함.

(다) 남북한 환경협력의 정당성을 위해 국제적 행사 활용

- 2012년 개최될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UNFCCC)’ 또는 향후 개최될 국제환경회의를 비무장지대 내 환경클러스터에 유치함.
- 환경관련 국제회의 또는 학술회의 개최는 남북한 환경협력 및 동아시아 스마트그리드 협력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홍보하는 세계적인 기회로 활용되어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함.

(라) 환경클러스터 내 동아시아 스마트그리드 협의체 사무국 유치 추진

- 스마트그리드 협의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스마트그리드 사무국을 비무장지대 내 환경클러스터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함.
- 남북한의 기능적 협력을 한반도 평화와 번영, 궁극적으로 국제사회 협력의 모범사례로 확대발전시킴.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표 IV-1] 환경관련 국제연수교육기관 설립과 남북한 스마트그리드 협력방안 로드맵

		2010	2011	2011	2012	2012	2013	2013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남북관계 및 준비	고착 해소	남북대화 및 기본합의			남북관계 활성화 및 국제사회의 공인	
국내 차원	TF 구성	○						
	세부사업 개발		○					
	여론의 지원 확보		○					
	교육참가기관 모집		○					
	합의서 국회비준							○
	특별법 제정 공포							○
남북 차원	고위급 의사타진(클)		○					
	클러스터 사업제안			○				
	실무위원회 구성(클)				○			
	사업추진단 구성(클)					○		
	고위급 의사타진(스)					○		
	추진위원회 구성(스)					○		
국제 차원	주변국 참여유도(클)					○		
	국제기구 협력(클)						○	
	국제환경회의 유치					○		
	스마트그리드 협의체						○	
	스마트그리드 사무국							○

마. 기대효과

(1) 남북한 긴장완화를 통한 평화의 보루 확보와 경제적 실리 추구

- 비무장지대 내에 남북환경협력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남북긴장완화와 실질적 평화의 보장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주변국의 지원과 참여를 획득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공인받을 수 있음.
-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환경관련 연수기관의 설립과 운영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북한은 물론 남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평화는 물론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임.

(2) 북한 퍼주기라는 여론의 비판 대신 지지를 받는 대북협력

- 북한과의 협력사업은 한국이 자금을 충당하고 북한은 수혜를 받는 형태로 전개되기 때문에 국내여론으로부터 “북한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환경협력사업은 북한에 현금 유입보다 생존에 필요한 기술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형태의 지원임.
- 남북한 환경협력의 성공적 추진은 녹색성장과 기여외교와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합리성이 보장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 북한에 환경관련 신기술을 보급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경제 정상화에 도움이 되고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모범적 협력사업임.

(3) 동아시아 환경협력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전기

- 비무장접경지대를 국가발전의 거점지역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을 통해 국제교류, 환경기술, 남북협력의 중심으로 집중 육성하고 나아가서 동아시아 환경기술의 중심지로 발전시킴.
-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 독일, 스웨덴 등 환경 선진국의 인력도 참가시킴으로써 국제적 지원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에 공인된 환경연수기관으로 만들.

(4) 대북환경협력을 통한 기여외교와 환경외교를 통한 국제 제고

- 기여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외교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앞서 있는 환경관련 기술과 경험을 주변 국가와 공유하는 장을 제공함.
-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환경연수의 지역 허브로 자리 잡고 이를 발전시켜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국가도 연수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환경연수의 국제적 지위를 확보함.

(5) 남북한의 민간교류의 확대라는 기능적 협력의 확대

- 환경관련 교육연수기관의 설립 운영에는 제안단계와 협상단계에 남북한의 지방정부와 민간기술자가 참여하여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기능적 협력을 강화함.
- 한국의 환경관련 공기관, 공기업, 시민단체, 교육기관의 인력을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참여시켜 국내에 축적된 사회자본을 최대한 활용함.
 - 국립환경인력개발연구원 등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 매립지 관리공단, 환경단체 등 다수의 축적된 인력을 활용함.

(6) 스마트그리드 협력의 제도화는 새로운 동아시아협력 모델

- 스마트그리드 관련 국제협력기구의 설립과 운영은 중국과 러시아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의 협력모델이 될 수 있음.
 - 북한과 전통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해 온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와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추진을 용이하게 주도함.
- 비무장지대를 활용한 남북한 환경협력 사업은 주변국의 지원을 획득하는 협력모델로 미국과 일본과 같은 우리의 우방은 남북협력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신뢰를 확보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7) 북한의 비핵화 담보와 북한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 국제협력을 통한 안정된 에너지 지원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명분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
- 환경과 에너지문제의 해소는 북한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하여 정상국가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게 함.
-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한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달성과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추구함.
 -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오던 해양과 대륙이 접촉하는 접이지대의 특성을 국제협력에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동아시아 에너지 협력의 중심으로 부상시킴.
 - 북한이 낙후된 경제를 평화적 방법을 통해 재건하기 위해서 북한이 가지는 국제정치적, 지정학적 중요성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평화와 번영을 추구함.

2. 호랑이 이동통로 개설

가. 제안배경

- 한국 호랑이의 학명은 『시베리아호랑이 (Panthera tigris altaica)』이며 시베리아 호랑이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베리아 지역에는 한국 호랑이가 부재함.
- 과거 우리의 영토였던 발해 지역의 아무르강, 우스리스크, 두만강 인근에 약 350~400마리의 고려범(호랑이)이 생존하여 인근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현재 확실한 증거는 부족하지만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접경지에 소수의 고려범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호랑이를 봤다는 목격자가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으며 호랑이 발자국과 같은 구체적인 물증도 확인됨.
 - 러시아, 미국 등지의 호랑이 전문가들이 비무장지대 접경지를 방문 조사하여 호랑이 발자국 등을 확인한 결과 러시아 전문가들이 자국 신문에 ‘한국에 한국 호랑이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발표함.
 - 그러나 이들 한국 호랑이들은 지역적 고립에 따른 근친교배로 인한 항원체 열약 증상으로 호랑이 본연의 모습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비무장지대 접경지대에 한국 호랑이의 이동통로 개설, 통로 입·출구에 센서와 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호랑이의 이동을 감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시하여 향후 호랑이의 자유로운 이동과 번식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함.

- 이동통로 개설을 위해 비무장지대 지역의 철책선을 약 5m 가량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한 바, 만약 이 광경이 세계 뉴스로 방영되었을 경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기대함.
 - 이는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모습과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유사한 상징적인 모습을 시현하는 효과 달성이 기대됨.
 - 호랑이 등 야생동물을 배려하는 모습을 시현함으로써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이 가능함.
 - 호랑이의 활동을 감시하여 향후 관리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한국 야생호랑이 복원에 기여함.
 - 호랑이를 남북간 대표 동물로 승화시켜 한민족의 자긍심과 진취성을 국내외적으로 과시함은 물론 남북 화해협력에 긍정적인 동인으로 활용함.

[그림 IV-1] 발견된 호랑이발자국



[그림 IV-2] 강원도 평화의 댐 인근에서 발견된 호랑이발자국(1998.2.26)



나. 주요내용

- 국내외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대표적인 동물로 호랑이가 꼽히는 바, 한국 호랑이는 극동지역 러시아에서는 시베리아 아무르 호랑이, 중국에선 동북호, 북한에선 조선범, 남한에선 고려범으로 지칭됨.
- 이 호랑이 종은 모두가 발해와 만주에서 남한지역까지 분포되었던 예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 살아온 고려범으로서 우리 민족의 대표동물이며 한국 호랑이의 생존을 확인하는 일은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되찾는 노력의 일환임.
- 한국 호랑이는 일찌감치 멸종위기에 처해있었으며 특히 일제 강점기 때인 1917년부터 1942년 사이에 약 87마리의 호랑이가 해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로운 짐승이라 낙인찍혀 사살된 기록이 조선총독부 시절 연계통보에 남음.

- 일제는 우리나라에서 인재가 배출되지 못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백두대간 산맥에 쇠말뚝을 박아 민족의 정기를 끊으려 했고 우리 민족이 호랑이를 정신적 지주로 섬겼던 것을 알게 된 이후 우리 민족의 구심점인 호랑이 말살 정책을 실시함.
- 그러나 러시아 발해에서부터 백두대간을 따라 지리산까지의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한 한국 호랑이를 모두 사살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실패하였으나 호랑이 개체를 줄이는 데는 성공함.

[그림 IV-3] 일제 강점기 호랑이 말살정책 추진 사례



- 남북한이 한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으며 우리 민족의 구심점으로 삼을 수 있는 대표동물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대표동물은 독수리, 러시아 대표동물은 곰, 중국은 팬더곰이며 우리는 호랑이를 우리 국가와 민족의 대표동물로 승화시켜야 함.

- 러시아 아무르 호랑이, 시베리아 호랑이의 모습은 동종이 약 250~300 마리 번식하고 있다고 알려진 시베리아 하산을 비롯해서 구뚜소브까, 비치바야 지역에서 볼 수 있다고 하나 은폐와 엄폐에 뛰어난 야생 고려범(호랑이)을 실제로 식별하기는 매우 어려움.

- 한국 내에서는 평화의 댐 인근의 산악 지역에서 수차례 호랑이를 보았다는 목격자가 출현하였고 호랑이의 발자국과 영역 표시 흔적 등의 구체적인 물증이 발견됨.

- 따라서 남한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에서 호랑이 영역표시 지역을 중심으로 호랑이 통행 가능성이 높은 길목을 찾아 야생 호랑이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무인센서, CCTV, 카메라 등 약 50여대를 설치 운영함.

- 한 지역을 6개월에서 1년 정도에 한 번 통과하는 호랑이 습성을 감안하여 판단했을 경우 약 2년간의 감시·촬영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다. 추진방안

(1) 국내적 차원

- 정부 및 민간단체의 지원과 후원을 확보하여 조직적인 한국 호랑이 개체 번식과 보호 활동을 전개함.
- 우선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에 호랑이 이동통로를 건설하고 동 지역에 각종 센서와 카메라 등 감시 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함.
 - 인력은 센서와 카메라 운영, 점검자 등 4명이 필요하며 2인 1조 총 2조로 1주일 간격으로 운영함.
 - 이 경우 5일을 주기로 카메라 촬영 확인 작업을 실시하게 되며 2년간 현지 산악지역에서 야영하는 것이 필요함.
- 호랑이가 센서에 포착되거나 카메라에 촬영될 경우 호랑이 개체 1마리를 생포하여 마취시킨 후 목에 발신기를 부착하여 방사함.
- 이후 호랑이의 개체 확인, 활동지역 모니터링이 가능하여 호랑이 개체 보호와 확대하는 노력에 기여하는 것이 가능함.
- 호랑이가 발견되어 개체가 번식할 가능성이 확보되면 정부와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합동으로 호랑이를 한국의 대표동물화 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함.

(2) 남북관계 차원

- 호랑이 이동통로 개설을 위한 남북간 사전 협의 및 장소 지정 등

의 협력이 필요함.

- 이를 통한 남북간 정부 및 민간 대화채널 확보를 시도하고 비정치적인 부분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추진함.
- 이 경우 남북한 공동 감시 및 추적 작업 등 호랑이 개체 확산을 위한 실무적인 협력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호랑이를 한반도 대표 동물로 승화시키는 본격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3) 국제적 차원

- 호랑이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비무장지대 철책선을 제거하는 장면은 전 세계 뉴스로 이목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비록 독일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는 장면과는 거리가 멀어도 호랑이 및 야생동물을 배려하는 대한민국 위상을 강화하면서 이를 통한 남북협력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는 것이 가능함.
 - 우리는 동물학대국 이미지에서 벗어남은 물론, 동물을 먼저 배려해주는 선진 국민임을 전 세계에 과시하여 국가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 궁극적으로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을 국제적인 야생동물 안전·보호지역으로 부각시켜 국제 언론의 관심과 세계시선을 유도하여 한반도 평화 고양에 기여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 호랑이와 관련된 단체로 「(가칭) 세계호랑이소년단」 및 「(가칭) 타이거 클럽」 등의 창단이 가능함.
 - 동 단체를 지원할 경우 제이씨 클럽과 같은 국제적인 클럽으로 성장이 가능함은 물론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과 성인 클럽의 발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호랑이 관련 국제적 지원과 한국 내 개체 확보 노력을 경주함.
 - 2009년 9월 이르쿠츠크에서 개최된 안보포럼에서 푸틴 러시아 총리가 ‘한국에서 호랑이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일은 내가 들어 줄 수 있는 일이며 나의 권한이다’라고 언급함.
 - 이에 경기도 연천군에서 「(사)한국호랑이보호협회」와 한국호랑이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러시아 푸틴총리가 이명박 대통령님께 (사)한국호랑이보호협회와 경기도 연천군에게 러시아 자 연청이 호랑이 3마리를 보낼 예정이었으나 이후 정부 지원이 부재하여 사업 추진이 답보 상태임.

- 또한 호랑이 이동통로가 개설된 주변 접경지역에서는 「(가칭) 동북아 멸종위기 지속관리 세계 생태 학술대회」 등 국내,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최적지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어 다양한 활용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판단됨.

라. 로드맵

(1) 2010년 하반기

- 정부 유관기관 및 관심 민간단체를 접촉, 사업의 타당성 전달 및 사업추진 기반 조성
- 사업 추진관련 책임자 및 핵심 사업담당 인력 물색 및 배치
- 관련 내용의 대외 홍보방안 연구

(2) 2011년

- 대외 홍보 개시
- 주요 설비 선정 및 설비 설치 지점 선정
- 설비 설치 관련 북한과 의견 및 방법 조율

(3) 2012년 하반기

- 남북이 구체적 협력 논의를 마련하여 국내외적으로 홍보
- 공사 개시
- 소요장비 테스트 및 운영 방안 확정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4) 2013년 상반기

- 통로 준공 및 장비 설치와 시험가동 개시
- 남북한간 향후 구체적인 운영 유지관리 방안 협의
- 해외 홍보 개시

(5) 2013년 하반기

- 감시 설비 및 장비 본격가동
- 지속적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실시
- 본격적인 해외 홍보 및 관련 이벤트 실시

[표 IV-2] 호랑이 이동통로 개설방안 로드맵

		2010	2011	2011	2012	2012	2013	2013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준비 단계		추진 단계		실현화 단계		
국내 차원	사전조사 기획	○						
	관련조직 및 인력 확보와 총책임자 선임	○	○					
	정부 부처·부서별 협조 및 예산 확보		○	○				
	홍보 및 대외협력 방안 강구		○	○				
	입지 선정 및 장비 연구	○	○	○				
	장소확정 및 공사 일정 확정		○	○				
	공사 개시 및 종료			○	○	○		
남북 차원	필요장비 설치 및 시험 감시 실시				○	○		
	통로 준공 및 감시 장비 공식 가동				○	○		
	남북간 협력 의지 지속 확인						○	○
	지속적 유지 관리 계획 수립 및 집행							○
국제 차원	국내외 홍보계획 수립 및 실시					○	○	○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마. 기대효과

- 호랑이와 야생동물 이동 통로개설을 위해 비무장지대 철책선 일부를 제거하는 모습이 국제 언론에 공개 되었을 경우,
 - 비록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극적인 모습을 시현하기는 어려워도 전 세계에 아름다운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기에는 충분할 것임.
 - 또한 동물학대국 이미지에서 벗어나 호랑이 및 야생동물을 배려하는 1등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남북한 공동으로 고려범을 우리 민족의 대표동물로 소개한다면 남북의 정신적 화해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 호랑이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1998년에 개최된 『제2차 유엔주최 두만강 환경 워크숍』에서 『(사)한국호랑이보호협회』에 북한에서 서식하고 있는 호랑이 개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제안을 제시함.
 - 따라서 남북이 호랑이 사진촬영 및 향후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한국 야생호랑이 복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 남북간 교류협력의 기회로 활용이 가능함.
 - 궁극적으로 남북한 민족의 대표동물로 자긍심을 일깨울 수 있는 호랑이 생존모습 이슈를 국내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가능함.

- 이런 다양한 활동과 상황을 『(사)한국호랑이보호협회』를 통해 내셔널지오그래픽, BBC, CNN, 뉴욕타임스 등 국내외 우수 언론과 방송사에 제공하여 국제적 관심을 유도한다면 남북한 화해 분위기 조성에 기여가 가능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3. 동부 비무장지대-설악-금강연계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가. 제안배경

- DMZ 일원은 국토분단이라는 역사의 유물임과 동시에 분단으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보존·복원된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지역으로, 한반도 평화·생태·역사·문화공원조성 사업의 최적지임.
 - 백두대간, 도서연안과 함께 한반도 3대 핵심생태축의 하나로 국토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중요지역임.
 - 이 중 특히 설악산-금강산-철원을 연계하는 지역은 한반도 생태계의 보고이자 생태네트워크 요소 중 가장 핵심지역으로 통일후 국토환경보전 및 관리의 가장 핵심지역임.

- 남북긴장완화에 따른 교류활성화로 인해 남북간 공동 관심지역에 대한 상징적·실제적 협력의제 도출 및 추진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증대됨.
 - 북한강 수계상 임남댐 건설로 인한 수량부족으로 탁수 악화 등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설악산-금강산-철원지역을 포함한 평화·생태·역사·문화차원의 교류 필요성이 증대됨.

- DMZ 일원을 대표하는 설악산-금강산-철원지역은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보전과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높으며, 양국의 협력하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 MAB위원장 명의의 서신을 북한의 MAB위원장에게 전달(2001.4)하여 DMZ의 가치와 보전필요성 강조,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제안함.
 - 행정자치부는 군사보호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그동안 상대적으로 개발에 소외된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접경지역 종합계획(2003-2012)”을 마련 시행함.
 - 남북환경협력사업으로 DMZ 생태계 보전, 남북공동의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등 보전 필요성이 국회, 언론 등 각계에서 제기됨.
- DMZ 일원을 대표하는 지역 중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보전과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됨.
- 평화·생태·문화·역사적으로 상징적·실체적 역할을 수행할 설악산-금강산-철원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남북간의 협력하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음.

나. 주요 내용

(1) 기본구상

- 설악산-금강산-철원 지역의 공원조성을 위한 조사, 계획 수립, 활성화 차원에서 주요내용을 설정하고 추진함.
 - 평화·생태·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함.
 -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및 국제기구 유치 추진을 위한 지속적 관심 증대를 유도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 평화·생태·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UNESCO MAB개념을 활용한 핵심, 완충, 전이지역 설정 및 보전·발전·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추진함.
 - 생태, 역사·문화자원 조사를 위한 조사체계를 구성함.
 - 환경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소를 고려한 조사범위를 설정함.
 - 개괄적인 자원 조사, 분류 및 분석을 추진함.
 - 평화·생태·역사·문화공원 구축 대상지역을 설정함.
 - 평화·생태·역사·문화공원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추진함.

-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 및 국제기구 유치 추진을 통한 관심을 유도함.
 - 동 지역의 지속적인 교류 및 활성화를 위한 추진협의회를 구축함.
 - UNESCO의 생물권보전지역, 문화·역사자원보전지역으로 지정·추진 및 세계를 대상으로 상징적인 평화지역으로 홍보를 활성화함.
 - 인식제고를 위한 탐방계획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함.
 - 국제적인 평화·생태·역사·문화지역으로 위상 확립을 위한 국제기구 유치 등 홍보를 활성화함.

[그림 IV-4] 설악산-금강산-철원 연계 개념도



(2) 추진전략

(가) 지역자원을 이용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

- 지역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발전을 위해 품질경제(quality economy)를 구현함.
- 지역의 농림업, 상업, 그리고 제조업체간의 사업동반자관계 (business partners)를 공고히 하며 지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로고(logos)를 개발 활용함.

(나) 남북간 상생과 협력을 추구

- 남과 북의 협력으로 남북 공히 도움이 되는 전략과 대안 개발을 위해 남과 북의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 추진위원회에는 국제기구의 대표나 국제적인 전문가를 초청하여 위원이나 자문역으로 활용할 수도 있음.
- 추진위원회 산하에는 해당 지자체가 참여하는 실천 위원회를 두어 실천적인 대안을 발굴하고 시행함.

(다) 지역자원 가치의 세계화를 추진

- 세계유산이나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하여 지역자원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국제적인 관심과 배려 하에서 지역발전을 추진함.
- 특이한 생태자원의 보전, 전쟁과 평화 그리고 역사와 문화라는 요소를 모두 포함한 세계유일의 지역으로 세계적인 생태관광지 개발을 위한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함.

다. 추진방안

(1) 네트워크 전략 계획 수립

- 금강+동부 비무장지대+설악 연계 네트워크를 구상하여 기본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단계로서 공간네트워크 구상, 관광네트워크 구상, 국제 가치화 방안(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지역협력 방안, 공동협력체 방안, 기타 등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임.

(2) 추진위 구성 및 실천전략 실행

-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천전략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단계임. 추진위원회는 유관 남북기관(환경부, 문화재청, 통일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유네스코(남+북), 유관 전문가 등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함.
 - 추진위원회 하부에는 남북 강원도와 관련 시와 군, 그리고 현대 아산 등이 참여하는 실천위원회를 둬.
- 추진위원회에서는 우선 기본전략 구상, 접경생물권보전지역 또는 세계유산 지정 추진, 자연 및 인문자원 조사 발굴 및 가치화, 협력체 조직 구성, 국제 홍보, 기타 등의 업무를 추진함.

(3)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등 국제적 지정

-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등으로 지정받아 지역자원을 세계적 자원화하는 단계임.
 - 기존 생물권 보전지역을 철원지역을 포함한 남북 비무장지대와 금강산, 설악산 권역으로 확대하여 지정을 신청함.
- 이와 함께 이 지역의 주요 자연자원을 묶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을 신청, 설악산이 과거 자연유산지정에 실패한 경험이 있으나, 금강산과 비무장지대와의 연계를 통하여 재신청할 경우 가능성 있음.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표 IV-3]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유산의 지정절차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절차	세계유산지역 지정 절차
⇒ MAB 회원국: 신청지역 선정	⇒ 1차년도 9.30 신청서 잠정안을 WHCentre에 제출
⇒ MAB 국가위원회: 신청 관련 검토 및 결정	⇒ 1차년도 11.15 WHCentre의 잠정안 검토완료 및 보완요구
⇒ MAB 국가위원회: 신청서 작성, 관련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유네스코 MAB 사무국에 제출 (매년 5월 30일까지)	⇒ 2차년도 2.1 정식신청서 제출
⇒ MAB 사무국: 신청서류를 전문가에게 송부, 자문위원회 회의 30일 전까지 의견과 권고내용을 사무국에 통보	⇒ 2차년도 2.1~3월 서류상 적격한 신청서를 ICOMOS, IUCN에 이첩
⇒ MAB/ICC: 지정 여부 결정	⇒ 2차년도 5.1 추가보완자료 및 정보 1차 제출
⇒ UNESCO 사무총장: MAB/ICC의 결정을 관련 국가에 통보	⇒ 2차년도 5월~12월 ICOMOS와 IUCN의 정밀심사, 현지실사 실시 및 보고서 작성
⇒ MAB 사무국: 해당 MAB 국내위원회에 관련 서류 송부	⇒ 2차년도 12.1 추가보완자료 2차제출
⇒ MAB 국가위원회: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자에게 인증서 전달	⇒ 2차년도 12월~3차년도 3월: 유산 적격성을 판단하는 내부회의
	⇒ 3차년도 6월 WH Committee 회의 심사

(4) 관리·실천계획의 수립

- 생물권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된 후에는 동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실천계획을 수립, 관리계획은 관리목표, 분야별 사업별 관리계획, 계획의 집행전략 등이 포함되도록 함.
- 관리계획은 분야별 목표(자연, 인문분야별 목표), 개별 사업별 목

표(각 분야별 개별사업과 목표) 등 관리목표를 구체화함.

- 관리계획에는 ① 공간계획, 구분된 구역별 관리 및 활용원칙, 복원·보전계획, 시설물 계획, 기타 계획, ② 자연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환경교육 자원화, 환경해설 자원화, 생태관광 자원화, ③ 주민참여 자원관리 및 활용, 이견 해소방안, 참여 활성화방안, 지역협력관리계획, ④ 생물권보전지역 장소마케팅(동·식물 브랜드화 등) 및 품질경제(quality economy), ⑤ 유·무형 문화 발굴 및 보전관리계획, ⑥ 국제화 및 네트워크, ⑦ 기타 필요한 계획 등이 포함됨.

- 관리계획의 집행방안에는 ① 사업항목 단계별 사업화 전략(각 단계의 주요 사업별, 추진원칙과 방법 등), ② 소요사업비(각 단계의 주요 사업별 소요사업비 추정), ③ 사업화 재원조달 방안(주요 사업의 추진방식, 소요사업비 조달 방식 등), ④ 제도적 보완 방안(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정비, 보완방법과 절차, 개선안 등), ⑤ 지속적 관리운영계획(지속적인 사업추진 방법), ⑥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됨.

(5) 실질적 사업화

- 구체적인 사업화를 통해서 이 지역의 품질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부단한 사업실적의 평가와 개선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

- 동 지역의 환경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고 세계평화를 추구하는 세계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구현함.

라. 로드맵

(1) 2010년 하반기

- 기본 구상과 전략의 수립작업 착수
- 해당지역 국립공원 지정방안 검토

(2) 2011년

- 기본전략을 마련하여 북한에 제안
-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대북 제안
- 해당지역 국립공원 지정절차 착수
- 국제투자 유치 및 국제대회와 국제기구의 유치 방안 검토

(3) 2012년

- 해당지역 국립공원 지정 완료
- UNESCO의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신청과 추진
- 세계자연유산지역 지정 추진

○ 국제대회 및 국제기구 유치 추진

○ 국제투자 유치 추진

(4) 2013년

○ 지역의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완료

○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 및 실천계획의 남북 공동 수립

○ 국제기구 등 설립을 위한 준비

(5) 2014년

○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화의 시행

○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계획의 수정과 보완

○ 품질경제의 실현으로 남북화해 상생과 지역발전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표 IV-4] 동부 비무장지대-설악-금강연계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방안 로드맵

		2010	2011	2011	2012	2012	2013	2013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남북관계 현상 지속		남북관계 대화 개시		남북관계 활성화		
국내 차원	기본구상안 마련	○	○					
	권역계획 수립	○	○					
	추진위원회 구성			○				
	MAB 신청서 작성			○	○			
	세계유산 신청서				○	○		
	관리계획 수립					○	○	
	사업화 전략 구상						○	○
	국립공원 지정		○	○				
	평가와 개선							○
남북 차원	추진 대북 제안			○				
	추진위 구성				○	○		
	지정 공동신청				○	○	○	
	관리계획 수립					○	○	
국제 차원	UNESCO					○	○	○
	국제투자유치							○

마. 기대효과

- 남북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모델 구축방안으로서 통일을 대비한 국가정책수립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이 가능함.

- 남북한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상존하는 다른 부분과 달리 환경 부분은 양국이 환경보전이라는 대명제를 부담없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실제적인 양국협력체계 구축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음.
- 남북한 개별적으로 추진했던 관광사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공 및 국제적 관광지역 구축으로 남북 교류 활성화에 기여함.
 - 경관 및 명승지 탐방 관광에서 국제적으로 유일한 평화·생태·문화·역사자원 관광으로 개념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함.
 - 경원선 복원·복구 시기 단축 및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계 사업 활성화에 기여함.
 - 동 지역의 상징적·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른 외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함.
- 남북한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상호호혜적 이용 방안에 대해 합리적 의사결정 및 지속가능한 이용합의 도출로 양국간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
 - 수자원의 경우, 남한강은 북한에서 발원하여 흘러드는 수자원이 많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북한에서 기인하는 수량이 많아질 경우 이에 대한 공동활용의 원칙 및 방안 합의 도출이 필요함.
- 동북아 중심 국가를 표방하는 국가정책에 부합되며, 통일 후 남한, 북한,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지역 생태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에 선도적 역할 수행 가능함.
 - 한반도의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도서연안을 포함하여 통일 후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두만강, 압록강지역과 중국 동북3성 지역의 습지지역, 러시아의 연안지역을 아우르는 생태네트워크 구축시 주도적 역할 수행 및 이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가 가능함.

- 남북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모델 구축방안으로서 통일을 대비한 양국협력국가정책 수립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이 가능함.
- 남북한 개별적으로 추진했던 관광 사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공 및 국제적 관광지역 구축을 통한 남북 교류 활성화에 기여함.
 - 한반도 생태-역사-평화공원 조성과 함께 남북한 및 국제기구 협력하의 체계적 자연자원 관리가 가능함.
 -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등을 활용한 품질경제(quality economy) 구현으로 지역발전을 유도함.
 - 동 지역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탈바꿈하고 접경시장 효과를 창출함.
- 남북한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상호 호혜적 이용방안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 및 지속가능한 이용합의 도출로 양국간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
- 남북대화 채널을 강화하며 남북협력의 성공사례를 도출함.
 - 동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파생적 남북환경협력사례 도출이 가능함.
 - 남북 협동 한반도 생태평화연구원 건설: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적응대책 등을 연구함.

- 북한강 수계 수자원 공동이용에 대해 협력함(임남댐 방류와 수륙 생태 관광 루트개발 등).
- 국제기구 및 국제대회의 유치 (유엔 산하의 기구, 2018 평창동계 올림픽 등)
 - 기타: 대규모 국제투자 및 행사 유치 가능, 한국방문 외국인을 위한 볼거리를 제공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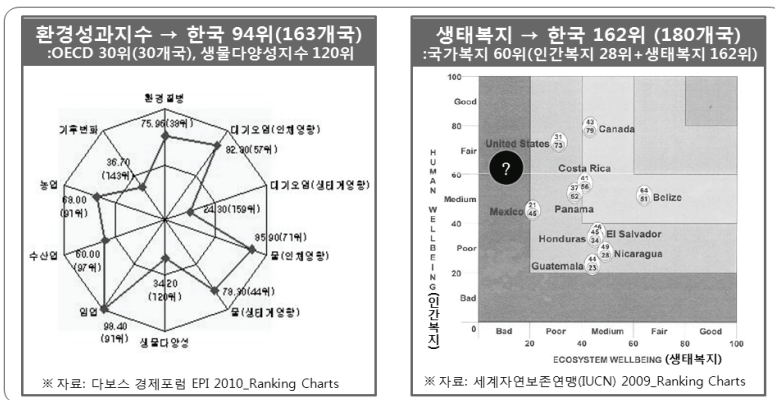
4. 2014년 제12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총회 남북공동 유치단 구성 및 비무장지대 개최

가. 제안배경

(1) 대한민국의 생물다양성과 생태복지 위상을 알리기 위한 측면

- 한민족은 지구상에서 가장 생태적이고 문화적이며 실용적인 삶을 살아온 민족으로서 현대사를 거치면서 남북은 상반된 다른 형태의 국가체제로 갈라져 다양한 부분에서 현격한 차이를 나타냄.
- 대한민국은 북측과는 비교되는 엄청난 경제성장을 통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만 국가 간의 국력의 기준이 되는 생태복지는 조사대상국 180개국 중 162위, 환경성과지수 163개국 중 94위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있음.

[그림 IV-5] 한국의 환경성과지수와 생태복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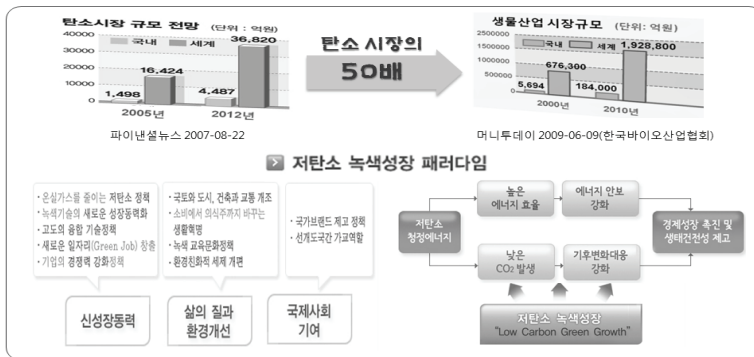


- 이에 생태복지 선진국 진입을 위한 국민들의 생태환경에 대한 의식변화가 절대 필요하게 되었으며 생태복지 실천방안으로 민간 차원에서 유엔 생물다양성총회 유치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게 됨.

(2) 탄소시장을 넘어 미래전략산업의 중심에 있는 생물산업적 측면

- 탄소배출권 확보가 국가경쟁력 이슈로 등장하면서 대한민국 녹색성장산업에는 탄소시장과 신재생에너지 위주의 저탄소 녹색성장이 화두가 되었지만 선진국들은 10년 전부터 탄소시장을 선점해 왔음.
- 1992년 브라질 리우 유엔 환경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이 만들어졌으며 기후변화협약에서 탄생한 탄소시장은 선진국들에 의해 선점되었으며, 탄소시장의 대안으로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생물자원을 활용한 생물자원산업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음.

[그림 IV-6]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



- 2007년 6월 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부부의 “한국의 경쟁력과 교육”을 주제로 한 대담에서 엘빈 토플러는 대한민국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IT 다음으로 생태학적인 복지, 건강, 의약품 등을 통한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역설하였음.
- 세계적으로 국가간 생물주권 및 생물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생물시장은 탄소시장의 수십 배 시장이며, 미스킴 라일락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정향나무, 전 세계 크리스마스 트리로 사용되는 구상나무, 세계 밀재배의 최고 종자로 노벨상을 받게 한 앓은뱅이 밀 등 우리나라 자생식물이 해외로 유출되어 고가로 역수입되는 현실임.

(3) 2010년 유엔 ‘생물다양성의 해’에 생물다양성협약 공로상 수상측면

- 2010년은 유엔이 정한 ‘생물다양성의 해’이며, 제10차 유엔 생물 다양성협약 총회가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해로서 2010년은 전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과 생태 환경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부각되고 있는 시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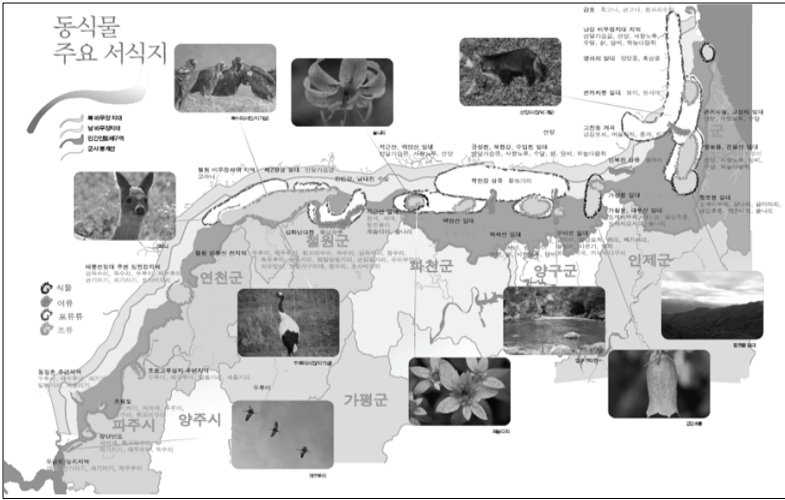
[그림 IV-7] 2010 생물다양성의 해



- 2010년 8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아흐메드 조글라프 사무총장으로부터 대한민국 생태복지 162위라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생물다양성협약 공로상을 수상하였는데, 이를 생태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 생물다양성의 해에 생물다양성협약 공로상을 받은 대한민국은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총회 유치를 통해 생태복지 후진국에서 최단시간에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을 모색해야 할 것임.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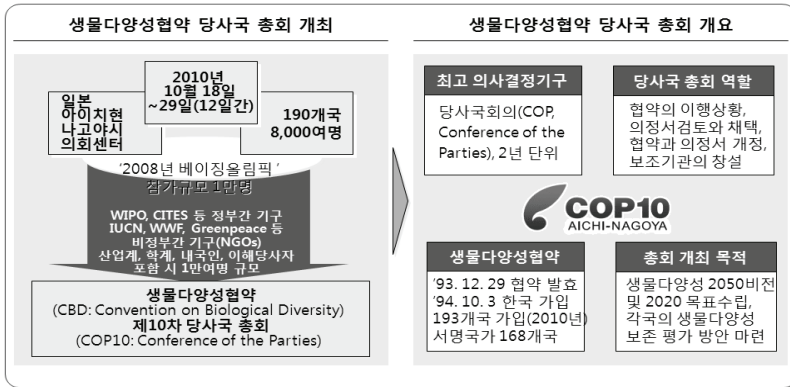
[그림 IV-8] 동식물 주요서식지



(4) 비무장지대를 세계적인 생태의 보고로 세계가 주목하는 측면

- 비무장지대는 지난 57년간 사람이 살지 않는 전 세계 유일의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총 2,716종의 야생 동식물 등 한반도 전체 생물종의 50%이상이 서식하는 생태서식지로서 녹색성장의 질서가 생물시장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독보적인 생태평화의 지역임.

[그림 IV-9]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5) 생물다양성을 통한 생태평화로 새로운 통일 접근 방안 측면

- 남한 민간차원에서 진행하던 유엔 생물다양성총회 유치운동을 세계적인 생태의 보고이자 남북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에 남북공동으로 유치신청 시 생태평화를 기원하는 세계적인 관심 속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통일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 될 것임.
- 통일부에 남북 주민 접촉을 신청하였으며 민간차원에서 비무장지대 생태미밋기와 유엔 생물다양성총회 비무장지대 남북공동 유치 제안서를 북측에 전달한 결과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6) 유엔 생물다양성총회 규모 및 대한민국의 역할 상승에 따른 측면

- 2010년 제10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며 총회 규모는 베이징올림픽 참가규모를 넘어섬.

[그림 IV-10] 생물다양성협약 공로상을 수여받는 이명박 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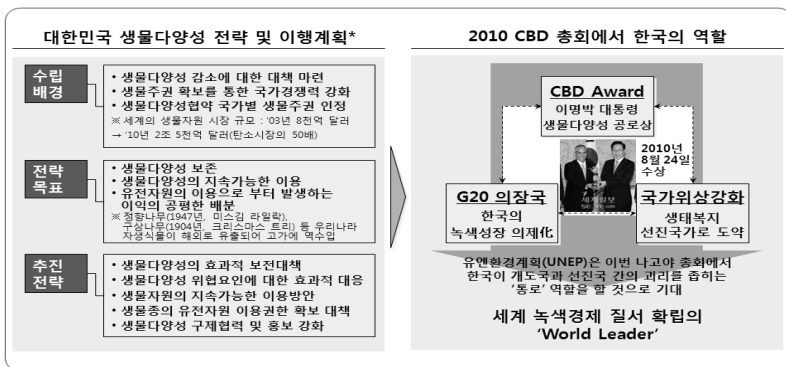
-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 (정부 국정운영의 비전)
- 녹색성장 모범국가 (G20 의장국으로 녹색성장 의제 제기)

2010년 유엔이 정한 '생물다양성의 해'

이명박 대통령, '생물다양성협약 공로상' 수상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아흐메드 조글라프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CBD) 사무총장으로부터 '생물다양성협약 공로상'(CBD Award)을 받고 있다. 2010.8.24 연합뉴스

- 2010년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한국의 역할은 생물다양성 공로상 수상과 G20의장국으로서의 국가위상 강화로 세계 녹색경제 질서 확립의 리더국으로 발돋움이 기대됨.

[그림 IV-11] 대한민국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과 2010 CBD총회에서 한국의 역할



(7) 유엔 생물다양성총회 남북공동 유치를 위한 시민단체의 노력 측면

- 유엔 생물다양성총회 유치를 위해 2008년 3월부터 2010년 10월 까지 민간차원에서 정부와 국민에게 건의하는 대외적인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수십 차례의 공식적인 회의들을 거쳐서 “비무장지대 생태띠잇기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민간유치활동을 전개해 왔음.

(가) 2008년 활동

- 2008년 5월 22일 유엔 생물다양성총회 유치건의 생태음악회 개최함.
- 2008년 8월 21일 환경부, 경기도, 유치제안 공문 및 제안서 제출함.
- 2008년 10월 23일 비무장지대 국제컨퍼런스 참가 유치제안 발의함.

(나) 2009년 활동

- 2009년 3월 6일 민간유치단 구성 모임(코리아나호텔)
- 2009년 5월 22일 유엔 생물다양성총회 비무장지대 유치건의 음악회 개최함.
- 2009년 7월 27일 비무장지대 생태띠잇기 온라인 운동 제안 및 전개·활동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 2009년 9월 23일 제1차 유엔 생물다양성총회 유치 임원회의의함.
- 2009년 10월 10일 세계평화 대토론회 세미나 총회유치 주제 발표함.
- 2009년 12월 23일 유엔 생물다양성총회 비무장지대 남북공동유치 남측위원회 모임(국회의원회관: 15명 참석)

(다) 2010년 활동

- 2010년 1월 12일 환경부장관 단독면담 유엔총회 유치제안 건의함.
- 2010년 1월 29일 유엔 생물다양성총회 비무장지대 남북공동유치 남측위원회 2차 모임(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13명 참석)
- 2010년 2월 6일 유엔 생물다양성총회 비무장지대 유치제안서 북측 전달함.
- 2010년 3월 3일 코리아접경포럼에서 유엔총회 유치 주제 발표함.
- 2010년 3월 26일 한국비무장지대정책포럼 창립포럼 비무장지대 생태떠오르기 제안함.
- 2010년 5월 12일 행정안전부 “비무장지대생태떠오르기” 관계기관 회의함.
- 2010년 6월 22일 비무장지대 생태떠오르기 조직위원회 구성함(유

네스코 회관에서 50여개 단체 대표 참석).

- 2010년 9월 14일 비무장지대 생태띠잇기 출범식을 시청광장에서 약 50여개 단체 500여명이 모여서 출범식을 가졌음.

[그림 IV-12] 2010 DMZ 생태띠잇기 출범식



- 2010년 10월 2일~22일 명동야외무대에서 유엔 생물다양성총회 유치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샤프론 학부모봉사단 및 동물복지단체를 주축으로 전개하였음.
- 2010년 10월 23일 “2010 비무장지대 생태띠잇기” 행사를 가졌으며, 이 행사는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통일대교를 거쳐 통일촌까지 잇는 행사로 7천명이 참가하여 장관을 이루었음.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그림 IV-13] 2010 DMZ 생태따이티 행사



[그림 IV-14] 2010 DMZ 생태따이티 행사



나. 주요내용

(1) 2011년 유엔 생물다양성총회 남북 공동유치 실무협의체 구성

- 현재 남북간에 유엔 생물다양성총회에 대한 교류는 거의 없는 상황으로 유엔 생물다양성총회 남북 공동유치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이 이루어져야 함.
- 동 협의체는 남북 부처간 실무협의체로 구성하거나 혹은 민간단체 차원에서 먼저 유치지원단을 구성하는 방안도 있음.

(2) 남북간 유엔 생물다양성총회 공동유치단 구성 및 비무장지대 개최 유치

- 2012년 제11차 유엔 생물다양성총회 개최지에 남북이 공동으로 유치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함.
- 유엔 생물다양성총회 이전에라도 생물다양성관련 세계적인 포럼이나 세미나를 남북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음.
- 2014년 유엔 생물다양성총회 비무장지대 남북공동 개최를 원칙으로 유치단 구성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유엔 생물다양성총회 유치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남측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북측이 동참할 것으로 사료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3) 2012년 유엔 생물다양성총회 남북 공동유치단 참가

- 남북 공동유치단 구성 합의 시 유치단의 구성 원칙과 유치에 따른 행사 장소와 일정 및 총괄 기획 등 구체적인 실행 내용을 합의해야 함.
- 남북 공동유치단의 사무실은 2014년 총회 장소 등을 고려하여 상징성이 있는 비무장지대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파주, 개성 등 접경지역이나 서울과 평양에도 공동으로 두는 방안도 있음.

(4) 2014년 유엔 생물다양성총회 비무장지대 접경지 개최 및 총회에서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의 비무장지대 이전에 대한 발의안 제안

- 2014년 유엔 생물다양성총회 남북 공동유치 시에는 비무장지대와 파주, 개성 등 접경지역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남북 공동개최 시 유엔 생물다양성총회의 공동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세계적인 이슈로 공동취재단 구성을 고려할 수 있음.
- 2014년 유엔 생물다양성총회에서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을 비무장지대로 이전하는 것을 정식안건으로 발의하여 추진을 시도함.

(5) 비무장지대 내 남북공동 생물자원관 건립 추진

- 유엔 생물다양성총회 비무장지대 남북 공동유치단 파견과 공동 개최의 성공을 위하여 비무장지대 내에 남북공동 생물자원관 건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세계에 남북의 유치 의지를 보여줌.
- 향후 유엔 생물다양성관련 회담이나 민간차원의 생물다양성관련 포럼 세미나 등에 공동유치단이 함께 참석하는 방안 추진함.
- 동 생물자원관은 가급적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생물다양성에 대한 학술 조사나 연구 활용 등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추진방안

(1) 국내적 차원

- 민·관·산·학·연을 아우르는 통합 공동유치단으로 구성함.
 - 민간단체: 생물다양성 및 생태환경, 평화, 통일, 농업, 의료 등 다양한 전문 민간단체들로 구성하여 북측 민간단체와 함께 준비해야 할 것임.
 - 정부기관: 생물다양성 관련 부처로는 유엔에 신청하는 외교통상부를 비롯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국방부, 농림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의 통합 TF팀을 구성하여 향후 미래 최대의 전략산업이 될 생물자원 시장에 주도국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기타 유전자, 생물자원, 농업, 의료, 환경관련 학계 및 연구소,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관련 기업들이 하나되어 생물다양성협약 총회 유치에 공동의 노력을 기해야 할 것임.

(2) 남북관계 차원

- 유엔 생물다양성총회 비무장지대 남북 공동유치단 구성은 현재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격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감안하여 남측 단독으로 범정부 차원이나 민간차원에서 추진단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기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G20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제10차 나고야 생물다양성총회 이후 민간이 아닌 정부차원에서 북측관계자에게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여 북측의 공식적인 답변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협조를 구해야 할 것임.
- 남북 당국자간 총회 개최와 실무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논의하며 이후 총회 유치 협의를 위한 남북간 실무 회담에 합의하고, 세부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합의를 작성함.
- 유엔 생물다양성총회 공동유치단 파견 및 공동개최 합의에 따라 2012년 유치단을 파견하고, 2014년 총회의 공동개최를 추진함.

(3) 국제적 차원

-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 남북공동 유치에 대한 의사를 알려서 세계인의 축하 속에 비무장지대가 새로운 생태평화의 상징

으로 재탄생되도록 노력함. 이는 유엔의 이념에도 일치하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의 적극적인 지지가 기대됨.

-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유도하며 특히 남북대치에 따른 긴장완화를 기대하는 동북아 국가들의 지원을 기대함.
- 동 총회의 남북 공동유치단 구성과 개최시 6자회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사료되며 핵 문제 역시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사료됨.
- 유엔환경계획(UNEP)은 이번 나고야 총회에서 한국이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괴리를 좁히는 통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라. 로드맵

(1) 2010년 하반기

- 남북 양측의 관계기관에 유엔 생물다양성총회 공동유치를 위한 제안서 및 2011년 “서울에서 평양까지 생태띠잇기”공동 진행 제안서 제출
- 2012년 제11차 유엔 생물다양성총회 남북 공동유치단 파견을 위한 남측민간위원회 구성을 위한 “비무장지대 생물다양성포럼” 창립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2) 2011년

- 비무장지대 생태띠잇기 남북 공동진행을 위한 민간단체 회의 개최
- 5월 22일 유엔 생물다양성의 날에 2010년 유엔 생물다양성 공로상 수상 축하 행사 전개
- 7월 27일 2011 서울 평양 생태띠잇기 남북공동 행사 진행
- 남북간 공동유치 실무협의회 구성 및 공동유치단 개최 합의
- 국제 비무장지대 생물다양성포럼 남북 공동개최 및 생물자원관 설립 합의 및 공동학술조사 실시

(3) 2012년

- 유엔 생물다양성총회 비무장지대 남북공동 유치단 구성 및 유치 신청
- 국제 비무장지대 생물다양성포럼 남북 공동개최를 통한 유엔 생물다양성총회 개최 의지를 세계에 공표
- 2012년 제5차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orld Conservation Congress: 이하 WCC) 국제행사 남북공동 참가

- 비무장지대 내 남북공동 생물자원관 완공 및 공동학술조사
- 제11차 유엔 생물다양성총회 공동유치단 파견 및 공동개최 확정

(4) 2013년

- 유엔 생물다양성총회 비무장지대 남북 공동개최단 구성
- 국제 비무장지대 생물다양성포럼 남북 공동개최 및 국제행사 공동참가
-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 내 생물자원 공동학술조사

(5) 2014년

- 유엔 생물다양성총회 비무장지대 남북 공동개최 최종 준비
-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 기타 지역 생물자원 공동학술조사
- 제12차 유엔 생물다양성총회 남북 공동개최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표 IV-5]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총회 남북공동 유치단 구성 및 비무장지대 개최방안 로드맵

	2008 ~	2010 상반기	2010 하반기	2011	2012	2013	2014
유엔 생물다양성총회 유치활동(2008.2~2009)	○						
유엔 생물다양성총회 비무장지대 남북 공동 유치 제안서 북측 전달		○					
비무장지대 생태띠잇기 행사 및 유엔 총회유치 서명운동		○					
남북간에 유엔 총회 비무장지대 공동 유치안 제안			○				
서울평양 생태띠잇기 남북공동 진행				○			
유엔 생물다양성총회 비무장지대 남북공동 유치 실무협의회 구성				○			
비무장지대 남북공동 생물자원관 완공					○		
제11차 유엔 생물다양성 총회 유치단 파견					○		
제12차 유엔 생물다양성 총회 남북 공동 개최단 구성						○	
유엔 생물다양성총회 개최 준비						○	
제12차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 총회 비무장지대 남북 공동개최							○

마. 기대효과

(1) 유엔 생물다양성총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

- 유엔 생물다양성총회 개최에 따른 행사비용 일체는 유엔 사무국 지원으로 수천억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효과 발생함.
- 국가브랜드가치와 비무장지대 브랜드가치 홍보효과 역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발생 될 것임.
- 남북 생물자원의 공동이용 가치는 향후 직·간접 통일 기초자금 발생이 기대됨.
- 미래 전략 생물자원 산업의 중심국 역할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됨.

(2) 생물다양성 공로상 수상을 계기로 생태복지 선진국 진입

- 생태복지 162위를 16위로 올리는 국민들의 의식변화 계기가 됨.

(3) 유엔 생물다양성총회 남북 공동유치에 따른 새로운 평화 통일 기대효과

- 생물다양성을 통한 새로운 통일 접근 방법을 모색함.
-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의 비무장지대 이전 가능성을 모색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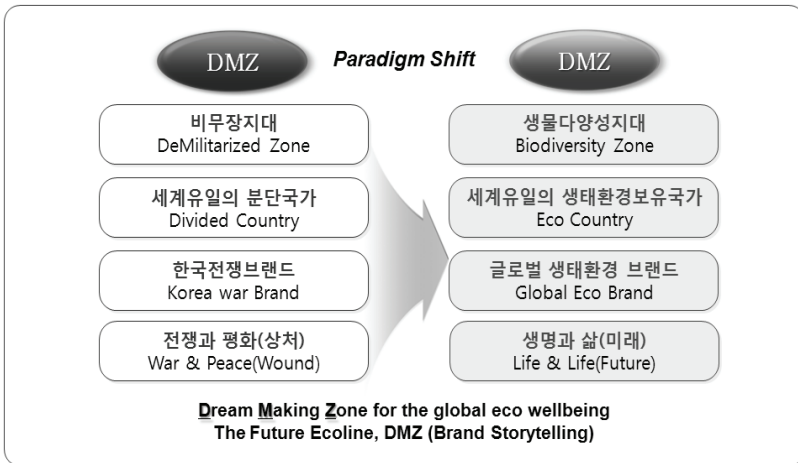
IX

-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에서 유엔 생물다양성총회를 남북공동으로 개최한다면 동북아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군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간의 군사경쟁도 줄어들어 평화통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비무장지대의 세계적인 생태환경의 허브 역할로서의 가치

- 비무장지대가 생물다양성의 세계적인 보고로 새롭게 탄생함.
- 비무장지대의 경제적 가치는 생태자원의 지불가치로 140조원에 해당되며, 생물자원으로는 약 1,000배에 가까운 경제적 가치로 평가받고 있음.

[그림 IV-15] DMZ의 패러다임 전환



V. 문화분야 협력방안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의 발전적이고 평화적인 활용을 통한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 대안 중 가장 부담이 적으면서도 빠른 실천이 가능한 분야는 문화·예술분야에서의 협력이다. 우선 남북한간 문화·예술 교류 사업은 양측의 정서적 동질성을 확인하면서도 관련 사업추진에 따른 정치적·군사적 갈등요소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해당 분야에서 남북협력 가능성을 높여주는 부분이다. 작금의 대결 상황을 감안할 때 남북이 정치적 부담을 덜 느끼는 분야에서의 협력 개시는 중장기적으로 남북간장 완화에 도움이 되며 향후 보다 깊은 남북협력 관계 조성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본격적인 협력에는 남북한간 많은 실질적 인적·물적 교류가 필요한 바, 이 과정에서 실체가 있는 사업의 공동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아래 네 가지 과제를 선정한 배경에는 바로 이런 고려가 있다. 아래 과제들을 선정한 또 다른 이유는 제안된 사업들이 규모와 무관하게 커다란 상징성을 가진 실현이 가능한 사업으로 우리 국민은 물론 해외의 많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1과제는 “옹기문화 교류를 통한 남북한 접경지역 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이다. 동 과제를 선정한 이유는 옹기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울산옹기축제 등 대규모 관련 행사가 성공적으로 실시되는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할 만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옹기 관련 사업은 남북한이 큰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는 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①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개최하는 국제수준의 옹기전시회 기획, ② 남북한간 옹기관련 문헌, 기술, 재료, 전문가 교환 및 북한지역 옹기 발굴사업 추진, ③ 옹기 문화를 남북이 소통할 수 있는 공동의 문화 언어로 승화시키는 것은 물론 남북한이 공동으로 주최한 옹기문화축제의 수익 공유방안 모색 등 보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포함한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우리 민초들의 유구한 삶의 상징인 용기를 중심으로 남북공동의 전통문화 계승 분위기 조성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한 남북간 문화·생활의 뿌리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양측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제2과제는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추진”이다. 용기와 달리 동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는 큰 도전과제이다. 특히 관련 시설 건설에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인 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사업 추진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을 주요 과제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보다 이 사업이 가지는 상징성 때문이다. 특히 비무장지대 지역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상징할 수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과 여러 예술적인 조형물 건설, 그리고 공연장·전시장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을 경우, 이는 단지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각광받는 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어 큰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남북한이 공유할 수 있는 상설 복합 문화예술 공간의 확보는 양측의 문화·예술 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국제 수준의 상설 문화·예술 전시장, 작품 거래소·시장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높은 수익의 창출이 가능한 비즈니스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 사업은 남북한의 문예·예술분야 전문가와 예술인들에게 폭 넓은 교류기회를 제공하여 양측의 정신적·문화적 동질성의 조기회복을 가능케 할 것이다. 비록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남북한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익을 고려할 경우 충분히 추진할 만한 프로젝트라고 판단된다.

제3과제는 “비무장지대 내 영화제작 스튜디오 건설과 남북한 문화

교류협력”의 추진이다. 남한의 영화산업과 영화제작 기술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있고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한 다수의 상업적 영화 거래시장도 활성화되어 있다. 북한에서도 영화는 북한지도자들이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작에 직접 관여해 온 인기 산업 분야이다. 따라서 비무장지역에 남북 공동스튜디오가 건설될 경우 남북한간 전문 인력의 교류를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토양이 갖추어진다. 특히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작품의 제작이 가능한바, 사극 등 시대극이나, 정치적 메시지가 제한된 가족영화 등의 제작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인기가 많고 남북의 기술력이 뛰어난 애니메이션 작품의 제작을 통해 상업적으로 많은 이익의 창출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동스튜디오에서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면 우리의 문화 수준을 세계에 지속적으로 전파하여 한류의 수준을 높게 뒀은 물론, 장차 한류를 테마로 한 놀이동산 건설 등, 동지역 내 관광자원의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추진” 사업을 제외한 기타 2종의 사업은 향후 3년 내 충분히 실천이 가능한 프로젝트이며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도 상설 공연장 건설 등 일부 시설은 동기간 내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문화·예술분야에서의 남북협력은 정치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양측이 추진 의사를 가지고 있을 경우 즉시 실현이 가능한 분야이다. 또한 동분야는 수익 창출을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한 상호협력을 촉진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1. 용기문화 교류

가. 제안배경

- 역사는 표면적으로 지배계급과 특정세력들의 주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영웅이나 지배집단, 세력, 또는 지역 중심으로 창조되기 보다는 백성들의 삶의 역정을 기초로 함.
- 민초들이 역사의 주체이며 백성들의 삶의 모습 자체가 역사였음.
- 우리민족의 생명과 삶을 지켜낸 용기
 - 조선후기 쇠락하는 국력으로 위협받던 민초들의 삶, 그리고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먹거리를 장기간 보관해 주던 것이 바로 용기였음.
 - 산간지역의 산나물과 구근식량, 해안지대의 어물, 평야지대의 곡물과 과일 등을 용기에 담아 육로와 하천을 통하여 이동하는 이동 용기로 활용하여 민초들의 생명을 지켜냄.
 -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 운송하며 한반도의 산하를 지켜내는데 초병의 역할을 하였고, 기나긴 겨울을 이겨내는 먹거리를 저장·숙성하여 민중의 삶을 영위하게 하였음.
- 이에 역사를 재조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민초들의 삶의 방식과 양식, 즉 백성 중심의 민족 생활사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우리 민족과 민초를 대표하는 역사적, 시대적 유물로서 용기의

상징성

- 용기는 음식을 보관하던 단순한 기능을 넘어 한반도의 전역에서 민초들의 영양을 책임지고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식량창고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각종 생활에 밀접한 물품으로 애용됨.
- 용기는 우리 역사를 대표했던 시대적 유물로서 이를 매개로 남과 북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작업과 협력의 장을 마련할 경우 민족의 동질성 확인의 기회로 활용이 가능함.

[그림 V-1] 우리 민초들이 지켜온 각종 용기들의 모습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나. 주요내용

(1) 옹기 발달과정

(가) 한반도 전통 옹기의 발달 과정

- 신석기시대: 연질토기
- 철기시대: 경질토기
- 삼국시대: 저화도 녹유도기
- 통일신라시대 이후: 고화도 회유옹기
- 고려시대: 녹청자
- 조선시대: 오지그릇 (현대의 옹기로 발전)

(나) 시대적 요구에 의한 옹기의 탄생

- 삼국시대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해 온 옹기는 주로 저장용기로서 역할을 담당함.
- 저장용기로 사용된 옹기에 대한 기록은 김부식의 삼국사기, 서경의 선화봉사고려도경,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 세종실록지리지 등의 문헌에서 확인 가능함.

- 현재의 용기 모습을 갖춘 용기는 조선후기 김치가 대중에게 보급되고 식탁의 중요 메뉴로 자리매김하면서 김치의 저장과 보관에 필요한 용기를 찾는 과정에서 탄생함.
- 농경사회의 집단화된 가족형태와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의 저장용구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에 의하여 용기가 발전함.
- 조선후기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고급 재료를 찾기 어려운 상황을 맞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기를 만드는데 쉽게 재료를 구할 수 있는 흙의 사용기술이 발전함.
- 일제강점기에는 일제의 각종 물자 수탈로 인하여 흙만으로 만들 수 있는 용기의 요구가 상승됨.

(다) 한반도에서 독창적으로 발달된 용기

- 고려의 녹청자가 만들어지면서 도기문화에 일대 혁신을 이루게 되는데 이는 흙으로만 소성하던 도기의 소지에 유약을 입혀 물이 새지 않게 하여 수분이 많은 음식을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용기 기술이 탄생함.
- 녹청자의 개발로 한반도의 도자기는 도기와 자기로 크게 양분되었는데 자기는 녹청자로부터 청자, 백자, 분청사기로 발전되고 도기는 녹청자로부터 질독, 오지, 용기로 발전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 국력이 쇠락해진 조선후기부터 귀족문화의 퇴보로 인하여 자기는 점차 그 영역을 잃어가는 동안 옹기는 확대 발전해 옴.
-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한반도에서는 지역적 특색이 잘 들어난 옹기들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함경도 회령, 황해도 해주, 경기도 개성, 전라도 부안, 강진, 경상도 산청, 제주의 노랑굴 옹기가 그 사례임.
 - 함경도 회령옹기는 기벽이 단단하고 유약의 소성이 아름다워 일본도자기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침.
 - 한국의 우수한 회령 옹기기술을 받아들인 일본은 현재 세계적인 도자기 강국으로 자리매김함.
 - 황해도 해주옹기는 조선말기 관요가 무너지면서 관요에서 일 하던 도공들이 옹기공방에 들어와 자기 자신들만의 기법으로 제조함.
 - 일본의 백자기술에 지대한 영향을 주며 청화백자 기술의 발전이 됨.
 - 경기도 개성옹기는 남북 교역에서 부를 축적한 개성상인들의 윤택한 삶을 반영하여 제작됨.
 - 북한의 개성지방은 한반도 교통의 요충지로서 물자 교류가 원활하고 거상(송방, 개성상인)들의 왕래가 빈번하며 좋은 옹기 토와 딸감이 풍부하여 질 좋은 옹기가 많이 생산되었던 고장으로 남북한 옹기문화가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장소임.
 - 경상도 산청옹기는 거친 소지와 독특한 기법으로 김해 다완을 보듯이 예술적인 미와 독창성이 출중함.
 - 전라도 옹기는 풍만한 멋을 아는 도공의 자유로움이 배어 있음.
 - 제주도 옹기는 화산토로 만들어져 돌가마에서 소성하는 방법

으로 제작되었으며 세계유일의 돌로 만들어진 옹기 가마이면
서 자연 소성된 빛깔이 아름답게 발달되었는 바, 이는 섬이라
는 지리적 특성을 이겨내기 위한 지혜가 배어 있는 노력임.

(2) 활용 방안

(가) 남북 문화의 동질성 재확인

-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남북 공통의 문화, 공통의 기술, 공통의
먹거리, 공통의 역사를 옹기를 중심으로 재발견할 수 있음.
- 제주 민초들의 삶과 생명을 지켜낸 제주 옹기를 시작으로 지리산
의 전북 남원과 전남 구례, 경남 하동, 산청, 소백산의 충북 단양
과 경북 영주, 속리산의 상주, 강원도 평창과 홍천, 북한산의 경기
와 서울, 설악산의 강원도 전역과 구월산의 황해도, 두류산의 함
경도, 묘향산의 평안도, 백두산의 양강도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
한 지역에 대한 조사와 이를 위한 남북 공동 연구 노력이 필요함.
- 이 노력의 일환으로 한반도 전역에서 채취한 명산의 흙으로 남북
의 상징물을 만들어 화합의 전시장으로 활용함.

(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옹기의 남북교차 전시 및 학술연구 교류 실시

- 옹기는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의 숨결과 함께해 왔으며 이에 옹기
는 전국팔도의 정서와 남북의 정서 모두를 포괄하고 있음.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 한반도가 하나이듯이 옹기도 우리의 역사와 함께해 온 세계 유일 무이의 독창적 문화유산임.
- 한반도의 옹기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게 가장 독특 하고 실용적으로 발달함.
- 옹기문화의 발굴은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하며 독창적인 문화로 남과 북을 하나로 연결하는 매개체로 활용이 가능함.
- 이에 한반도 옹기문화에 대한 내용을 학술적, 학문적으로 체계화 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통해 남과 북이 사상과 이념을 넘어서 하나가 되는 공간을 창출하도록 노력함.
- 특히 우수한 문화의 숨겨진 숨결을 찾아내고 고찰하여 남북간 동 질성을 회복하고 신뢰와 협력으로 가는 민족상생의 길을 모색함.
- 민족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어 그곳에 남과 북 공통의 문화를 재발견함.

(다) 옹기제작용 점토 채취 및 옹기 제작

- 남북에는 지역별로 특별하게 발달된 옹기가 있고 이는 지역마다 양질의 점토를 제공해주는 명산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가능함.
- 따라서 접경지역의 명산들을 위주로 남북 공동 옹기연구 및 기술 재현을 위해 동 지역에 옹기 제작에 필요한 점토를 채취하고 가마를 설치함.

(라) 용기를 이용한 접경지역 테마 개발 및 용기 전시장 운영

- 용기 사업을 관광 상품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한반도 분단의 아픔을 홍보하고 우리의 통일 노력을 응원하게 유도함.

- 상설 전시장 등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고 전국 팔도의 명산에서 흙을 모아 비무장지대에서 우리의 용기를 만들어 내는 퍼포먼스 등을 통해 접경지역의 상징성을 각인함.
 - 여주 도자기 등과 연계 올린 용기축제 등에서 착안함.
 - 수익금은 남북 공유가 가능하며 북한 지역 용기 발굴 사업 등의 비용으로 전용도 고려함.

[표 V-1] 용기문화축제 및 국제행사 착안사항

※ 울주 외고산 용기축제의 경우

- 2009년 울산대공원 한국전통용기 전시관을 설치, 동 전시에 약 70,000여명의 관람객들이 방문
- 2010년 울산세계용기문화엑스포 대성황
 - 한반도의 용기문화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바, 특히 일본과 중국에서는 한국의 용기엑스포 선전에 대해 아쉬움과 함께 지대한 관심을 표시
- 웰빙과 슬로우 푸드의 관심을 용기문화로 접목
 - 정부 차원에서 전개되는 전통음식 세계화 운동본부의 활발한 움직임과 해외 전시에서 보여주는 외국인들의 관심도에 주목할 필요
 - 미래 성장 동력을 먹거리에서 찾으려는 세계의 움직임을 주시
- 지속적인 전시와 홍보를 통한 한반도의 용기문화 경쟁력 확보
 - 수익금은 남북공유가 가능하며 북한지역 용기 발굴사업 등의 비용으로 전용도 고려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다. 추진방안

(1) 국내적 차원

- 사업 추진 타당성과 방향, 목표 설정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조사·기획을 개시함.
- 유관 정부부처·부서별 협조를 확보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함.
- 각종 학술사업과 전시장 설치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하고 대회 및 전시 장소 확보 및 일정 등을 확정함.
- 국민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이벤트성 행사를 기획함.

[그림 V-2] 이벤트로 기획된 세계 최대 크기 용기 제작행사



(2) 남북관계 차원

- 남북협력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남북 공동으로 관련조직 및 인력 확보와 운영인력을 배정함.
- 학술 및 전시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함.
- 남북이 합의한 지역에 전시장을 건설하고 공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시설을 개조하고 단장하는 작업을 진행함.
- 장기 전시 가능성과 일정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장기적인 전시장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남북 공동관리 방안을 집행함.
 - 추진위원단과 자문위원단을 구성함.
 - 실행 조직위원회를 구성함.
 - 남북의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한반도 옹기문화를 전파함.
 - 남북의 옹기를 바탕으로 발달한 민속 문화의 연구와 자료를 확보함.

(3) 국제적 차원

- 사업관련 국내외 홍보 및 대외협력 방안을 강구함.
 - 한국의 전통옹기를 국제기구에서 전시함.
 -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각국의 박물관과 문화재단, 관광청 등에 배포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 행사홍보 및 관광단 유치 등 구체적인 해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함.

라. 로드맵

[표 V-2] 용기문화 교류방안 로드맵

		2010	2011	2011	2012	2012	2013	2013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사업 준비		사업 추진 및 각종 아이디어 종합		사업 실현 및 본격 운영		
국내 차원	사전조사·기획	○						
	관련조직 및 인력 확보/총책임자 등 선임		○	○				
	정부 부처·부서별 협조 및 예산 확보		○	○	○			
	홍보 및 대외협력 방안 강구			○	○			
	구체적 테마연구			○	○			
	장소확보 및 일정 확정				○	○		
	프로그램 개발					○	○	
남북 차원	전시장 건설, 개조 및 단장					○	○	
	국내외 홍보계획 수립 및 실시			○	○	○	○	○
	최종 개막 리허설 실시 및 남북간 협력 의지 재확인						○	○
	개 막							○
국제 차원	전시장 유지 관리 계획 수립 및 집행							○

마. 기대효과

(1) 남북 동질성 확대의 기회로 활용

- 북한의 경우 한국의 고급 귀족문화보다는 민초, 민중문화의 대표적인 상징인 옹기를 주제로 한 남북협력에 거부감이 적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북한의 공산주의와 흙을 기반으로 한 옹기의 상징성이 상호 보완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의외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됨.
- 도처에 산재되어 있는 기초재료(흙)의 풍부함은 북측의 지대한 관심을 유도하기에 적합함.
-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을 일자리 창출로 연결함.
- 남한의 경제력은 생산된 옹기의 수요를 가속화할 것이며 이러한 연관을 바탕으로 세계화된 민족상품으로 공동개발과 관리가 가능함.

(2) 남북 문화교류의 재개,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접경지역 활용 가능성 확대 및 중장기적으로 남북간 이질감 최소화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3) 용기의 미래 역할

- 용기 관련 남북 공동사업은 통일을 대비하는 준비의 일환으로 진행함.
- 급변할 수 있는 북한의 혼란을 완충하는 역할에 적합함.
- 기초 노동력의 수용은 북한 주민들의 미래 정착을 밝게 하는데 공헌함.

2.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가. 제안배경

(1) 세계 문화·예술 증진을 위한 비무장지대 활용 방안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

- 비무장지대 접경 및 주변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증진을 위한 활용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한·중·일 삼국을 포함한 세계인들의 관심사임.
- 정치·경제·군사적 대립을 초월한 문화·예술을 매개로 남북한 간의 긴장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2)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인근 유희지 활용 가능

- 동 전당이 마련된다면 다음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할 것임.
 - 남북한 공연예술 활성화를 통해 민간교류를 촉진함.
 - 미술·서예·인간문화재 등 남북한 문화예술인들의 인적교류 및 각종 관련 자원의 공유 추진함.
 - 역사적 유물 등 문화재·역사 자원을 발굴하여 이를 복원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관리함.
 - 『평화누리공원』의 활성화로 주변 교통망이 발전할 수 있어 향후 국제적인 문화·예술 교류 중심지로의 부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그림 V-3]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그림 V-4]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 동 공간을 문화·예술 차원으로 승화하여 남북한이 한 민족이라는 의미를 부각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는 운명적 공동체라는 평화적·상징적 명제로 통일의 당위성에 의미를 부여함.

**(3) 주변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설계하여
건축함으로써 동 전당의 평화적 활용 의미를 더욱 부각**

- 특히 건물 디자인과 주변 랜드스케이프를 평화 도모라는 건축의 의미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독특하고 차별화되게 설계하여 상징성을 부여하도록 노력함.
- 건물은 남녀노소 모든 연령층의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간 친화적 개념을 가진 디자인의 구현이 필요함.
- 동 건축물이 자리 잡은 지역을 문화·예술 특구로 지정하여 남북은 물론 세계인들의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창출해 내는 구상이 요구됨.

(4) 문화·예술 교류를 남북 화해의 주요 매개로 승화

- 최근 한국의 문화·예술 일부 분야는 글로벌화에 성공하여 『한류 문화』라는 신조어가 생겼으며 한류는 기존의 TV·영화 등의 분야에서 연극, 오페라 등의 분야에서도 글로벌화를 노릴 수 있게 성장하고 있음.
- 북한 역시 국립교향악단 및 피바다, 아리랑 등 일부 공연작품, 그리고 서커스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 공연 예술작품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 교류 및 해외진출 협력방안의 논의가 필요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 남북한은 『평화누리공원』에 이런 사업 추진을 위한 상설 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 아이디어임.

(5) 남북한간 민간협력 확대효과 기대

- 접경지역에서 남북 문화·예술인이 중심이 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면 민간주도의 남북 신뢰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부대시설을 활용한 각종 남북한 친목도모 행사 및 세미나 등 학술회의를 주최하여 민간인 주도의 남북협력 강화 기회를 확대함.

나. 주요내용

(1) 접경지역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남북한 실무협의회 구성

- 임진강 주변에 평화누리 공원 건립을 위한 입지를 조사하고 해당 토지·임야를 수용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위한 협의회 구성이 필요함.
- 실무협의회는 남·북한을 대표하는 책임자와 함께 업무 추진을 위한 관계자 및 실무자로 구성하여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함.
- 특히 실무위원들 중에는 남북한 예술인, 문인, 미술가(회화), 서

예가, 조각가, 디자인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예술인들이 포함됨.

- 이들 전문가들이 실무적으로 참여하여 공원조성과 건물 건축 방향을 설정하고 공원 및 건물 건축의 상징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2)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이후, 사업추진 공동대표단 구성 및 구체적인 문화·예술 공연 계획을 수립

- 공원 건립을 위한 염원을 담아 북한 국립교향악단의 임진강 평화 누리공원 임시 야외공연장 공연을 추진함.
- 문화·예술의 전당 설계는 국제 공모를 통해 비무장지대의 의미와 상징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유니크”한 설계를 채택하여 향후 디자인과 상징성 측면에서 세계적인 명소로 개발함.
-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반도 그리고 그 분단의 경계를 흐르는 임진강은 남과 북을 소통하는 유일한 강이라는 사실에 착안, 임진강을 배경으로 수상 뮤지컬 공연을 기획하여 세계에 소개함.
 - 주요사례: 중국의 세계적인 영화감독 장예모 감독이 연출한 수상공연인 “인상서호,” “인상유삼저” 등이 있음.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그림 V-5] 중국의 영화감독 장예모 감독의 수상 연출의 예



[그림 V-6] 중국의 영화감독 장예모 감독의 수상 연출의 예



-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은 2011년에 시작하여 2014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됨.

(3) 미술 및 전통 공예 분야의 남북 작가들 공동전시회 개최

- 향후 남북한의 중견작가, 청년작가, 청소년,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의 미술전시회 및 작가 발굴을 추진하여 남북한 교류전을 성사시킴.
- 전통공예, 민속공예와 옹기, 도자기, 목공예, 금속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전시 기획을 통해 남북의 혼이 깃든 공예전시를 적극 유치함.
- 특히 미래를 이끌어 나갈 남북한 청소년에게 전통 미술, 공예를 계승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남북한 청소년의 문화·예술 교육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확대를 추진함.
- “글로벌”한 이미지를 부각하여 전 세계 모든 문화·예술인들의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고, 특히 미지의 지구촌 평화를 상징하는 예술·평화의 축제로 확대하여 남북한 평화에 기여하는 행사를 기획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4) 문화·예술의 전당은 공동 운영위원회를 통해 남북한 공동으로 운영

- 문화·예술 분야에 각각의 실무운영단을 구성하고 향후 공동운영 방안과 방식에 합의하고, 준비과정에서 화합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실천과정에서부터 우호관계를 강화함.
- 공동운영단 실무위원회는 상시 접촉 및 작업을 진행하고 해당 전문가, 예술인이 참가하는 확대회의는 년 2~3회 정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의견을 조율함.

다. 추진방안

(1) 국내적 차원

- 남북한 공동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을 실무적으로 담당할 TF팀을 발족하고 설계공모,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여 사업을 구체화함.
- 해당 지역 활성화를 위한 남북한 교통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도로 교통망, 통신망을 개선함.
- 북한의 문화·예술 관계 지원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양방 우호관계를 수립하고 향후 남한이 지원한 공연분야를 자연스럽게 공유하여 공동사업으로 발전시킴.

(2) 국제적 차원

- 독일 접경지역의 바젤 아트페어(Art Basel)에 착안함.
 - 2010년 독일 접경지역에서는 세계 미술인들의 평화를 위한 작품전 이벤트 행사가 개최되어 세계의 많은 미술 전문가들이 모여 전시회에 참여함.
 - 독일 바젤 아트페어(Art Basel)는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 3개 나라가 맞닿는 접경지역에 위치한 지리적인 이점을 잘 살린 바젤(인구 20만 명)지역에서 개최되었고 이 지역은 유럽 최고 미술도시 가운데 하나임.
 - 특히 이곳은 세계 최고급 미술장터로서 조각, 드로잉, 영상, 사진, 설치, 퍼포먼스까지 모든 장르의 미술 작품 소개와 미술 명품 백화점, '미술 올림픽' 등이 개최되며 매회 관람인원은 약 200만 명으로 국제 아트페어 중 가장 많은 수준임.

- 이에 착안하여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 인근(임진각 평화누리공원) 등에 문화예술의 전당을 건립하고 동 지역을 세계평화미술 포럼 개최지로 지정하고 문화·예술 특구로 지정을 추진함.

- 이 경우 교향악단 공연장과 함께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세계 유일의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의 명소가 될 것이 분명함.

I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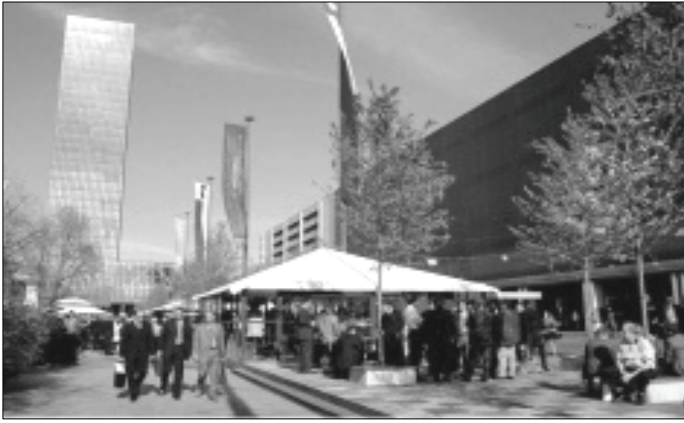
VI

VII

VIII

IX

[그림 V-7] 독일 접경지역 Art Basel 이벤트



[그림 V-8] 독일 접경지역 Art Basel 이벤트



[그림 V-9] 스페인 구겐하임 미술관 (건축물 디자인 착안)



[그림 V-10] 스페인 구겐하임 미술관 (건축물 디자인 착안)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라. 로드맵

(1) 2010년 하반기

- 국내 정세에 따른 사업 기반 조성
- 민간 문화·예술 협의체 구성 및 대북 제안
- 대북 제안 기획안을 홍보해서 필요성을 강조

(2) 2011년

- 각 분야(미술, 음악, 디자인, 조각, 사진 등)별로 전문가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
- 통일부, 문화관광부, 경기관광공사 및 기업 홍보 추진
- 남북 민간 컨소시엄, 문화·예술 분야 단체 협의

(3) 2012년 하반기

- 남북이 구체적 협력 논의를 마련하여 국내외적으로 홍보
- 공연 및 미술전시회 타당성 조사
- 입지 조성 및 건설 계획 마련

- 국내외 현상설계 공모

(4) 2013년 상반기

- 남북 공연전문가 교류, 현지 조사

- 공연 타당성 조사

(5) 2013년 하반기

- 공연·전시 성사 실현

- 예술·문화의 평화 메시지 선포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표 V-3]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방안 로드맵

		2010	2011	2011	2012	2012	2013	2013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사업 준비		사업 추진 및 각종 아이디어 종합		사업 실현 및 본격 운영		
국내 차원	사전조사·기획	○						
	관련조직 및 인력 확보/감독과 총책임자 등 선임		○	○				
	정부 부처·부서별 협조 및 예산 확보		○	○	○			
	홍보 및 대외협력 방안 강구			○	○			
	구체적 테마연구		○	○				
	장소확보 및 일정 확정				○	○		
	프로그램 개발 및 리허설 개시					○	○	
남북 차원	공연장 건설, 개조 및 단장					○	○	
	국내외 홍보계획 수립 및 실시			○	○	○	○	○
	최종 리허설 실시 및 남북간 협력 의지 재확인						○	○
	공연 개시							○
국제 차원	장기공연과 공연장 유지 관리 계획 수립 및 집행					○	○	○

마. 기대효과

(1) 문화·예술 교류 및 공연을 통한 남북화해와 동족간의 일체화로 평화무드 조성

- 교향악단 협연 및 미술가의 친목도모로 남북 동질성 회복함.
- 남북한 및 한·중·일 음악 애호가와 미술가 참여로 북한의 문화·예술 개방을 촉진하여 한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홍보함.
- 남북 문화·예술협력으로 한류의 다양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비무장지대 및 인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이 세계 문화·예술과 세계 평화지대로 부각되면서 세계인의 문화 공간으로 발전시킴.

(2) 세계에 평화를 지향하는 고급문화·예술의 공간을 공급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및 이미지 개선

- 세계인이 참여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의 상징성을 부각하고 평화를 갈망하는 순수한 가치를 세계에 공표함.
- 남북이 이룩한 하나된 모습의 퍼포먼스를 실행함.

(3) 『문화·예술의 전당』을 세계적 유수의 건축물로 건축하여 세계 평화의 상징물로 승화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4) 세계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경기북부지역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유도

- 접경지역을 파괴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관광상품으로 평화와 친환경 메시지가 결합될 경우 범세계적인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첨단 문화산업으로 조직적인 국내외 홍보활동을 전개할 경우,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는 물론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것도 가능함.

3. 영화제작 스튜디오 건설

가. 제안배경

(1) 남북한간 낮은 차원의 협력 재개의 필요성

- 거시적 차원에서 비무장지대는 마지막 냉전현장, 생태의 보고로 대변되는 금단의 영역으로 묘사되어왔으나 평화, 공존, 공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협력의 장으로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은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식량난으로 대표되는 경제위기는 체제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북한의 경제위기 극복의 방안으로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이 북한에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됨.

(2) 북한의 경제 이익과 한국의 정책적 기대의 부응

- 남북한의 교류협력을 논의할 때, 우리사회 내에서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온 점을 고려할 때, 남북교류협력은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호혜적 상호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주체의 발굴이 필요하며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이를 통한 남북협력과 통일한국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북한이 일방적 수혜자에서 적극적 협력자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경우 최고지도자인 김정일이 평양에 자신의 영화 스튜디오를 두고 운영할 만큼 영화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사실을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고려할 때, 남북교류협력의 주요 아이টে으로 영화산업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임.

- 남북교류협력 사업에서 북한은 체제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서 북한의 대중과 남한 인사의 접촉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므로 인적 접촉은 최소화하겠지만, 경제적으로 사업성고가 높은 영화제작사업은 북한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분야로 평가됨.

(3) 경제협력의 제도화를 통한 통일시대 대비

- 비무장지대에 청정자연의 특성을 살리면서 남북이 공동의 경제적 협력을 추구하는 대안은 남북의 평화를 보장하는 상징성과 함께 실질적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음.
- 비무장지대는 전통적으로 한국전쟁 휴전이후 반세기 이상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청정자연으로 개발과 보존의 유인이 병존하는 바, 이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협력 사업의 발굴이 필요함.

(4)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개발의 필요

- 남북이 대치하고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동아시아 주변 국가는 물론 세계 주요국가의 참여와 지지를 얻어 한반도와 지역평화에 공헌할 수 있는 남북한 협력의 대안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영화 관련 문화

협력 사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비무장지대는 여전히 국제법적으로는 휴전협정에 의거하여 유엔군의 관할 하에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과 남북한 간에 여전히 민감한 문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정치적인 문화분야의 협력이 정치적 민감성을 우회할 수 있는 대안임.

나. 주요내용

(1) 남북한 문화 예술분야의 협력을 위한 회담개시 및 정부간 협의체 구성

- 비무장지대 내의 영화스튜디오 건설은 최초 협력사업으로 활용하여 향후 유관산업분야로의 협력을 확대함.
- 영화관련 사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교류·협력 사업이며 북한에게 경제적 실익이 보장되는 사업이라는 장점을 살려 북한과 문화예술 분야의 협력을 제안함.
- 남북한 경제협력의 사례를 보면 최초 정부 당국자간의 협의를 통해서 영화관련 경제협력사업의 공동추진 원칙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2) 북한의 문화 예술분야 종사단체를 대상으로 민간공동 협력 기구 구성

- 북한의 문화예술관련 단체 및 기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남북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출발점으로 활용함.
- 북한의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 조선 기록영화촬영소, 조선 4.26아동영화촬영소,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등의 기관을 참여시켜 합작사업을 추진함.
- 영화관련 예술인뿐 아니라 무용가, 연극인, 음악가, 미술가 등 다양한 예술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종합예술 산업의 협력중심지로 활용함.

(3) 비무장지대 내 스튜디오 건설 및 야외촬영부지 선정과 건설

- 비무장지대의 특정지역을 설정하여 영화제작 스튜디오를 건설하고 이를 통해 남북한의 경제협력의 장으로 활용함.
 - 투자 초기에는 원시의 자연을 배경으로 활용하는 자연관련 영화 스튜디오를 만들어 비무장지대의 생태를 보존하면서 동시에 이를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투자를 최소화하도록 함.
- 남북한의 협력강화와 상호신뢰 구축에 따라서 남북한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초기에 비무장지대 안에 호혜원칙에 따라 공동출자 형식의 스

튜디오 건설은 현실적 제약이 따르므로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쪽 지역에 주요 시설과 투자를 집중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전개됨에 따라서 북쪽 지역으로 확대해나가는, 지리적으로 호리병 모양의 사업 확대 전략이 요구됨.

- 협력의 확대에 따라 시대별로 사극을 배경으로 하는 스튜디오의 조성은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이나 우리의 역사를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나누어 시대극을 배경으로 하는 스튜디오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문화 및 학술 교류의 기회를 확대함.

(4) 영화예술 콘텐츠 제작을 위한 공동법인설립과 협력산업추진

- 스튜디오의 건설과 운영에 부가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콘텐츠를 남북이 공동으로 제작할 수 있는 공동법인을 설립하여 남북 문화산업협력을 제도화함.
- 공상과학영화, 공포영화, 액션영화와 같이 다양한 장르에 걸친 영화촬영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남북한의 문화 및 기술 교류 확대와 공동 투자를 통한 영화제작 인프라를 확대함.
 - 영상작품을 만들 때 이념적 정치적 요소를 배제한 문화컨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이질적 요소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남북한이 협력을 달성하여 상호이익을 극대화함.

(5) 영화제작과 관련한 기술관련 기업의 설립 및 유치

- 현대의 영화관련 문화컨텐츠는 예술 분야뿐 아니라 IT기술과 연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화관련 기술분야로 협력을 확대함.

- 북한의 IT 및 컴퓨터 관련 분야의 인사들도 교류 및 협력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예술과 기술의 결합을 통한 산업화를 추진함.
 - 북한 인력을 활용하여 애니메이션 제작 등을 수행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을 수행한 경력이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활용함.
- 남북한이 합작으로 3D 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첨단영상기술을 활용한 문화컨텐츠를 공동 제작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념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함.

(6) 국내의 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한 다국적 평화협력 모델 추진

- 스튜디오의 부지와 건설이 결정되면 시설투자, 그리고 향후 영화 제작 투자, 기술투자, 기업설립 등 직접투자, 관광시설 관련 숙박 시설 투자 등 국제적 투자유치를 통해 다국적 평화협력 모델을 추진함.
- 한류와 연계하여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는 물론 서남아시아를 겨냥한 문화 컨텐츠를 제작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 자본의 투자를 유치함.

(7) 영화촬영스튜디오의 관광지화로 관광산업

- 장기적으로 영화나 드라마 촬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사극, 공상과학 등과 관련한 스튜디오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고 이를 미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같이 대중적 관광자원으로 활용함.
- 영화관련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놀이동산 등의 기타 위락시설을 유치하여 종합 관광지로 위상을 제고함.

(8) 평화영화제 개최와 문화컨텐츠의 거래시장으로 자리매김

- 앞에서 설명한 영화관련 산업이 ① 스튜디오 건설, ② 문화컨텐츠 공동제작, ③ 제작기술협력 산업, ④ 관광산업, ⑤ 위락시설 투자, ⑥ 다국적 협력을 통하여 단계별로 발전시키되 최종 목표는 평화영화제 개최와 국제적 문화컨텐츠 거래시장을 형성하는 것임.
- 영화관련 산업의 활성화는 스튜디오의 조성과 함께 영화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영화사, 기술지원 업체, 영상기술 연구소 등을 유치하여 영상예술관련 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관광자원화 및 수출산업단지로 활용함.
- 궁극적으로 모든 분야와 모든 과정에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협력을 통한 상호이익의 증대를 추구할 수 있음.
 - 문화, 예술, 기술, 관광을 결합하여 남북한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평화와 이익을 증대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다. 추진방안

(1) 국내적 차원

(가) 교류협력사업의 정당성 및 세계적 차원의 비즈니스 사이클에 부응하는 산업화 전략을 홍보

- 언론계와 학계가 공동으로 북한과의 문화교류를 시작할 수 있는 교두보 확보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긍정적 효과를 확산함.
-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이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상호협력의 호혜성원칙에 따라 추진되는 점에서 문화교류협력 사업의 비전을 홍보함.
- 문화컨텐츠 제작 및 관광객 유치는 미래선진산업으로, 우리 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과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달성이라는 목표에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형 “평화산업”으로 추진할 가치가 충분함을 홍보함.

(나) 한류의 산업화 및 남북평화공헌에 유관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

- 국내의 영화제작과 관련된 공공기관, 기업, 제작자, 엔지니어 등 민관을 망라하는 다양한 주체가 대북 교류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남북문화협력추진단(가칭)을 구성함.
- 국내의 문화·예술 및 영화 분야에 북한과의 교류를 희망하는 기

대가 많다는 점에서 이러한 동력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비무장
지대에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함.

- 2000년 이후 본격화된 한류를 활용하여 문화산업을 촉진시킴으로써 문화예술계는 물론 과학기술계의 지원과 참여를 적극 유도함.
-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4가지 단계별·산업부분별로 참여기업이나 단체의 참여 신청을 받는 창구를 운영하여 기회를 부여함.

(다) 협력사업 초기에 공공부분의 참여계획과 대기업 참여유도를 추진

- 스튜디오 건설부분은 많은 자본의 투자가 요구되는 부분이므로 정부의 지원과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으로 평가됨.
- 사업의 진행에 따라 숙박 및 위락시설의 건설, 유니버설 스튜디오 건설 등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에 대기업 투자를 유치함.
- 영화제작과 판매 부분과 같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이 소요되는 분야에는 소규모 민간기업의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협력의 활성화를 추진함.

(2) 남북관계 차원

(가) 새로운 경제협력으로서 문화교류협력에 대한 의사타진

- 북한이 지속적으로 개성공단의 확대와 같은 경제협력에 대한 가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능성을 타진해옴에 따라 새로운 문화교류협력의 가능성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주체문예이론은 예술분야의 남북한 협력을 거부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협력분야로 우리가 시도해 볼 가치가 있음.

(나) 북한의 '목적주의적 문예관'을 고려하여 체제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문화교류협력을 제안

-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북교류사업에서 주민통제를 우선순위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남북교류협력이 실질적 성과를 가져오기 어려웠으나 스튜디오관련 교류협력은 주민통제와 체제안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북한에 사업 제안함.
- 문화예술 분야의 협력을 통해서 스튜디오건설, 영화제작, 관광사업 등은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는 중요한 통로인 점을 고려함.

(다) 정상회담 등 고위급회담에서 의사타진

- 스튜디오 건설과 영화의 공동제작은 전략적 결단이 요구되는 협력 분야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상회담 등에서 북에 제의하여 쌍방이 합의한 후 실무를 추진하는 하향식(top-down) 접근이 필요함.
- 북한의 경제협력 제의에 대한 다면화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할 필요 있음.

(라) 남북한 정부 당국자간 협의체 구성

- 고위급 회담의 합의에 따라 장소, 시기, 단계 등에 대한 전략적 결정을 합의함.

(마) 남북한 실무자간 협의위원회 구성

- 정부당국자 간의 전략적 결정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실제 공동사업을 추진할 민간기업, 제작자, 건설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위원회를 구성함.
- 북한의 2000년 ‘살아있는 영혼들’ 제작팀과 같은 특수효과, 디지털 기술, 미니어처 제작 등에 관련한 518영화과학연구소의 참여를 유도함.

(바) 사업 분야별 합작기업 구성

- 남북한 협력의 발전 단계를 기준으로 ① 스튜디오 건설, ② 문화콘텐츠 공동제작, ③ 제작기술협력 산업, ④ 관광산업, ⑤ 위락시설 투자, ⑥ 다국적 협력의 단계가 완성되어 감에 따라 협의위원회를 합작기업으로 전환함.
- 스튜디오 건설이나 위락시설 투자와 같이 많은 자본이 투자되는 인프라 구성은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추진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함.
- 필요에 따라서 문화콘텐츠 제작, 기술협력 산업분야 등에는 복수의 합작기업을 구성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3) 국제적 차원

(가) 주변국의 참여를 유도

- 최근 영화와 드라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참여를 유도하고 인적, 기술적 교류의 통로를 마련함.
- 상업영화에 있어 최고인 미국의 영화산업 관계자들의 투자와 참여를 유도함.

(나) 평양국제영화축전에 참가하는 국가의 지원을 요청

- 매 2년마다 개최되는 평양영화축전에 약 40여 개국에서 100여 편의 영화가 참여하는 점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함.
- 전통적으로 북한과 우호관계를 가진 중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에서 북한과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는 독일, 스웨덴, 영국 그리고 인도, 이란, 아르헨티나 등 세계 각국의 영화인들을 초청하여 북한과의 협력을 위한 측면지원을 요청함.

(다) 국제기구를 활용

- 평양영화축전과 관련하여 국제기구의 7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고 알려져 있는 바, 이들 기구를 활용하여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함.

(라) 투자활성화를 위한 다국적 기업과 영화제작자 초청

- 비무장지대의 활용을 통해 남북한의 상호이익과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교류협력에 대한 정책지지와 투자를 유도함.
- 다자화를 통한 국제협력사업으로의 발전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획득할 수 있게 함.

라. 로드맵

(1) 2010년 내

(가) 정부 내 TF를 구성하여 사업제안의 구체화를 위한 기초 연구

- 통일부를 중심으로 문화관광부, 외교통상부, 해당 접경지역 지자체, 영화 및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함.
- 기초연구 과정에서 북한에 제안할 수 있는 상기 사업가능 항목의 세부 주제를 개발함.

(나) 남북당국자 간 접촉을 통한 사업 개시여부 타진

-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북한의 기대가 표출되고 있는 바, 장관급 또는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 경제협력의 새로운 사업의지를 확인함.
- 필요한 경우 2010년 하반기 국내 사업추진단 구성 및 추진 최종안 작성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다) 남북한 문화협력을 경제협력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한
홍보

- 남북한 경제협력과 문화협력의 연계필요성을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지지를 확보함.
- 필요한 경우 정부 최고위층에서 담화, 기자회견 형식을 통한 국제협력 이벤트로 활용함.

(2) 2011년 내

(가) 남북한 문화교류협력 당국자 실무회의

- 남북한 교류협력 실무 당국자들이 문화예술관련 교류협력의 원칙과 세부항목에 합의함.
- 핵심 사업으로 스튜디오 건설 후보지역 및 전체 일정에 대한 합의를 이룸.

(나) 남북한 단계별 실무 협의체 구성

- 남북한 문화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면서 사업담당회의를 구성함.
- 스튜디오 건설, 문화컨텐츠 공동제작, 제작기술협력, 관광, 위락 시설, 다국적 문화컨텐츠 거래시장 등의 세부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면서 해당 사업별 협의체를 구성함.

- 실무 당국자간 협의체의 상설기구화 및 상주직원의 공동근무를 추진함.

(다) 사업별 협의체 구성과 민간분야의 참여 합의

- 정부 당국자의 협의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영화 예술 관련 민간기업의 참여통로를 확보함.
- 북한의 특성상 민간단체가 부재하나 북한의 영화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함.

(라) 남북한 문화협력의 강화를 위해 2012년 평양국제영화축전에 참여 타진

- 남북한 문화협력 신뢰구축의 일환으로 남측 영화인들이 평양국제영화축전에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함.
- 필요한 경우 작품의 출품과 유력인사의 방문을 추진함.

(마) 남북 공동으로 국제투자유치회의 개최

- 스튜디오 건설사업, 문화컨텐츠 제작, 제작기술사업 등에 외국관련 기업의 투자유치회의를 개최함.
- 후보지내 투자유치 센터를 상설기구화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3) 2012년 이후

(가) 세부사업으로 스튜디오 건설 착공 및 단계별 건설 추진

- 핵심 사업으로서 스튜디오 건설 사업을 착공함.
- 스튜디오를 건설할 때, 시설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는 사업에서 많은 시설이 필요한 사업으로 단계별로 건설을 추진함(자연물-사극-현대물-SF).

(나) 문화컨텐츠의 공동제작 및 기술협력 기업의 운영

- 문화컨텐츠 제작과 제작관련 기술회사를 설립함.
- 시범적으로 남북합작의 영화제작을 개시함.

(다) 2012년 평양국제영화축전 참가와 교류협력의 국제화

- 평양국제영화축전에 참여를 계기로 비무장지대 평화영화제 개최를 제안함.
- 남북한 문화 및 경제교류 사업의 중간 결실을 국제적 홍보의 전기로 활용하여 투자를 유치함.

(라) 국제적 기업의 투자를 추진하여 위락시설 및 관광시설 건설

-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위락시설의 건설과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 인프라 조성을 위해 국제적 투자를 유치함.

- 남북합작기업을 국제적 기업으로 전환하여 평화협력의 국제화, 제도화로 안착시킴.

[표 V-4] 영화제작 스튜디오 건설방안 로드맵

		2010 하반기	2011 상반기	2011 하반기	2012 상반기	2012 하반기	2013 상반기	2013 하반기
		남북관계 고착 해소 및 준비		남북대화 개시 및 기본합의		남북관계 활성화 및 국제사회의 공인		
국내차원	TF 구성	○						
	세부사업 개발		○					
	여론의 지원확보		○					
	투자계획서 마련		○					
	민간 사업자 선정			○				
	합의서 국회비준							○
	특별법 제정 공포							○
남북차원	고위급 의사타진		○					
	구체적 사업제안			○				
	실무위원회 구성				○			
	사업추진단 구성					○		
	합작기업 구성						○	
국제차원	주변국 참여유도					○		
	국제기구 협력						○	
	다국적기업 초청							○
	영화 거래소 설립							○
	국제영화제 개최							○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마. 기대효과

(1) 남북협력을 경제에서 문화로 확대, 협력의 제도화

- 산업에서 문화 분야로 협력의 영역이 확대되고 협력의 깊이가 심화되는 단초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능주의적 협력 확대의 교두보가 됨.
- 스튜디오 공동개발에 대한 합의와 사업의 추진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으로 경제적 수익, 문화적 가치 공유, 평화의 달성이 라는 다수의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
- 영화제작이라는 문화예술 산업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출자·추진함으로써 평화와 경제적 실리의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

(2) 남북한 협력의 종합적 제도화 및 협력의 연계화

- 기존 남북교류사업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은 단일한 지역에 단일의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스튜디오건설 사업은 복수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협력의 연계효과를 극대화함.
-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스튜디오 건설, 영화제작, 영화제작 관련 기술지원, 영화판매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 상대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선정하여 남북협력을 체계화함.

(3) 국내의 퍼주기라는 일방적 지원에 대한 반감 해소

- 스튜디오 건설, 문화컨텐츠 제작과 판매, 관광 프로그램 운영은 투자와 이에 따른 수익이라는 기본구조에 의해 운영되도록 구상하므로 ‘퍼주기’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
 - 투자와 관리의 자율성을 획득하는 방향에서 협력을 추진함.
- 문화교류협력은 북한에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주더라도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비무장지대 영화스튜디오 건설 사업과 관련한 협력은 효과적 정책대안임.
- 북한의 입장에서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영화스튜디오 관련 협력사업은 북한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북한의 경제적 수익은 남북관계의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4) 새로운 비즈니스 사이클에 적응하는 협력사업

- 비무장접경지대를 국가발전의 거점지역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을 통해 경제, 관광, 산업의 중심으로 집중 육성함.
-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의 경제를 정상화하는데 전략산업으로 문화컨텐츠 사업을 활용함.
- 북한이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영화분야의 기술력과 인력을 교류협력에 활용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5) 민간분야의 협력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교두보

- 북한의 모든 단체나 기관이 당과 국가의 하부조직으로 되어있으나 남북한 영화예술인의 교류 협력은 민간차원의 상호신뢰를 확보하는 계기로 활용함.
- 영화제작 관련 특수효과, 편집, 디지털 기술, 합성촬영 등의 기술인력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함.

(6) 국제적 협력의 가능성이 많아 남북협력의 국제적 제도화

- 추진단계에서부터 북한의 영화산업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국가의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여 사업의 국제적 지원을 획득함.
- 영화제작과 판매 그리고 관광사업은 중국과 극동 러시아의 잠재수요 시장을 대상으로 출발하다는 점에서 국제적 협력을 제도화함.

VI. 해양분야 협력방안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남북접경지역에서의 남북 협력은 양국의 지상군 병력이 상호 대치하고 있는 육지에서뿐만 아니라 양국의 해군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서해와 동해에서도 추진할 수 있다. 해상에서의 남북협력은 한국과 북한 양 당사국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주변국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준다. 본 장에서는 ① 서해 접경해역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남-북-국제사회 삼자협력체제 구축, ② 서해지역 개발을 위한 국제적 토대: Oriental Golden Coast 건설, ③ 환동해권 발전 방안, ④ 동·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운영 구상 등 해상에서의 남북협력을 위한 4가지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서해 접경해역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남-북-국제사회 삼자협력체제 구축”은 서해해상에서 남북한 긴장이 남북 교류협력에 가장 큰 장애이며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결할 대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해 있다. 이 지역은 군사적 긴장이 팽배한 지역이므로 비군사, 비정치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협력, 수산자원의 공동조사, 환경오염에 대한 공동방제와 공동예방활동을 위한 협력센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점에서 시의성 있는 남북협력 전략으로 판단된다. 접경지역에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남북한의 공동노력과 국제사회의 제도적 지원은 궁극적으로 서해에서 군사적 충돌의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이를 통해 녹색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전략적 이점도 내포하고 있다.

“동아시아 황금해안지대 건설 구상”은 한국, 북한, 중국, 일본 4개국의 공동합작으로 황해연안(중국 산둥성의 청도부터 일본 큐슈지방의 가고시마까지)을 잇는 동아시아 황금해안지대(Oriental Golden Coast)를 구축하고 동 지대를 중심으로 무역, 산업, 역사문화, 관광, 휴양도시들의 집적과 연계를 추진하자는 구상이다. 동 구상은 무엇보다

도 남북접경 서해지역에서의 남북협력을 위한 국제적 토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남북 공동의 서해 협력개발이 그동안 수차례의 협상과 협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의 뿌리 깊은 갈등과 대치로 인해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서해지역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개발과 활용을 위해서는 종래의 남북 당국 간만의 협의차원을 넘어서는 새로운 접근법 즉, 중국, 일본 등과의 협력과 연계를 바탕으로 하는 국제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중국은 현재 국가개발전략차원에서 산둥성, 하북성, 요녕성 등의 해안지대와 발해만 일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후쿠오카 등 규슈지방을 중심으로 환황해권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중국과의 무역 확대와 지역발전을 위해 서해안 개발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황금해안지대를 구축하여 중국과 일본의 환황해권 개발 및 진출 움직임과 한국의 서해안 개발사업을 전략적으로 접목하고 연계하는 한편, 이를 북한의 동북아 경제공동체 참여 및 서해에서의 남북협력 계기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환동해권 발전방안 구상”은 동아시아 황금해안지대 건설 구상과 논리적 맥을 같이 하면서 동해 접경지역에서의 남북 및 국제협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환동해권의 구성 국가와 지역들은 풍부한 자원과 더불어 각각의 전통, 문화, 경제, 산업을 지니고 있어서 서로 보완하고 함께 번영·발전할 지역경제협력권으로서의 잠재력이 매우 높다. 또한 환동해권은 현재 주변 국가들의 지역개발계획들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역이다. 러시아의 대블라디보스토크 자유무역지대, 중국의 두만강유역개발계획, 일본의 동북아지역협력구상과 환일본해운동, 북

한의 나진·선봉경제특구계획 등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한 금강산 관광개발사업의 경험도 환동해권의 공동발전 및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동해 접경지역에서의 남북연계 교통망의 복원 및 발전송로 연결, 환동해권 루트를 통한 남북제철소간 기술 교류협력, 동해 접경임해지역 산업단지 개발, 중국·러시아·일본·북한·한국을 잇는 환동해권 여객 및 물류 항로의 개설과 항구·공항 건설 등이 접경지역 환동해권 발전 구상의 핵심 내용이다.

“남북 동·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운영 구상”은 남북한이 동·서해 양측 NLL을 기점으로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자는 구상이다. 남북 공동어로구역의 설정 및 운영은 남북한 어민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것은 물론, 중국 어선들의 북측 서해 진출 및 어업자원 남획을 방지하는 한편, 해상접경지역에서의 남북한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서해지역에서의 남북 공동어로구역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되었지만 북한은 이를 서해 NLL의 무실화를 위한 전술적 차원에서 접근한 측면이 크다. 북한의 전술적 의도에 말려들지 않으면서도 공동어로구역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서해 어장과 동해 어장을 통합하여 논의하는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 즉 남북 공동어로구역은 동·서해 양쪽에서 추진하며 남북한 양측이 동·서해에서 할당해야 할 수역(水域)은 동·서해 공히 등거리를 원칙으로 하되, 양측의 합의가 있을 경우 등거리 원칙과 등면적 원칙을 상호 교차적으로 혼용할 수도 있다는 구상이 필요하다. 남북 공동어로구역은 최초에는 서해 및 동해의 각 1개 구역을 설정,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성과에 대한 평가 여부에 따라 점차 공동어로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며, 중기적으로는 동·서해 공동어로구역을 중심으로 일정 수역을 남북한 양측의 육·해상 군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사력 배치 제한구역으로 설정, 군사력 운용 및 전개를 제한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해와 서해를 포함하는 동·서해안 접경지역에서 남북한 협력은 비군사적, 비정치적 영역에서 출발하여 남북한이 개별적으로 실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호신뢰를 축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궁극적으로 비정치적 분야에서 신뢰구축은 보다 높은 단계로 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기가 되고 나아가 비무장지대의 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1. 서해 접경해역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남-북-국제사회 삼자 협력체제 (Tri-lateral Cooperative Mechanism) 구축

가. 제안배경

(1) 서해 해상 남북한 긴장은 남북 교류협력의 최대 장애

- 2002년, 2007년 남북한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금강산 관광, 개성 공업지구 지정 및 운영, 개성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 다양한 형태로 남북 교류 협력이 진행됨.
 - 서해상 군사 충돌은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경색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경제활동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서해의 평화정착은 불확실성이 크고 다른 분야 남북협력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른 남북관계 및 외교에서 상대적으로 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됨.

- 그러나 서해의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이 진행될 경우 남북관계는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여 다른 분야 교류협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줌.
 - 궁극적으로 남북관계 위기관리 비용의 절감, 한반도 이미지 제고로 ‘평화’를 국제브랜드화 할 수 있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요소도 매우 큼.

(2)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관계 경색 해결을 위한 해법 필요

- 금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고 이후 남북관계는 급랭하였고, 이후 대부분의 남북 교류협력이 단절된 상황임.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 현재와 같은 남북 긴장고조 및 대결 상태로는 변화하는 미중 관계 등 동북아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중국과 미국의 환율 갈등과 일본의 엔고 등 경제분야 현안의 급변과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상승작용을 일으킬 경우 남한의 사회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침.

(3) 남북관계 긴장 고조에 따라 지역주민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

-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어 우리 어선의 조업활동 제약 및 관광객 감소로 지역경제에 어려움 가중됨.
- 특히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은 남북관계 긴장 고조시 나타나는 데, 이는 남북화해 분위기에서는 군사적 우호관계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상호감시가 활발하기 때문임.
 - 싹쓸이 조업은 수산물 생산량 감소뿐만 아니라 해양 저층의 서식지를 훼손하여 이 해역의 건강성을 훼손함.

(4) 비정치적 현안을 중심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적 접근 필요

- 남북한 긴장관계 해소를 위해서는 남북관계 악화의 직접 원인인 천안함 사태나 NLL 현안 등 정치, 군사적 현안이 아닌 비정치적 현안을 매개로 접근이 필요함.
- 또한 남북한 당국자 직접 대화보다는 남북한 양측에 관계하고 있는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한 우회적 접근이 효과적임.

-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정치적 현안은 해양생물다양성 보호, 해양환경 및 오염관리, 수산자원 보전과 이용이 대표적임.
 - 이스라엘-요르단 간 홍해해양평화공원, 인도네시아-필리핀의 산호삼각지, 프랑스-이탈리아 간 보나파치오 해양평화공원 등은 생물다양성 보호, 관광활성화, 수산자원 보호, 유류오염방지 차원에서 협력관계를 구축,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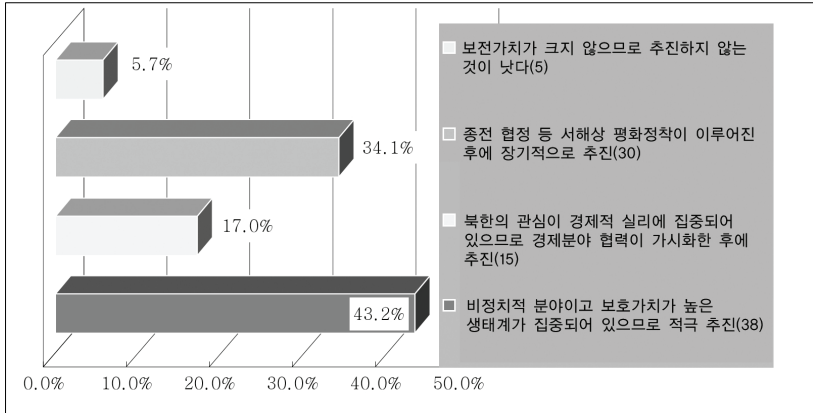
(5) 서해 접경해역이 해양생물다양성 보고 및 수산자원 서식지라는 점을 적극 활용 필요

- 서해 해양접경지역은 전세계에 2,000마리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비롯하여 남한~북한~중국(보하이만)을 이동하는 물범 및 다른 보호대상생물종의 평화로운 서식지임.
- 이에 따라 이 지역은 연안육지와 해양에 남한이 25개, 북한이 44개 등 모두 69개소의 보호구역을 집중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임.
 - 북한이 가장 활발하게 정책을 개발하고 있고, 대외활동을 하는 분야는 생물다양성분야로 협력가능성이 매우 높음.
- 또한 이 해역은 꽃게 자원이 매우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고, 한강 하구와 연결된 기수역의 특성으로 다양한 수산생물의 서식지로 알려져 있음.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4%가 접경해역의 우수 생태계 보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정책추진상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남한 내 이견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 VI-1] 서해 접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6) 2012년 IUCN 총회(제주도 개최)를 목표로 해양평화 남북한 공동 성명 및 2013년 해양평화원년 선포 필요

- 현재 일본 나고야에서는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동 당사국 총회는 최근 국제사회 중요 현안인 “전세계 보호대상생물종 보호와 유전자원 공유와 접근 등”을 다루고 있음.
- 이와 함께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은 2012년 제주도에서 총회 개최를 확정(1만 명 참가 예상)하고 있는 바, IUCN 총회를 활용하여 남북한 갈등과 대결을 평화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IUCN은 북한이 환경분야 국제기구에 최초로 가입(1963년)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접경지역 생물다양성보호는 이 기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아이템임.

나. 주요내용

(1) 남한-북한-국제기구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삼자협력 체제 구성 및 운영

- 남한-북한이 함께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는 해양환경분야 국제기구는 IUCN, UNESCO, 황해광역생태계프로그램(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이하 YSLME), 동아시아해양협력회의(Partnership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the Seas of East Asia: 이하 PEMSEA)등이 있음.
- 이 중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을 중심으로 삼자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추진 체제를 마련하고 서해 접경해역의 생물다양성과 수산자원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논의를 활성화함.
- 삼자협력체제가 안정화되는 단계에서 다음을 추진함.
 - 남북한 해양수산전문가 포럼을 운영하여 남북한 교류협력 관계를 강화함.
 - 2012년 IUCN 총회 공동전시관 마련 및 2013년 해양평화원년 선포식을 협력체제의 구체적인 사업목표로 추진함.

(2) 해양생물다양성 및 수산자원 공동조사 추진

- 공동조사는 남북한 인적교류와 신뢰가 회복된 상황에서 나타날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수 있는 교류협력 분야이나 조사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국제기구를 통해 중재가 이루어지면 상호신뢰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 공동조사 운영조직 구성, 조사체계 합의(합의를 통한 공동조사 방법론 개발, 정보 및 자료 관리프로토콜 마련, 공동조사 실시), 교육 및 인식제고 프로그램 개발 등을 우선 추진함.
- 북한은 관할 해역의 환경자료를 대외에 공개하기를 매우 꺼려하므로, 해역수질, 물리환경보다는 저어새와 물범과 같은 국제적인 관심생물이자 북한 해역의 특징을 직접 보여주지 않는 항목에 대해 공동조사를 추진함.
 - 공동조사 방식은 남한과 북한이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독립적으로 하는 방안이 가장 실현가능한 방안임.
 - 조사결과를 남한-북한-국제기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회의에서 발표하고 공유함.

(3) 서해접경해역 생물다양성보전과 불법어로 감시를 위한 공동관리·경비단(co-rangers) 운영

- 접경지역의 생물자원과 공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공동감시단(co-patrol)을 운영하고 있음.
- 서해 접경해역은 그동안 남북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지역으로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중립적 기구가 중심이 되고, 남한과 북한의

환경감시 인원이 동수로 참여하는 공동관리·경비단 운영이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수단임.

- 즉, 남북한이 같은 수의 인력을 파견하고 동일한 유니폼을 입고 합의한 관리·경비 규약에 따라 불법어로, 보호대상 생물종의 조사와 관리 등을 담당하는 것임.

○ 접경지역 관리경험이 풍부하고, 경비·관리 기술이 가장 발달한 IUCN이나 유네스코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구성, 운영함.

- 공동관리·경비단의 역할은 불법어로 단속, 어로구역에서 갈등 사전방지, 해양자원 및 생태계조사, 자연환경보전 등임.

(4) 유류오염방제간담계획(oil spill contingency plan) 공동 수립

○ 2005년에 발효한 남북해운협력합의서 발표 이후 북한산 모래 반입량 및 남북한간 선박운항 횟수는 급격히 증가하다가 최근 남북관계 급랭 이후 감소하고 있음.

○ 그러나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정에서 경제분야 수요 증대에 따른 남한-북한 사이 선박운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 지역은 천혜의 자연환경이 분포하고 있고,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및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지로서, 유류오염사고는 태안 사례에서 보듯이 보호가치가 높은 서해 접경연안 생태계와 주요 서식지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음.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 북태평양보전실천계획(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이하 NOWPAP)은 유류오염사고 대비 긴급계획을 담당하는 국제프로그램임.
 - 향후 남북한 해상 교역량 증가에 대비하여 ‘유류오염사고 대비 긴급계획 및 실행계획’을 남북한 및 국제기구 공동으로 수립함.

(5) 남북 해양수산공동개발센터의 설립 및 운영

- 북한은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정책적 관심이 높는데,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을 개발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 공동개발센터를 설치하여 항만, 수산, 연안관리, 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개발 지원, 훈련, 공동조사, 장비의 공동사용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함.
- 공동개발센터는 2013년 해양평화원년 선포식에 즈음하여 기본구상과 설계구상을 함께 발표하도록 함.
 - 후보지로는 현재 남한의 북한 왕래가 비교적 수월한 개성시가 유력하나, 향후 남북관계의 변화 양상에 따라 해주 또는 강화도가 대상지역이 될 수 있음.

(6) 남북한 해양경계지역 무인도서인 미력리도에 수산물 공동집판장(남북파시) 및 공동경비단 상징기지 설치, 운영

- 남북 양측의 직접 관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미력리도에 남북

한 수산물 매매를 위한 일종의 해상 중간 집판장(파시)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지역주민은 70% 이상이 지지 의견을 표명함.

- 또한 미력리도에 공동경비단의 상징적 기지를 설치, 운영할 경우 불법어로 감시에 매우 효과적이며, 공동집판장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우발적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음.

다. 추진방안

(1) 삼자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회의 개최, 추진전략 마련 및 TF 구성

- 남한 내 서해지역 협력방안 개발과 추진을 위한 정부부처-행정기관 워크숍을 개최함.
 - 워크숍 결과에 기초하여 남한-국제기구 준비, 남한-북한-국제기구 삼자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을 마련함.
- 삼자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TF를 구성함.
 - TF는 협의 대상 국제기구 수와 부처 관련성을 고려하여 관계 부처 및 전문가, 민간단체(필요한 경우) 등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국토해양부 및 통일부가 공동 주관부처가 되며 간사부서는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과로 지정함.

(2) 삼자협력 구축전략을 토대로 현안별로 해당 국제기구와 체계적 협의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표 VI-1] 삼자협력 구축전략을 토대로 한 현안별 국제기구와의 체계적 협의방안

내 용	협의 대상
○ IUCN 총회 참석 및 공동전시관	IUCN
○ 생물다양성 및 수산자원 분야	UNDP/YSLME(황해광역생태계프로그램), IUCN, UNEP/CBD(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UNESCO - 공동관리·경비단 구성은 IUCN 및 UNESCO와 협력
○ 유류오염방제긴급계획 수립분야	UNEP/NOWPAP
○ 남북 해양수산공동 개발센터	UNESCO-IOC(정부간해양학위원회), FAO(세계 식량농업기구)

(3) TF를 중심으로 분야별 세부 추진방안 마련

- 국제기구 및 향후 북한과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함.
 - 분야별 세부 추진방안은 중심의제, 핵심 추진주체, 자원, 추진 일정, 단계별 추진체계 등이 포함된 형태로 작성해야 함.

- 분야별 세부 추진방안은 사안의 특성에 따라 관련 부처 또는 부서가 다르게 구성되고 간사 부처(부서)가 변경될 수 있음.
 - TF는 전체적인 일정 및 사업방향에 대한 조율을 담당하여 협력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라. 로드맵

(1) 사전 준비 단계 (2010년 말~2011년 9월)

(가) 서해 접경해역 생물다양성 및 수산자원 보전을 위한 정부 방침 확정 (2010년 말)

- 천안함 사태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출구 전략 마련과 이에 기초한 전향적인 정책으로서 『서해 접경해역 생태적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정부방침』의 확정이 필요함.
 - 정부방침 공포 이전에 북한에 우회적 또는 직접 전달 방식으로 의사를 표명함.
- 정부방침 준비를 위해 통일부가 주관이 되어 관련 부처가 참석하는 소규모 논의 테이블을 마련함.

(나) 삼자협력 추진을 위한 TF 구성과 국가전략 마련 (2011년 1월~4월)

- TF는 국토해양부와 통일부가 주관부처가 되고,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과가 간사 부서가 되어 운영함.
- TF는 국내 심포지엄과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고, 이에 기초하여 남한의 삼자협력체제 추진전략을 확정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다) 현안별로 해당 국제기구와 개별적 접촉 및 삼자협력 구상 협의 (2011년 3월~8월)

- 국가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안별 대응 부처 및 부서를 정하고, 주관 부처(부서)가 관련 국제기구와 협의를 진행하여 국가전략 마련 및 개별 국제기구 협의를 병행하여 추진함.

(라) 삼자협력 추진을 위한 국제전문가 자문단(International Advisory Group: 이하 IAG) 구성 및 국제심포지엄 개최 (2011년 9월)

- 국제전문가 자문단(IAG)은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해외의 저명한 인사 또는 관련 국가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구성함.
- 국제기구와 협의 및 국제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국제심포지엄 준비를 병행하여 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함.
 - 공개 심포지엄 외에 국제전문가 자문단 내부 워크숍을 사전에 개최하여 실효성 있는 북한 참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2) 삼자협력체제 구성·운영 단계 (2011년 10월~2012년 9월)

(가) 국제심포지엄 및 전문가자문단 활동 결과 보고서 제작·배포 (2011년 9월)

- 심포지엄 및 국제전문가 자문단 권고문 또는 활동결과보고서를 국문 및 영어로 제작하여 배포함.

- 활동결과보고서는 삼자협력 추진을 위한 일정, 방법, 추진주체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

(나) IUCN 및 관련 국제기구와 삼자협력 추진을 위한 MOU 체결 (2011년 12월)

- 활동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해당 국제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양자적(bilateral) MOU, 다자적(multilateral) MOU를 체결함.
 - 남한과 개별 국제기구, 남한 및 모든 국제기구가 서명하는 2종의 MOU 추진함.

(다)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삼자협력체제 구성을 위한 작업반 회의 개최 (2011년 11월~2012년 2월)

- 작업반 회의를 통해 3자 협력의 필요성을 남한-북한이 공유하고, 2012년 IUCN 총회 참석 및 2013년 서해 해양평화원년 선포 준비를 위한 일정을 협의함.
 - 개최장소는 제3국 또는 개성, 금강산(관광 재개시)으로 추진함.
- 1기 작업반 회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을 전제로 2013년까지 다양한 형태로 여러 번의 작업반 회의를 추진함.

(라) 남북한 해양수산전문가 포럼 구성 및 운영 (2012년 1월~2013년)

- 작업반 회의와 별도로 내용생산을 위한 남북한 해양수산전문가 포럼을 구성, 운영하여 기술적 문제를 해결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 전문가 포럼은 삼자협력체제 운영방안을 개발하고, 장래 해양수산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메커니즘을 지향함.

(마) 국제전문가 자문단 및 남북협회의 성과를 기초로 삼자협력체제 추진위원회 운영 (2012년 4월~2013년)

- 국제전문가 자문단의 논의 성과와 남북협회의 성과에 기초하여 삼자협력체제 구성위원회를 운영함.
- 남북전문가를 국제전문가 자문단에 포함시켜 위원회로 전환함.
 - 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삼자협력 발전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워킹그룹 운영, 보고서 작성, 성과 홍보 등을 추진함.

(바) IUCN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공동전시관 및 행사 준비를 위한 남북 공동 실무협의팀 구성·운영 (2012년 1월-제5차 WCC 개최시)

- WCC 공동전시관 운영 및 공동행사 진행함.

(3) 남북 협력사업 구체화 및 관계 발전단계 (2012년 WCC-2013년)

- 이 단계는 생물다양성 및 수산자원 보전을 위한 사업별 전략을 시행하는 단계로, 제5차 WCC 및 남북협력의 성과에 기초하여 개별 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함.

(가) 남북 전문가 포럼을 중심으로 해양상태 이해 공동보고서 발간 (2013년 중반)

- 공동보고서 발간 과정에서 상호 신뢰가 구축되면 시범사업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조사를 추진함.
 - 공동조사에 필요한 장비는 남한이 제공하고, 사전에 모의 조사 시행함.

(나) 해양수산공동개발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합의 (2013년 중반)

- 공동보고서 발간 및 공동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고, 향후 남북한 해양수산 공동발전을 위한 개발센터 설립 합의 및 구체적인 설립방안을 마련함.

(다) 공동관리·경비단 구성, 미력리도 파시 형성, 유류오염긴급방재 계획 등 삼자협력 사업내용에 관한 포괄적 합의 (2013년 10월)

(라) 서해평화 정착 원년 선포식 (2013년 말~2014년 초)

- 행사의 상징성과 파급력을 고려하여 유엔총회에서 원년 선포식을 추진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표 VI-2] 서해 접경지역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삼자협력체제 구축방안 로드맵

추진사항	사전준비단계 (2010년 말~2011년 9월)				구성 및 운영단계 (10월~2012년 WCC)				발전단계 (2012년 9월~2013년)	
삼자협력 구축 정부방침 확정	○									
TF 구성 및 국가전략 마련		○								
국제기구 접촉 및 삼자협력 구상 협의			○							
국제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심포지엄 개최				○						
IAG 및 심포지엄 활동 결과보고서 배포				○						
국제기구와 MOU 체결					○					
작업반 회의(WG) 운영					○	○	○	○		
남북 해양수산전문가 포럼 운영						○	○	○	○	○
삼자협력 포럼구성 추진위원회 운영							○	○	○	○
IUCN 남북 공동 실무협의팀 운영						○	○			
해양상태 이해 공동보고서 발간								○	○	○
해양수산공동개발센터 설립 운영방안 협의										○
공동관리 경비단 구성, 미력리도 파시, 유류오염긴급방제 등 삼자협력 포괄적 협의										○
서해평화 정착 원년 선포식										○

마. 기대효과

(1) 서해 천안함 사고 후 극한 대립관계 해소 출구전략으로 활용 가능

- 현재 남북한간 천안함 이후 긴장 최고조 상태인 바, 정치·군사적 갈등을 비정치적 아이템인 생물다양성 보전으로 해소하는데 기여함.

(2) 해양관광 확대와 방문객 증가, 개방적 수산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

- 남북한 긴장 고조에 따른 조업시간 단축, 중국어선의 남획과 불법 싹쓸이 어업으로 인한 피해 감소 가능함.
- 해양관광 콘텐츠 다양화, 남북연계 관광 활성화는 교통수단 다양화 및 지역소득 증대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 등에 기여함.

(3) 북한의 해양수산 관련 기술 및 역량 강화로 한반도 해양력 증진에 기여

- 남북협력과정에서 기술전수, 관리역량 증진과 같은 협력사업으로 한반도 전체의 해양관리 역량 증대와 이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함.

(4) 남북관계 개선 과정에서 나타날 지속가능하지 않은 연안개발을 보완하는 메커니즘 구축

- 남북관계 개선시 경제분야 협력에 집중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항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후 남북협력이 가시화되면 국제적으로 더 많이 알려진 DMZ를 피해 연안으로 개발이 집중될 전망이다.

- 멸종위기종, 희귀생물종을 비롯한 서해연안의 높은 생물다양성을 무분별하게 훼손하지 않고 개발과 보전간 균형 실현에 기여함.

(5) UN을 중심으로 국제기구의 참여와 협력으로 국가 위상 제고

- 접경연안의 현안 해결에 UNEP, UNESCO, 정부간해양학위원회(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이하 IOC), UNESCO 및 지역해 프로그램의 관심은 매우 높은 수준임. MPP KOREA 사업에 대한 국제기구의 관심은 매우 높았음.
- 주요 국제기구의 참여로 국제사회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 집중, 분쟁과 대결에서 평화와 생태의 상징으로 전환 가능함.

(6) IUCN 총회 개최시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보호구역화 및 평화원년 선포로 한반도를 “세계평화의 아이콘이자 상징공간”으로 업그레이드 가능

- 서해연안 접경지역 남북협력은 생태적 평화(ecological ‘protection’), 정치군사적 평화(politico-military ‘peace’), 경제적 평화(economic ‘prosperity’)를 실현하는 통합 패키지 전략으로 가능하기 때문임.

2. 서해지역 개발을 위한 국제적 토대: 『Oriental Golden Coast』건설

가. 제안배경

(1) 남북접경 서해지역 개발을 위한 국제적 접근 시도

- 남북접경 서해지역은 남북 어획량 확대 및 공동어장 조성, 한강 하류 활용, 서해연안 항로 개설, 크루즈 해양사업 개척과 진출, 남북 및 환황해 교역항구 건설 등 개발 가능성과 활용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임.
- 그러나 남북접경 서해지역은 남북한의 군사력이 가장 첨예하게 대치 및 대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연평해전(1999년), 제2연평해전(2002년), 대청해전(2009년), 천안함 피습침몰사건(2010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한반도의 긴장 고조와 남북한간의 전면적인 무력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위협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음.
- 그동안 남북한의 양 당국은 서해지역에서의 긴장 고조와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한편, 동 지역의 개발 가능성과 활용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수차례의 협상과 협의를 시도했으나 남북한 간의 뿌리 깊은 갈등과 대치로 인해 현재까지 남북 공동의 서해 협력 개발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제 남북접경 서해지역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개발과 활용을 위해서는 종래의 남북 당국간 만의 협의차원을 넘어서는 새로운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접근법 즉, 중국, 일본 등과의 협력과 연계를 바탕으로 하는 국제적 접근법이 필요함.

(2) 중국과 일본의 환황해권 개발 및 진출 움직임에 대한 대응과 활용

- 중국은 현재 국가개발전략차원에서 산둥성, 허북성, 요녕성 등의 해안지대와 발해만 일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후쿠오카 등 큐슈지방을 중심으로 환황해권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한국도 중국과의 무역 확대와 지역발전을 위해 서해안 개발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중국과 일본의 환황해권 개발 및 진출 움직임과 한국의 서해안 개발사업을 전략적으로 접목하고 연계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나아가 이를 한·중·일 경제교류협력의 강화와 북한의 동북아경제공동체 참여 유도 계기로 활용하고 확대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3) 국제적 대형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한 한국의 위상과 번영 확보

- 21세기 들어 동아시아는 세계경제와 정치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중국은 건국 60주년을 맞아 초강대국 건설에 대한 의욕을 여과 없이 드러내면서 동아시아의 패권적 위치를 차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일본 또한 경제 강대국으로서 동아시아에서의 자국 기득권 확보 및 중국의 급격한 부상에 대한 견제를 도모하고 있음.

- 중국의 급부상과 중일간의 치열한 경쟁은 한국의 안보와 번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 즉, 두 개의 강대국들 틈에서 한국의 위상과 활동공간은 위축될 수 있으며 양국간 경쟁의 치열성 여하에 따라 한국의 외교와 경제는 진퇴양난의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
- 한국의 안보와 번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의 경쟁구도를 선순환적 협력구도로 변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한국의 주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즉, 황금해안지대 건설이라는 한국 주도의 국제적 대형프로젝트(international mega-project)의 추진을 통해 환황해권 개발을 위한 한·중·일 삼국의 협력을 도모하는 한편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번영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4) 북한의 개방 및 남북관계 개선 유도

- 황금해안지대의 건설은 또한 북한의 개방과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북한의 국제사회로의 참여를 가져오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음.
- 북한은 황금해안지대의 건설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며, 환황해권 연안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이 황금해안지대의 성공적인 건설과 완결을 위해서라도 북한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압박할 것임. 환황해권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또한 북한의 참여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음.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 즉, 국제사회의 압박과 설득·회유 그리고 보장을 바탕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서해지역의 개방과 남북협력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이를 남북관계의 여타 분야로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함.

나. 주요내용

(1) 「동아시아 황금해안지대」 구축

- 한국, 북한, 중국, 일본 4개국의 공동합작으로 황해연안(중국 산둥성의 청도부터 일본 큐슈지방의 가고시마까지)을 잇는 동아시아 황금해안지대(Oriental Golden Coast)를 구축하고 동 지대를 중심으로 무역, 산업, 역사문화, 관광, 휴양도시들의 집적과 연계를 추진함.
 - 동아시아 황금해안지대는 2천 5백년 전 세계문명의 중심을 이루었던 에게해의 영화를 아시아에 재현하는 것으로서 21세기는 동아시아가 세계의 주역임을 나타내는 것임.
- 우선, 중국 산둥성의 청도를 시작으로 일본 큐슈지방의 가고시마까지 황해연안을 잇는 대형 협력지대를 구축하고 이를 동아시아 황금해안지대(Oriental Golden Coast)로 명명함.
 - 즉, 중국의 청도-위해-천진-대련-단둥-북한의 신의주-의주-남포-해주-한국의 강화-인천-평택-군산-목포-제주도-일본의 후쿠오카-가고시마에 걸쳐 연담화되어 있는 4국 협력지대를 구축함.
- 황금해안지대는 해당 해안지역의 특성별로 각기 세계수준의 자유

무역지구, 산업지구, 역사문화지구, 관광지구, 휴양지구를 육성하고 이어 이들 지역간의 연계와 협력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함.

- 한국, 중국, 일본, 북한은 각기 자체적인 발해만과 황해 연안지역 개발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한편 개발계획의 상호교환과 논의를 통해 4개국 연합 황금해안지대 구축과 개발의 종합성, 포괄성, 체계성, 보충성을 확보함.
- 황금해안지대는 일차적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 북한의 발해만과 황해연안 지역간의 경제협력과 교류연계를 바탕으로 환황해권 지역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지향함.
- 아울러, 구성지역 간의 지역(regional)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 체결을 추진하여 지역경제공동체의 구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이를 한·중·일 그리고 북한 4개국의 국가간 FTA 체결의 첫 단계이자 시험장으로 활용함.
- 황금해안지대는 궁극적으로 각 해안지역간의 집적과 융합을 통해 세계최고의 경제산업 및 문화관광 복합지구로 성장하는 것을 지향함. 즉 ‘21세기 세계정치경제의 에게해’가 황금해안지대의 최종 목표임.

○ 한편, 황금해안지대가 둘러싸고 있는 황해와 발해만을 청정바다로 변모시키고 이를 세계적인 크루즈 항로구역으로 개발함.

- 황금해안지대의 크루즈는 역내 주요 항구들에 대한 기항과 육상관광을 중점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4개국간 인적 방문과 교류 기회의 확대를 도모하고 특히, 북한의 신의주, 남포, 해주 등에서의 기항과 육상관광을 적극 추진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2) 「황금해안지대 협력기구」 구성

- 황금해안지대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 그리고 지속적인 협력 확보를 위해 한국, 북한, 중국, 일본 4국의 지방정부들이 참여하는 황금해안지대 협력기구(Organization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in the Oriental Golden Coast)를 구성함.
 - 황금해안지대 협력기구는 비정치적인 기구로서 각국의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상호간 경제·사회·문화협력에 중점을 두는 4국간 국제기구로 운영함.
 - 황금해안지대 협력기구는 각 지역의 대표자들(도지사, 성장, 현지사, 인민위원장)이 참여하는 운영회의와 기구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 그리고 각 지역별 연락사무소 등으로 구성함. 운영회의의 의장은 지역 대표자들 중 선출하되 국적을 감안하여 4개국이 순번제로 담당함. 사무국은 한국에 본부를 두며 사무국 인력은 각 지역에서의 파견인력으로 구성함. 아울러 황금해안지대의 각 구성지역들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함.
 - 황금해안지대 협력기구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이하 ECSC)의 사례와 같이 향후 한국, 중국, 일본, 북한 4개국 간의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시발점으로 기능토록 함. 프랑스 외무장관 로베르 슈만의 제안에서 비롯된 ECSC는 유럽의 석탄·철강의 생산 및 판매를 공동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51년 출범한 비정치적 기구로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서유럽 주요 6개국이 참여하였음. ECSC는 이후 유럽공동시장(European Common Market),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등의 모태가 되면서 결국 오늘날의 유럽연합(European Union)을 이끌어낸 선구자적 국제기구로 평가받고 있음.

(3) 남북접경 서해지역 공동 개발

- 한국은 동아시아 황금해안지대의 건설을 바탕으로 남북접경의 서해지역 공동개발을 추진함. 즉, 한국은 황금해안지대 협력기구라는 다자간 비정치적 기구를 통해 남북접경 서해지역에서의 남북협력과 공동개발을 우선적·적극적으로 추진함.
 - 동아시아 황금해안지대의 구축은 그 자체가 목적이면서도 남북접경 서해지역에서의 남북한 협력을 위한 수단임. 즉, 동아시아 황금해안지대라는 국제적 합의와 틀을 바탕으로 하여 국제협력에서 지역협력으로 이어지는 방식을 통해 남북한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추진함.
 - 한국과 북한은 황금해안지대 협력기구내에 남북접경 서해지역의 공동개발을 담당하는 「서해개발 공동협력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강하류 활용, 서해 공동어장 조성 및 연안 항로 개설, 신의주·해주·남포 등의 교역항구 건설 등을 추진함.

(4) 한·중·일·북의 4개국 정상회담 정기 개최

- 동아시아 황금해안지대와 황금해안지대 협력기구의 성공적인 구축과 운영을 각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한·중·일·북 4개국 정상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 4개국 정상회담은 비정치적 국제기구이자 지역협력기구인 황금해안지대 협력기구를 측면에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종의 Umbrella Committee로 기능하면서 황금해안지대 협력기구의 중요 애로사항 해소, 사업영역의 확대 및 제시, 4개국 공동협력의 향후 비전 수립 등의 역할을 담당함.

다. 추진방안

(1) 국내적 차원

- 한국의 중앙정부는 관련 광역시도(인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제주도)와의 공동작업을 통해 서해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적 사업(국책사업)으로 추진함.
 - 중앙정부는 특히 광역시도 개발계획간의 중복성과 비현실성을 방지하고 각 계획의 특수성과 상호보완성 제고에 주력함.
- 관련 광역시도는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바탕으로 중국, 일본 등의 황해연안국들과의 교류·통상협력은 물론 동북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서해연안 및 내륙연계 개발계획을 수립함.
 - 광역시도는 또한 중앙정부를 조정자로 하고 각 광역시도가 정회원으로 참여하는 『서해연안지역 광역시도협의회』를 구성하여 내부적인 의견조율과 외부에 대한 공동대응을 도모함.

(2) 남북관계 차원

- 한국의 중앙정부는 환황해권 경제협력이 한국과 북한간의 양국

간 사업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경제협력사업임을 주지시켜 북한의 경계심을 해소하고 동 사업에 대한 참여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노력을 전개함.

- 환황해권 경제협력에 북한이 참여하는 경우, 한국과 북한은 황금해안지대 협력기구내에 한국과 북한이 주체로 참여하는 「서해개발 공동협력 분과위원회」를 조직하여 남북접경 서해상에서의 남북협력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함.

(3) 국제적 차원

- 한국의 중앙정부는 중국과 일본 중앙정부들과의 공동협의를 통해 환황해권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한·중·일 3국 공동으로 북한 당국에 경제협력을 제안하고 촉구함.
 - 환황해권 경제협력에 대해 북한이 참여를 거부할 경우, 한·중·일 3국만이 우선적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이후 중국의 압박과 설득, 일본의 경제적 유인책을 통해 북한을 동참시키는 단계적 확대전략을 추진함.
- 한국의 관련 광역시도는 중국과 일본의 황해연안 지방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교류협력활동을 전개하여 환황해권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주지시키고 한·중·일 3국의 지방정부 그리고 북한의 서해연안 지역의 대표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황금해안지대 협력기구를 구성함.
 - 황금해안지대 협력기구는 이후 황해연안에서의 한·중·일·북 4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국의 경제협력구상과 세부사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함.

- 황금해안지대 협력기구는 구성지역간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지역 FTA' 체제를 구축함.

라. 로드맵

(1) 2010년 하반기

(가) 동아시아 황금해안지대 구상과 비전 수립을 위한 TF 구성

-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공동으로 TF 구성
- 서해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 서해연안지역 광역시도협의회 구성
- 동아시아 황금해안지대 구상·비전 수립 완료

(2) 2011년 상반기

(가) 동아시아 황금해안지대 구상 사전협의 및 공식 제의

- 한국 중앙정부는 중국, 일본, 북한 당국과의 내부적·비공식적 접촉을 통해 4개국 경제협력 및 동아시아 황금해안지대 구축 가능성을 사전 논의함.
- 중국, 일본, 북한의 동의 확보시 동아시아 황금해안지대 구상을 공식 제의함.

- 중국과 일본의 동의를 확보될 경우 북한의 동의를 없더라도 동아시아 황금해안지대 구축을 추진하며 이후 중국과 일본을 통해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고 압박함.

(3) 2011년 하반기

(가) 황해연안 각국 지자체·지역(성, 도, 현) 대표자 회의 소집

- 한국, 중국, 일본, 북한 중앙정부의 후원아래 발해만과 황해연안 지역의 대표자 회의를 개최(한국에서 개최)함.
- 동아시아 황금해안지대 구축에 대한 지역간 공동 협력을 선언함.

(나) 4개국 실무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동아시아 황금해안지대 구상에 대한 실무검토와 향후 이행방안 수립을 위해 해당지역들이 주체가 되어 4개국 실무검토위원회를 구성함.
- 동아시아 황금해안지대의 비전과 사업영역, 황금해안지대 협력 기구의 조직과 운영방안, 향후 일정 등을 조사·연구·논의·제안하는 것이 4개국 실무검토위원회의 기능이자 역할임.

(4) 2012년 상반기

(가) 황금해안지대 협력기구 구성 및 공식 출범

- 황금해안지대 협력기구의 비전, 사업, 조직 확정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 운영위원회와 사무국 구성
- 분과위원회(경제협력, 사회문화, 공동프로젝트 등) 설치
- 제1차 운영위원회와 4개국 정상회의의 개최를 통해 황금해안지대 협력기구의 비전 선포 및 공식 출범

(나) 북한과 함께 황금해안지대의 특별분과위원회로서 「서해개발 공동협력 분과위원회」를 구성

- 남북 공동으로 남북접경 서해지역에서의 협력방안 논의 개시

(5) 2012년 하반기

(가) 황금해안지대 협력기구의 분과위원회별 사업계획 확정 및 추진사업단 구성

- 황금해안지대 구성 지역간의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공동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 수립·확정·발표 및 추진사업단 구성

(나) 「서해개발 공동협력 분과위원회」의 사업계획 확정 및 추진사업단 구성

- 남북접경 서해지역의 평화와 안전, 공동어로, 항로개설, 한강하류 활용 등의 남북협력사업 합의 및 추진사업단 구성

(6) 2013년

(가) 황금해안지대 협력기구 본격 가동 및 남북한 공동의 서해 개발 착수

[표 VI-3] Oriental Golden Coast 건설방안 로드맵

		2010	2011	2011	2012	2012	2013	2013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남북관계 현상 지속		남북관계 대화 개시		남북관계 활성화		
국내차원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공동TF 구성	○	○	○				
	서해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	○	○					
	서해지역광역시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	○	○	○	○	○	○	○
	황금해안지대구상 수립	○	○					
	대국민 홍보 및 공감대 확산	○	○	○	○	○	○	○
남북차원	사전논의 및 의향타진		○	○				
	서해개발공동분과 구성				○	○	○	○
	서해접경지역협력사업 논의			○	○	○	○	○
	서해접경지역협력사업 추진						○	○
국제차원	중국/일본 등과 사전 논의 및 의향 타진		○	○				
	지역대표자회의 개최			○				
	4개국 실무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황금해안지대 협력기구 구성 및 운영				○	○	○	○
	분과위원회 설치 및 사업계획 수립				○	○	○	○
	황금해안지대 협력사업 추진						○	○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마. 기대효과

- 황해연안을 세계적 산업·교역·문화·휴양 중심지역으로 육성
- 한국 주도의 국제적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 남북접경 서해개발의 국제적 토대 확보
- 남북관계 개선 및 남북협력 확대

[그림 VI-2] 동아시아 황금해안지대



3. 환동해권 발전방안

가. 제안배경

(1) 동해권의 상대적 낙후

- 강원도는 동해에 212km의 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정학적으로도 환동해권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임해도임. 그러나 지금까지 수산업과 해수욕장의 기능을 제외하면 동남해안공업벨트와 서해안 공업단지와 같은 임해지역의 장점을 크게 살리지 못하고 있었음.
- 아직 활성화 되지는 못하였지만 환동해권은 풍부한 자원과 제각기 다른 전통, 문화, 경제, 산업을 지니고 있어서 서로 보완자원과 국지적 경제협력권으로서의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그러나 환동해권인 우리의 동해안은 서남해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 동해권은 포항과 울산에 대규모 공업단지가 존재하지만 산업구조가 단순하며 지역은 전반적으로 산업구조의 취약, 국제성의 결여, 교통의 불편, 중심도시의 부재 등이 문제가 됨.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수도권 집중의 완화와 균형적인 지역개발이라는 전략을 추진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지만, 국제화시대, 무한경쟁의 시대에 나라와 지역이 경쟁에서 탈락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환동해권의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으로 봄.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2) 동해권의 부상

- 동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늘 긴장이 감도는 바다였음. 그러한 동해가 이제는 동북아시아의 국제협력을 위한 중요한 매개자로 바뀌어지고 있음. 오늘날 동북아 지역국가들의 이러한 모임과 협력체의 구축을 위한 노력은 이 지역국가들 사이의 과거에 불행했던 적대적 대결, 교류의 단절, 침략과 피침략을 반성하고 21세기의 동북아시아와 환동해권 국제사회의 발전에 있어 상호협력 체제를 증진시키기 위한 깊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임.
-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의 경험은 환동해권 지역에서의 남북 협력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환동해를 중심으로 남북한간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충분히 구상해 볼 수 있음.
- 환동해권인 강원도는 수도권 3,000만 명의 직접 배후지와 남북관계의 개선과 환동해권의 교류증진으로 동북아 7억 명의 인구를 잠재관광객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추고 있음.
- 환동해권이 새로운 경제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원주~강릉 철도는 환동해권의 새로운 수송루트로 각광받을 수 있음.
- 동해연안 접경지역은 지리적으로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을 잇는 바닷길의 거점으로 남북간 해운 물류 교통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음. 물류 사업은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안보 의식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이후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상당히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됨.

(3) 환동해권 개발의 필요성 증대

- 환동해권인 강원도는 관광산업을 21세기의 승부 산업으로 천명하였고 관광 진흥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는 지역적, 계절적, 관광객의 편중과 내국인 관광객의 수용력 초과와 상대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관광수용태세가 국제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환동해권과 동북아지역에서는 현대적 평등한 주권국가개념이 정립된 19세기 이후 이 지역의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어떠한 형태의 국제협력체제도 존재해 본 경험이 없음. 때문에 새로운 환동해권 국제협력체제의 모색을 논하는 것은 그 의의가 더욱 크며 특히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남북한 공동개발을 하는 것은 동북아 평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침.
- 현재 한국은 세계화, 정보화의 여파 속에 세계 각 나라와의 무한 경쟁 속에서, 또한 일본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기술력이나 단가 면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가 매우 힘들어서, 전통적인 강세를 보이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많은 부분들조차 장래를 내다보지 못할 지경에 와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환동해경제권의 활성화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탈출구로서 꼭 필요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 국제적으로 볼 때, 환동해경제권의 여건은 남북한관계의 개선, 일본경제의 재생, EU,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이하 NAFTA) 등과 같은 국지적 경제권 형성추세 등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 과거 10년 전에 비하여 환동해경제권의 역할과 활성화가 더욱 기대되고 있는 상황임.
- 환동해경제권은 국가와 지역간에 공통된 문화적 특성을 보유하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적 특성이 공존함으로써 교류와 경쟁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음.
- 환동해권은 다음과 같은 주변국 모든 개발 계획의 접점임.
 -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대블라디보스토크 자유무역지대
 - 중국의 동북3성지역과 두만강유역개발계획
 - 한국의 '북방정책'과 강원도의 KARTELL(Kangwondo's Active Role Toward East-sea rim's Local Leader) 구상
 - 일본의 동북아지역 협력구상과 '환일본해운동'
 - 북한의 개방정책과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
 - 미국의 대아시아정책과 환동해권 국제협력체제

나. 주요내용

(1) 동북아 물류항로 개설

- 도시 인프라구축: 신항과 배후단지 조기완성, 고속도로(포항~강릉)와 고속철 등 고속도로망 완비, 동해 중·남부선 건설 및 복선화 등을 통해 북한, 중국 등 대륙 도시 및 환동해권 항구들과 쉽

게 연계되도록 함.

- 북한과 중국, 러시아지역으로부터 철광석 수입 다변화를 통해 민간부문의 경제협력을 꾀할 수 있고 2차적으로는 환동해권 루트를 통해 남북 제철소간 기술 및 협업 교류 시도함.
-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 지리적 강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환동해경제권, 환태평양권과 연계한 발전을 도모하고, 안으로는 지방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국토의 균형성과 국가경쟁력을 동시에 제고함.
 - 환동해축 구축: 부산·울산~포항~강릉·속초~(나진·선봉)를 중심으로 동북아를 겨냥한 국제적 생산·교류기반을 구축하여 물류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갖추. 또한 동해·삼척의 환동해권 물류중심지를 실현함.
- 환동해 여객, 물류 중심공항 육성 사업: 양양 국제공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일본, 러시아 및 중국을 잇는 환동해권 연결공항을 개발함. 이는 다국가적 협력을 요구하며 나아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것임.
- 남북경제공동체를 통해 신성장동력 확보: 남·북·미·일·러의 5개국 경제협력 위에 환동해권 벨트를 구축함으로써 21세기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함. 특히 2008년 8월 발표된 ‘9개 남북경협 합의서’에서는 해주항을 민족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해주경제특구로 발전시킨다는 서해안 협력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예고하는데, 동시에 동해안에서의 경제협력 활성화 기대도 높여 주고 있음.

[그림 VI-3] 환동해권 항로도



(2) 관광사업의 활성화

- 환동해권 관광사업의 활성화와 환동해권 도시들과의 경쟁과 협력을 위한 환동해 연구소의 개설로 본격적인 사업을 위한 기반 조성을 함. 이를 통해 기초 인프라 설치 및 문화유적지 조사·발굴이 이루어져야 함.
- 동해안 연안의 관광벨트화: 동해연안 접경지역은 동해안과 백두대간의 해변과 산으로 형성되어 금강산, 설악산, 해수욕장 등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기본적인 관광자원이 풍부함. 이러한 자연관광자원뿐만 아니라 보다 유인성이 강한 관광상품의

개발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함.

- 양양국제공항과 정선지역 카지노를 연계한 테마형 여행상품을 개발함. 또한 강릉의 체류형관광지를 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함. 예를 들어 강릉의 단오제를 관광상품으로 개발, 속초·고성·양양을 잇는 고품격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고성의 문암진리 선사유적 개발, 고성군의 화진포 해수욕장 등을 개발함.

○ 강원도를 “환동해권 관광휴양 및 웰빙산업의 프런티어” 지역으로 선정하여 해외 의료관광객을 유치, 직원들에게 간단한 진료와 관련된 회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남북간 관광사업 연계: 환동해권 관광자원의 적극적 개발과 홍보를 함.

- 삼척에서 원산에 이르는 동해안의 경치와 주변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
 - 경포도립공원, 경포해수욕장, 설악산 국립공원, 동해 삼척시의 천연동굴, 원산시의 명사십리, 송도천, 내금강과 금강천 등 남북한이 함께 관광 사업을 연계하는 작업을 통해 지역 발전과 남북평화에 기여함.
- 현재 수준에서는 북한의 유적지 실태를 파악하여 정비하는 기반시설 작업이 우선됨.
 - 아직 서해안과 달리 동해연안 접경지역에서의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흡한 상태임.
 - 또한 이 지역은 기초 인프라가 상당히 취약하고 인구가 늘지 않아 안타까운 상황에 있음.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 환동해권 관광·휴양산업 전진기지를 구성함.
 - 관광·휴양산업과 연계된 지역특성화축을 구축하고 교류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교통·통신망을 확충함. 또한 테크노밸리 추진에 의한 청정복합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관광인프라 정비 및 전 산업의 관광자원화를 시도함.

- 환동해권 국제관광 및 기간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함.
 - 환동해권 최대의 아울렛 몰 유치를 통해 관광객의 흡수와 지역발전을 꾀하고, 동아시아 관광포럼 등을 통한 순환 관광루트를 개발함.
 - 러시아의 연해주, 중국의 백두산, 일본 북부의 온천 등지를 잇는 관광 네트워크를 개발하여 이 지역을 동북아 관광의 중심으로 개발할 수 있음. 이를 위해 국제교류를 위한 규제 완화 및 국가 보조금 지급 등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함.

다. 추진방안

(1) 국내적 차원

- 중앙정부는 중국의 개방과 국교수립 이후 환황해지역간 교류 및 경제협력을 위해 서해안지역에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 대규모의 사회기반 시설을 집중 투자하고 있으나, 동해안지역에는 투자가 가시화되지 못한 상태에 있음.
 - 이 지역은 중앙정책으로부터 그동안 소외를 받아온 것이 사실임. 하지만 환동해경제권 형성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와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이 시기를 맞이하여 중앙정부차원에

서 환동해 관련지역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2009년 5월 기획재정부에서 강원도를 비롯한 경북, 울산, 부산 등 한국의 동해안 4개 지역을 포함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reat Tumen Initiative: 이하 GTI)을 비준함.
- 환동해권 항구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원스톱(one-stop)서비스 제공,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선사, 화주, 포워더, 운송사에 각종 인센티브(incentive) 제공, 장기간 무료 장치 및 100% 온독(on-dock) 서비스 제공, 제3자 물류 서비스 지원을 추진함.
- 물류산업을 국내 수출산업인 제조업 등을 지원하는 인프라나 단순히 화물을 싣고 내리는 중계기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저탄소 녹색물류체계 구축을 통해 제조업에 버금가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음.
- 동해안의 남부지역은 포항을, 북부지역은 동해시를 환동해권 중심항만으로 개발, 항만 배후단지를 확대하고 외국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함.
- 물류산업의 경쟁력 방안으로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대형 물류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안정화와 선진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 도시인프라 구축: 항만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구 및 텔레포트로 개발하고 동해선 복선화 및 동해중부선 조기 착공, 물동량 및 여행객들의 높은 이용을 위한 부대시설 및 연결교통을 완비함.
- 경쟁력 있는 적정 산업기반 및 협력체제 구축: 환동해경제권 지역들과의 기술, 자원, 노동력 면에서의 협력과 보완을 추진하고 이를 통하여 장기적 실리를 얻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실천함.
- 환동해권 발전계획 수립, 동해권관광벨트 조성, 동해안발전기획단 설치, 환동해권 연구센터 건립 등을 위한 회의와 국내외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환동해권 연구소를 설립함.
- 스토리텔링을 통해 특색 있는 곳들을 관광자원화함.
 - 해양관광자원 개발, 고적답사, 골프투어, 바다낚시 등 관광코스 개발, 관·학만이 아닌 지역의 기업과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
- 교류와 협력을 시도함.
 - 환동해권 도시 및 지역들 간의 관, 학, 기업, 시민단체간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교류 시도 및 네트워크 구축하고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들과 정기적인 학술심포지엄이나 세미나를 개최함.
 - 경제, 산업, 기술면, 특히 관광사업에서의 분업 및 협력을 전개함.

- 도시인프라 구축: 물동량 및 여행객들의 높은 이용을 위한 부대 시설 및 연결교통을 완비함.

(2) 남북관계 차원

- 남북한 교류협력거점 및 사업의 적극적 발굴을 추진함.
 - 경제·문화·환경 중심의 다양한 교류협력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임해지역 산업단지 개발 및 전력·통신 등 북한지역 인프라 확충을 추진 검토하며 자원의 공동이용 및 관리 등의 협력을 강화함.
- 남북연계 교통망의 복원을 추진함.
 - 남북한 간에 단절된 육상교통망의 단계적 복원(국도 6개, 철도 4개 노선) 및 중장기적인 연안수송체계 구축을 추진함.
 - 남북한 간의 시범적인 물류항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정부의 규제완화 및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며 다음으로는 시범항로를 확장하여 사업성을 높이고 지역 및 국가 경제에 파급효과가 높은 노선을 선정하여 물류항로 확장을 유도함.
- 관광 자원의 공동이용 및 공동관리 등의 협력 강화: 비무장지대의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연구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의 공동이용과 공동관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이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음.
- 남북교류협력 추진체계 강화: 민간과 국제적 협력을 활용하여 관광자원에 대한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3) 국제적 차원

- 극동 러시아의 개발, 2012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APEC)행사 개최로 인한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 중국 동북3성의 새로운 물류정책 발표 등으로 환동해권 사업은 향후 북방물류의 중심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역내 상황을 적절히 이용해야 함.
 - 러시아는 물론 중국의 동북3성은 베이징이나 다롄 중심의 기존 루트가 체중이 심하고 비용이 많이 들자 두만강과 나선특별시 중심의 해상수송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 동해안~서해안 루트 활용이 검토되어야 함.
 - 러시아도 2012년 APEC 정상회담이 열리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교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물류망 확충을 추진 중임. 하지만 한국의 경우 환동해권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지역적 차원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 중국의 경제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북3성의 경우 발생물량의 70~80%가 상하이 이남, 특히 광둥지역으로 수송되고 있음. 중국은 동북3성 진흥계획에 두만강개발계획을 포함시키며 두만강 접경지역의 운송 인프라 확충을 구상 중임.

- 환동해권 그리고 환동해권 나라와 지역들 간의 교류와 공동작업을 통하여 환동해경제권 개발을 위한 방향성이 정립되고 이에 다른 각 지역의 발전계획들이 수립되어야 함.

- 1994년 7월에는 환동해정책의 일환으로 “환동해권 카르텔:

(Kangwondo's Active Role Toward East-sea rim's Local Leader)” 구상을 발표한 바 있으며, ‘환동해권 4개국지사·성장회의’를 2회에 걸쳐 개최한 바 있음.

- 제1단계로 환동해권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의 확대를 꾀한다는 것이었고 2단계에서는 환동해권 지방정부의 상설협의기구를 구성한다는 것이었으며, 마지막 제3단계에서는 환동해권 관광·무역의 운송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었음.

○ 각종 제도와 생활여건을 정비함.

- 글로벌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 구축, 컨벤션센터 운영, 국제협력연구 및 인적 네트워킹 촉진, 국제회의 및 박람회를 추진하여 환동해권이 물류와 관광의 중심지가 되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 국제수준의 주거 및 문화시설 완비, 국제초중등학교의 개설을 포함한 국제 수준의 교육시설을 완비하여 환동해권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허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라. 로드맵

(1) 2010년 하반기

- 남북관계의 복원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남북관계 구축
- 남북기본합의서 존중의 재천명
- TF 구성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2) 2011년

- 환동해권 동북아 물류 항로 및 남북 관광사업 대상 및 분야 선정
- 환동해권 물류 항로 및 남북공동 관광 지원 사업 선정
- 접경지역 환동해권 발전 방안과 이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 강원도 지역부터 환동해권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
- 환동해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개발의지 환기가 필요
- 유엔사 및 미국의 이해와 협조 유도

(3) 2012년

- 환동해권 동북아 물류 항로 및 남북 관광사업 이용에 관한 합의서 초안 마련
- 환동해권 동북아 물류 항로 및 남북 관광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노력 지속
- 북한과의 협상을 통한 환동해권 동북아 물류 항로 및 남북 관광사업 지원 사업 확정
- 유엔사 및 미국의 이해와 협조 유도 지속

(4) 2013년

- 환동해권 동북아 물류 항로 및 남북 관광사업에 관한 남북합의서 체결

- 남북합의서의 국회통과 → 남북합의서 국내 이행을 위한 특별법(안) 및 관련법 개정(안) 마련

(5) 2014년

- 남북합의서 국내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관련법 개정
- 관련 북한법령 정비 유도 및 지원

[표 VI-4] 환동해권 발전방안 로드맵

		2010	2011	2011	2012	2012	2013	2013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남북관계 현상 지속		남북관계 대화 개시		남북관계 활성화		
국내 차원	TF 구성	○						
	대상 및 분야 선정		○					
	합의서 초안 준비			○	○			
	지원사업 선정		○	○				
	공감대 확산		○	○	○	○	○	
	합의서 국회통과							○
	특별법 제정, 공포							○
남북 차원	협상테이블 유도				○			
	지원사업 확정					○		
	합의서 체결						○	
	관련 북한법령 정비 유도 및 지원							○
국제 차원	유엔사 및 미국의 이해와 협조 유도		○	○	○	○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마. 기대효과

- 물류 항로 개설의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대한 높은 파급효과
- 기존의 수도권-부산간 육상 물류가 수도권-동해안으로 흡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간 및 비용이 급격하게 감소, 이로 인해 극동 러시아 및 중국시장, 나진 등과 상대 무역시 비용 및 시간의 감소, 수도권 물류의 활성화 기대
- 환동해경제권 활성화의 장점
 - 지역간에 기술, 인력, 정보, 지식교류가 이루어지고 지역산업의 국제화, 정보화, 첨단산업화의 계기가 됨.
 - 분명,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창출이 기대됨. 장기적으로 국제적인 산업구조조정과 국제분업체계에 변화와 진전이 있을 것으로 봄.
 - 미수교국, 비동맹국들과의 국제관계 진전에도 기여함.
- 국가와 지역간의 경제발전 단계가 다양하여 기술, 자본, 토지, 노동, 자원의 상호보완적 협력 용이
- 지정학적으로 환동해권이 개발되면 북한, 중국, 러시아 등 대륙의 도시들 및 환동해권 항구들과 연결용이
- 물류교류 활성화와 경제적 효과
 - 한국은 에너지 확보가 필요하고 시베리아의 천연가스를 한국

으로 수송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북한은 동해선의 개통을 원하고 있고(물론 동해선이 너무 노후하여 교체비용이 상당하겠지만) 강원도로서는 동해선으로의 연결을 선호함.
 - 동해선은 부산-포항-삼척-나진, 선봉을 거쳐 중국 및 러시아로 연결됨.
 - 동해선을 통해 컨테이너가 부산에서 출발하여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거쳐 유럽까지 가는데 12일이면 충분하나 해상으로는 3-40일이 걸리는 실정이므로 이 지역 물류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이는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것임.
- 역사 문화 유적지 탐사를 통해 남북한의 역사성 및 동질성에 대한 탐사 및 교육 가능
 - 접경지역 문화·역사 벨트를 조성하여 북측의 문화유적지 및 기타 관광지와 연계하는 사업 추진 가능
 - 환동해권의 관광부문에서 경제협력이 급속히 진전될 경우 강원도는 환동해권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동북아 공동번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환동해권 발전 사업은 해당지역의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남북한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므로 장차 통일환경 조성에 큰 기여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4. 동·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가. 제안배경

(1) 남북 공동어로구역이 지니는 상징성에 주목

- 남북 공동어로구역은 「10.4 공동선언」의 상징적 합의의 하나로, 이의 계승·추진은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의 이견 극복과 화합 극대화라는 상징적 의미가 충분함.
 - 서해 공동어로구역 문제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후의 「10.4 공동선언」시 이미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안) 내에 포함되어 합의된 바 있음.
 - 이후 구체적인 공동어로구역 설치에 있어 등면적 획정 필요성을 제시하는 우리측 안과 주로 우리 구역에 공동어로구역을 배정하기를 주장하는 북한측 안이 수렴되지 못한 채 현재까지 현실화되지 않고 있음.
 - 또한, 공동어로구역 설정의 무산은 이 문제를 경제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NLL 무실화라는 군사적 목적으로 접근하려 한 북한측 전술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그러나 2008년 이후 북한의 NLL 무실화 전술이 강화되면서 이 지역이 한반도 긴장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긴장과 대치는 결국 천안함 사태를 불러 왔음.

- 어족자원 보호를 빌미로 NLL의 무실화를 기도하는 북한의 전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므로, NLL의 영토적 의미를 무산시키

지 않으면서도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응할 수단으로서의 공동어로구역의 의미 재고가 필요함.

(2) 남북한간 실질적 경제적 이익 효과 창출 가능

-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 및 운영은 중국 어선들의 북한 진출 및 서해안 어업 자원 남획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이익임.
 - 남북한이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고 어업을 시작하게 되면 중국 어선들의 남획을 막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됨.
 - 이것은 남북한 어민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것은 물론 수산업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²¹
 -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 어선에 동·서해 입어권을 전면적으로 내주면서 ‘북한 바다’가 중국에 잠식되고 있는 상황임.
 - 동해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연간 단위로 북측과 조업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정부 당국자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중국어선 한 척당 2만 5000~3만 달러의 입어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됨.²²
 - 중국의 과도한 동·서해 진출은 어족 자원 고갈이라는 점에서 우리로서도 좌시하기 어려운 상황임.²³

²¹- 이 분석에 대해서는 ‘북한 과학기술네트워크’의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음. <http://www.nktech.net> 참조.

²²- 해군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동해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2004년 114척, 2005년 944척, 2006년 582척, 2007년 497척이 작업하였고, 입어료 수입이 3,000만달러(약 300억원)라고 한다면 이 지역에서 중국의 어선 최대 1000여척이 조업을 한다는 추정이 가능함.

²³- 인천시 용진수협에 따르면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 일대의 어획량은 2003년 3,940톤이었지만 중국 배들의 조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2004년 이후 크게 줄어

(3) 남북한간 이견 조정 여지 확대를 위해 서해만이 아닌 동·서해 공동어로구역 동시 실시를 추진

- 북한의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주장은 순수한 경제적 동기보다는 NLL 무실화 의도를 상당부분 내포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임.²⁴
- 실제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개최된 서해 남북 공동어로구역 협상에서 북한은 우리측의 등거리·등면적 주장을 거부한 채 NLL 이남에서의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고집함.
- 그러나 현행 NLL을 중심으로 등거리를 설정할 경우, 북한은 사실상 옹진반도 바로 전면까지 한국어선의 조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측 수용 가능성이 낮은 것도 사실임.
- 반면, 북한측 수용 가능성만을 고려할 경우, 우리 국내적으로 NLL의 ‘영토선’ 개념에 대한 논쟁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유념해야 할 것임.

지난해는 1,738톤으로 집계되었음. 『세계일보』, 2007년 10월 27일.

²⁴ 오랜 기간 동안 남북 군사실무회담의 한국측 대표로 활동했던 문성묵 전(前)국방부 군비통제차장(준장)은 실제 관련 회담에서 북한의 본 의도가 어로자원 획득보다는 NLL 무력화라는 방향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한 바 있음. 문 차장은 그 근거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려면 그 경계선이 분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경계선인 NLL을 인정해야 하는데, 북한은 초반부터 경계선 재획정에 중점을 둔 태도를 보였다고 밝힌 바 있음. 통일연구원, “접경지역의 평화적 활용방안 프로젝트,”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09.11.12).

- 따라서, 동·서해를 통합한 공동어로구역 설치·운영을 추진함으로써 양측의 수용 가능성 및 우리 정책의 융통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서해에서 우리측이 다소 양보를 하더라도 동해 공동어로구역 면적 확대를 통해 이를 상쇄하는 방안이 추진 가능함.

나. 주요내용

(1) 동·서해 공동어로구역의 통합 운영 및 군사력 배치 제한

- 과거의 안(案)과는 달리 서해 어장과 동해 어장을 통합 운영, 동·서해 양측 NLL을 기점으로 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운영하고자 함.
- 공동어로구역을 위해 남북한 양측이 동·서해에서 할당해야 할 수역(水域)은 동·서해 공히 등거리를 원칙으로 하되, 양측의 합의가 있을 경우 총 면적을 동등하게 배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추진함.
 - 남북 할당수역을 정하는 데 있어 차등거리나 차등면적을 적용하는 방안을 수용할 경우에는 향후 북한이 한국측도 NLL의 변경을 사실상 용인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협상 초반에는 동·서해 공히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고수하되, 서해에서 6:4(남:북) 혹은 5.5:4.5 정도의 차등을 둘 수 있는 있다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만약 서해에서 일정 구역을 양보했을 경우, 동해지역에서는 북한측이 동일한 비율로 더 많은 수역을 할당하는 것이 원칙임.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 중기적으로는 동·서해 공동어로구역을 중심으로 일정 수역을 남북한 양측의 육·해상 군사력 배치 제한구역으로 설정, 군사력 운용 및 전개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NLL을 중심으로 전개된 밀도높은 남북 군사력이 그동안 갈등과 충돌의 원인이 되었음을 감안, 공동어로구역 내에는 원칙적으로 양측의 해양경찰 전력만이 전개되도록 합의를 추진함.
 - 공동어로구역 내에 전개될 수 있는 양측 해양경찰 전력의 양과 질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한편, 공동어로구역 내 남북 해양경찰 전력은 2004년 제2차 남북고위급군사회담(장성급 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한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그대로 원용(국제상선 공동 주파수를 통한 통신)토록 지향함.
 -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남북한 양측은 제3국 어선의 불법조업, 어로작업중의 사고 및 해난방지를 위해 협력하며 공동어로구역 내에서의 수색·구난을 위한 별도의 합의안(의정서 혹은 합의서)을 마련함.

(2) 등거리·등면적의 시범사업 실시 후 점차 적용 범위를 확장

- 최초에는 남북 등거리·등면적 원칙 하에 서해 및 동해의 각 1개 구역을 설정,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성과에 대한 평가 여부에 따라 점차 공동어로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함.
 - 1단계: 동·서해 공히 1개 지역(등거리·등면적)을 “남북 공동어로구역 시범사업 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에서 남북한 군사력 운용의 제한을 추진함(해경 경비정만을 운용).

- 2단계: “남북 공동어로구역 시범사업 지역”을 확장하여 동·서해 공히 2개 지역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 지역에서 군사력 운용 제한을 지속함.
 - 3단계: 총면적 상 등거리·등면적의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최종 확정하고, 동 지역 내 군사력의 운용 및 배치 제한을 동시에 추진함.
 - 공동어로구역을 중심으로 한 일정 지역을 “남북 군사력 배치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 내 해군력의 출입을 금지하는 한편, 불가피한 출입(의심선박 검색, 도발징후 포착 등)시 상호 통보함.
 - “남북 군사력 배치제한구역”에서는 양측 해상 군사력뿐만 아니라 조업하는 민간선박과 이를 지도하는 어업지도선, 양측 해경 경비정 등을 위해할 수 있는 해안포 등의 육상 전력 배치 제한까지를 궁극적으로 추진함.
- 공동어로구역의 설정 및 운용, 그리고 대상 구역의 확대에 병행하여 동 구역에서 조업하는 어선 및 어업지도선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에 대한 합의 역시 병행 추진함.
- 공동어로구역 내 조업 선박 및 선원의 신변안전 보장에 대해 합의함.
 - 조업 중 실수 혹은 착오로 공동어로구역을 넘어 상대방 수역에 진입한 어선들의 사전 경고 및 퇴거, 귀환조치를 실시함.
 - 조업 중 발생한 해난 및 해상사고에 대해 수색·구조 협조조치함.

- 공동어로구역 설치·운용과 함께, 3단계부터는 북한측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어족자원에도 불구하고, 장비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남북 수산업 협정』(가칭)을 체결하여 북한 지역의 어로권을 획득한 우리 선박이 북한 내 일정 수역에서 작업하는 방안의 추진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동어로구역에서 보다 확대된 지역에서의 조업을 추진함.
 - 한반도에서의 어족자원 보호와 함께 북한의 과도한 대중국 경제의존을 탈피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서해 접경지역에서의 남북 경협조치들과 연동하는 것을 지향

- 만일, 북한측이 동·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치·운용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북한 역시 과거에 비해 보다 유연한 대남전략으로의 선회를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 가능할 것임.
- 따라서, 동·서해 접경지역에서의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들을 공동어로구역과 연동하여 추진하는 정책방향을 채택함.
 - 1단계(시범사업): 한강 하구 공동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실행, 임진강유역 공동학술조사 사업 등 제의 가능. 이와 함께 개성공단의 확장 운영에 대한 기본 방향 및 보조 역시 연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2단계(시범사업 확대): 개성공단 2단계 확장, 한강 하구 및 임진강유역 공동개발, 남북 관광사업 구역 확대, ‘나들섬’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추진 준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동·서해 남북 접경지역 공동개발 종합계획』(가칭) 추진함.
- 3단계(공동어로구역 확정·정착): 개성공단 3단계 사업 및 수
정·보완 및 여타 남북 경협공단 사업 타당성 검토, ‘나들섬’ 조
성 추진, 『동·서해 남북 접경지역 공동개발 종합계획』에 따른
경협사업 본격화함.

(4) NLL의 해상경계선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출발

- 남북한 공동어로구역이 시범사업을 넘어 본격적인 남북 교류·협
력 및 경협 사업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해상 경계선
재획정까지는 서해 NLL을 기존의 경계선으로 준수한다는 원칙
에 남북이 합의할 필요가 있음.
 - 공동어로구역 설정 및 해상 경계선 문제와 관련, 남북한간 교
류·협력이나 상호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육상·해상 경계선의
합리적 설정은 원론적으로 찬성함.
 - 그러나, 이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
한 움직임이 상당기간 진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
다는 논리를 전개함.
 -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상에도 양측간 경계선의 재설정
은 우선 기존 경계선을 존중하는 데에서 출발함을 명시하였음을
북한측에 강조하고, 특히, 서해 해상경계선의 경우 서해 5도에
대한 한국의 공식적·실질적 영토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에서 선부른 접근은 금물이라는 점을 부각시킴.
 - 서해 해상경계선 재설정 문제는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
의 자진철회 및 NLL 준수 → 서해 공동어로구역 시범사업 실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시 → 동·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및 동 구역 내 양측 해군력 배치 제한 → 중·장기적으로 평화체제 논의 속도에 따라 경계선 재확정 협의의 수순으로 접근한다는 방안을 제시함.

- 남북 해상경계선 재확정까지는 공동어로구역을 중심으로 한 “상호군사력 배치제한구역” 설정이 군사적 긴장 및 충돌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함.

- 북한이 기존 NLL의 명시적 준수를 거부할 경우, 일단 NLL을 양측의 군사력 배치 제한을 위한 ‘기준선’으로 활용하자는 제안 역시 검토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북한 군사력의 월선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영토선’으로서의 의미를 유지하는 가운데, 문제의 갈등 사안화 방지를 꾀함.

다. 추진방안

(1) 국내 및 남북관계 차원

(가) 국내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공동어로구역 운영 원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10.4 공동선언』에서의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이 서류상의 합의에 그쳤던 가장 큰 이유는 동 방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국민적 합의가 부족했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임.
 -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안 발표 이후 한국 사회 내에서 NLL에 대한 ‘영토선’ 여부 논쟁이 유발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임.
 - 동 대안이 NLL에 대한 영토적 권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

나라는 분명한 원칙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과정이 미흡함.

-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비무장지대 내 『남북해사협력센터』(가칭)나 지역·국제회의 유치 추진에 비해 훨씬 더 심한 국내적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 대안 추진 이전에 정책방향과 관련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등거리·등면적 고수여부 및 동·서해 통합 총면적 적용 방식과 관련된 여론 수렴 후 최종적인 대북 제의안을 확정할 필요 있음.
 - 정부 차원에서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관련된 기본 방향을 국회에 설명하고, 국회에서의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병행하는 것 역시 검토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국내 유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는 1개 정부 부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부부처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상이한 정책적 중점 및 소요를 조정해줄 장치가 필요함.
 - 통일부(대북 협상, 원칙 합의), 국방부(군사적 보장 및 배치 제한), 국토해양부(해상 조업 관리)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가 필요함.
 - 그러나 현행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및 실무조정회의 체제로는 이러한 다양한 유관부처들을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통일부 장관이 주재하는 실장급 유관부처 협의체인 『남북 공동어로구역 추진단』(가칭)을 운영하거나 이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 공동어로구역은 해당 지역의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 역시 강구되어야 할 것임.
 - 행정안전부를 통해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도 고려 가능하나, 중앙과 지방의 의견 반영에 형평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함.
 - 『남북 공동어로구역 추진단』에 관련 유관 지방자치단체 대표들을 참석시키는 방안도 전향적 검토가 필요함.

(다) 남북대화 및 회담을 통해 기존 남북 합의의 이행원칙을 강조, 북한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지향

- 『10.4 공동선언』에 입각한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안) 자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의 핵심적 취지를 반영한 방안이므로 가능한 조기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함.
- 남북대화 재개와 함께, 동 구상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각급 대화 체제의 정상 가동을 함께 제의하는 것도 중요함.
 - 통일부 차원에서는 기존의 장관급 회담 혹은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상채널을 북한 측에 제의, 이의 통제를 받는 실무급 협의를 추진함.
 - 국방부 차원에서는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통해 이 의제를 다루되, 2단계 이후 군사력 배치와 관련된 정무적·전략적 결심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의 가동을 북한 측에 제의하는 방안도 병행함.
 - 또한, 이 조치가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맞추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남북경협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혹은 『남북 경제협력공동위원회』의 재개나 재편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2) 지역 및 국제적 차원

(가) 대주변국 양자외교를 통한 지지여론 적극 조성

-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여타 군비통제 현안에 비해 역내 주변국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덜 할 것이나, 역(逆)으로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지지를 이끌어내기는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음.
- 따라서, 동 사안은 정상회담과 같은 최정상급 협의채널보다는 장·차관급의 고위급 채널에서 우리의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나) 중국의 경계심을 촉발하지 않도록 유의

-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관련, 중국측이 동해 및 서해에서 자신들의 조업권 침해를 우려하여 부정적 반응을 보이거나 북한에 대해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관련, 남북 공동어로구역의 설치·운영이 양측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감소시킴으로써 동·서해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의 안전 확보에도 유익할 것이라는 논리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 또한, 공동어로구역 내에 일부 쿼터를 기존에 북한으로부터 조업권을 사들인 중국측 선박에 할당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동 어로구역 내에서의 신변안전 및 해난사고 방지·구호를 남북한 양자에서 남북 및 중국의 3자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역시 고려할 가치가 있음.

라. 로드맵

(1) 남북 대화 재개를 전제로 남북 공동어로구역 시범사업 구역 설정을 위한 남북 협의 추진 (2011년 상반기)

- 2011년 초 국내 의견수렴을 중심으로 1/4분기에 남북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면 북한측에 선제 제안 고려
- 기존의 남북 장관급 회담 혹은 이를 대체하는 양측 통일정책 당국간 협의 채널의 정식 의제로 공동어로구역 시범사업 설치·운용을 제의
- 남북한 정부간 합의를 바탕으로 실무추진 협의체 구성, 운영
- 남북한 정부 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에 대한 군사적 보장을 협의하기 위해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및 군사실무회담 개최
- 2011년 상반기 중 시범사업 협의 완료를 목표로 추진
- 우리 국내적으로 『남북 공동어로구역 추진단』을 발족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개시

(2) 시범사업 평가, 확대 여부 결정 (2011년 하반기~2012년 상반기)

- 2011년 하반기 및 2012년 상반기까지 1년간 동·서해 각 1개씩의 공동어로구역 성과를 평가하고, 남북한간 합의에 의해 추가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하는 것을 추진
 - 동 어로구역에서의 실질적 이익 발생 여부와 함께 군사력 운용제한 및 NLL 준수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판단함.
- 공동어로구역 시범사업의 확장과 함께 여타의 경협에 대한 남북한간 협의 및 사업추진 활성화 역시 함께 지향
- 군사적 보장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기존 남북 고위급 이외에 3성급 장교를 단장으로 하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추진

(3) 2012년 하반기~2013년 상반기까지의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2013년 하반기에 남북 공동어로구역 최종 설정 지향

- 2차례의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북한의 진정성 및 남북 호혜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남북 공동어로구역 확정시 국방당국 차원에서도 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 배치제한” 역시 연동하여 함의
- 공동어로구역과는 별도로 북한지역 내 일부 조업권 획득 역시 병행 추진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표 VI-5] 동·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방안 로드맵

		2010	2011	2011	2012	2012	2013	2013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남북관계 현상 유지		남북관계 대화 개시		남북관계 활성화		
국내 차원	남북관계 비전 재정립	○						
	정부 유관부처 조율(외교·안보 실무조정회의)	○	○					
	국내 의견수렴 및 공감대 확산	○	○	○	○	○	○	○
	대지자체 협조		○	○	○	○	○	○
	공감대 확산		○	○	○	○	○	○
	국회 보고·협조		○					
남북 차원	협상테이블 유도	○	○					
	대북제의		○					
	협의채널 확정, 군사보장조치 합의		○	○				
	1차 시범사업 실시				○			
	확대여부 결정				○			
	2차 시범사업 실시					○	○	○
	동·서해 공동 어로구역 확정							○
개성공단/여타 경협확대 연계							○	
국제 차원	대주변국 외교		○	○	○	○	○	○
	한중 어업협력						○	○

마. 기대효과

- 동·서해에서의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치·운영은 양측간 우발적 해상충돌 방지를 위해 기존보다 진일보된 조치로 평가될 것이며, 군사력 배치 제한과 연동될 경우 남북한간 본격 군비통제 조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공동어로구역 운영을 통해 축적된 양측의 신뢰가 여타의 경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매우 유용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동·서해 접경지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민들의 안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접경지역 경제의 활성화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VII. 북·중·러 접경지역
다자간 협력방안

우리나라는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분명하게 규정짓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반도 접경지역은 남북한 접경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동북지역, 러시아 연해주지역과 맞닿은 한반도의 북단을 포괄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한반도 접경지역’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일반적으로 남북한 접경지역에 한정되어 왔고, 따라서 그동안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은 주로 개성, 금강산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는 북한의 전략적 의도, 즉 남한과의 접경지역에 국한한 남북한 교류와 협력,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접경지역에서는 남한을 배제한 북중, 북러 교류와 협력이라는 각기 분절된 전략구도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 결과,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전개되어 왔던 협력사업은 한반도 북단의 북·중·러 접경지역에서 진행되어 온 협력사업과 유기적인 연계를 꾀하지 못하고 남북관계의 화해와 경색이라는 주기적인 정치적 구도에 갇혀 그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기대’와 ‘실망’이 반복적으로 교차하여 왔다.

한편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동북공정’을 추진해 온 중국은 최근 들어 ‘동북진흥전략’의 총체적 청사진을 마련하는 등 ‘동북공정의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동북지역의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북한 및 러시아와의 접경지역 인프라 협력개발을 중심으로 북한 및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 그리고 동북아 경제권 형성의 주도권 확보 등을 본격적으로 꾀하고 있다. 즉 중국은 국가차원에서 2009년 7월과 8월에 연이어 ‘랴오닝성 연해경제벨트 발전계획’과 ‘창지투(長吉圖, 창춘-지린-투먼) 개발개방선도구 개발계획’을 비준하여 접경지역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들 계획과 연동하여 2009년 10월 윈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과 2010년 5월, 8월의 김정일 방중을 통해 북중 양국은 압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록강 일대의 단동-신의주간 압록강도로대교의 신설과 위화도 및 황금평의 자유무역지대 설치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두만강 일대에서도 권하-원정간 다리 개보수 및 원정-나진항간 도로 개보수, 그리고 나진항 및 청진항 확보 등 동해로의 출로를 추진해 왔다. 중국은 나아가 2009년 9월에 러시아와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 및 동시베리아지역 협력계획강요(2009~2018)》를 체결하는 등 양국간 접경지역 인프라 협력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중국은 북한 및 러시아와의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 협력개발을 추진하여 동북지역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자국 주도의 동북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으로써 동북아 경제권 형성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경우는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국면에서 접경지역 인프라 협력개발을 매개로 중국과의 경제협력 및 원조를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경제회생과 안정적 후계구도의 기회를 포착하고, 아울러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제재국면을 타파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는 중국의 동진전략에 대한 경계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국내경제의 침체라는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될 예정인 APEC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서 중국과의 접경지역 인프라 협력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교통물류분야의 의제는 최근 중국과 북한의 전략적 접근으로 남한이 상대적으로 고립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이 적극적으로 창지투 개방선두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북중간 교통망 연계사업이 적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정부가 추구해야 할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동북아시

아 차원에서 통합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다. 남북한 통합인프라 건설 계획으로 기존에 제시되었던 3개 분야 16개 사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3차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한반도와 중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와 도로 및 철도망 연결을 제안하여 한반도 교통물류 인프라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남북한과 중국이 중심이 되어 한반도프로젝트와 동아시아협력을 연계하여 일본, 러시아, 몽골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광역의 물류인프라를 개발하고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의 경제공동체로 발전시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인프라 연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공적자본을 유치하고 필요하다면 한국이 북한의 지지를 통해 동북아개발은행(Northeast Asia Development Bank: 이하 NEADB)을 주도로 설립하여 한반도 인프라개발에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북중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양국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영산, 백두산은 최근 화산 분출의 전조가 나타나면서 이것이 불러올 수 있는 국제적 대재앙으로 인해 한반도 및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국 전문가들은 백두산의 화산이 폭발할 경우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에도 엄청난 재앙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재난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관련국가 간 공조와 연구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미 2007년 12월 남북한은 제1차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합의에 따라 진행된 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백두산 화산 활동에 대한 공동연구에 합의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은 한국측에 지진 연구를 위한 지진계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남북한은 ‘백두산 화산활동 공동연구’ 등 총 4조 10개 항의 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남북관계가 급속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도로 냉각됨에 따라 중단되었다.

그간 중국은 ‘동북공정의 내재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백두산 일대의 인프라 및 관광지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창바이산(長白山) 공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증가되었을 뿐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백두산 화산의 폭발 가능성이라는 ‘위기’는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타파하는 출구전략의 하나로서 제기될 수 있는 유력한 의제이자 관련국가간 국제적 공조의 틀 속에서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관련국가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계기이자 중국의 일방적인 백두산 개발에 대응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다자간 협력구도를 통해 남북한 양자간 협력에서 예상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변화에 따라 협력의 향배가 결정되는 불안정한 협력구도를 지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북·중·러 접경지역의 다자간 국제협력방안으로서 ① 인프라 국제협력 개발방안, ② 남북정상회담과 교통물류분야의 의제, ③ 백두산 화산폭발에 대비한 공동연구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중국 주도의 북·중·러 접경지역 인프라 협력개발의 활성화에 따른 긍정적 계기를 포착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동북아 주요 전략적 거점의 상실, 미래 통일 한반도 구상에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를 통해 다자간 국제협력구도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과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민족의 영산, 백두산의 화산폭발 가능성에 대비한 공동연구를 통해 남북한간 동질성 회복의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하고, 나아가 한반도 및 주변국가(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의 상호 이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전개되어 온 교류와 협력사업이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북·중·러 접경지역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인프라 협력개발을 매개로 중국 주도 아래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백두산 화산 폭발 가능성에 대비한 관련 국가 전문가들의 연구가 초보적이거나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협력’은 공동의 이익이나 손해가 존재할 때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북·중·러 접경지역의 인프라 국제협력개발이나 백두산 화산폭발에 대비한 다자간 공동연구는 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의제이다. 다만 동북아지역의 양자간 협력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매개로 경쟁적 구도를 형성하기 쉬운 특성을 갖는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지금 이러한 경쟁적 구도는 냉전시기 ‘한·미·일 vs 북·중·러’라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대결구도를 부활시킬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제는 남북한 접경지역으로 국한된 한반도 접경지역에 대한 공간적 인식의 한계를 타파하고, 한반도 접경지역의 협력구도를 국제적 다자간 공조의 틀 속에서 새롭게 확보해 냄으로써 남북한 접경지역의 교류와 협력사업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공존을 꾀하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1. 북·중·러 접경지역 인프라 개발

가. 제안배경

(1) 북중, 중러간 접경지역 인프라 협력개발 활성화

- 2009년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1874호 등)에도 불구하고, 북중 수교 60주년 및 북중 우호의 해에 따른 10월 중국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2010년 5월과 8월의 김정일 방중 등으로 북중간 경제협력은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북중간 정상회담 전후하여 압록강 일대에서 단동-신의주간 압록강 도로대교의 신설과 위화도 및 황금평의 자유무역지대 설치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두만강 일대에서는 권하-원정간 다리 개보수 및 원정-나진항 도로 개보수, 그리고 나진항 1호 부두의 개보수 등이 진행되는 등 북중간 접경지역의 인프라 연계개발과 관련된 협력이 탄력을 받고 있음.
- 2009년 9월 23일 중러 양국 정상간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 및 동시베리아지역 협력계획강요(2009-2018)』가 체결되어, 2007년 3월부터 양국간에 논의되었던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공동협력개발방안이 최종적으로 정상차원에서 비준을 획득함.
- ‘계획강요’에는 기존에 중국측이 제안한 대러시아 ‘육로-항만-세관 일체화’ 프로젝트에서 강조한 접경지역 세관의 건설은 물론이

고, 양국이 접경하는 지역의 강하천에 교량과 도로, 철도 대교를 건립하는 200여 개의 여러 다양한 인프라 협력개발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음.

(2) 북·중·러 접경지역내 중국 주도의 동북아 자유무역지대 창설 움직임

- 새로운 성장거점으로서 중국 동북지역의 새로운 부흥(‘東北振興 規劃’)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북한 및 러시아와의 접경 지역 개발과 특히 동해지역으로의 새로운 출해통로를 확보함으로써 동북지역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자국 주도의 동북아 자유 무역지대를 창설함으로써 동북아경제권 형성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임.
- 북한의 경우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국면에서 중국과의 개발협력 및 원조를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경제회생의 기회를 포착하고, 동시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제재국면을 타파하려는 전략적 의도로 파악됨.
- 러시아는 중국의 동진전략에 대한 경계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러시아 경제의 침체,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될 예정인 APEC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중국측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음.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3) 한반도 접경지역에 대한 공간적 외연 확대와 다자간 협력구도 마련

-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규정을 감안할 때, 한반도 접경지역은 남북한 접경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 맞닿은 한반도의 북단을 포괄함.
- 남북한 접경지역으로 국한된 한반도 접경지역에 대한 공간적 인식의 한계를 타파하고, 남북한 접경지역의 협력구도를 국제적 공조의 틀 속에서 확보함으로써 접경지역 협력사업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극복함.
- 중국 주도의 북·중·러 접경지역 인프라 협력개발의 활성화에 따른 긍정적 계기를 포착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동북아 주요 전략적 거점 상실, 미래 통일 한반도 구상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적극적 개입과 참여를 통한 다자간 국제협력구도로의 전환이 요구됨.

나. 주요내용

(1) 북·중·러 접경지역의 인프라 협력개발 현황

- 중국은 그간 낙후된 동북지역의 개발을 국가적 중점사업으로 확정짓고 압록강 및 두만강유역 등 북한 및 러시아와의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진행해옴.
 - 즉, 후진타오 지도부가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진흥전략’과 그에 의거한 대외개방의 확대로 북한 및

러시아 접경지역에 대한 정책적 중시가 이루어졌으며, 이들 접경지역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11차 5개년 계획’ (2006~2010)에 포함되어 추진되어옴.

- 중국은 ‘대북한 육로-항만-구역 일체화’ 프로젝트에 이어 2009년 ‘랴오닝성 연해경제벨트 계획’과 ‘창지투 개발개방선도구 계획’에 따라 북중간 접경지역인 압록강변에는 단동-신의주로 연결되는 압록강도로대교의 신설과 위화도 및 황금평의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두만강하구에서는 북중간 훈춘(-권하-원정)-나진간 도로현대화와 나진항 개건 및 배후부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또한 중국은 ‘대러시아 육로-항만-세관 일체화’ 프로젝트에 이어 2009년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 및 동시베리아지역 협력 계획강요’에 따라 중러 접경지역의 도로, 철도, 교량 등의 인프라 협력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훈춘-자루비노항간 철도, 도로 연계와 통관의 원활화를 통해 자루비노항을 중국의 동해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러시아는 북한과 2000년부터 본격적인 철도 및 항만 협력 사업에 착수하여, 2006년 이후 두만강 접경지역의 나진-하산 철도 연계 및 나진항 확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2008년 4월 러시아 철도공사와 북한 철도성간 ‘나진-하산 프로젝트 추진협력 합의서’를 체결하고 2008년 10월 착공식이 이루어짐에 따라, 철도 연계와 나진항 3, 4호 부두에 대한 이권을 확보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2) 북·중·러 접경지역의 인프라 협력개발의 의미와 각국의 전략

- 북·중·러 접경지역의 인프라 협력개발은 북한의 경제발전과 대외개방을 촉진하고, 남한의 대북지원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이 존재함.
 - 즉, 이번 압록강도로대교 신설에 따른 북중간의 인프라 연계의 강화는 북한의 교통물류시스템의 개선과 함께 경제적으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인하는 데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더욱이 동북아의 주요 물류거점이라 할 수 있는 나진항 개발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 및 러시아의 참여에 따라 두만강지역의 인프라 현대화와 관련국가들간 상호연계가 활발해짐으로써 자유무역지대 구축을 통한 동북아경제권의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중국 및 러시아 등 제3국의 북한내 주요 간선과 거점에 대한 지배는 중장기적으로 경의선을 통한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계, 그리고 나진항을 거점으로 환동해권과 유라시아 대륙권 연계를 추진해 온 우리나라의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 즉, 우리나라가 배제된 상태에서 중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단동-신의주 연계개발과 이에 따른 압록강도로대교의 신설은 우리나라 정부의 신경의선 도로 건설이라는 계획과 상충될 수 있으며, 또한 나진항에 대한 중국 및 러시아의 지배는 환동해권 중요 물류거점의 상실은 물론이고 통일 후 북한 항만관리에 대한 일원화를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결국 한반도 접경지역의 분할구도가 형성됨으로써 한반도의 통일경제 구축과 남북경협 시너지 효과를 저해하는 동시에 향후 남북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중국의 대북 접경지역 협력개발은 동북진흥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중국은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동북지역 개발에 필요한 자원과 시장의 확보는 물론이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하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는 셈임.

- 또한 북·중·러 접경지역인 두만강지역에 대한 인프라 협력개발과 자유무역지대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적인 측면에서 동북진흥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적 물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와 동시에 대외개방의 촉진을 통해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음.

○ 중국 주도의 북·중·러 접경지역의 통합 경제권 출현과 동해로의 출해권 확보는 중국의 지정학적 이익과 국가안보에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며, 기존의 미일 중심의 동북아 정치경제구도에 대응하는 중국 중심의 국제정치경제 구도를 출현시킬 가능성이 존재함.

- 특히 군사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해군력이 환동해권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이 지역의 군사, 안보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음.
- 더욱이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측면과 함께 북한의 대중국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러시아는 북·중·러 접경지역 인프라 협력개발을 통해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교량적 역할로서 시베리아횡단철도(Trans Siberian Railway: 이하 TSR)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개발포화상태의 극동항만을 대체할 나진항의 확보를 꾀하고 있음.
 -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원확보로 어려움에 처한 극동지역 인프라 개발을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될 예정인 APEC 정상회담의 성공적 준비를 추진하려 함.

- 북한으로서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국면에서 중국으로부터의 개발협력 및 원조를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경제회생의 기회를 포착하고, 동시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제재국면을 타파하려 함.
 - 또한 한국이나 기타 서방세계의 경제적 도움없이도 중국 및 러시아와의 인프라 협력개발 사업을 통해 그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과 낙후한 무역환경, 인프라 구축의 미비 등의 원인으로 정체되어 왔던 해외투자 및 경제무역관계를 발전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3) 북·중·러 접경지역의 인프라 국제협력 개발방안

- 중국 주도의 북·중·러 접경지역 인프라 협력개발에 따른 위험요

인을 불식하면서도 중국 동북지역 및 러시아 극동지역의 본격적인 개발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낸다는 측면에서 북중(러) 접경지역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신의주-단동, 나진-훈춘(나진-하산)을 중심으로 관련국가간 국제협력개발을 위한 공조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상호 소통과 교류를 통한 공생과 공영의 매개체라 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의 속성상 한 국가가 관련 국가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 의미나 효과 측면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임.
 - 따라서 압록강도로대교 신설과 관련해서는 대륙과의 연계를 위한 남북한간 경의선, 평양-신의주간 도로 등 교통망의 구축과 신의주항 및 압록강철교의 정비, 물류사업 등 협력의제와 연계하는 남·북·중 3자간 협력틀을 구축할 필요성이 존재함.
 - 또한 신의주 일대 경제특구 및 자유무역지대 건설에 대비하여 건설사업 및 기술협력 등 중국과의 동반투자를 위한 방안이 공동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나진항 개발과 관련해서는 중국 동북지역 개발과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이 서로 연계되어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여 환동해권 국제협력개발을 위한 남·북·중·러 4자간 협력틀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나진-원정간 도로(중국), 나진-하산간 철도(러시아), 나진항 1호 부두(중국), 나진항 3호 부두(러시아) 외에 나진항 배후부지 건설, 물류사업(한국) 등을 포함한 종합적 패키지 사업형태로 우리나라가 포함된 다자간 컨소시엄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다. 추진방안

(1) 국내적 차원

- 민간차원에서 ‘경제성 원칙’에 입각해 사업을 주도하되,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남북 및 다자간 협력을 지원함. 또한 실현성이 높은 시범사업의 우선 실시 등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
- 사업여건 조성과 업무 조정 및 분담을 위한 정부부처간 역할분담을 피하고, 동시에 정부, 공기업,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함.

(2) 남북관계 차원

- 유연한 대북접근으로 중국의 대북 교역 및 투자의 확대, 그리고 북중간 접경지역 인프라 협력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남북간 교류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함.
- 향후 북미, 남북간 대화국면이 재개될 것에 대비하여 남북간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북한의 경제개방 지원과 남북간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구축을 통해 북한의 대중 의존도 심화 및 중국의 북한 선점에 적극 대응해야 함.

(3) 국제적 차원

- 북·중·러 접경지역 인프라 국제협력개발을 위한 관련국 정부간

협력추진체를 구성하고, 이를 위해 GTI를 활용하거나 UNDP,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이하 UNESCAP) 등과 같은 국제기구와의 새로운 협력 논의를 진행해야 함.

- 접경지역 인프라 협력개발을 위한 사업 주체로서 각국의 민간 및 공기업으로 구성되는 국제컨소시엄을 구축하고, 자원확보를 위한 기존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논의 및 동북아 인프라개발 은행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라.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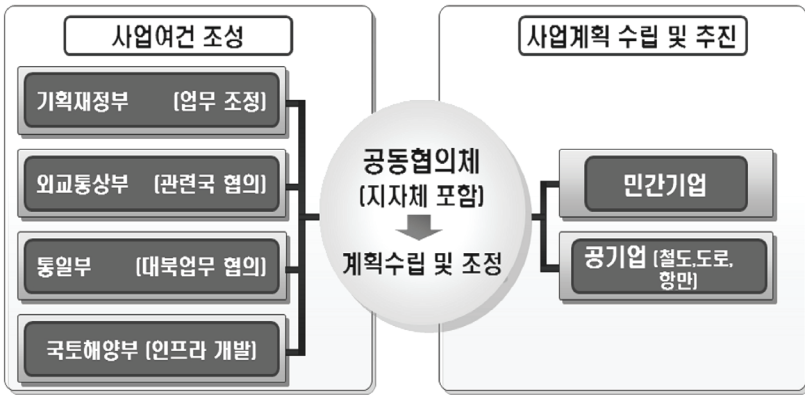
(1) 2010년 하반기-2011년 상반기 (남북관계 현상지속기)

(가) 국내차원의 정부, 공기업, 민간기업간 ‘공동협의체’ 구성

- 공동협의체는 기획재정부(업무 조정), 외교통상부(관련국 협의), 통일부(대북업무 협의), 국토해양부(인프라 개발) 등의 중앙부처와 관련 지자체(경기도, 강원도 등), 그리고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참여
- 정부 및 지자체는 부처간 협력 및 인프라개발 관리를 통한 사업 여건 조성, 민간기업과 공기업은 경제성 원칙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그리고 공동협의체 내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총괄적 계획수립 및 조정작업 진행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그림 VII-1] 공동협의체 구성도



(나) G20 정상회담에서 의제화

- 2010년 11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에서 북·중·러 접경지역 인프라개발에 초점을 맞춘 “녹색성장을 위한 동북아 다자간 무역지대 구축방안” 제시
-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 6자회담 참여국간 별도의 회담을 통해 본 협력개발사업의 필요성 역설 및 다자간 논의구도 정립

(다) GTI, UNDP, UNESCAP 등 국제기구 협조요청

- 북·중·러 접경지역 인프라개발에 오랫동안 관심을 표명해 왔던 GTI, UNDP, UNESCAP 등에 다자간 협력개발방안 제안 및 협조요청

(2) 2011년 하반기~2012년 상반기 (남북관계 대화개시기)

(가) 관련국 정부간 협력추진체 구성

- GTI 5개국 위원회(2009년 11월 북한 탈퇴, 향후 재가입 가능성)를 현행 차관급회의에서 장관급회의로 격상
- 각국 공동으로 압록강유역과 두만강유역에 걸친 인프라 협력개발의 타당성 조사 및 종합개발계획 수립(압록강유역과 두만강유역의 경우 별도의 협력추진체 구성 가능)

(나) 북·중·러 접경지역 인프라 개발을 위한 기업간 국제컨소시엄 구성

- 해당 접경지역 철도, 도로, 항만, 배후단지, 물류사업 등을 포괄하는 다자간 컨소시엄 구성
- 인프라 개발과 관련해서는 공기업이, 인프라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간기업이 각자 역할을 분담

(다) 시범프로젝트 실시

- 경의선(서울-개성-신의주-단동)을 통한 남·북·중 연계화물 시범운송 및 부산항-나진항-시베리아횡단철도(TSR)을 통한 남·북·러 연계 컨테이너 시범운송 등을 통해 개발동력 확보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3) 2012년 하반기 이후 (남북관계 활성화기)

(가) 동북아 인프라개발은행(가칭) 설립

- 동북아지역에 축적된 엄청난 규모의 외환보유고 및 자금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각국 정부와 개발은행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인프라개발은행 설립
- 합작투자 자회사로서 동북아인프라개발공사(가칭)를 설치하여 역내시장에서 채권발행을 통해 접경지역 인프라 건설 및 다수의 프로젝트 투자 관리

(나) 압록강유역 인프라 개발 착수

- 중국이 이미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압록강도로대교 신설 외에 남북한간 경의선 철도, 평양-신의주간 도로 등의 구축, 신의주항 및 압록강철교의 정비 본격 착수
- 인프라개발과 연동하여 서울-개성-평양-신의주-단동간 화물 및 여객수송 정례화 방안 마련

(다) 두만강유역 인프라 개발 착수

- 북중간 나진-원정간 도로 및 나진항 1호 부두 건설, 북러간 나진-하산간 철도 및 나진항 3호 부두 건설을 남·북·중·러 4자 구도에 의한 다자간 협력개발로 전환
- 나진항 배후부지 건설 및 물류사업 등을 포함한 종합적 패키지 사업 착수

[표 VII-1] 북·중·러 접경지역 인프라 개발방안 로드맵

		2010	2011	2011	2012	2012	2013	2013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남북관계 현상 지속		남북관계 대화 개시		남북관계 활성화		
국내 차원	‘공동협약체’ 구성	○						
	계획 수립 및 조정 작업		○					
	국내 공기업-민간 기업 컨소시엄 구성			○	○			
	공감대 확산		○	○	○	○	○	
	관련법 제정, 공포							○
남북 차원	협상테이블 유도			○	○			
	인프라개발 협력논의					○		
	합의서 체결						○	
	관련 북한법 정비 유도 및 지원						○	○
국제 차원	‘G20’ 정상회담에서 의제화	○						
	관련 국제기구 협조요청	○	○					
	관련국 정부간 협력추진체 구성			○	○			
	기업간 국제컨소시엄 구성				○	○		
	시범 프로젝트 실시				○	○	○	
	동북아 인프라개발은행 설립					○	○	
	접경지역 인프라 개발 착수						○	○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마. 기대효과

- 다자간 협력구도를 통해 남북한 양자간 협력에서 예상되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고,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변화에 따라 협력의 향배가 결정되는 불안정한 협력구도를 지양할 수 있음.
- 향후 동북아 경제공동체로 나아가는 파일럿(pilot) 프로젝트의 성격으로서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일본) 등이 포함되는 동북아 다자간 경제협력 모델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접경지역 인프라협력을 통해 남북한간 상호신뢰 구축과 남북경제협력의 기반 조성은 물론이고, 동북아 국가간 교역의 활성화를 통한 상호번영과 평화체제 구축에 일조할 수 있음.
- 접경지역 인프라의 개선을 통해 북한의 대외개방을 촉진하여 대외개방을 통한 학습효과를 증진시킴으로써 기타 영역으로 협력의 확대, 즉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 남북정상회담과 교통물류분야의 의제

가. 제안배경

(1) 북중간 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세변화

- 한반도를 둘러싼 최근의 정세 변화는 ‘근중원남(近中遠南)’으로 표현되듯이, 중국과 북한의 전략적 접근으로 인해 남한은 상대적으로 고립되는 형국임.
 - 중국 동북3성 지역의 교통물류인프라의 활발한 개발이 북중 접경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G2 국가로 부상한 중국의 위상은 동북아지역의 물류 지형을 바꾸고 있음.
- 중국의 이러한 광폭행보에 대해 북한은 그 동안의 유보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함.
 - 김정일 위원장은 2010년 5월의 북경회담과 같은 해 8월의 창춘회담을 통해 중국 동북3성 경제개발계획에 호응하여, 나진항을 비롯한 북중 접경지역의 개방을 허락함.
- 중국 동북3성의 개발은 한반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북중간의 상호 필요성에 의한 긴밀한 협력이 다음 단계의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확대될 것임.
 - 김정은 후계구도 속의 북한은 북중 경제협력을 모태로 갱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할 것이며, 중국을 축으로 하는 대외관계의 개선을 통해 경제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2) 북중간 교통망 연계사업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 ‘창지투 개방 선도구’ 국가사업은 창춘과 지린시를 거점으로 대도시와 주요 현(縣)급 도시간의 지리학적 연계를 강화하여 지린성의 대외개방수준을 끌어올리고 동북아물류거점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창지투’ 노선은 만저우리와 시베리아 철도(TSR), 몽골과 러시아를 하나로 연결하는 국제인프라 개발사업임.

- 「랴오닝 연해경제벨트 발전계획」은 국가급 발전전략으로 다롄(大連)을 거점으로 동북연해지역 항만도시들을 묶어(5점 1선) 개발을 촉진하는 것임.
 - 또한 「선양경제구 프로젝트」는 모도시(母城市)인 선양을 중심으로 주변 7개 도시간 연계를 강화해 랴오닝성 중부도시군의 지역일체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임.

-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접경지역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동북3성의 출해구(出海口)에 해당하는 나진항을 비롯한 북한 동해항만들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부각됨.
 - 중국 랴오닝성과 북한을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 건설계획은 날로 강화되는 북중간 협력관계의 증표라 하겠고, 향후 중국이 신압록강대교 이남의 북한 교통인프라 분야에 진출함으로써 신의주-평양간 교통축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3) 남북정상회담과 교통물류분야의 중요성

- 북중 접경지역을 둘러싼 정세변화는 남북한 간에 잠복한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됨.
 - 이는 남북한 당국의 정치적인 필요와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국제정세 변화 때문이며, 한·미·일이 배제된 제로섬의 형태로는 한반도 연계교통망 구축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남한정부의 핵심 관계자에 의하면 ‘G20 정상회의’ 이후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고, 남북한 대화당국자의 위상이 강화됨.
 -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북한의 주도적 요청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사업이 이미 재개되었고, 김정은 후계체제 안정을 위해 적정한 관계개선과 함께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북측의 필요성이 작용하고 있음.
-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제기한 통일세와 관련, 통일비용을 축소하는 첩경은 남북교역의 확대가 최선임.
 - 남북간 경제교류의 활성화와 물류수요의 증대는 물류인프라의 확대를 전제로 함.
 - 만약 현 정권 임기 내에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남북경협외의 기조는 다음 정부에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정상회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의제설정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교통, 물류, 관광 분야의 인프라 건설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함.

나. 주요내용

(1) 동북아 차원의 통합인프라 건설

-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남북경협이었고, ‘남북공조를 통한 북방경제시대 개척’ 구상을 함께 밝힌 바 있음.
 - 노 대통령은 “북방경제 시대가 열리면 베트남 특수, 중동 특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 한국경제의 큰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시대와 동북아경제의 주역을 강조함.

- 북한은 당시 에너지·사회간접 자본 등 총 3개 분야에서 16개 사업을 원했음.
 - 이는 ① 200만 KW 송전, ② 발전설비·송전선 개보수, ③ 무연탄 설비 지원, ④ 중유, 중유추출용 펌타이어 지원, ⑤ 개성~평산, 온정리~원산 철도복구, ⑥ 남북연결철도 북측구간 전철화, ⑦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⑧ 남포항 시설 현대화·물류체계 정비, ⑨ IT협력, ⑩ 비료공장·식료품 공장 건설 지원, ⑪ 유경호텔 완공 지원, ⑫ 화차공장, 수리조선소 건설 지원, ⑬ 백두산 관광개발 지원 등임.

- 남북한이 주도하는 동북아 통합인프라 건설을 실현하려면 크게 4가지 조건, 즉 정치적 안정, 재원 확보, 구체적 사업 선정, 개발 주체의 형성이 필요함.
 - 즉, 남북정상회담과 평화체제의 구축, 인프라사업을 위한 투자

재원의 확보, 인프라사업의 전개, 주도세력(기구, 제도)의 형성 등이라 하겠음.

○ 제3차 정상회담의 의제로는 한반도와 중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및 남북한 간 도로·철도망 연결방안, 남북경협사업의 안정적 성장, 국제관광 및 관련 인프라개발 등으로 매우 다양함.

- 기초투자가 크지 않으면서도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그 이익을 교통물류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즉, 다국적 교통·물류·관광분야 협력 방안, 그리고 접경지역에서의 인프라개선과 소통, 기술이전과 교육, 국제 표준화와 남북한 통일방안, 현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국경지역에서의 교통DB 구축, 물류분야 정보망 확충 및 물류기업 정보화 지원, 경영관리수준 향상을 통한 정보화수준의 제고, 홍콩-선전처럼 나진-하산지역에 물류와 금융이 융합되도록 하는 사업도 가능함.

○ 내생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는 자본, 노동, 상품의 대량이동으로 이어져 교통인프라 건설과 엄청난 물류수요의 창출이란 선순환 과정을 통해 '북방경제의 시대'를 열게 될 것임.

(2) 한반도 교통물류인프라 개발사업

○ 한반도 서부통로 연결사업은 중국 단둥시와 북한 평안북도 사이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에 건설될 예정인 신압록강대교와 그 이남의 북한 지역에 대한 인프라 발전전략을 의미함.

- 선양을 중심으로 북경-단동 철도가 2014년에 완성되며, 이는 북한지역의 철도와 도로에 대한 건설사업으로 연결됨. 개성-신의주간 철도 개보수사업을 통해 경의선축이 연결되면, 최고의 한반도 물류축으로 기능하면서 수익사업이 가능한 노선이 될 것임. 중장기적으로는 KTX와 같은 고속교통망 연결을 통해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를 연결하는 유라시아 랜드브릿지 완성

○ 한반도 동부통로는 중, 러, 남북한, 몽골, 일본을 연결하는 대두만 강지역 국제운송통로임.

- 동해축은 중국 지린성-함경북도 회령인데, 중국의 창지투사업을 통해 그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됨.
 - 중국의 창춘-지린 산업지구와 북한의 라선지역을 포함한 청진 공업지구까지의 원활한 교통망 연결은 다양한 물류, 관광 사업의 청사진을 가능케 하고 있으며,
 - 나진항 개발, 훈춘·원정리-나진항 고속도로, 룡징-청진 고속도로, 투먼-청진 철도보수, 동해선축으로 연결하는 사업 등을 통해, 중국 지린성 및 헤이룽장성, 러시아 연해주와 북한의 원산과 금강산특구를 거쳐, 남한의 속초와 부산, 그리고 일본의 서해안 지역까지 환동해경제권 형성이 가능함.

○ 북중 접경지역 교통망 개선사업을 전개하여, 북한의 철도와 도로를 중국 동북3성 수준으로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 새로운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공급사슬이 통합되고 내륙운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 반해, 북중 접경지역에서 동서를 연결하는 축은 매우 약함.
 - 철도노선의 보강은 압록강을 따라 의주에서 만포에 이르는 구간, 그리고 혜산에서 고무산까지 백두산 주변과 회령까지의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동변도철도는 「랴오닝 연해경제벨트 발전계획」의 동부통로와 두만강유역의 차지투 프로젝트를 하나로 묶는다는 점에서 큰 파급효과가 예상됨.
- 동서횡단축의 철도노선으로는 북쪽 국경을 따라 만포-운봉-혜산에 이르는 노선, 그리고 북한의 허리에 해당하는 평원선(평양-고원), 그리고 남쪽 황해도와 강원도를 잇는 청년이천선(평산-세포)이 있음.
- 앞으로 신의주-강계와 같은 연안-내륙간 연계를 강화하고, 기존에 ‘북부 철길’사업을 통해 연결된 것으로 알려진 만포-혜산으로부터 혜산-삼지연 사이 백두산 관광철도, 혜산-고무산-백암 등의 횡축연결선을 확보 보강하여, 만포접경지역과 라선지역에서 각각 백두산권으로 연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접경지역의 교통인프라 개선사업을 통해 함경북도, 량강도 주변지역이 하향식(trickle-down) 경제성장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3) 국제협력을 통한 사업추진방안

- 남북한 간의 교통인프라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의 방안으로는 ① 기존의 남북협력기금 활용, 또는 기타 새로운 기금으로 가칭 남북협력인프라 협력기금을 조성, ② 민간자본을 유치하거나 외국 자본과의 합작투자를 추진, ③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국제금융기구 등 국제사회로부터 인프라개발 재원을 조달 받는 방안 등이 있음.

- 북한의 인프라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적자본으로는 IMF, IBRD,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이하 ADB), 그리고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및 북한의 대일본 청구권자금이 있음.
 - 한반도경제를 위한 다국적 협력체제는 남·북·중·러의 기본 틀에 몽골, 일본까지 가세하는 복잡한 매트릭스가 되어야 함.
 -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역자유무역협정(FTA)의 틀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기왕에 합의된 치앙마이 금융통화협력(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이하 CMIM)을 강화하고, 이를 인프라펀드 구성의 산파 역할을 맡도록 할 수 있음.

- 유엔개발계획(UNDP)과 국제 사회의 주도 아래 동북아경제 합작과 두만강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두만강개발사업(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이하 TRADP)이 2005년도에 광역두만강계획(GTI)으로 확대되면서, 한반도의 부산을

포함하고 몽골까지, 소삼각에서 대삼각으로 6억의 인구를 대상으로 함.

- 여기서 GTI 모델이라 함은 창지투계획을 중심으로, 국가간 차이의 해소, 복합물류운송과 지역접근성 향상(하드웨어), 국가의 역할과 제도개선(소프트웨어) 등을 추진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함.
- 따라서, GTI의 틀을 남북한과 중국, 그리고 주변국가들과의 국제협력에 있어서 조정자 역할이 가능함.

○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 추진

- 중국의 경제성장을 비롯한 지역여건의 변화는 역내 금융협력을 위한 지역개발은행으로서의 NEADB 창설을 위한 성숙된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 2012년 남한의 정치지형 변화, 북한의 '강성대국' 및 후계구도
- 아시아 화폐 위기 후 한·중·일 3개국이 「ASEAN+3」틀에서 급속히 접근하고 있는 점
- 동북아시아 지역은 국내 저축률이 높으며 외화준비고가 세계의 절반 가까이를 점하고 있어 국내자금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등임.
- 궁극적으로 동북아개발은행(NEADB)의 설립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리더십을 발휘하여, 한반도 인프라 개발을 통한 동북아경제협력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북한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다.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교통관련시설 차원에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이하 SOC) 구축을 위한 분야별 투자우선순위는 ①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 및 통행, ② 항만시설의 개보수, ③ 남북한 간 교통망의 확장, ④ 북-중, 북-러간 광역교통망 연결, ⑤ 공항 시설의 개보수를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한반도 인프라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구상(master plan)을 만들고, 재정지원과 역할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남북 협력기금 외에 별도의 인프라 기금 조성방안을 모색함.
 - 종합적인 구상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남북이 공동으로 구축하며, 양측의 인력확보와 인프라협력 관련 인력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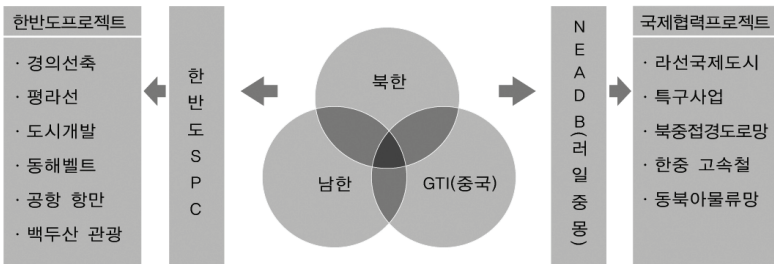
(2) 추진 주체

- ASEAN+3 에서 진화한 형태로 다국적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이하 MDB)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MDB의 역할은 ASEAN 지역인프라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월드뱅크의 역할을 재정적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것임.
 - MDB는 또한 기술적, 연구조사의 지원 및 ASEAN 국가들의 채권시장을 강화하고, ASEAN 국가들이 막대한 규모의 저축

과 외환보유고를 금융적(“bankable”)으로 활용하여 인프라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음.

- 마찬가지로, NEADB의 프레임을 적용하여 개발은행의 자금과 정책설정에 따른 인프라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남·북·중 3자간의 직접적인 협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국의 동북개발과 북중 접경지역 개발사업에 남북한과 중국의 공동사업으로 유도하고, 이를 러시아와 몽골을 포함하는 다자간 연계사업으로 동북아 지역차원으로 발전시키는 2개의 방향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그림 VII-2] 사업추진방안



- 남북이 협력하는 투자회사인 (가칭)대풍 특별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이 주도하는 방안으로 북한의 대풍그룹이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프레임웍에 남한의 '정책금융공사'와 같은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별도의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임.
- 대풍국제투자그룹(Taepung International Investment Group)은 북한의 당, 군부, 내각, 이 모든 것이 합쳐진 북한 전체의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대외창구임.

- 남측 언론은 ‘대풍’을 1970년대의 종합상사에 비유함.
- 대풍그룹은 그동안, 나진특별시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 나진항 개발 등에 대풍그룹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것을 시사해 왔음.
- 여기에는 또한 북측의 ① 먹는 문제, ② 철도, ③ 도로, ④ 항만, ⑤ 전력, ⑥ 에너지 등 6개 분야에서 경제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고 함.

라. 로드맵

(1) 2010년 하반기

-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교통물류분야 추진기획단 구성
- 특구 사업을 포함한 대풍그룹의 사업계획안 발표
 - 도시 (남포, 나진) 및 항만 개발 (나진, 신의주, 김책, 청진, 원산의 순(順))
 - 물류기지, 공업단지 건설
 - 철도 개선사업 (경의선, 평라선)
 - 고속도로 (경의선) 건설을 제3섹터 방식의 유료도로로 추진
 - 공항 (신의주, 나진, 원산) 개발사업으로 접근성문제 해소 및 복합운송의 효율성 기대

(2) 2011년

- 상반기에 북한 인프라현황에 대한 조사 및 교통DB 구축
 - 마스터플랜의 작성은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소

속된 국책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특별 TF팀을 구성함.

- 여기에는 (가칭)한반도 SPC와 남북경협사업에 경험이 있는 민간회사도 참여토록 함.

○ 제2차 남북정상회담(10.4)에서 기존 합의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

- 개성-평산, 온정리-원산 철도복구
- 남북연결철도 북측구간 전철화
-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 남포항 시설 현대화·물류체계 정비
- 화차공장, 수리조선소 건설 지원
- 백두산 관광개발 지원

○ 남북한과 중국(GTI)의 틀 활용 ([그림 VII-2] 참고)

- GTI 국가간 협력
- 관광 인프라 구축
- 교육협력

○ 하반기에는 회담에서 합의된 각종 인프라사업의 선정 및 건설사업의 본격적 진행을 위한 추진조직을 구성하여 남북정상회담 이후 사업관리 시작

- 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외관계 개선, 안정적인 남북한 관계구축, 외국기업의 대북투자에 대한 불안감 해소가 중요하므로, 국제협력을 통한 신뢰 회복 및 사업의 공조방안을 모색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3) 2012년

- 상반기에 대풍그룹의 안을 참고하여 남북간 공조사업의 순위를 결정
 - 북중 접경지역 인프라 확대 (만포, 혜산, 삼지연)
 - 북한 동서횡단축의 보강
 - 신의주 공업지구 개건 및 특구지원
 - 경의선축 물류사업
 - 동해관광축 형성 (금강산에서 원산, 청진에서 나진까지)

- 하반기에 GTI 모델을 중심으로 한 사업공동추진체계의 정착
 - 시장 확대
 - 투자확대
 - 정보화 및 기술이전

-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추진

(4) 2013년

- 한반도 교통, 에너지 라인 구축
 - 동해항만을 연결하는 교통축 완성 (한, 중, 일, 러 해양크루즈 사업)
 - 서해 물류축 형성 및 물류사업의 본격화
 - 에너지 운송을 위한 육상 파이프라인

- 동북아개발은행(NEADB) 창설
 - 동북아개발은행의 창설은 동북아 인프라자금조달을 위한 처

방전의 성격임.

- 지역내 개발도상국인 북한, 극동아시아, 몽골의 기본적인 인프라 정비에 필요한 자금이 연간 75~100억 달러로 추산됨.
- 이것은 수송, 에너지, 공업, 통신, 환경, 지적 인프라 등의 정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발자금임.
- 합작투자를 시행하는 자회사로써 동북아인프라개발공사(가칭)를 설치하고, 역내시장에서의 채권발행을 통해 접경지역 인프라 건설 및 다수의 프로젝트 투자를 관리함.

(5) 2014년

- 항구적 자원조달을 위한 국제협력
- 미래형 한반도인프라사업의 추진
 - 금강산 철도 건설
 - 동북아 평화관광은 다국가, 다목적지(multi-destination)형으로 확대
 - 유라시아 실크로드 건설로 친환경 녹색교통 구현

(6) 2015년

- 한반도 경제공동체 설립
 - 환황해경제권
 - 환동해경제권
- 해륙국가로서의 한반도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표 VII-2] 남북정상회담과 교통물류분야의 의제 관련 로드맵

		2010 하반기	2011 상반기	2011 하반기	2012 상반기	2012 하반기	2013 상반기	2013 하반기	2014 상반기	2014 하반기	2015 상반기
국 내 차 원	정상회담 추진 기획단 구성	○									
	북한 인프라 현황조사 및 교통 DB		○								
	마스터플랜 작성		○								
	건설사업 추진 및 사업관리 조직			○							
	관광인프라 구축		○	○							
	남북간 공조 사업 순위결정				○						
	교육협력		○	○							
남 북 차 원	대풍그룹 사업 계획안 발표	○									
	한반도 교통, 에너지 라인 구축						○	○			
	미래형 한반도 인프라사업 추진								○	○	
	한반도 경제 공동체 설립										○
국 제 차 원	GTI 국가간 협력 및 GTI 체제 정착		○	○							
	NEADB 설립추진					○					
	NEADB 창설						○				
	항구적 자원 조달을 위한 국제협력								○	○	

마. 기대효과

- 남북정상회담과 상호신뢰의 회복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통인프라사업을 가능하게 함.
 - 정상국가(normal state)로 변화한 북한과의 인프라건설 협력을 통해, 인프라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장기계획, 투자, 건설의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며, 마스터플랜의 작성을 통해 장기적 비전을 공유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음.
- 접경지역 인프라협력을 통해 남북한 간의 상호신뢰 구축과 남북경제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고, 동북아 국가간 교역의 활성화를 통한 상호 번영과 평화체제 구축을 앞당김.
 - 교통, 물류, 관광 인프라 개발은 통일비용절감과 평화경제의 정착과 같은 ‘사실상의 통일’에 비견할 만한 효과가 기대됨.
- 인프라 개발과 빈곤퇴치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GDP 1%에 해당하는 투자는 1인당 각 0.6% 소득상승으로 나타난다고 함.
 -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의 한국경제보고서는 남북한 사이의 경제적 격차뿐 아니라 사회적 격차도 심각하며 민간기업이 이끄는 남북교역 확대가 이같은 격차를 줄이는 데 최선의 방안이 될 것임.
-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교통·물류망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면, 한반도를 중심축으로 한 북함운송이 활성화될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것으로 예상됨.

- 동북아교통망시대의 기본전제라 할 남북교통망 연결은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한·중·일을 하나로 묶는 동북아 중심국가로 부상하는 기틀이 될 것임.

3. 백두산 화산폭발 대비 공동연구

가. 제안배경

(1) 서기 900년대의 백두산 대폭발과 재폭발설의 등장

- 서기 900년대의 백두산 대폭발은 지난 2000년 이래 최대 화산폭발이었음.
 - 1990년대 들어서야 일본과 우리나라, 중국 학자들에 의해 폭발 규모와 구체적인 시기가 밝혀졌고,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인류 1만년 동안 대규모 폭발 사건으로 백두산 대폭발을 기록함.

- 백두산 재폭발설의 등장
 - 조만간 백두산이 재폭발할 것이라는, 1980년대 초반에만 해도 냉담한 반응을 얻었던 이 폭발이론은 1990년대 중반부터 힘을 얻으며 중국과 일본, 러시아 학자들까지 가세해 백두산 폭발 연구에 돌입한 상태임.
 - 일본과 중국은 백두산 폭발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대처방안 까지 마련한 상태임.

(2) 백두산 화산폭발의 징후

(가) 화산의 분출 전조 현상과 백두산

- 일반적으로 화산의 분출 전조 현상은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로 나뉨. ① 화산 주변 암석에서 자기장의 변화, ② 화산 주변에서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전기저항의 변화 관측, ③ 물리적 이상현상(분화구 호수 및 온천 온도상승, 가스성분 변화, 잦은 지진 등) 발견, ④ 마그마 상승음 직입 등 휴화산으로 분류됐던 백두산에서 최근 이러한 4가지 움직임이 모두 관측됐음.²⁵

- 2000년대 들어 지진도 잦고 높이는 10m나 솟아올랐는데, 이는 마그마가 활동을 시작했다는 증거임. 10년 전까지 68℃를 넘지 않았던 장백폭포 아래 온천물은 작년 78℃까지 상승했음. 중국인들이 그 온천물에 달걀을 삶아 관광객에 판매하고 있을 정도임.
- 땅 밑에서 올라온 화산가스로 백두산의 나무가 고사되고 있음.
- 2003년에는 한 달에 240번 이상 지진 발생이 기록되기도 했음. 지진 근원지는 천지 아래 불과 2km 지점이었음.
- 우리나라 지진학계가 최근 중국 정부의 인공위성 사진을 입수한 결과에 따르면 산 정상에 중심으로 백두산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산 전체가 부풀어 오른 모습도 관측됐음. 천지 아래 뭇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로 추정됨.

(나) 관련국 전문가들의 의견

- 윤성효 교수(부산대학교), 일본의 히로미추 타니구치 교수(동북대학교), 하이첸 웨이 박사(중국 국가지진국 지질연구소), 지아

²⁵ 중국 국가지진국의 관측에 따르면 2002년도 백두산 내에서 암석 붕괴 및 균열현상이 발견됐고 유독가스 방출로 인한 수목 고사, 천지 칼데라 주변 지층이 매년 3mm 이상씩 융기, 2002년 이후 화산성 지진이 급증했음. 마그마 및 분출물질의 퇴적 범위를 반경 5km로 추측함. 특히 GPS를 통한 지각변동 관측결과에 따르면 백두산 천지 아래 마그마는 현재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상태임. 백두산은 이미 활화산으로 둔갑한 지 오래였음.

치 류 박사(중국과학원 지질학 및 지질물리학연구소)가 공동으로 백두산 화산 위기에 대해 조사해 온 결과를 살펴보면 백두산은 이미 1990년대부터 휴화산이 아닌, 활화산이었음.

- 중국 지진국 지질연구소의 하이첸 웨이 연구원은 백두산 천지 화산의 100년 내 재폭발 확률을 20%가량으로 예측하고 있음.
- 1994년도부터 백두산 폭발 가능성을 주장해 온 부산대학교 윤성효 지구과학교육학부 교수는 “현재 중국 지질관측소가 측정 한 자료를 보면 백두산 마그마는 당장 내일 터져도 전혀 이상 하지 않다”고 주장함.
- 북한 화학연구소의 김항명 소장은 2006년 9월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2006년 중국 동북지방에서 리히터규모 7.3의 지진이 일어난 이후 백두산의 화산성 지진이 약 5배 이상 증가했다”며 “백두산은 사화산이나 휴화산이 아니라 ‘활화산’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밝힘.

(다) 백두산의 마그마

- 백두산의 분출물 100km³에 들어 있는 순수한 마그마는 약 30km³ 정도임. 통상 불안정한 화산은 한 차례의 화산 폭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그마의 10분의 1을 분출함. 따라서 백두산의 지하에는 지금도 약 300km³의 거대한 마그마 호수가 존재함.
- 이런 마그마가 들끓고 있음을 알려주는 징후가 최근 계속 확인되고 있음. 화산성 지진이 빈발하고, 최근 100년 이내에 볼 수 없었던 백두산 천지의 용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징후임.

- 더구나 백두산은 10세기의 대폭발 이후에도 마그마 0.1km³ 정도를 분출하는 폭발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있었음.

(3) 백두산 화산폭발의 피해

- 한·중·일 및 러시아 지진학계 전문가들은 백두산이 폭발할 경우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에도 엄청난 재앙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우선 천지 칼데라가 붕괴하면서 20억 톤의 물이 쏟아지며 홍수가 일어나고 막대한 양의 고온 마그마 때문에 백두산 주변 50km 이내에 피해가 오며 엄청난 양의 강하 화산재가 편서풍을 타고 일본을 지나 태평양까지 도달하고 일부는 성층권 내에 남아서 태양복사를 차단해 전 지구 규모의 기후 한랭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함.
 - 윤성호 교수는 “백두산이 폭발하면 그 피해 규모는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라며 “화산폭발에서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이 화산재인데 천지 정상부 20억 톤 가량의 차가운 물이 마그마와 닿으면 기름에 물을 부은 듯 마그마가 튀어 지독한 화산재로 변할 것”이라고 주장함. 서서히 굳어야 할 마그마가 천지의 물과 닿아 공중으로 화산재처럼 튀어 버리면 날아다니는 뾰족한 유리조각으로 변해 피해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뜻임.
 - 일본학자의 최근 추정에 따르면 백두산이 10세기 중반 대규모 분화를 일으켰을 때의 분출물 양은 8만 3117km³로 지난 아이슬란드 화산폭발의 1,000배에 달한다고 함. 이 정도 규모의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재가 최대 45km에 달하는 성층권까지 올라가

지구의 태양복사를 방해해 지구 온도가 내려갈 수 있음. 식물이 온도 하강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 경우 농업이 피해를 입어 북한이 심각한 기아상태에 직면하고 우리나라 역시 피해를 비켜갈 수 없음. 또한 화산 분화 시 화산재 알갱이에 황과 염소 등이 붙어 나오는데 상온에서 물과 접촉하면 황산, 염산, 질산으로 변해 산성비가 내려 식물을 고사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 역시 피해를 봄.

- 일부에서는 백두산 폭발이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함. 화산폭발 시 피해를 주는 주요 원인은 화산재인데 우리나라는 화산재 피해를 거의 입지 않는 반면 편서풍 영향으로 일본이 북한 다음의 피해를 볼 것으로 지적됐기 때문임.²⁶
- 한·중·일 공동연구단은 북한은 백두산 주변에 화산재가 1m 이상, 함경도 일대에 5m가량의 화산재가 쌓이고 일본에는 최소 5cm 화산재가 쌓일 것으로 전망함. 이 때문에 일본은 자국 내의 화산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진을 가동해 대비책 마련에 들어가고 러시아와 함께 인공위성과 지진관측을 통한 백두산 분화 감시를 시작했음.

²⁶ 문제는 겨울에 백두산이 분화할 가능성임. 이 경우는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예상되었음. 겨울에는 화산재가 북풍 또는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항공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임. 항공기 운항이 10일 간 중단되면 수출은 약 25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화산재의 영향으로 야외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여행 등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음. 기획재정부, 『2010년 거시경제안정보고서』 (2010.9.29), <<http://www.ccdailynews.com/section/?knum=174675>> (검색일: 2010.9.30).

(4) 공동연구의 제안 배경

(가) 재난 가능성에 대비한 남북협력의 필요성

- 현재 백두산 화산에 대한 남북공동연구에 대한 모든 협의는 남북 경색으로 인해 중단되어 있으며, 정치·외교적인 판단에 따라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
- 백두산 화산 분화는 조만간 일어날 것이며, 이는 천지와 결합해 엄청난 화산재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 한국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중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은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백두산의 화력은 아직도 건재함. 그러나 백두산이 언제 폭발할 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함. 과학자들은 화산폭발의 주기나 규칙을 알아내려고 애쓰지만 화산은 결코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음. 예를 들면, 1991년 약 700명의 생명을 앗아간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은 주민들이 화산이라고 인식하지도 않았던 뒷산이 갑자기 부풀어 올라 폭발했음.
- 백두산은 헌법상 우리 영토이며, 한민족에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가 깊음. 백두산 화산 분화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해서 ‘강 건너 불 보듯’ 구경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
 - 이미 많은 나라에서는 화산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고 실생활화되어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기상청 지진국 내에 화산 관리팀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연구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재난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 북한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화산 분화 이후 피해에 대해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지진계 및 관측 장비를 지원해 천지 백두산 화산체의 지하 마그마 방을 감시하는 과학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함.²⁷
- 백두산 화산 연구를 남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개국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공동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관련국가간 상호 이해와 협력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음.

나. 주요내용

(1) 각국의 대응

(가) 한국의 대응

- 백두산 화산폭발 위험을 우리나라 정부도 감지하고 있지만, 비상응급대책 및 소방방재청과 정부부처의 연계작업 조차 전무한 상황임.

²⁷ 윤성효 교수는 “현재 북한이 보유한 지진관측 장비는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넘겨 받은 노후장비”라면서, “우리가 최신 관측 장비를 백두산 주변지역에 설치, 측정된 데이터를 공동 연구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함. 윤 교수는 “북한에 관측 장비를 지원, 정확한 관측을 하면 현재 마그마가 올라오는 속도와 규모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종류의 마그마가 언제 어디에서 쏟아져 나오는가를 예측할 수 있다”며, “1991년 6월 피나투보 화산 폭발시 필리핀, 미국의 공동조사를 통해 하루 오차범위 내에서 폭발을 예측한 바 있다”고 설명함. 윤 교수는 “화산 분화는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화산학자와 지질학자를 중심으로 화산재해도를 작성한다면 화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 다만 기상청이 ‘백두산 화산 위기와 대응’이란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하며 국가차원의 응급상황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남긴 상태임.

(나) 중국의 대응

- 중국은 화산폭발 예측 경험이 부족함. 그러나 중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백두산 화산에 대한 감측과 연구를 본격화해 백두산이 중국에서 큰 잠재적 폭발 위험성을 가진 ‘활화산’의 하나임을 확인하고 천지 부근의 화산활동으로 빚어질 수 있는 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에도 주력하고 있음.
- 중국은 천지 북쪽에 국가지진국 천지화산관측소를 설치하고 천지 아래 마그마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 특히 천지 화산 분화시 관할 지역에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린(吉林)성 옌벤(延邊)조선족자치주 정부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2003년 4월 ‘창바이산(백두산의 중국 명칭) 천지 화산 재해 응급대책’을 새로 제정해 공포했음.

(다) 일본의 대응

- 일본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자국 내의 화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산학자와 지질학자를 중심으로 연구팀을 가동했고 이미 대비책 마련에 돌입함.
- 일본 도호쿠 대학은 백두산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연구조직을 가

지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으로 백두산 연구를 하고 있음. 일본은 지난 2000년부터 중국 국가지질국과 길림대학, 북한 사회과학원 산하 지리연구원 등과 함께 백두산에 대한 3국 공동연구를 진행 중임.

(라) 러시아의 대응

- 러시아 역시 인공위성과 지진관측을 통해 백두산 분화를 감시하고 있음.

(2) 백두산 공동연구와 남북관계

- 북한은 2007년 11월 남북 총리회담 당시 백두산에 대한 공동연구를 제의했음. 유적발굴 등 우리나라의 남북한 공동 연구제안에 늘 마지못해 승낙하는 행동을 취했던 북한으로서는 이례적인 변화였음. 이에 우리나라 정부가 승낙하며 북한에 남북한 공동 지진관측소를 설치하는 작업이 시작됐지만 새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되며 공동연구는 중단됐음.
 - 현재 북한과 연결이 안되다 보니 대화소통이 단절된 상태이며 중국정부마저 백두산 인근 원전건설 논란이 일며 백두산 접근을 막아 국내 지진학자들의 백두산 화산활동의 직접 연구가 어려워졌음. 빠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과의 공동연구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이러한 연구 단절 움직임에 대해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북한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전혀 없어 정부차원 공동연구는 어렵다”며 “특히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한 관계가 살얼음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판인 상황에서 백두산 화산움직임 공동연구 제안을 하기도 어렵다”고 난색을 표함.

- 남북관계가 풀리면 북한이 아쉬워하는 만큼 이 제안은 성사될 가능성이 높으며, 혹은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더라도 이를 풀기 위해 이 연구를 제안할 수도 있음.
 - 백두산 화산폭발로 인한 재앙에 대해 북한이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고, 자칫 화산재가 한국과 일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남북관계의 경색이 풀리면 주변국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공동연구가 필수적임.

(3) 공동연구 내용

- 2007년 12월 정부는 제1차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합의에 따라 진행된 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백두산 화산 활동에 대해 공동연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이는 북한이 한국 측에 지진 연구를 위한 지진계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백두산 화산활동 공동연구’ 등 총 4조 10개항의 합의를 채택한 바 있음.
- 이 합의서 가운데는 ① 백두산 화산활동 공동연구, ② 대기오염 피해감소를 위한 공동협력, ③ 한반도생물지 사업, ④ 환경보호센터 등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성과를 이룸. 이후 관계전문가들이 두 차례 교류를 가졌는데, 이후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됨에 따라 중단됨. 이

합의서를 발표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추진내용임.

- 현재의 남북관계의 경색이 풀릴 경우, 혹은 경색의 출구 전략을 추진할 때 북한에 대해 백두산 화산폭발 대비 공동 연구 제안하는 것을 우선 과제의 하나로 삼을 수 있음.
- 북한측이 과거 남북공동연구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어, 남북공동연구 추진의 실현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백두산 화산의 국제공동연구는 관련 산학연 전문가를 중심으로 수행해야 연구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확립할 수 있음.
- 북한, 남한, 중국, 일본,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도 참여하여 백두산 연구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도록 유도

(4) 추진할 연구의 구체적 내용

- 국내 관련 정부기관 및 연구소, 대학 및 민간연구소 간 연구추진단 구성
-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의 화산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 백두산 화산폭발 피해 방지 대책위 구성, 구체적 연구 추진
 - ‘백두산과학기지’는 북한 삼지연에 ‘백두산화산관측센터’ 그리고 남한에 ‘백두산 화산재해연구센터’를 설치함(남한의 이 센터는 실시간 통합지진/지자기/GPS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연구센터 활용 요청).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 백두산 화산폭발의 다주기적 예측 연구를 위해서 충분한 화산 주변 사전조사연구 필요
- 다수의 지표지점과 심부시추공에 최적의 배열을 갖춘 다양한 관측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지표와 지하심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물리화학 변화량을 입체적으로 직접 관측
- 백두산에 과학관측기지를 설립하여 모든 관측자료를 집중시킴.
- 유력한 화산재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각 경우에 따른 화산재해도 작성
- 설계한 모델을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화산분화 예측 성공률을 훨씬 높일 수 있음.

다. 추진방안

(1) 국내적 차원

- 과학기술부 동북아기술협력과와 기상청의 관련부처 관계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회의를 발족하여 정기적인 워크숍 개최 등 관련 분야 자료 축적
- 향후 남북관계가 풀릴 경우 개최될 제2차 남북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의 백두산 화산연구에 대한 남북공동연구 추진계획안 초안 도출
- 각 화산재해 시나리오와 재해도를 근거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관련법령, 예산확보, 부처별 단계별 대응안, 유사시 방재대책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다양한 분야의 국내 전문가를 양성하고, 관련 분야의 경험이 많은 해외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협력 도출
- 민관간의 효율적 역할 분담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평상시 과학교육, 관광, 지열자원 활용, 유사시 안전한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재해 방지 및 완화 시스템 확립

(2) 남북관계 차원

- 연구 환경의 조성을 위한 남북합의 도출 필요
 - 백두산 남북공동연구에 대한 구체적 합의에 이르러 2008-2012년 간 공동연구사업 예산항목 106억 원이 책정되었지만 남북경색으로 무산
- 남북관계의 정치적 환경에 따라 단기 혹은 장기적으로 중단될 가능성에 대한 방지 대책이 필요함. 즉, 백두산 공동연구의 지속적 수행에 필요한 남북 특별협정이 필요함.
 - 백두산에 체류할 남북한 상주인원들의 조직과 역할, 신분보장에 대한 법적 협의 필요
 - 백두산 주변에서 화산분화의 전조현상 등을 조사할 때 조사연구의 자율성과 조사자의 생명안전 보장
- 일부 관측자료들은 북한의 군사활동 정보에 유용될 수 있어, 북한측과의 교섭에 전략적 협상이 요구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3) 국제적 차원

- 백두산 폭발 재앙에 대처하려면 이데올로기나 국경을 초월해야함.
 - 백두산 화산은 국제학계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음.
 - 인도적 차원에서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해 비정치적 접근 가능
 - 관측기구의 첨단기술을 갖춘 지구과학의 대표적인 양대기구인 국제통합해양시추프로그램(Integrated Ocean Drilling Program: 이하 IODP)과 국제대륙과학시추프로그램(International Continental Scientific Drilling Program: 이하 ICDP)의 공조가 필요

- 화산연구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물리탐사·관측장비들은 전략장비로서, 북한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승인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요구됨.
 - 미국의 발달된 기술획득을 위해 비정치적 관점에서 미국의 참여가 필요함. 미국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 이하 USGS)의 전문가를 투입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얻어야 함. 그들은 전 세계의 화산을 관측했고, 실제로 폭발을 예측한 많은 실적이 있음.
 - 북한이 정치·군사적 이유로 미국의 참여를 꺼릴 수 있으나 여하튼 이런 점에서 북한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데 한국의 참여와 중재가 절실함.

- 일본 역시 화산이 많은 탓에 화산 폭발 예측을 비롯한 화산 방재 과학의 수준이 높은 편임. 화산 분화를 예측하려면 경사계(tiltmeter)를 다룰 수 있는 측지 전문가, 화산성 지진과 미동을

판독할 수 있는 지진 전문가, 그리고 ‘코스펙(correlation spectrometer)’이라 불리는 상관분광계를 다룰 수 있는 화산 기체 전문가가 필요함. 북한은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의 도움이 필요함.

- 2009년부터 제8차 한중 지진과학기술협력회에서 중국지진국에 있는 백두산 화산 관측자료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중국 내 법령상 성사 가능성이 현재 희박한데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작업 필요
 - 중국 길림대와 공동으로 천지 퇴적물의 시추 타진
 - 한·중·일의 일부 화산전문가들이 국제공동연구를 진행 중이지만 연구정보수집 차원이며 실제로 관련관측 자료를 얻은 것은 불가능한데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작업 추진
 - 현재 중국과의 국제공동연구가 차단되어 있지만 화산재해 예측의 정확성을 이루기 위해 결국은 상호 협력 체계의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낙후된 국내 화산재해 연구 수준을 국제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 혹은 선진국의 화산관측소들과 연계하여 최소의 비용과 시간으로 최대 효과를 기하여야 함.
- 6자회담의 하위분과로 백두산 6자 공동연구기구 출범을 고려할 수 있음.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라. 로드맵

(1) 2010년 하반기

- 남북관계의 복원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남북관계 구축
- 한국내의 백두산 화산폭발 관련 전문가 그룹 형성 및 기구발족, 국제적 협력 위한 준비 작업
- TF 구성

(2) 2011년

- 백두산 연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 유엔사 및 미국의 이해와 협조 유도
-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참여 유도
-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의 전문가까지 참여한 다자간 연구 협력 논의틀 마련 및 실질적 기구 마련
- 이미 합의된 내용의 점검
- 지원사업 재선정 및 추가사업 선정

(3) 2012년

- 북한과의 경색 관계가 풀린다면 바로 제안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완료하고 만약 계속 관계가 얼어붙어 있다면 백두산 화산폭발 대비 공동연구 제안을 통해 북한과의 경색관계 출구 전략으로 삼음.
- 백두산 연구에 관한 합의서 초안 발효 노력
- 백두산 연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노력 지속
- 지속적인 미국의 이해와 협조 유도
- 백두산 공동연구 관련 남북합의서의 국회통과
- 지원사업 재확정 및 추가사업 선정

(4) 2013년

- 합의서 재확약
- 백두산 공동연구관련 남북합의서 국내 이행을 위한 특별법(안) 및 관련법 개정(안) 마련
- 백두산 공동연구 관련 남북합의서 국내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관련법 개정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 관련 북한법 정비 유도 및 지원

○ 관련 특별법 제정과 공포

[표 VII-3] 백두산 화산폭발 대비 공동연구 방안 로드맵

		2010	2011	2011	2012	2012	2013	2013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남북관계 현상 지속		남북관계 대화 개시		남북관계 활성화		
국내 차원	TF 구성	○						
	대상 및 분야 선정		○					
	기합의서 점검			○	○			
	지원사업 재선정 및 추가사업 선정		○	○				
	공감대 확산		○	○	○	○	○	
	합의서 국회통과					○		
	특별법 제정, 공포						○	
남 북 차 원	협상테이블 유도			○	○			
	지원사업 재확정 및 추가사업선정					○	○	
	합의서 재확약						○	
	관련 북한법 정비 유도 및 지원							○
국 제 차 원	유엔사 및 미국의 이해와 협조 유도		○	○	○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참여 유도			○	○	○	○	○

마. 기대효과

- 백두산 화산폭발로 인한 재앙을 남북한 및 관련국들이 함께 미리 대비하는 효과
- 화산 연구 축적 및 화산재해 피해 완화 시스템 보유
- 남북의 평화적 협력과 신뢰회복의 기회로 민족의 영산 백두산에 대한 공동연구로 남북한간 동질성 회복의 중요한 모티브가 될 수 있음.
- 관련분야의 학술적 발전과 국제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음.
- 6자회담국의 공동 참여로 동북아 평화모드 조성의 기회
 - 백두산 화산폭발 연구를 계기로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심지어 미국까지 참여하는, 즉 6자의 공동참여로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시 이 문제를 상의할 수는 없겠으나 만약 핵문제에 진전이 있다면 이 문제를 6자회담의 하위분과로 다룰 수 있음.
- 국제사회에서 백두산의 명칭 회복과 민족의 영산 백두산 연구의 부수적 효과로 중국의 고구려, 발해 역사의 동북공정 저지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VIII. 법·제도적 준비방안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접경지역이 평화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점에서 본 장에서는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제도적인 정비방안들로서 남북한 접경지역 관리협의체 구성의 설치 이유와 추진방안을 살펴보고 이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할 주요 사안으로서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제도 대응방안과 비무장지대 내 유엔환경기구 유치를 위한 법·제도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남북한 접경지역에서는 임진강과 북한강 수계 문제를 남북이 공동 대처하고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질병과 산림 병충해를 남북 공동으로 방역·방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접경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이를 북한과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통일과정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협력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접경지역에서의 협력에 대한 북한의 관심을 제고하고 장차 통합과 통일의 상대방으로서 정치적·제도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남북 공동의 정책 협의·관리·집행기구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남북한 접경지역 관리협의체로 가칭 ‘접경지역관리협의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동 협의회를 통해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관련 주요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 등 관련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원칙 및 목표 등에 대한 국내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또한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혹은 중국 등 북한에 영향력이 있는 제3국의 참여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 협의회를 통해 접경지역에서의 생태·환경 문제는 물론 남북한 산업·에너지·공동수계 관리 및 수해 등 재난 관리 등의 다양한 문제

를 협의해야 한다.

접경지역에서의 남북 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은 남북한 간의 군사 충돌을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 공유하천을 통한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관계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8·15경축사를 통해 천명한 평화·경제·민족공동체 등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을 구현해 나감에 있어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으며,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를 통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물 부족 문제에 능동적·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명시적인 합의서 체결이 요구된다. 공유하천의 이용은 국제관습법의 형태로 존재하고는 있으나 이는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으며 공유하천의 이용도 주로 공유하천의 비항행적 이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7년 5월 21일 뉴욕에서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의 법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Law of Non-Navigational Uses of International Watercourses)을 채택하였지만 2010년 6월 24일 현재 뉴욕협약은 발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모두 동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어서 동 협약을 남북한의 경우에 적용할 수도 없다. 또한 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하여 남북은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를 체결한 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임진강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이미 조사 기간도 종료하였다. 따라서 남북한 사이에 공유하천 평화적 이용에 관한 합의서 체결이 필요하며, 이를 우리 내부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관련법의 정비가 요구된다.

상생공영과 평화공존에 대한 남북한의 의지는 무엇보다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고 있는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데 서로가 합의하느냐의 여부에서 확인될 수 있다. 남북한의 이해가 정치·군사·경제·환경·문화 등의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비무장지대에서 남

북한이 평화적 협력사업에 합의한다는 사실은, 바로 서로가 정치·군사·경제·환경·문화 등 포괄적 측면에서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평화공존을 확고히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무장지대 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는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한이 포괄적 측면에서 이해가 합치하여 호응할 수 있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이며, 동시에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평화와 번영, 그리고 환경보호에 필수적인 사업일 수 있다. 동 제안의 궁극적 목표가 평화 유지 및 환경보호에 더하여 북한의 개혁·개방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방법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이르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의의를 가진 비무장지대 내 유엔환경기구를 유치하고 사후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비무장지대 내에 유엔환경기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정전체제 하에 있는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기 위한 남북한 간의 합의와 둘째, 비무장지대 내 유엔환경기구 유치를 추진할 수 있는 남북한 간의 공동기구 구성이 필요하다. 셋째,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유엔환경기구를 유치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대응 방안과 넷째, 유엔환경기구 소재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다섯째, 유엔환경기구 유치 및 유엔환경기구 소재지 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1. 남북한 접경지역 관리협업체 구성

가. 제안배경

(1) 남북한 접경지역의 현안 해결 필요성 증대

(가) 공동수계 문제

○ 남북한 접경지역의 임진강, 북한강 수계에 북한은 유역변경식 발전을 하는 황강댐과 임남댐을 각각 건설하였음. 이에 따라 각 수계의 하류인 남측지역에 갈수기 물부족과 홍수기 수재의 우려가 발생하고 있음.

- 유역면적 2,394km²의 임남댐은 45km의 터널을 통하여 40만kW의 발전을 위한 동해안 안변청년발전소에 발전용수를 공급하고 있음. 임남댐 건설 이후 화천댐 유입량(연평균 29억m³)은 1996-2000년의 경우 연평균 3억 5천만m³가 감소했음. 유역변경식으로 건설된 임남댐에서 연간 17억 4천만m³의 물이 안변지역으로 유출되면 하천 유입량이 감소하여 수도권 물수급에 큰 영향을 미쳐 2011년 기준 6억 2천만m³의 물부족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임남댐으로 인해 유입량이 차단될 경우 5개 수력발전소 발전량 약 30% 감소, 연간 발전량 3억 7천 700만kW의 감소가 예상됨. 또한 북한강 수량이 감소하면 한강 유지용수가 부족하여 수질오염 심화도 예상됨.²⁸

²⁸- 최동진, “공유하천 관리, 협력사업 연계·통합하여 추진 필요,” 『워터저널』 (2009.11.05), <<http://www.waterjournal.co.kr>> (검색일: 2010.2.3)

- 임진강유역은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물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기존 댐 발생급수능력과 하천 유지용수를 고려할 때 남북한을 합하여 2011년에는 약 3억 4천만 m³ 정도의 물이 부족하며, 이중 남한에는 2억 2천만m³ 정도의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댐을 추가로 건설할 경우 남한지역의 물 부족은 더욱 심해질 것임.

(나)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질병과 산림 병충해 공동 방역·방재 필요성

- 남북한 접경지역에서는 남북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질병이 발생하고 있음.
 - 남북한 접경지역에서는 남한에서 한동안 사라진 질병으로 알려져 온 말라리아 환자가 증가하고 있음.

[그림 VIII-1] 2008년 말라리아 위험지역



- 강원도 산악 지대의 경우 산림 병충해가 발생하고 있음. 예컨대 솔잎혹파리는 바람에 의한 이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설악·금강권

- I
- II
- III
- IV
- V
- VI
- VII
- VIII
- IX

일대로의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음.

(다) 접경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필요

- 남북한 접경지역에서는 금강산·개성 관광, 개성공단, 남북 도로·철도 연결 등 당국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되어왔음. 하지만 돌발사태 발생시 이를 종합적 제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는 취약함.
- 통일부는 2009년 업무보고에서 골재채취 등 한강하구 공동이용, 남북 공유하천 공동이용 등에 대한 구상을 보고하였음.
 - 2008년에도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① 북한지역 내 양묘장 조성(사리원지역에 10ha 규모 양묘장 조성), ② 북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솔나방, 솔잎혹파리 등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③ 민간단체 산림녹화사업 지원, ④ 조림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이하 CDM) 사업 추진 환경조성(북한지역 내 소규모 조림 시범사업(200ha 규모) 협의 추진) 등의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음.
- 이처럼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북측과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제도적 장치는 없음.

나. 주요내용

(1) 동서독 국경위원회 사례 검토

- 독일의 경우 1973년 1월 31일 기본조약 제3조에 대한 부속의정서에 따라 양독간 ‘국경위원회’(Grenzkommission)를 설치하여 운영한 바 있음. 동 위원회는 국경선 통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 예컨대 수자원, 에너지 공급, 재해방지와 같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었음.
 - 국경위원회에는 동서독에서 각기 필요에 따라 임명된 대표단이 파견되었음. 서독의 대표단은 내무성 직원을 단장으로 내독관계성, 재무성, 동독과 국경을 접한 4개주(바이에른, 니더작센, 헤센, 쉐레스비히-홀스타인)의 대표로 구성되었음. 동독은 외무성 직원을 단장으로 국방성(국경수비대), 환경 및 수자원 보호성, 내부성 직원으로 구성하였음.
 - 양독간 국경위원회는 특히 수자원, 에너지 공급과 재해방지 문제를 다루었음. 국경위원회 회의는 통상 1년에 4회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음.
 - 독일의 국경위원회는 상설기구라기보다는 동서독간 국경관련 문제를 협의하는 협의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역할은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음.

- 남북간에 비무장지대의 공동관리를 위한 ‘접경지역관리협의회’를 신설한다면, 그 최초의 형태는 동서독간의 ‘국경위원회’와 같은 형태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이렇게 만들어지는 협의회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은 동서독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 즉,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접경지역 관련 모든 문제들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기구가 될 것임.
- 한반도 비무장지대와 그 일원은 생태·환경적 차원에서 가치가 높은 지역들이 산재하는 만큼 이 지역들을 어떻게 관리·보존할 것인가에 대해서부터,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남북 공동수계(한강 하구, 임진강, 북한강 등)의 관리 및 수해 등 재해방지 문제, 개성공단을 비롯하여 비무장지대 내부와 인접지역에서의 남북한 산업 및 에너지 협력 문제 등의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구가 필요함.

(2) ‘접경지역관리협의회’ 설치의 의의와 해결 과제

(가) 군사적 신뢰 구축 측면

-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이 추진되면서 통행·통신·통관 등 소위 3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를 논의하는 군사적 협의채널이 존재하였으나, 이를 제도화·정례화하거나 개별 이슈가 아닌 종합적 논의의 틀로 확대하지 못하였음.
- 접경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문제 (특히 군사적 문제)에 대한 제도적 논의틀 마련이 요구됨.

(나) 실용적 측면

- 임진강과 북한강 수계의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에는 현재 북한이 건설한 댐들이 하류인 남측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동수계를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관리해 나아

가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임진강, 북한강 수계를 중심으로 발달한 생태계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통합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 경제난 심화로 방역·방재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북한 내에 각종 질병과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남측 지역까지 말라리아 등 질병이 발생하고 있음. 남북강원도 접경지역 등지에서는 솔잎혹파리 등 수목 관련 질병이 문제가 되고 있음. 이 외에도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산불 등 자연재해와 같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함.
- 소위 3대 경협사업으로 불렸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남북도로·철도 연결사업 등 남북 당국간 주요 국책사업이 진행된 지역이 바로 비무장지대와 그 주변 접경지역임. 향후에도 남북관계 진전 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남북한 주요 협력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매우 높음. 특히 통일 과정과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주요 육상 교통망, 에너지 수송관로, 통신망 등이 대륙과 연결된다면, 어떤 경우에도 그 핵심 터미널은 서울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대륙과의 연결망 구상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비무장지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요구됨.

(다) 생태·환경적 측면

- 비무장지대의 양호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도 비무장지대의 통합관리체계가 필요함. 즉, 비무장지대 전체의 생태계를 어떻게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것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함.

- 비무장지대 곳곳에 파편적으로 위치하게 되는 각종 생태·환경 공원은 물론이고 이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평화시 등 도시 건설의 방향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별도의 관리체계가 요구됨.

(라) 정치적·제도적 측면

- 통일 과정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제도를 발전시키고, 협력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특히 환경이나 생태 관련된 문제는 미래 사회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서는 이를 관리할 경제적 여력이나 기술적 능력은 물론이고 근본적인 관심까지도 부족한 상태임.
- 따라서 이러한 문제 영역에 대한 북측의 관심을 제고하고 장차 통합과 통일의 상대방으로서의 정치적·제도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도 남북 공동의 정책 협의·관리·집행기구의 마련이 요구됨.

다. 추진방안

(1) 국내적 차원

- 남북한 간에 ‘접경지역관리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국 사회 내부에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접경지역의 통일

이후 비전에 대한 국내적 합의가 존재하여야 함.

- 현재는 접경지역 지자체들 간(광역지자체 vs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 vs 기초지자체)에도 명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도 접경지역 관리와 관련된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더 나아가 비무장지대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환경론자들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주장하는 개발론자들 간의 이견 역시 조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심지어 중앙정부 부처들 간에도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중복된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있음.

○ 따라서 기존의 계획들을 조정·조율하고, 국내적 합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즉, 주요 부처 및 지자체, 그리고 민간 등 관련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원칙 및 목표 등에 대한 국내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할 것임.
- 특히 비무장지대와 그 주변지역은 개발과 보존이라는 대립적 의견이 충돌하는 지역이므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보존의 가치가 있는 지역과 개발이 불가피한 지역 등을 구분하는 등 이견(異見)이 발전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2) 남북관계 차원

○ ‘접경지역관리협의회’ 구성의 법적 근거는 1991년 12월 13일의 남북기본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한 합의서) 제12조가 될 것임.

-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 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 추진함.
- 동 조항의 근거를 바탕으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안을 다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함.

- 즉 초기에는 남북한의 대표와 유엔 관장하의 군사정전위원회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체의 성격으로 출발하게 될 것임. 동 협의체는 생태·환경은 물론이고, 남북한 산업·에너지·공동수계 관리 및 수해 등 재난 관리 등의 다양한 문제 영역들에 대해 협의하게 될 것임.

(3) 국제적 차원

- 비무장지대의 관리와 관련하여 정전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군사정전위원회’ 및 유엔사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으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남북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군사정전위원회나 유엔사의 역할은 부수적인 문제가 될 것임.
-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역은 국제기구나 제3국의 공동참여 여부라고 할

수 있음.

- 그동안 남북한 간의 직접 교류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경색과 개선이 반복되어 왔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 혹은 중국 등 북한에 영향력이 있는 제3국의 참여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2003년 북한은 UNEP 등과 공동으로 비무장지대에 대한 환경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음. 따라서 북한이 주요 국제기구들과 기합의한 사항 등을 참고하여 국제기구와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

라. 로드맵

(1) 단계적 추진 방안

(가) 국내적 정책 협의체 구성 및 국제적 협력체 구축

- 우선적으로는 중앙정부 관련 부처, 관련 지자체, 민간 등 접경지역 관련 주요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정책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함.
 - 국내적으로도 접경지역의 미래와 관련하여 수많은 이견(異見)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이견을 통일과 미래라는 관점에서 조율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요구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나) 파일럿 프로젝트(Pilot Project) 추진

1)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

- 임진강 및 북한강 수계와 관련하여 남북한간 기존 협의가 진행된 바가 있으며, 동 지역을 대상으로 경기도 및 강원도 등 주요 지자체들의 남북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기존 합의와 사업 주체들이 공동 참여하는 남북 실무 협의회를 구성함.

- 우선은 기존 남북합의가 가장 많은 임진강을 대상으로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를 남북 공동의 하천 관리협의체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임.
 - 그 시작은 구체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임. 예컨대 황강댐의 운용과 관련하여 홍수기와 갈수기 수량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²⁹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남측이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재정적 기여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는 없는지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여야 함.

²⁹- 수량의 배분과 관련해서는 수량보다는 시간에 할당해야 한다는 조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류지역이나 하류지역에 일정한 양을 할당하는 경우 이는 상류나 하류 지역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물을 부피로 나누기보다는 시간 단위로 나누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3일은 상류가 취수하고 4일은 하류가 취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할당을 하는 것이 갈수기 수량 배분을 둘러싼 부차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더 자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A. T. Wolf, “Indigenous Approaches to Water Conflict Negotiations and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Waters,” *International Negotiation: A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e* (December 2000); 최동진·김광목, “국제 공유하천을 둘러싼 분쟁,” 『상하수도학회지』, 16권 1호 (2002), pp. 14~15 참조.

2) 접경지역 공동 방역·방제 협의회

- 이미 남북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말라리아 공동방역, 산림병충해 공동 방제 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함.
- 공동 방역·방제 문제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 북한 역시 관심을 보이는 사업 영역인 만큼 공동 협의의 경험 축적을 통해 다른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함.

(다) 사업의 연계 및 확장

1) 사례: 측정 단위 및 용어 표준화 사업

- 남북간 공유하천 관리(혹은 공동 방역·방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장기적 협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측정 단위 및 용어 표준화 사업 등을 병행할 수 있음.
- 이처럼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 자체적으로 남북 전문용어 비교 사전을 만들고, 남북한 협의를 위한 ‘안’을 작성하는 작업 등이 선행되어야 함. 또한 이러한 사업에 북한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설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사례: 산림 녹화 및 생태·환경 분야 협력사업

- 아직까지 북한은 생태 및 환경 분야의 협력 사업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음.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3년 북한은 UNEP 등과 공동으로 비무장지대에 대한 환경보고서를 작성하였음. 동 보고서에서 UNEP와 북한이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업들은 다음 [표 VIII-1]과 같음.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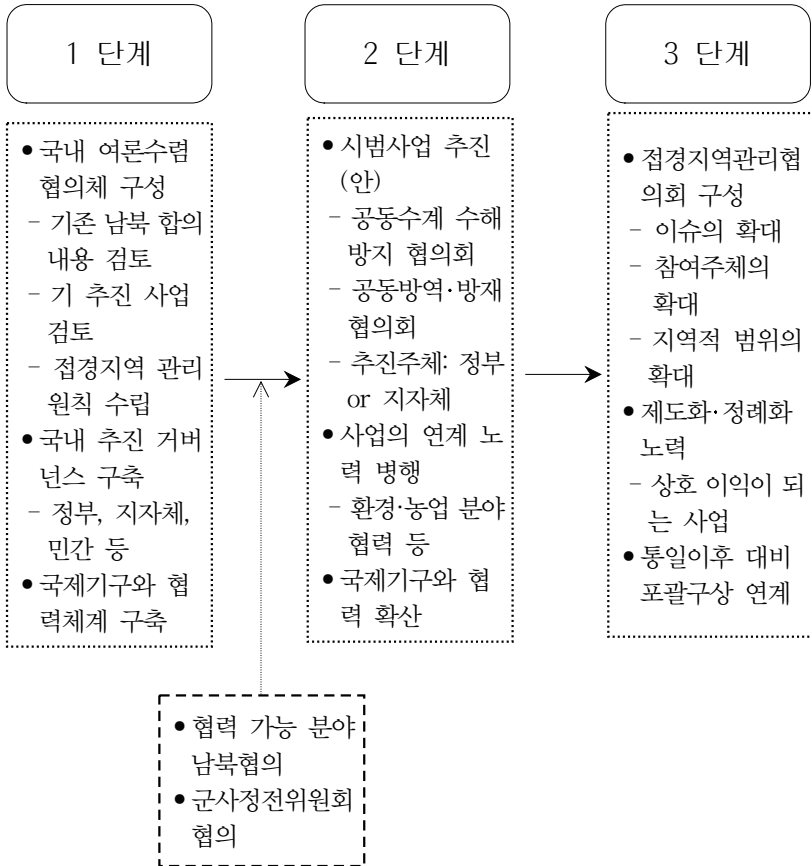
[표 VIII-1] UNEP와 북한이 합의한 우선협력사업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산림 (3)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한 전략 수립	• 기간 및 예산: 2년, US\$ 385,000 • 상태평가, 산림관리·복원 전략수립
	땃갈지역 관리 시범사업	• 기간 및 예산: 2년, US\$ 1,250,000 • 땃갈지역 조사, 산림관리교육
	산림관리정보센터 설립	• 기간 및 예산: 2년, US\$ 288,000 • 전문가 교육, 관련 장비 구입
수질 (4)	대동강 통합수질오염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기간 및 예산: 2년, US\$ 760,980 • 관련 장비 및 설비 도입
	물 보전 워크숍	• 기간 및 예산: 2주, US\$ 4,000
	도시 폐수 및 순환 처리시스템 시범사업	• 기간 및 예산: 3년, US\$ 2,500,000 • 하수처리 현대화, 고도처리 도입
	압록강 오염방지사업	• 기간 및 예산: 2년, US\$ 915,000 • APMP (Alkaline peroxide mechanical pulp) 도입
대기 (3)	통합 대기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	• 기간 및 예산: 2년, US\$ 720,000 • 평양시내 20개 모니터링 지점 설치
	평양 지열발전내 집진설비 도입사업	• 기간 및 예산: 2년, US\$ 2,270,000 • 전기집진기 설치, 훈련
	주요도시 대기보전 워크숍	• 기간 및 예산: 2주, US\$ 5,000
토지 (2)	토양오염 조사, 모니터링을 위한 능력배양사업	• 기간 및 예산: 2년, US\$ 520,000 • 토양분석 전문가 훈련
	토양보전워크숍	• 기간 및 예산: 3주, US\$ 6,000
생물다양성 (4)	생물다양성 자원 목록작성 및 평가 사업	• 기간 및 예산: 4년, US\$ 300,000 • 생물자원목록 갱신, 경제성 평가
	생물다양성 조사 및 관리 사업	• 기간 및 예산: 2년, US\$ 570,000 • 모니터링체계 구축, 법·제도 분석
	산림복원사업	• 기간 및 예산: 3년, US\$ 765,000 • 조림/식림 및 묘목 확대
	해양보전지역 관리증진사업	• 기간 및 예산: 2년, US\$ 364,000 • 기반시설 설치, 생물다양성 조사

자료: UNEP, DPR Korea: State of the Environment 2003.

-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들 사업들은 연구, 교육·훈련, 장비 구입, 시설 설치 등 다양한 16개 사업을 망라하고 있음. 이는 국제기구와 북한이 협의한 사안이며, 북한의 환경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남북 환경분야 협력사업 선정시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특히 환경분야에서는 북한이 남북 당국간 사업 추진보다는 국제기구나 민간, 혹은 지자체와의 사업 추진을 더 선호한다는 점에서 국제기구와 민간을 이용한 접근이 용이할 수도 있음.
 - 즉,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다양한 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부터 시작하여 참여 주체를 확대하거나, 주체간 연계를 통해 사업의 시너지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남북한 생태·환경분야 협력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사업 추진시 고려해야 할 점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북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는 점임. 이 문제는 남북 공유하천 협의체가 구성 된다면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북측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과 연계시켜 추진해야 할 것임.

[표 VIII-2] 접경지역관리협의회 추진구도



[표 VIII-3] 남북한 접경지역 관리협의체 구성방안 로드맵

		2010	2011	2011	2012	2012	2013	2013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남북관계 현상 지속		남북관계 대화 개시		남북관계 활성화		
국내 차원	국내 협의체 구성	○						
	추진체계 정비		○	○	○			
	공감대 확산		○	○	○	○	○	
남북 차원	협상테이블 유도			○				
	시범사업 추진				○	○		
	협의회 구성						○	
	협의회 제도화							○
국제 차원	유엔사/ 군정위협조		○	○	○			
	국제기구 협력체계 구축		○	○	○	○	○	○

마. 기대효과

(1)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 추진 가능

- 접경지역에서의 협력사업은 사업 추진 주체 중 일방의 이익이 아닌 관련 주체 모두의 이익이 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예컨대 공동수계 관련 협력은 하류 지역에 거주하는 남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측 지역에 방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수해방지 시설을 지원한다면 이는 상호 이익이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되는 사업이 될 것임.

- 말라리아 등 질병 및 병충해의 공동 방역·방제 사업 역시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2) 남북관계의 제도화에 기여

- 남북한이 새로운 제도나 시스템을 공동으로 만들고 협의해 나아가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음.
- 그간의 남북교류가 여러 주체들에 의해 산발적이고 단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구체적인 제도를 통해 추진될 수 있을 것임.

(3) 남북 합의에 의한 장기적 계획 추진 가능

- 북한이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제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간 합의에 의해 마련된 장기적인 계획에 기반하여 모든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임.

(4) 북한 체제의 정상화에 기여

- 국제기구 혹은 제3국도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일방의 요구나 필요가 아닌 글로벌 스탠다드에 기반한 사업 추진 가능

-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 자체가 북한 체제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임.

(5)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접경지역의 종합적 관리에 기여

- 통일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우선 우리사회 내부적으로 접경지역의 관리에 대한 충의를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나아가 북측과의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통일 이후 접경지역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초석이 될 것임.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2. 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

가. 제안배경

- 공유하천의 이용은 국제관습법의 형태로 존재하고는 있으나 이는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으며 공유하천의 이용도 주로 공유하천의 비행행적 이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 특히 상류국이 공유하천을 이용함에 있어 하류국에 심각한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하류국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를 허가하거나 취하기 전에 하류국에 적시에 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공유하천을 둘러싼 국제분쟁과 양자·다자조약을 통해 국제관습법으로 발전되어 왔음.³⁰
 - 우리의 경우에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국제관습에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고,³¹ 북한도 국제관습을 국제법의 연원으로 인정하고 있음.³² 그러나 국제관습은 불문(不文)의 형태

³⁰ 박기갑, “북한의 행위와 국제법: 대한민국 국적인 피해사례와 황강댐 무단방류사건을 중심으로,” 『안암법학』, 통권 제31호 (2010), p. 374; 정민정·김상우, 『북한 황강댐 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36호, 2009.9.22), p. 9. 국제판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박기갑, “국제판례를 통하여 본 국제하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연구,” 『한림법학 FORUM』, 제2권 (1992), pp. 41~72; 이상면, “국제하천에 있어서 댐건설과 유로변경에 관한 국제관습법,” 『법학』 (서울대), 제27권 제4호(1986), pp. 77~91.

³¹ 헌법 제6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란 국제관습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³² 북한 국제법사전은 국제법의 연원(북한은 원천이라고 함)에는 국제조약과 국제관습규범이 속한다고 한다.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국제법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2), p. 69.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김찬규·이규창, 『북한국제법연구』 (과주: 한국학술정보(주), 2009), pp. 80~82 참조.

여서 구체적인 사건의 경우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북한은 국제법에 대한 태도에 있어 자주권(주권)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국가가 북한의 국내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국제법을 정책실현의 도구로 간주하고 있어³³ 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관습법을 남북한 간에 직접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음.

- 한편, 유엔 총회는 뉴욕에서 1977년 5월 21일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의 법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Law of Non-Navigational Uses of International Watercourses, 이하 “뉴욕협약”)을 채택하였지만 2010년 6월 24일 현재 뉴욕협약은 발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모두 뉴욕협약의 당사국이 아니어서 뉴욕협약을 남북한의 경우에 적용할 수 없음.
 - 뉴욕협약은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 제1장 협약의 적용범위, 주요 개념, ② 제2장 형평하고 합리적인 사용, 중대한 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의무, 자료와 정보의 정기교환을 포함한 협력의 의무, ③ 제3장 유역국 일방이 의도하는 수로이용, 개발 계획 및 기존의 관리체제변경 시 다른 유역국에의 사전 통고 및 협의절차, ④ 제4장 생태계보존 및 오염 방지 등 환경보호 내용, ⑤ 제5장 자연재해나 인간행위로 말미암아 국제수로의 생태계에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사태에 대비하여 유역국이 취해야 할 조치, ⑥ 제6장 유역국이 전시나 국내 비상사태 시에 자신의 영토 내에 속하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33- 김찬규·이규창, 위의 책, pp. 33~39, pp. 58~67.

는 국제수로에 취할 수 있는 조치와 분쟁해결절차, ⑦ 제7장 종결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위와 같은 뉴욕협약의 내용은 국제관습법을 성문법전화(codification)한 것들과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progressiv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으로 평가되는 것들이 병존하고 있어 그 자체를 국제관습법이라고 볼 수 없음. 다시 말해 뉴욕협약 2장의 내용은 이미 확립된 국제관습법을 반영하고 있는 반면 3장에 규정된 제도화된 협의절차라든가 제4장의 환경보호 관련 내용들은 국제관습법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³⁴

○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이하 ILA)도 1966년 「국제하천수사용에 관한 헬싱키규칙」(Helsinki Rules on the Uses of the Waters of International Rivers)을 채택하였으나 동 규칙은 민간단체에서 채택된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음.³⁵

○ 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하여 남북은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를 체결한 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임진강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이미 조사 기간도 종료하였음.

34- 유병화·박노형·박기갑, 『국제법 II』 (서울: 법문사, 2000), pp. 186~187; 정민정·김상욱, 『북한 황강댐 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pp. 15~17; 한성원, “1997년 국제하천의 비항행적 이용의 법에 관한 유엔협약의 분석과 평가,”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p. 45~67.

35- 헬싱키규칙과 뉴욕협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소병천, “국제하천의 비항행적 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소고,” 『국제법학회논총』, 제54권 제3호 (2009. 12), pp. 217~240 참조.

- 남과 북은 2004년 3월 5일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임진강 유역의 수해방지를 위한 쌍방지역의 현지 조사를 2004년 4월부터 단독조사와 공동조사를 구분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단독조사는 2004년 4월부터 3개월간, 공동조사는 단독조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음 (합의서 제1조).
- 임진강 무단방류 사건 이후인 2009년 10월 14일에는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을 개최하여 후속회담 일정을 협의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아직까지 후속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2009년 11월 발생한 대청해전과 2009년 12월부터 2010년 2월 사이에 발생한 북한의 해상사격구역선포와 해안포사격 실시,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현재 남북관계는 경색되어 있음.
-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남북공유하천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복원 이후 이를 명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함.
 - 남북한 사이에 공유하천 평화적 이용에 관한 합의서 체결이 필요하며, 이를 우리 내부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관련법의 정비가 요구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나. 주요내용

(1) 남북 공유하천 평화적 이용에 관한 합의서 체결

(가) 합의서 형식

- 가칭 『남북 공유하천 평화적 이용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는 경우 그 방식은 북한강과 임진강을 아우르는 하나의 합의서를 체결하는 방안과 북한강과 임진강을 서로 별개로 하는 합의서(가칭 『북한강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합의서』와 『임진강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합의서』)를 각각 체결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또한 (남북기본합의서가 모체가 되는 기본합의서와 3개의 분야별 부속합의서를 두고 있는 것처럼)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가칭 『남북 공유하천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각각의 협력분야별로 부속합의서(예: 수자원 공동활용 및 재해방지 부속합의서, 자연생태계보전 및 공동관리 부속합의서, 문화·역사자원 발굴 및 복원 부속합의서 등)를 체결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음.
 - 남북공유하천(임진강 및 북한강)을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① 수자원 공동 활용 및 재해 방지, ② 자연생태계보전 및 공동관리, ③ 주요 산업협력 및 교통망 연계, ④ 문화·역사자원의 발굴 및 복원 등이 제시되고 있음.³⁶
 - 남북한 간의 공유하천 이용에 있어 최우선적인 현안이 무단방

³⁶- 자세한 내용은 손기웅 외, 『접경지역의 평화시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 제안 검토』, KINU정책연구시리즈 09-02(II)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p. 143~178.

류 재발방지임을 감안하여 우선 기본합의서와 수자원 공동 활용 및 재해 방지 분야의 부속합의서를 먼저 체결하고 이어 다른 분야의 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추가적으로 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어떤 형식을 취하든 현재 비무장지대는 정전체제 하에 있기 때문에 비무장지대를 흐르는 남북공유하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사이의 공유하천 평화적 이용에 관한 합의서 체결에 유엔사를 참여시키는 3자협정 체결을 추진하거나 최소한 유엔사의 이해와 협력을 구해야 함.
 - 왜냐하면, 민사행정(civil administration)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군인이나 사민(私民)은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수 없으며(정전협정 제1조 제9항),
 -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민사행정은 유엔군 사령관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임(정전협정 제1조 제10항).

(나) 합의서 내용

- 합의서의 내용은 국제공유하천 이용에 관한 국제관습법을 준용하여 명시하되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북한강·임진강의 교류협력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이를 관장할 수 있는 공동기구를 설치함.
 - 실제적인 내용으로는 ① 남북한은 공유하천을 형평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것, ② 남북한은 공유하천의 이용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지 않을 것 등을 규정하고, 향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후 남북교류협력의 진전에 따라 ③ 자연생태계보전 및 공동관리, ④ 주요 산업협력 및 교통망 연계, ⑤ 문화·역사자원의 발굴 및 복원 등을 규정함.

- 절차적인 규정으로는 최소한 ① 남북한은 공유하천을 이용함에 있어 상호 협력할 것, ② 방류와 관련하여 계획하고 있는 조치를 사전에 통보할 것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남북한 공동기구(예컨대 남북공유하천 이용에 관한 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과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는 경우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실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에 대하여 규정함.

(2) 국내법의 정비

-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는 경우 이를 국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과 충돌하는 내용의 관련법을 개정해야 함.
- 현재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개별 법률이 산별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만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조직이나 기구 등의 법·제도적인 장치도 전무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³⁷⁾

³⁷⁾ 김영봉·이승복·김은정,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한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연구』(안양: 국토연구원, 2009), p. 40.

- 남북관계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비무장지대에서 남북한이 함께 법·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먼저 남측 비무장지대의 이용을 위한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³⁸
 - 첫째, 현행 법률인 접경지역지원법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음. 현행 접경지역지원법은 자연 생태 자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자연환경의 보전·관리와 환경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도로·철도 등 교통 시설과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제4조 제2항) 민간인통제선 이남 시·군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접경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무장지대를 제외하고 있음(제2조 제1호). 이 법률이 비무장지대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통일 후 비무장지대의 발전과 남북상생의 전진기 지로서의 미래상을 염두에 두어야 함.³⁹
 - 둘째, 접경지역지원법과는 별개로 가칭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고려할 수 있음. 현재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과 관련하여 국토기본법, 접경지역지원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림기본법 등 여러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는 경우 동 법률은 법률 명칭에서 보듯이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져야 함. 이 법률은 비무장지대

³⁸- 위의 책, p. 111.

³⁹- 위의 책, p. 111.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의 평화적 이용을 규율하게 되므로 상징적인 의미가 결코 적지 않을 것임.

- 셋째, 가칭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은 많은 부문에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을 각각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법률에서 함께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기 때문임. 동시에 법률 명칭에 비무장지대를 포함시킴으로써 비무장지대가 접경지역과는 다른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도 있음.

(3) 북한법의 정비

- 필요한 경우 공유하천 이용과 관련한 북한의 법령 정비도 유도 및 지원하여 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남북한 간의 합의 내용이 북측 비무장지대 구역에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함.

다. 추진방안

(1) 국내적 차원

(가)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을 실무적으로 담당할 TF 구성

- 구성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비무장지대의 이용과 관련한 유관부서의 실·국장급이 참여
-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산업협력 및 교통망 연계, 문화·역사자원의 발굴 및 복원 등으로 비무장지대에서의 교류협력 범위

가 확대될 경우 산업자원부, 문화재청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각 부서의 대표도 실·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

(나) 교류협력대상 하천과 협력 분야 선정

- 그에 따라 합의서 초안과 특별법 제정 및 관련법 개정 준비에 착수

(다)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확산 노력

-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합의서 체결 시 국민들의 공감 및 지지가 중요함.
- 특히 많은 재정이 소요되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북 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동의를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중요함.⁴⁰

(2) 남북관계 차원

(가)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합의서 체결을 위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

- 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이 북한의 입장에서도 필요하며 북한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설득

⁴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제3항: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나) 북한에 대한 지원사업 선정

- 북한이 납득할 수 있는 지원(예: 전력공급)을 하는 경우 북한도 우리의 제안에 호응할 수 있을 것임.

(3) 국제적 차원

(가)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를 관리하고 있는 유엔사, 특히 실질적으로 유엔사를 지휘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이해와 협조 유도

-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이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상당한 기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득

라. 로드맵

(1) 2010년 하반기

- 남북관계의 복원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남북관계 구축
- 남북기본합의서 존중의 재천명⁴¹

⁴¹ 북한은 2009년 1월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남북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 태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2010년 5월 21일에는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측의 진상조사결과에 반발하며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천안함 사태를 전쟁국면으로 간주하고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하며 남북관계 전면폐쇄, 남북불가침 합의 전면파기, 남북협력사업 전면철폐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2010년 5월 27일에는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중대통고문을 통해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해 북한 군대가 이행하게 되어 있는 군사적 보장 조치 전면 철취를 포함해 총 7개 항의 중대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때 남북한 간의 합의에 대한 일방적인 무효선언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와는 별도로 남북관계가 복원되는 경우 정치적인 차원에서 남과 북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존중한다

○ TF 구성

(2) 2011년

- 공유하천 평화적 이용의 대상 및 분야 선정
- 대북 지원 사업 선정
- 공유하천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 유엔사 및 미국의 이해와 협조 유도

(3) 2012년

- 공유하천 평화적 이용에 관한 합의서 초안 마련
- 공유하천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노력 지속
- 북한과의 협상을 통한 대북 지원 사업 확정
- 유엔사 및 미국의 이해와 협조 유도 지속

(4) 2013년

- 공유하천 평화적 이용에 관한 남북합의서 체결
 - 남북합의서의 국회통과
 - 남북합의서 국내 이행을 위한 특별법(안) 및 관련법 개정(안) 마련

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규창, “북한의 해상사격구역 선포와 해안포사격,” 『국방연구』, 제53권 제1호 (2010.4), pp. 150~152 참조.

(5) 2014년

- 남북합의서 국내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관련법 개정
- 관련 북한법령 정비 유도 및 지원

[표 VIII-4] 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로드맵

		2010	2011	2011	2012	2012	2013	2013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남북관계 현상 지속		남북관계 대화 개시		남북관계 활성화		
국내 차원	TF 구성	○						
	대상 및 분야 선정		○					
	합의서 초안 준비			○	○			
	지원사업 선정		○	○				
	공감대 확산		○	○	○	○	○	
	합의서 국회통과							○
	특별법 제정, 공포							○
남북 차원	협상테이블 유도				○			
	지원사업 확정					○		
	합의서 체결						○	
	관련 북한법령 정비 유도 및 지원							○
국제 차원	유엔사 및 미국의 이해와 협조 유도		○	○	○	○		

마. 기대효과

- 남북한 간의 공유하천 평화적 이용으로 남북한 간의 군사충돌을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 공유하천을 통한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관계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2009년 9월 6일 새벽 북한은 황강댐을 무단방류하여 남한 주민 6명의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를 입게 하였는데 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은 향후 북한측의 재발 가능한 임진강 및 북한강 수계 무단방류를 예방할 수 있어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
 - 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은 공유하천을 통해 남북이 하나될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며 남북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상생·공영 대북정책과도 일맥상통함.
 - 남북관계발전법 제6조는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과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간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을 구현해 나감에 있어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음.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의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을 제안하였음.⁴²
 - 첫째, 남북한 간의 평화공동체를 형성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

⁴²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종철,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의 특징과 이행구도,” 통일연구원,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통일연구원 광복절 경축사 관련 학술 회의, 2010.9.1), pp. 47~61 참조.

음. 비무장지대는 한반도 분단과 군사대치를 상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유하천을 통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큼.

- 둘째, 공유하천을 통한 남북한 간의 산업협력 및 교통망 연계 등의 사업은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이를 통해 한반도 경제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음.
- 셋째, 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 특히 공유하천 유역에서의 자연생태계보전 및 공동관리, 문화·역사 자원의 발굴 및 복원 등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민족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음.
- 결국 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남북한 이익공동체를 창설할 수 있음.⁴³

○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를 통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물 부족 문제에 능동적·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 전 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로 우리나라도 50년 후인 2060년에는 연간 최대 약 33억 톤의 물 부족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소양강의 총저수량인 29억 톤을 초과하는 것임.⁴⁴
- 황강댐은 댐 물을 예성강으로 돌릴 예정이어서 우리측 하류 지역인 연천, 파주, 경기 서북부 지역에 물 부족 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원산청년발전소용 댐으로 인하여 고미탄천에서

43- 정민정·김상욱, 『북한 황강댐 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p. 26.

44- “50년後 연간 33억톤의 물이 모자란다,” 『연합뉴스』, 2010년 6월 28일, <www.yonhapnews.co.kr> (검색일: 2010.6.28).

임진강으로 유입되는 수량 중 일부가 차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⁴⁵

- 최근 물 문제는 21세기 국제분쟁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으며, 물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은 국
가안보의 기본 전제가 되고 있음.⁴⁶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45- 김덕주, 『국제공유하천의 분쟁 및 해결 사례』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8), pp. 50~51.

46- 신연재, “물 문제와 국제하천분쟁,” 『국제정치연구』, 제9집 1호 (2006), pp. 170~171, 197.

3. 유엔환경기구 유치를 위한 법·제도 정비

가. 제안배경

(1) 유엔환경기구 유치 구상의 의의

- 기존 제안된 비무장지대 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 구상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님.
 - 사실상 세계 제1의 중무장지역인 비무장지대에 평화의 구현을 상징하는 유엔기구를 유치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유지는 물론,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하려는 남북의 의지를 과시할 수 있음.
 - 아시아 지역 최초로 유엔기구를 한반도에 유치함으로써 남북한의 정치·외교적 위상을 고양할 수 있음.
 - 21세기의 화두인 환경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려는 남북한의 의지를 과시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환경보호의 중심국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음.
 - 유엔기구의 비무장지대 내 존재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시 예상되는 유엔군사령부 해체의 경우에도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유지를 담보할 수 있음.
 - 분단기간 동안에는 남북한의 평화공존·공동번영에 기여하는 동시에, 북한의 평화적인 체제변화를 촉진할 수 있음.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비무장지대 평화적 활용의 계기를 마련하고 경제번영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음.
 - 남북환경공동체와 남북경제공동체의 동시 형성에 기여하여 통일을 준비할 수 있음.

- 통일 이후에는 통일한국의 세계평화유지와 환경보호 활동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음.

(2) 유엔환경기구 유치 구상의 실현가능성

- 기존 제안된 비무장지대 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 구상은 남북한의 정치·군사·경제·환경·문화적 국가이익에 부합하여 남북한 쌍방으로부터 호응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됨.

(가) 남북한의 호응

1) 정치적 측면

- 세계 제1의 중무장지역에 평화를 상징하는 유엔의 기구를 유치함으로써 한반도의 공존공영,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함.
 - 북한이 핵실험에 따른 유엔안보리의 결의에는 반발하고 있으나, 대북지원을 얻을 수 있는 기타 유엔기구와는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고려함.
- “21세기의 화두”인 환경문제에 남북한이 선도적으로 대처하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함.

2) 군사적 측면

- 사실상 세계 제1의 중무장지역에 유엔기구를 유치함으로써 현재의 남북한 군사력의 이동·변동 없이 항구적인 긴장완화, 전쟁억제, 평화유지의 효과를 얻음.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 향후 주한미군의 감축 그리고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이후 예견될 수 있는 유엔사령부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비무장지대 내 유엔기구의 존재는 한반도 평화를 국제적으로 담보하는 중심축으로 기능함.

3) 경제적 측면

- 비무장지대에 평화를 상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지할 유엔환경기구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한반도의 공존공영에 대한 남북한의 의지를 보여주어 남북한의 대외적 경제신인도와 안정성을 크게 증대시킬 것임.
- 국제기구로서 유엔환경기구의 소재지는 남북간의 육로, 공로 등 교통망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고, 이 교통로는 유엔기구란 국제적 기구의 성격으로 인해 항구적 통행이 보장되어,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 유라시아 대륙에 연결되는 안정성 있는 교통망의 연결이 구축됨으로써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는 물론, 한반도가 동북아 경제거점으로 상승될 수 있는 효과도 얻을 것임.
- 유엔환경기구의 소재지와 남북한의 관광지가 연계되어 생태관광이 실시될 경우 경제적 실리는 더욱 커짐.
- 결국 비무장지대 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는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비무장지대 평화적 활용의 기폭제가 됨.

4) 환경적 측면

- 생태적 보고인 비무장지대에 유엔환경기구가 들어서고 모든 활동이 환경친화적으로 전개됨으로써 비무장지대 내 환경보호·개선은 물론, 한반도 나아가 지역의 환경보호·개선에 파급적인 영향을 미침.
- 유엔환경기구의 설치와 연계하여 평화생태공원의 조성, 생태계 보전지역의 지정, 환경캠프의 설치, 각종 국내·국제환경행사의 진행 등이 이루어질 경우 비무장지대는 세계적으로 환경보호와 평화를 상징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함.

5) 문화적 측면

- 유엔환경기구의 모든 활동이 문화유물·유적의 보존·관리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유엔환경기구의 소재지는 물론 비무장지대 전역의 문화유물·유적의 보존·관리에 기여함.
- 유엔환경기구의 소재지가 다양한 국내·국제문화활동의 공간으로 활용됨.

(나) 국제사회의 호응

- 비무장지대 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는 다음의 측면에서 주변국 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음.
- 중무장지역인 비무장지대에 평화를 구현하려는 유엔기구가 유치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됨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변영에 항구적으로 기여함.

- 특히 주변국의 경우 현 정치·군사적 상황의 변화 없이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담보함.
-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이후 예상되는 유엔사령부의 해체 시에도 한반도 평화를 담보함.

○ 유엔기구의 유치로 한반도에서 대륙으로 연결되는 교통망이 확보되어 동북아 경제교류의 활성화와 역내 경제산업체제의 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임.

- 향후 추진될 동북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비무장지대를 지나 남북한을 관통하게 되고, 그 안정적 공급에 유엔기구의 권능이 기여하여 국제적으로 보장될 경우 역내 경제협력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임.

○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역내 및 세계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센터의 역할을 함.

- 서해는 이미 유엔이 지정한 오염해역이며, 현재 황사 등 대기 오염은 심각한 수준임.
- 북한의 경제가 회생하고 중국의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어 석탄의 소비가 급증할 경우 동북아지역의 대기오염은 국가안보적 차원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평화와 환경을 위한 지역적·세계적 문화공간이 조성됨.

(3) 유엔환경기구를 실질적으로 유치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법·제도적 준비의 필요성

- 현재 비무장지대는 정전체제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므로 비무장지대 내에 유엔환경기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문제가 제기됨.
- 또한 비무장지대에 유엔환경기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유엔환경기구 설립현장의 채택 내지는 개정과 소재지 협정의 제정 또는 개정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됨.
- 아울러 비무장지대는 헌법 제3조의 해석상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이기 때문에⁴⁷ 비무장지대 내에 유엔환경기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문제가 제기됨.

나. 주요내용

-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비무장지대 내에 유엔환경기구를 유치하

⁴⁷ 다만 비무장지대는 남한 내의 다른 일반적인 영토와는 달리 정전협정에 의해 우리의 관할권 행사가 제한을 받는다. 여기서 비무장지대의 법적 지위 내지는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비무장지대가 특정국가에 소속된 국가영역인지 아니면 어느 국가의 관할권도 미치지 않는 국제공역인지, 또는 특정국가의 관할권을 벗어나 국제적 관리대상인 자유시(free city)에 유사한 것인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비무장지대는 무주지라고 할 수 없고 그렇다고 공해(公海)나 심해저, 우주와 같은 국제공역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비무장지대는 헌법상 우리 영토의 일부이지만 統治(imperium)는 정전협정에 의해 군사정전위원회가 하고, 領有(dominium)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장희, “세계화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적 기본문제,” 『사회과학논총』 (명지대), 제10집 (1995.12) pp. 218~221, 특히 p. 221.

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① 정전체제 하에 있는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기 위한 남북한 간의 합의
- ② 비무장지대 내 유엔환경기구 유치를 추진할 수 있는 남북한 간의 공동기구 구성
- ③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유엔환경기구를 유치하기 위한 법·제도의적인 대응
- ④ 유엔환경기구 소재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법적 대응
- ⑤ 유엔환경기구 유치 및 유엔환경기구 소재지 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법의 정비 등이 필요함.

(1)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기 위한 남북 합의

-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9년 9월 11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는 통일국가로 가는 중간단계로서 남북연합단계가 설정되어 있는데 비무장지대 안에 평화구역을 만들어 공동사무처를 비롯한 남북연합의 기구와 시설을 평화구역에 설치하고, 평화구역은 통일평화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구상을 제의⁴⁸
 - 1994년 8월 15일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

⁴⁸- 관련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공동사무처를 비롯한 남북연합의 기구와 시설을 비무장지대 안에 평화구역을 만들어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구역은 점차 ‘통일평화시’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비무장지대에 평화구역 및 평화시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안이 제시됨.⁴⁹

① 정전협정을 그대로 둔 채 평화구역 설정 및 평화시 건설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는 방안

②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평화협정 내에 평화구역 설정 및 평화시 건설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방안

③ 남북연합헌장(또는 민족공동체헌장)을 체결하여 이 헌장 안에 평화구역 설정 및 평화시 건설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방안

○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상정하고 있는 남북연합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화해·협력단계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평화협정체결이 마무리되어야 함.⁵⁰

- 이렇게 본다면 정전협정의 존속을 전제로 별도의 합의를 체결하는 방안 ①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는 정전협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반면 남북연합헌장은 주로 남한과 북한의 문제를 규율하게 될 것이므로 평화지대화 문제는 방안 ②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9. 김명기, “DMZ 평화화의 국제법적 구상,” 김인영·김재한 편, 『DMZ-발전적 이용과 해체』 (서울: 도서출판 소화, 1999), pp. 92~93 참조. 동 교수는 3가지 방안 가운데 방안 ③을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고 있다.

50. 같은 입장에서 조성렬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완료되면 남북관계는 화해·협력 단계를 끝내고 사실상 남북연합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고 보고 있다. 조성렬, “화해·협력 단계에서의 정치·군사분야 제도화 추진: 평가와 과제,” 『독일통일 20년과 남북통합의 과제』 (북한연구학회 세미나 자료집, 2009.11.20), pp. 70~71.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 이 경우 우리가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가 되어야 함은 물론임.⁵¹

(2) 유엔기구 유치 남북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제도적인 대응

- 선행 연구는 유엔환경기구의 소재지 및 접근로 개발을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유엔기구유치남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그리고 그 산하에 환경위원회를 구성하여 접경지역 개발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조사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⁵²
- 유엔기구유치남북위원회를 구성 위한 가칭 ‘유엔기구유치를 위한 남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체결이 필요함.
 - 환경위원회는 위 합의서에 포함시켜 규정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부속합의서를 체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위 합의서를 체결하는 경우 법적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라는 점을 명시하며 남북한 국회비준동의를 비롯한 구체적인 발효절차를 규정해야 함.
 - 북한에서도 국내비준절차를 거치도록 하는데 이 경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아닌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비준을 받게

⁵¹ 정전협정 당사자와 평화협정 당사자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학계의 주류적인 입장은 우리가 정전협정의 당사자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설령 북한의 주장대로 우리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김봉현,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의 유엔사 해체 문제,” 오윤경 외 외교통상부 직원 공저, 『21세기 현대 국제법질서』 (서울: 박영사, 2001), p. 704.

⁵² 손기웅 외, 『접경지역의 평화시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준 제안 검토』, pp. 262~265.

- 하여 위 합의서가 중요조약임을 인정받게 해야 함.⁵³
- 비무장지대 내 유엔환경기구 유치는 북한의 입장에서도 국제 사회에 북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임.

(3) 유엔환경기구 유치를 위한 법·제도적인 대응

- 유엔환경기구 유치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⁵⁴
 - ① 기존의 환경관련 유엔기구 중 상설사무소의 소재지를 비무장지대에 이전하는 방안
 - ② 기존 환경관련 유엔기구들의 기능 가운데 일부를 독립하여 하나 혹은 복수의 상설사무소를 비무장지대에 유치하는 방안
 - ③ 새로운 유엔환경기구를 비무장지대에 설립하는 방안
 - ④ 유엔 환경협약들 가운데 하나 혹은 복수의 상설사무소를 비무장지대에 유치하는 방안
 - ⑤ 환경관련 유엔기구의 비상설·상설 회의소를 비무장지대에 유치하는 방안
- 방안 ⑤는 남북한, 유엔사, 환경관련 유엔기구 간의(평화협정 체결로 유엔사가 해체되는 경우에는 남북한과 환경관련 유엔기구 간의)⁵⁵ MOU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53-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하며(2009년 북한헌법 제103조 제4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일반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2009년 북한헌법 제116조 제14호).

54- 손기웅 외,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 제안 검토』, pp. 257~258.

55-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경우 비무장지대의 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제기될 문제 가운데 하나가 유엔사의 해체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전협정이 종료

- 방안 ①, ② 및 ④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해 유엔환경기구의 설립현장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며, 당해 유엔환경기구와 남북한, 유엔사 간에 유엔환경기구 소재지협정(Headquarter Agreement) 체결이 필요함.
 - 소재지협정이 우리나라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소재지협정의 이행을 위해 국내법의 제정 또는 개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헌법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 함.⁵⁶

- 방안 ③은 법적으로 가장 어렵고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새로운 유엔환경기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련국가들 간의 오랜 기간의 합의과정과 설립현장을 채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당해 환경기구의 사무국을 비무장지대에 유치하는 내용의 유엔환경기구와 남북한, 유엔사 간에 소재지협정 체결이 필요함.

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유엔사 자동 해체 여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다. 자동해체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84호로 설치된 유엔사의 임무(mandate)는 “한국에서의 무력적 공격을 격퇴하고 그 지역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었고, 평화협정 체결로 “그 지역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임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 반대의 입장에서는 1950년 10월 7일 유엔총회 결의 376(V)에서 “전 한국을 통한 통일·독립·민주 정부의 수립 시까지 주한유엔군이 한국에 주둔 한다”고 함으로써 유엔사의 임무가 통일 시까지 확대되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김봉현,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의 유엔사 해체 문제,” p. 712. 이 글에서는 유엔사가 존속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글을 전개함을 밝힌다. 물론 평화협정 하에서 유엔사가 존속하는 경우 임무와 기능이 달라져야 한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시 유엔사의 자동해체 문제에 따르는 제반 문제는 이 글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는다.

⁵⁶ 헌법 제60조 제1항: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약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따라서 먼저 방안 ⑤를 추진한 후 방안 ①, ② 및 ④,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안 ③을 추진하는 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4) 유엔환경기구 소재지 관리방안에 대한 법적 대응

- 선행 연구는 유엔환경기구 소재지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① 남북한에 의한 방안, ② 유엔평화유지군에 의한 방안, ③ 제3국에 의한 방안 및 ④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의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⁵⁷
- 방안 ①의 경우 가칭 ‘유엔기구유치를 위한 남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유엔환경기구 소재지 관리방안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또는 유엔환경기구 소재지 관리방안만을 별도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방안 ②의 경우 먼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임. 또한 한국전쟁 이후 일련의 유엔 결의를 통해 유엔사가 한국에서의 평화유지를 담당하고 있는데 환경기구 소재지 관리를 위한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을 위해 새로운 유엔 결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찬반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됨.
- 방안 ③의 경우에는 유엔환경기구와 제3국간의 조약 체결이 필

⁵⁷- 손기웅 외, 『접경지역의 평화시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 제안 검토』, pp. 265~266.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요하며, 방안 ④의 경우에는 유엔환경기구와 국제적십자위원회와의 조약 체결이 필요함.

(5) 국내법의 정비

- 비무장지대에 국제환경기구를 유치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거나 소재지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것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
 - 당해 유엔환경기구의 운영에 따르는 제반 경비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임.

- 국제환경기구 소속 공무원(이른바 국제공무원)들에게 면제 및 특권(immunities and privileges)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도 필요함.
 - 면제 및 특권의 범위는 국제관습법을 따르게 되는데 국제기구 소속 공무원이 향유하는 면제 및 특권의 범위는 그의 지위에 따라 차이가 남.
 - 일반적으로 국제기구의 고위직 공무원은 완전한 외교면제를 향유하는 반면 그 밖의 하위직 공무원은 공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하역서만 면제 및 특권을 향유⁵⁸

⁵⁸- D. W. Bowett, *The Law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4th ed. (London: Stevens & Sons: 1982) In. 355. 예를 들어 194s,2,13 채택된 「유엔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United Nations)은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그들의 가족과 그 밖의 하위직 공무원, 유엔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등 세 부류로 나누어 특권 및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다. 추진방안⁵⁹

(1) 국내적 차원

(가) (가칭) 『유엔기구유치기획단』 구성

-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환경부를 포함하는 관련 정부부처 및 전문가로 비공식적 차원에서 구성

(나) (가칭) 『유엔기구유치위원회』 구성

- 유엔환경기구 유치사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내려질 경우 유엔환경기구 유치 추진을 전담할 기구로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공식 출범시킴.

(다) 유엔환경기구 유치에 대한 국민합의기반 확산

- 유엔환경기구 유치가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물론 대한민국의 브랜드 강화에 필요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림.

(라) 유엔환경기구 확정

- 비무장지대에 어떤 유엔환경기구를 유치할 것인가에 관한 국내 논의 과정을 거쳐 유엔기구유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 현재 환경과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유엔(전문)기구를

⁵⁹- 손기웅 외, 『접경지역의 평화시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 제안 검토』, pp. 252~267을 요약하고 법제측면의 대응방안을 추가하여 작성.

분석하여 비무장지대에 유치할 유엔환경기구를 확정하되, 다음의 세 가지 방안중 가장 적합한 유엔환경기구 유치방안을 확정함.

- ① 기존의 환경관련 유엔기구 중 그 소재지를 비무장지대에 이전
- ② 기존 유엔환경기구의 기능 가운데 일부를 독립하여 그 사무국을 비무장지대에 유치
- ③ 새로운 유엔환경기구의 설립

- 그 중에서 아프리카 케냐의 나이로비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어려우며, 다양하고 과중한 업무로 포화상태에 있는 유엔환경계획(UNEP)의 일부 기능 - 특히 현재 동북아 환경문제와 직결되는 대기오염과 해양오염 분야 - 을 비무장지대에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

(마) 유엔환경기구 소재지 확정

- 유엔환경기구가 확정되면 비무장지대 어느 곳에 당해 유엔환경기구의 소재지를 정할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확정
- 비무장지대 내 어느 곳에 유엔환경기구를 유치할 것인가를 남북한 및 유엔과의 협의를 통해 합목적성, 접근가능성, 발전가능성, 국토균형발전 등의 차원을 고려하여 확정함.
- 다음의 세 지점 가운데 가장 적합한 지역을 유치소재지로 확정함.
 - ① 경의선 축상의 개성-장단지역
 - ② 경원선 축상의 철원지역
 - ③ 동해선 축상의 남북 고성지역

(2) 남북관계 차원

(가) 유엔환경기구 유치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북측에 유인동기 제공

- 북측에 실질적인 유인동기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난관에 봉착할 수 있음.

(나) 유엔기구유치를 위한 남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체결

- 유엔기구 유치의 중요성 및 상징성을 감안하여 남북의 통일 장관을 회담대표로 하고 10명 이내의 남북 동수로 구성
- 유엔기구유치를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점을 천명

(다) 유엔환경기구가 유치될 소재지와 접근로 개발

- 유엔환경기구의 소재지는 중장기적으로 평화시의 일부로 확대될 것을 고려하여야 하나 평화시 구상이 조만간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또는 평화시 건설 이후에도 평화시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독립적 기능을 갖춘 소도시로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라) 소재지 및 접근로 관리방안 마련

- 유엔환경기구 소재지와 접근로가 확정되면 사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마) 단계적·점진적 접근

- 현 단계의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상당한 공간적 범위가 필요한 유엔환경기구의 비무장지대 내 유치가 당장 실현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유치사업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북한의 태도와 호응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비무장지대에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도로·철도가 남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우선 남북군사분계선과 도로·철도가 만나는 지점에 회의를 위한 천막시설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합의된 유엔환경기구의 회의를 개최함.
- 북한의 호응이 커질 경우 비무장지대 내 남북이 합의하는 특정지역에 회의시설(컨벤션센터)을 건설하여 이곳에서 합의된 유엔환경기구의 회의나 매년 개최되는 유엔환경회의, 기타 유엔회의를 개최함.
- 장기적으로 유엔환경기구의 소재지를 평화시로 발전시키고, 이곳에 유엔환경연구소, 유엔환경대학 등 관련 시설을 확장·유치함.

(3) 국제적 차원

- 다양한 국제 통로를 통해 비무장지대 유엔환경기구 유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
 - 6자회담 재개 시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도 고려

- 유엔총회나 안보리, 관련 유엔전문기구 또는 유엔산하기구와 협조하여 이들 기구에서 비무장지대 유엔환경기구 유치를 남북한에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 채택 유도
- 기존 유엔환경기구의 이전을 추진하거나 기능의 일부만을 독립시켜 이전할 경우 당해 유엔환경기구의 설립현장 개정을 주도
 - 유엔환경기구 소재지 협정 체결 및 유엔환경기구 관리방안에 주도적 역할
- 비무장지대를 관리하고 있는 유엔사, 특히 실질적으로 유엔사를 지휘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이해와 협조 요청

라. 로드맵

(1) 2010년 하반기

- 유엔환경기구 유치 준비를 위해 유엔기구유치기획단 구성

(2) 2011년

- 상반기에 유엔기구유치위원회 발족하고 유엔환경기구 유치에 대한 국민합의기반을 확산
- 국제사회에 비무장지대 유엔환경기구 유치의 필요성 및 당위성 부각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 하반기에 유엔기구유치위원회에서 유치할 유엔환경기구 및 당해 유엔환경기구의 소재지 확정

(3) 2012년

- 상반기에 북한을 상대로 비무장지대 유엔환경기구 유치 공동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 유인동기를 제공
- 하반기에는 북한과 합의서 체결을 위한 초안 작성과 협의 지속
-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유엔환경기구 설립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의 필요성 부각

(4) 2013년

- 상반기에 유엔환경기구 유치를 위한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체결 마무리
- 하반기에 합의서를 국회에 제출
- 유엔환경기구를 비무장지대에 유치하기 위한 유엔환경기구 설립현장의 제정·개정을 유도

(5) 2014년

- 상반기에 유엔환경기구 유치를 위한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를 국회에서 통과
-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유엔환경기구 소재지 협정 체결과 유엔환경기구 관리 방안 관련 조약 체결을 주도
- 하반기에 비무장지대 유엔환경기구 유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
- 북한을 상대로 관련 법령 정비 지원

(6) 2015년

- 상반기에 비무장지대 유엔환경기구 유치 특별법 국회통과
- 비무장지대 내 유엔환경기구 출범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표 VIII-5] 유엔환경기구 유치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로드맵

		2010 하반기	2011 상반기	2011 하반기	2012 상반기	2012 하반기	2013 상반기	2013 하반기	2014 상반기	2014 하반기	2015 상반기
국내 차원	유엔기구유치 기획단 구성	○									
	유엔기구유치 위원회 구성		○								
	유엔환경기구 유치 합의기반 확산		○	○							
	유엔환경기구 확정			○							
	유엔환경기구 소재지 확정			○							
	유엔환경기구 합의서 국회통과							○	○		
	특별법 제정, 공포									○	○
남북 차원	유엔환경기구 유치 필요성 설득			○	○						
	유인동기 제공				○	○					
	합의서 체결					○	○				
	관련 북한법 정비 유도 및 지원								○	○	
국제 차원	국제사회에 공감대 확산		○	○							
	환경기구 설립현장 제·개정 유도						○	○			
	환경기구 소재지 협정 체결 주도							○	○		
	환경기구 관리방안관련 조약체결 주도								○	○	

마. 기대효과

(1)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통한 평화공동체 형성에 기여

-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의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을 제안

(2)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이념이 평화와 환경임을 국제사회에 부각

- 비무장지대에 유엔환경기구를 유치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평화유지는 물론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환경을 존중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천명할 수 있음.

(3) 국제기구 유치를 통한 국제적인 위상 제고

- 대한민국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국제기구를 유치하지 못하였음.
- 국제환경기구를 유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가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음.
- 국제환경기구 유치는 다른 분야의 국제기구 유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임.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4) 유엔환경기구의 유치 노력은 법적인 측면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정부의 책무를 이행

-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은 정부에게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과(제6조)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남북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과함.(제11조)

IX. 결론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2010년 8·15 경축사에서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천명하였다. 북한의 불확실성 증가로 통일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독일 통일 20년의 성과는 통일된 한반도의 희망찬 미래를 시사하고 있다. 적극적인 통일대비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비무장지대를 포함하는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은 통일을 대비한 국가적 과제이다.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제2차년도 사업은 이런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면서 통일에 대비한 접경지역 활용방안을 무엇보다 실천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총 24개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군사분야 4개, 공유하천분야 3개, 환경분야 4개, 문화분야 3개, 해양분야 4개, 북·중·러 접경지역분야 3개, 법·제도분야 3개이다.

제안된 사업들은 각각 제안배경, 주요 내용, 추진방안, 로드맵, 기대효과 등으로 기술되어 있다. 로드맵의 경우에는 3단계를 설정하고 해당 단계에서 가능한 세부 추진사항을 점검하였다. 단계는 대체로 남북관계 현상 지속(2010년 하반기~2011년 상반기), 남북대화 재개(2011년 하반기~2012년 상반기), 남북관계 활성화(2012 하반기 이후)의 틀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2차년도 사업에서 제안된 과제(사업)들은 자체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된 사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사업들은 한국의 독자적인 준비를 통해 추진이 가능하지만, 또 다른 과제들은 북한과의 협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호응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안된 사업들 상호간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제안된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범주 및 점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사업의 주체(한국 단독, 남북한, 남북을 포함한 다자), 관심도(호응도), 현실성, 비용 대비 경제적 효과, 비경제적 효과(신뢰구축, 상징성 등) 등 5개의 범주를 정하고 각각에 대해 상대적인 점수 1~3점을 부여하기로 한다. 예를 들면 사업의 주체가 한국 단독으로 가능하면 3점을, 남북한을 포함한 다자간 협의가 필요할 경우 1점을 부여한다. 같은 방식으로 경제적, 비경제적 효과가 크면 3점을 낮으면 1점을 부여한다. 이렇게 범주별로 부여된 점수를 합산하여 제기된 사업의 종합 점수가 클수록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다.⁶⁰

우선 사업 주체와 관련하여 한국 단독으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은 법·제도 분야의 과제 전부, 문화분야의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과 ‘영화 제작 스튜디오 건설’이다. 다자간 협의가 필요한 사업(과제)에는 군사분야의 ‘동북아 위기관리 관련 기구 및 국제군비통제회의 유치,’ 해양분야의 ‘서해 접경해양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남-북-국제사회 3자협력체제 구축,’ ‘서해지역 개발을 위한 국제적 토대,’ ‘환동해권 발전방안’ 및 북·중·러 접경지역 분야의 과제 전부가 해당된다.

둘째, 관심(호응)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는 군사분야의 ‘우발적 충돌방지’와 ‘유해 공동발굴,’ 공유하천분야 사업 전부, 해양분야의 ‘동·서해 공동어로구역,’ 그리고 법·제도분야의 ‘남북한 접경지역 관리협의체 구성’과 ‘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 등이다. ‘호랑이 이동통로 개설’과 문화분야 사업 전부는 관심도가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현실성이 높은 사업으로는 ‘유해 공동발굴,’ 공유하천분야 사

⁶⁰- 범주별 점수 부여는 참여 연구자, 전문가,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취합한 것이다.

업 전부, ‘동·서해 공동어로구역’과 ‘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을 들 수 있다. 반면, 현실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사업은 ‘동북아 위기관리 관련 기구 및 국제군비통제 회의 개최,’ ‘호랑이 이동통로 개설,’ 문화분야 사업 전부, ‘북·중·러 접경지역 인프라 개발’로 예상되었다.

넷째, 비용대비 경제적 효과측면에서는 공유하천분야의 사업 전부, 해양분야의 3과제 즉, ‘서해지역 개발을 위한 국제적 토대,’ ‘환동해권 발전방안,’ ‘동·서해 공동어로구역,’ 그리고 ‘북·중·러 접경지역 인프라 개발’과 ‘남북정상회담과 교통물류분야의 의제’ 등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나머지 사업들은 모두 1점을 받아 경제적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 비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는 사업 모두 2, 3점을 받았다. 어떤 사업이든 경제외적인 효과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 중에서 중간 점수인 2점을 받은 사업들은 환경분야에서 ‘환경관련 국제연수교육기관 설립’과 ‘호랑이 이동통로 개설,’ 문화분야 사업 전부, 해양분야의 ‘서해지역 개발을 위한 국제적 토대’와 ‘환동해권 발전방안,’ 그리고 ‘백두산 화산폭발 대비 공동연구’ 등이다.

[표 IX-1]은 접경지역 평화지대 조성을 위해 제안된 사업들에 대한 종합 평가이다. 제안된 사업들은 점수에 따라 상위 그룹(12점 이상), 중간 그룹(10점, 11점), 하위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위 그룹에 속한 사업들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가장 앞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들 그룹에 따라 우선순위는 상, 중, 하로 나누었다.

상위 그룹에 속한 사업들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14점)를 받은 사업들은 공유하천 및 해양분야에서 나왔다. 공유하천분야의 ‘임진강유역,’ ‘북한강유역,’ ‘한강 하구’ 사업들과 해양분야에서 ‘동·서해 공동어로구역’ 사업이 그것이다. 이들 사업들은 남북한 협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고 관심도, 현실성, 경제적·비경제적 효과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사분야의 ‘유해 공동발굴’과 법·제도분야의 사업 전부는 12점을 받아 상위 그룹에 속한다. ‘유해 공동발굴’ 사업은 경제적 효과는 떨어지지만 다른 범주에서는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마찬가지로 법·제도 분야의 사업 전부도 경제적 효과는 낮지만 다른 범주에서 상대적으로 우선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간그룹에 해당하는 10점과 11점을 받은 사업은 모두 8개 사업이다. 이중에서 11점을 받은 2개의 사업은 ‘우발적 충돌방지’와 ‘남북정상 회담과 교통물류분야의 의제’이다. ‘우발적 충돌방지’의 경우 관심도는 높지만 경제효과는 낮았다. 반면, ‘남북정상회담과 교통물류분야의 의제’는 사업 주제 범주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고, 관심도와 현실성 면에서는 중간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

10점을 받아 중간그룹에 속한 6개의 사업은 경제적 효과의 범주에서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경제적 효과 범주에서 ‘세계군인체육대회 남북대표단 구성,’ ‘동부 비무장지대-설악-금강 연계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설정,’ ‘2014년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총회 남북공동 유치단 구성’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반면, ‘서해지역 개발을 위한 국제적 토대,’ ‘환동해권 발전방안,’ ‘북·중·러 접경지역 인프라 개발’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들 사업이 중위그룹에 속할 정도로 우선순위가 다소 앞서지만 경제적 효과면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위그룹에는 ‘동북아 위기관리 관련 기구 및 국제군비통제 회의 유치’를 포함한 나머지 8개 사업이 포함되었다. 이들 사업들은 남북을 포함한 다자간 사업인 동시에 경제적인 효과가 낮거나, 또는 관심도, 현실성 및 경제적 효과가 모두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비록 접경지역 평화지대 조성을 위해 제안된 사업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평가해 보았지만 이 결과는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지만 향후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급박하게 관계가 호전될 수도 있다. 이런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 사업들을 평가하기 위해 제시된 범주들, 예를 들면 관심도 및 현실성은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제안된 사업들에 대한 우선순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제안된 사업들이 모두 조기에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의 변화를 기대함과 동시에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들의 추진을 통해 한반도 정세 및 주변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뀌기를 기대한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표 IX-1] 접경지역 평화지대 조성을 위한 제안된 사업의 우선순위

분야	협력 및 준비사업	사업 주체	관심도	현실성	경제 효과	비경제 효과	합계	우선 순위
군사	우발적 충돌방지	2	3	2	1	3	11	중
	유해 공동발굴	2	3	3	1	3	12	상
	세계군인체육대회 남북공동대표단 구성 및 접경지역 개최	2	2	2	1	3	10	중
	동북아 위기관리 관련 기구 및 국제군비통제 회의 유치	1	2	1	1	3	8	하
공유하천	임진강유역	2	3	3	3	3	14	상
	북한강유역	2	3	3	3	3	14	상
	한강 하구	2	3	3	3	3	14	상
환경	환경관련 국제연수교육기관 설립과 남북한 스마트그리드 협력	2	2	2	1	2	9	하
	호랑이 이동통로 개설	2	1	1	1	2	7	하
	동부 비무장지대-철안-금강 연계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	2	2	1	3	10	중
	2014년 제12차 유엔 생물다양성협 약총회 남북공동 유치단 구성 및 비 무장지대 개최	2	2	2	1	3	10	중
문화	웅기문화 교류	2	1	1	1	2	7	하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3	1	1	1	2	8	하
	영화제작 스튜디오 건설	3	1	1	1	2	8	하
해양	서해 접경해역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남-북 국제사회 3자협력체제 구축	1	2	2	1	3	9	하
	서해지역 개발을 위한 국제적 도대: Oriental Golden Coast 건설	1	2	2	3	2	10	중
	환동해권 발전방안	1	2	2	3	2	10	중
	동-서해 공동어로구역	2	3	3	3	3	14	상
북·중·러 접경지역	북·중·러 접경지역 인프라 개발	1	2	1	3	3	10	중
	남북정상회담과 교통물류분야의 의제	1	2	2	3	3	11	중
	백두산 화산폭발 대비 공동연구	1	2	2	1	2	8	하
법·제도	남북한 접경지역 관리협업체 구성	3	3	2	1	3	12	상
	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	3	3	3	1	3	12	상
	유엔환경기구 유치를 위한 법·제도 준비	3	2	3	1	3	12	상

참고문헌

1. 단행본

김덕주. 『국제공유하천의 분쟁 및 해결 사례』.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8.

김영봉·이승복·김은정.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한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연구』. 안양: 국토연구원, 2009.

김찬규·이규창. 『북한국제법연구』.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09.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국제법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2.

손기웅 외.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I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 제안 검토』. 서울: 통일연구원, 2009.

유병화·박노형·박기갑. 『국제법 II』. 서울: 법문사, 2000.

정민정·김상욱. 『북한 황감담 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36호.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2009.

Bowett, D. W. The Law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4th ed.) London: Stevens & Sons, 1982.

2. 논문

김명기. “DMZ 평화화의 국제법적 구상.” 김인영·김재한 편. 『DMZ-발전적 이용과 해체』. 서울: 도서출판 소화, 1999.

김봉현.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의 유엔사 해체 문제.” 오윤경 외 외교통상부 직원 공저. 『21세기 현대 국제법질서』. 서울: 박영사, 2001.

박기갑. “국제판례를 통하여 본 국제하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 연구.” 『한림법학 FORUM』. 제2권, 1992.
- 박기갑. “북한의 행위와 국제법: 대한민국 국적인 피해사례와 황강댐 무단방류사건을 중심으로.” 『안암법학』. 통권 제31호, 2010.
- 박종철.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의 특징과 이행구도.”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통일연구원 광복절 경축사 관련 학술회의 자료집, 2010.
- 소병천. “국제하천의 비항행적 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소고.” 『국제법학 회논총』. 제54권 제3호, 2009.
- 신연재. “물 문제와 국제하천분쟁.” 『국제정치연구』. 제9집 1호, 2006.
- 이규창. “북한의 해상사격구역 선포와 해안포사격.” 『국방연구』. 제53권 제1호, 2010.
- 이상면. “국제하천에 있어서 댐건설과 유로변경에 대한 국제관습법.” 『법학』. 제27권 제4호, 1986.
- 이장희. “세계화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적 기본문제.” 『사회과학논총』. 제10집, 1995.
- 조성렬. “화해·협력 단계에서의 정치·군사분야 제도화 추진: 평가와 과제.” 『독일통일 20년과 남북통합의 과제』. 북한연구학회 세미나 자료집, 2009.
- 최동진. “공유하천 관리, 협력사업 연계·통합하여 추진 필요.” 『워터저널』. 2009.
- 최동진·김광목. “국제 공유하천을 둘러싼 분쟁.” 『상하수도학회지』. 제16권 1호, 2002.
- 한성원. “1997년 국제하천의 비항행적 이용의 법에 관한 유엔협약의 분석과 평가.”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Wolf, A. T. "Indigenous Approaches to Water Conflict Negotiations and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Waters." *International Negotiation: A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e*. December 2000.

3. 기타자료

기획재정부. 『2010년 거시경제안정보고서』

통일연구원. 접경지역의 평화적 활용방안 프로젝트 자문회의 자료집.
2009.

북한 과학기술네트워크 <<http://www.nktech.net>>.

『국방일보』.

『세계일보』.

『연합뉴스』.

연구총서

2008-01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최진욱 외	9,000원
2008-02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임강택 외	10,000원
2008-03	남북한 출입제도 [통행·통신·통관] 개선 및 정착 방안 연구	김영운	8,000원
2008-04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8-05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전병곤, 구기보	7,500원
2008-06	한반도 통일 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박영호 외	9,000원
2008-07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조정아 외	10,000원
2008-08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전현준 외	10,000원
2008-09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박형중 외	6,500원
2008-10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9,000원
2008-11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김규륜 편	9,000원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7,500원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신상진	9,000원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전현준 외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곤 외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외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최진욱 외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인권외교의 방향	홍우택 외	6,500원
2009-10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김수암	7,500원
2009-1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민 외	8,000원
2009-13	Modernization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Economy: Roles and Efforts of Neighboring Countries	김규륜 외	7,500원
2009-15	Peace-Keep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ommissions	Gabriel Jonsson	20,000원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 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윤,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의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I)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I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II)	김규륜 외	13,000원

학술회의총서

2008-0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10,000원
2008-02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9,500원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6,500원
2009-02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방안 추진방향		5,500원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협동연구총서

2008-07-01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모형개발 및 발전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500원
2008-07-02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구축	양현모, 이준호	6,000원
2008-07-03	북한의 국가 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최진욱 외	7,000원
2008-07-04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박종철 외	8,000원
2008-08-01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모색(총괄보고서)	박형중 외	10,000원
2008-08-02	국제 개발이론 현황	이금순 외	8,000원
2008-08-03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	임강택 외	10,000원
2008-08-04	UN기구의 지원체계와 대북 활동	최춘흠 외	6,500원
2008-08-05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권 울 외	10,000원
2008-08-06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장형수 외	10,000원
2008-08-07	국제 NGO의 원조정책과 활동 연구	이종무 외	8,000원
2009-15-01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8,500원
2009-15-02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박형중 외	10,000원
2009-15-03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김정수 외	10,000원

2009-15-04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10,000원
2009-15-05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종무 외	9,000원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양현모 외	10,000원
2009-16-01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000원
20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외	8,000원
20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 석 외	9,000원
20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민병원 외	8,000원
20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7,500원
2009-17-0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박종철 외	8,000원
20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조 민 외	9,000원
20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함택영 외	7,500원
20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외	7,000원
20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이금순 외	7,500원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1 (2008)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2 (2008)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1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2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1 (2010)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2 (2010)	2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8	이금순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i>	이금순 외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9	이금순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i>	이금순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2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기타

2008	2006 독일통일백서		8,000원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8		15,000원
2009	The U.S.-RCK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Bae, Jung-Ho, Abraham Denmark	10,000원
2009	북한의 주요현안과 한-미 전략적 공조	배정호	10,000원
2009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10,000원
2010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010 독일통일백서		13,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연례정보보고서

200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7~2008	6,000원
2008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8~2009	6,000원
2009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9~2010	7,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08-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정영태,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2008-02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전병곤	
2008-03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전현준	
2008-04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8-05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배정호	
2008-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분석	최수영	

2008-07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이금순, 김수암
2008-08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최진욱, 박형중
2008-09	남북 이산가족문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임순희
2008-10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서재진, 정영태, 전현준, 최수영, 최진욱, 임순희, 조정아
2008-11	아소 정권의 출범과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09-05	2008년 북-중무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중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정영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야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출

2008-01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서재진
2008-02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박형중, 허문영, 조 민, 전성훈
2008-03	북한의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연구	최은석, 황재준
2009-01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규륜 외
2009-02(I)	1)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손기웅 외
2009-02(II)	2)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제안 검토	손기웅 외
2009-03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조한범 외
2009-04	통일 예측 시계 구축	박영호, 김지희
2009-05	북핵일지 1955-2009	조 민, 김진하
2009-06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웅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적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예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2010-04(III)	I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IV)	IV)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1호	이금순, 김수암, 임순희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2호	이금순, 김수암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2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윤,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월간 북한동향

비매품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북한연구소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북한연구소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북한연구소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4호	북한연구소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5호	북한연구소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6호	북한연구소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1호	북한연구소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2호	북한연구소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3호	북한연구소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4호	북한연구소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5호	북한연구소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6호	북한연구소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1호	북한연구소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2호	북한연구소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3호	북한연구소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4호	북한연구소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5호	북한연구소센터

Studies Series

비매품

2008-01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Soo-Am
2008-02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Jeung Young-Tai
2008-03	PSI and the Korean Position	Cheon Seong-Wnun
2008-04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Kim Kook-Shin, Yeo In-Kon, Kang Han-Koo
2008-05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s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
2008-06	Economic Hardship and Regime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Suh Jae-Jean

-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 Scenario Workshop
Choi Jin-Wook, Kim Kook-Shin, Park Hyeong-Jung, Cheon Hyun-Joon
Cho Jeong-Ah, Cha Moon-Seok, Hyun Sung-Il
-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Teag, Kim Kyu-Ryoon, Jang Hyung-Soo, Cho Han-Bum,
Choi Tae-Uk
-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Ah, Suh Jae-Jean, Lim Soon-Hee, Kim Bo-Geun, Park Young-Ja
-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Joon, Jeung Young-Tae, Choi Soo-Young, Lee Ki-Dong
-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wook, Lee Kyo-Duk, Cho Jeong-Ah, Lee Jin-Yeong, Cha Moon-Seok
-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기타

비매품

-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e Meet a Unified Korea Park Young Ho
-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yoon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KINU 정책연구 시리즈 10-04 (I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